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백서

2010

2010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백서

2010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백서

책임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흥식 교수
공동연구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염태산 (박사과정수료)
공동연구원 한국NPO공동회의 사무국장 김희정
연구보조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정의진 (석사과정)
연구보조원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상욱 (석사과정)

작년에 이어 올해도 『2010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백서』를 발간하게 됨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이전과 달리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시민의식이 성숙하여 비영리민간단체(NPO)의 역할과 공익성은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에 의해 제공되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비영리부문이 담당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사회의 다원화 현상에 따른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통한 행정수행방식의 혁신 등이 부각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중앙정부 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와 변화추이, 부처별 배분액, 배분기준, 대상기관의 특성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작년에 이어 정부의 예산 배분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과 함께 연도별 지원액 추이를 분석해보고자 이 연구조사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민간부문의 성장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적 기능의 증대와 더불어 이들 단체에 대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 또한 증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1997년 공개모집방식을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한 이후 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연구조사에 따르면 2010년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총 3,227억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2010년 대한민국 정부의 결산액이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248조 6,533억원 정도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예산 대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검토해보면 정부 예산의 0.1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지원은 외국과 비교하면 너무나 적은 규모입니다. 외국 정부의 NGO 지원현황을 보면, 영국은 1996-7년 기준으로 167백만 파운드, 미국은 1997년 기준으로 927.7백만 달러를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발간사

서구에서 시민사회 영역이 꾸준히 발전하여 온 바탕에는 정부 등 공공영역의 재정지원이 크게 작용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우리도 시민사회영역에 대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한층 더 향상시켜 나가야 합니다. 『2010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백서』가 정부와 NPO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2010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백서』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양자 간의 대화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조망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지원활동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NPO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고려사항들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조직의 재정적 자원 확보 및 정부 정책을 이해하는 등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 정부부처와 부처별 담당과의 도움이 없었다면 발간 자체를 시도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정보공개 청구제도를 통해 26개 정부부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예산, 프로젝트명, 지원단체에 대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연구조사를 이끈 조흥식 교수님과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조흥식 교수님의 열정으로 인해 『2010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백서』가 이 세상에 빛을 볼 수 있었습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한국NPO공동회의와 함께 『2010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백서』발간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본 연구와 같은 NPO 관련 연구조사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NPO 발전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 NPO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 11월

한국NPO공동회의 공동대표

박동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사무총장

한국 비영리민간단체(NPO)는 지난 60년 역사 동안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국내 소외계층 뿐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다양한 영역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 기여해 왔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서 NPO는 국가와 정부, 지방정부, 기업과 함께 공공의 발전과 사회변화를 위한 핵심적인 협력자와 파트너로 없어서는 안 될 존재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사회에서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비영리민간단체(NPO)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1990년 이후 NPO가 양적, 질적인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왔으며, 그 활동영역도 다양해 복지, 빈곤, 인권, 여성, 환경, 국제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역할에 있어서도 정부가 해결하지 못하거나 위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소극적인 역할에서 정부와 파트너십을 통해 일한다거나 정부 정책을 제언하는 등의 적극적인 역할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한국 NPO가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일정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예컨대, NPO관련 통계산출 및 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소, 실무자 역량강화 전문 교육기관, 모금홍보 기관, NPO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정보센터, NPO 전문 컨설팅기관 등이 인프라의 예일 것입니다.

한국NPO는 자체 예산 또는 정부차원 및 민간의 공모사업을 통해 광범위한 영역에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NPO가 우리사회와 국제사회에 기여한 실적, 활동 및 그와 관련한 통계나 정보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 NPO의 실상과 문제에 대한 통계나 정보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NPO관련 진단과 미래예측, 올바른 정책과 대안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 <2010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백서>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국NPO공동회의는

축사

작년에 이어 금년 11월에 한국 NPO의 조직현황과 사업실적을 담은 <한국NPO총람>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한국 NPO의 현황과 활동의 발자취를 역사속의 기록으로 정리하는 것은 NPO뿐 아니라 국가발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한국NPO공동회의는 NPO가 우리사회와 국제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활동과 기여도에 대해 우리사회에 알릴 소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NPO가 수행하고 있는 활동들에 대해 우리사회에 알리는 역할을 감당할 것입니다. 또한 NPO의 상생을 위해, NPO-정부간 협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백서가 나오기까지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은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박동은 사무총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011년 11월

한국NPO공동회의 이사장

이일하

굿네이버스

연구요약

I.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도

1. 비영리 조직(NPO)의 개념 _39
 - 1) 조직(Organizations) _40
 - 2) 민간부문(Private) _40
 - 3) 이익무분배(Non-profit distributing) _40
 - 4) 자치성(Self-governing) _41
 - 5) 자발성(Voluntary) _41
 - 6) 공익성(Public Sector) _41
2. 비영리조직과 유사 개념들 _42
 - 1) (법률에 의한)비영리민간단체(Non-Profit Organization) _42
 - 2) 비영리법인(Incorporated Non-Profit Organization) _42
 - 3) 공익법인(Public Interest Corporation) _44
 - 4) 시민단체 (Civic Organization) _46
 - 5)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_46
 - 6) 시민운동단체(Civil Movement Organization) _47
 - 7) 관변단체(Quasi-autonomou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_47
3. 비영리조직의 생성 및 성장에 대한 이론 _47
 - 1) 계약실패이론-시장실패 _49
 - 2) 공공재이론-정부실패 _50
3. 다양한 공익적 관심을 지닌 이들의 참여: 다원주의와 자유 _51
 - 4) 동일한 공익적 동기를 지닌 사람들의 결속과 단결 _52
4. 정부와 비영리 조직과의 관계 _52
 - 1) 보완적 관계 _53
 - 2) 협조적 관계 _54
 - 3) 대립적 관계 _54
5. 정부의 비영리조직 지원 제도 _55
 - 1) 보조금의 지원 _56
 - 2) 조세 감면 _56
 - 3) 모금에 대한 정부의 제도 완화 _57
 - 4) 우편요금의 지원 _58
 - 5) 행정지원 및 협력 및 시민참여 제도의 마련 _58
6. 비영리조직 분류기준과 체계 _59
 - 1) 국내의 분류 시도 _59
 - 2) 국제적 분류시도 _61

II.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총론적 검토

1. 연구 방법 _67
 - 1) 연구주제 _68
 - 2) 연구자료 _68
 - 3) 주요 연구 방법 _68
 - 4) 조사절차 _69
 - 5) 연구 상 한계 및 고려사항 _70

2. 정부 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 _71
3. 단체 유형 및 사업 유형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 _75

III. 정부 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

1. 고용노동부 _83
2. 공정거래위원회 _90
3. 교육과학기술부 _93
4. 국가보훈처 _97
5. 국가인권위원회 _100
6. 국민권익위원회 _103
7. 국토해양부 _105
8. 금융위원회 _107
9. 기획재정부 _109
10. 농림수산식품부 _110
11. 농촌진흥청 _113
12. 문화재청 _116
13. 문화체육관광부 _120
14. 방송통신위원회 _123
15. 법무부 _127
16. 보건복지부 _129
17. 산림청 _134
18. 식품의약품안전청 _136
19. 여성가족부 _139
20. 외교통상부 _147
21. 중소기업청 _153
22. 지식경제부 _156
23. 통일부 _157
24. 특허청 _159
25. 행정안전부 _160
26. 환경부 _169

IV.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절차와 기준 검토

1.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절차 _173
 - 1) 확인단계 _174
 - 2)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_174
 - 3) 사업수행 _175
 - 4) 평가 및 보고 _176
2.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심사 기준 검토 _176
 -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심사 기준 연구 방법 _177
 - 2)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심사 기준 _178
 - 3) 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 대상의 주요 공모 사업 _183

V. 결론

VI. 부록

1. 백서 작성시 비영리민간단체 분류를 위한 기준과 고려 사항 _199
 - 1) 다양한 목적을 복합적으로 지향하는 단체의 경우 _200
 - 2) 한국적 특수성에 따라 존재하는 단체의 경우 _200
 - 3)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에 따라 사업을 분류하면서 생기는 어려움 _201
2.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정부지원 공모사업」 _204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_239

참고 문헌

〈표 I-1〉 국내 비영리법인현황과 변화 (1991-2009년)	43
〈표 I-2〉 국내 공익법인 현황 (1991-2009년)	45
〈표 I-3〉 정부와 NGO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52
〈표 I-4〉 정부와 비영리 조직 사이의 자원교환	55
〈표 I-5〉 근로소득에 대한 기부금 조세 감면	57
〈표 I-6〉 조희연의 단체의 목적과 활동영역에 따른 한국 비영리 조직의 분류	60
〈표 I-7〉 한국민간단체총람의 민간단체분류(2009)	60
〈표 I-8〉 세계은행의 시민사회단체 분류	62
〈표 I-9〉 UN의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분류	64
〈표 II-1〉 정부 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비교(2010년)	73
〈표 II-2〉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77
〈표 II-3〉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79
〈표 III-1〉 고용노동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84
〈표 III-2〉 고용노동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85
〈표 III-3〉 고용노동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6~2010년)	86
〈표 III-4〉 2010년 고용노동부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업명	86
〈표 III-5〉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91
〈표 III-6〉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92
〈표 III-7〉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2006~2010년)	92
〈표 III-8〉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93
〈표 III-9〉 교육과학기술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95
〈표 III-10〉 교육과학기술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95
〈표 III-11〉 교육과학기술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5~2010년)	96
〈표 III-12〉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명	96
〈표 III-13〉 국가보훈처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97
〈표 III-14〉 국가보훈처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98
〈표 III-15〉 국가보훈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5~2010년)	98
〈표 III-16〉 2010년 국가보훈처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명	99
〈표 III-17〉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01
〈표 III-18〉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01
〈표 III-19〉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2003~2010년)	102
〈표 III-20〉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103
〈표 III-21〉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04
〈표 III-22〉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04
〈표 III-23〉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105
〈표 III-24〉 국토해양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06
〈표 III-25〉 국토해양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06
〈표 III-26〉 국토해양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9~2010년)	106
〈표 III-27〉 국토해양부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107
〈표 III-28〉 금융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08
〈표 III-29〉 금융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08
〈표 III-30〉 금융위원회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108
〈표 III-31〉 기획재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10
〈표 III-32〉 기획재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10
〈표 III-33〉 2010년 기획재정부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110
〈표 III-34〉 농림수산식품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12
〈표 III-35〉 농림수산식품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12
〈표 III-36〉 농림수산식품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2007~2010년)	113
〈표 III-37〉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113
〈표 III-38〉 농촌진흥청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14
〈표 III-39〉 농촌진흥청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14
〈표 III-40〉 농촌진흥청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5~2010년)	115
〈표 III-41〉 2010년 농촌진흥청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116
〈표 III-42〉 문화재청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17
〈표 III-43〉 문화재청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17
〈표 III-44〉 문화재청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2007~2010년)	118

〈표 Ⅲ-45〉 2010년 문화재청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119
〈표 Ⅲ-46〉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21
〈표 Ⅲ-47〉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21
〈표 Ⅲ-48〉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6~2010년)	122
〈표 Ⅲ-49〉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122
〈표 Ⅲ-50〉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24
〈표 Ⅲ-51〉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24
〈표 Ⅲ-52〉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8~2010년)	125
〈표 Ⅲ-53〉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126
〈표 Ⅲ-54〉 법무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28
〈표 Ⅲ-55〉 법무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9~2010년)	128
〈표 Ⅲ-56〉 2010년 법무부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129
〈표 Ⅲ-57〉 보건복지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30
〈표 Ⅲ-58〉 보건복지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30
〈표 Ⅲ-59〉 보건복지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2006~2010년)	131
〈표 Ⅲ-60〉 2010년 보건복지부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132
〈표 Ⅲ-61〉 산림청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35
〈표 Ⅲ-62〉 산림청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35
〈표 Ⅲ-63〉 2010년 산림청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136
〈표 Ⅲ-64〉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37
〈표 Ⅲ-65〉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추이(1999~2009년)	138
〈표 Ⅲ-66〉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138
〈표 Ⅲ-67〉 여성가족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40
〈표 Ⅲ-68〉 여성가족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41
〈표 Ⅲ-69〉 여성가족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2005~2010년)	142
〈표 Ⅲ-70〉 2010년 여성가족부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143
〈표 Ⅲ-71〉 외교통상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48
〈표 Ⅲ-72〉 외교통상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48
〈표 Ⅲ-73〉 외교통상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5~2010년)	149
〈표 Ⅲ-74〉 2010년 외교통상부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150
〈표 Ⅲ-75〉 중소기업청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프로그램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54
〈표 Ⅲ-76〉 중소기업청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8~2010년)	155
〈표 Ⅲ-77〉 2010년 중소기업청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155
〈표 Ⅲ-78〉 지식경제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56
〈표 Ⅲ-79〉 지식경제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2008~2010년)	156
〈표 Ⅲ-80〉 2010년 지식경제부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157
〈표 Ⅲ-81〉 통일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58
〈표 Ⅲ-82〉 2010년 통일부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159
〈표 Ⅲ-83〉 특허청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59
〈표 Ⅲ-84〉 2010년 특허청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160
〈표 Ⅲ-85〉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2010년)의 유형별 사업 평가 요약	161
〈표 Ⅲ-86〉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63
〈표 Ⅲ-87〉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64
〈표 Ⅲ-88〉 2010년 행정안전부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165
〈표 Ⅲ-89〉 환경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170
〈표 Ⅲ-90〉 환경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추이 (1999~2009년)	170
〈표 Ⅲ-91〉 2010년 환경부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171
〈표 Ⅳ-1〉 민간단체와 협력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공모사업의 예	178
〈표 Ⅳ-2〉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에 검토되는 주요 심사기준과 표현방식(2010년)	182
〈표 Ⅳ-3〉 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 대상의 주요 공모 사업(2010년)	183
〈표 Ⅵ-1〉 국내 비영리민간단체 분류기준 작업표 (ICNPO기준의 적용)	202
〈그림 I-1〉 Salamon이 정리한 비영리조직의 정의	41
〈그림 II-1〉 정부 부처별 지원 총량 대비 지원 빈도, 지원액 비율 비교(2010년)	74
〈그림 II-3〉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총량 대비 비율 검토(2010년)	80
〈그림 II-2〉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총량 대비 비율 검토(2010년)	78
〈그림 IV-1〉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지원 절차 재정리 (2011년)	173

연구과제: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NPO) 지원 백서

1. 연구방법

-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백서를 구성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각 부처의 민간단체 지원의 현황과 추이를 검토하고, 중앙정부 각 부처의 사업별 지원기준과 지원요령을 검토하는 것을 연구의 주제로 정하였다.
- 이를 위하여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후원과 '한국NPO공동회의'의 행정적 지원을 받아 35개 중앙정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며, 이를 통해 실제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자료를 보내온 26개 중앙부처를 대상으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 자료를 확보하였다. 이 자료를 기초로 하여 정부에서 2010년에 지원한 830건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분석하였고, 지원단체, 지원 프로그램, 지원액, 연도, 지원기준을 정리하였다. 또한 2011년도의 지원 예정사항을 함께 확보하여 백서 구성에 참조하였다.
- 다음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한다는 부처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하여 실제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모할 수 있는 정부사업명, 심사기준, 지원액 등을 확인하여 목록화시키고 이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의 각종 사업지원을

위하여 참조할 수 있는 편람을 제공하였다.

- 더불어 정부 부처에 국내 비정부조직(NGO)/비영리조직(NPO)와 정부와의 관계 문헌, 각종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정책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였다.
- 주요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통계처리를 통한 양적 자료 분석, 2차 자료 분석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구분	분석내용
문헌연구	정부-비영리 조직 관계 일반론 정리/저술 (국가, 시장, 비정부조직, 비영리조직, 시민사회와의 관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역사 정리/저술 비영리민간단체 분류를 위한 법적기준, 국제기준 재정리 (행정안전부기준, 국제NPO분류방식(CNPO) 등)
양적자료 분석 (통계처리)	2010~2011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 현황 (부처별 비교) 부처별 연도별 지급액 변화 (규모, 부처별, 단체별, 사업목적별 비교 등) 비영리민간단체의 단체구분별 지급액 비교, 연도별 변화(추이)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목적별 지급액 비교, 연도별 변화(추이) 공모로 배분되는 예산액의 부처별 비교 / 변화
2차 자료 분석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부처별 배분 기준(공통점, 차별점)과 함의도출, 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 심사/배분 기준 및 지원요령 제안

- 조사 및 분석기간은 2011년 2월~9월까지였다.
- 연구상 한계 및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정보를 정보공개청구에 의존하는데, 정부공개 청구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였음에도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와 민간단체의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 지원의 포함여부에 대한 각 부처 담당자의 인식이 달라 포함되어야 할 지원대상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2)중앙정부로 한정하여 비영리민간 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 차원의 지원현황이 누락되어 비영리민간 단체 지원 총량이 과소평가될 우려가 있다.

2.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도

-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윤이 발생해도 조직원들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공공의 목적을 지니는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민간조직’이라고 정의했다.
- NPO와 유사한 개념으로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 시민운동단체, 관변단체로 구분하여 논의하고, 이들 단체의 현황을 간략하게 논의하였다.
- NPO조직의 한국적 생성 및 성장에 대한 논의는 상당한 연구가 요구되어, 계약실패 이론(시장실패), 공공재이론(정부실패), 다원주의와 자유, 결속과 단결이라는 일반적 이론적 논의를 정리했다.
-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는 정부와 NPO와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논의해야 하므로, 이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학술적 논의를 정리하였다. 본 책에서는 정부-NPO관계를 보완적 관계, 협조적 관계, 대립적 관계로 나누어 한국적 상황을 논의했다.
-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 제도로 세법에 의한 다양한 세제혜택 이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한, 보조금 지원, 조세감면, 우편요금의 지원, 행정지원 및 협력, 시민참여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아울러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법」에 의거하여 모금에 대한 정부의 제도를 완화하여 간접적 지원을 하는 방식도 활용되었다. 2010년도의 정부지원에서의 변화를 살펴본 바에 따르면, 납세자의 비영리조직이 받는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 한도가 2010년도에는 20%로 전년대비 5%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현황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원을 받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유형분류,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분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연구에서 비영리민간단체유형에 대한 분류 시도를 정리하였다.
- 본 책에서는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에 의거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분류하고 지원되는 사업을 분류하였다. 이 방식은 미국 존스홉킨스대학의 Salamon교수의 제안으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웨덴, 일본, 헝가리, 브라질, 가나, 이집트, 인도, 태국의 자료를 통해 확인된 자료를 통하여 정리된 것이다. 이 기준으로 분류함으로써 다양한 단체에 대한 포괄적 분류기준을 확보할 수 있었으며, 후속 연구를 통하여 국가 간 비교를 위한 기초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에서 지원사업의 변화를 평가하였으므로 본 백서의 자료는 연도별 추이분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3.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총론적 검토

1) 정부 부처별 민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총론

- 본 연구에 포함된 정부 부처는 26개 중앙 부처이다. 해당 부처는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통일부, 특허청, 행정안전부, 환경부(가나다순)이다.
- 현재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2010년 중앙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총 3,227억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2010년 대한민국 정부의 결산액이 특별회계까지 포함하여 248조 6,533억원 정도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예산 대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검토해보면 정부 예산의 0.13%에 불과했다. 이 중에 지방정부에 지원되는 58조원의 예산을 제외한다고 하더라도 전체 정부예산액의 0.16%만이 비영리민간단체를 위한 지원에 되었다.

- 각 부처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빈도는 31.9개 단체로 나타났다. 빈도에 있어서 법무부, 지식경제부, 특허청처럼 1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와 같이 많게는 100개 단체 이상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어 부처 간 편차가 컸다.
- 각 부처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원액을 보면 부처 평균 124억 1천만원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원액의 범위를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1억 2천만원의 지원을 한다고 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1,025억원을 지원하는 등 부처 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 개별 단체당 평균지원액은 3억 8,900만원 정도로 나타났으나, 수백억원을 지원 받는 단체와 수백만원대의 지원을 받는 단체까지 폭넓은 분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평균 지원액으로 전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앞의 연구의 한계와 고려사항에서도 밝혔듯이, 각 부처마다 ‘민간단체에 대한 정상보조’를 포함시킨 일부 부처,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공공기관까지 포함시킨 일부 부처, ‘민간단체와의 협력 사업’이나 ‘민간 위탁 사업’의 일부만 포함시킨 부처 등 다양한 편차가 존재하므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을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산림청, 문화재청, 기획재정부가 100억원이 넘는 지원을 하는 상위 7개 부처로 나타났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빈도가 높은 순으로 정리해보자면,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지원액과 지원 빈도를 대응시켜 비교해보면 보건복지부를 제외하고는 지원빈도와 지원액이 비례하지는 않았으므로, 지원액이 큰 경우에 특정 민간단체에서 많은 액수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추정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600억원의 지원을 받고, 중소기업청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진흥원에서 565억원을 지원받는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단체가 순수한 ‘비영리민간단체’인가, ‘재단’ 등의 구성을 통해 민간의 외형을 지니고 있지만 정부와 유사한 조직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는

‘공공기관’인가 하는 점이다. 반대되는 극단으로 지원 빈도가 높지만 지원액이 적은 경우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여성가족부의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협력사업’ 등을 들 수 있다.

2) 단체 유형 및 사업 유형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

-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빈도가 높은 대상은 시민사회단체(155건, 시민, 인권, 여성, 의식개혁 등 사업), 사회서비스(107건), 국제적 행동단체(108건), 기업·직업단체·노조(103건), 문화예술단체(82건), 연구단체(5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지원액을 중심으로 본다면 기업·직업단체·노조에 지원되는 금액이 1,049억원 내외로 전체 비영리단체 지원액의 32.5%나 차지하였다. 이와 관련된 사업 중 565억원 정도(53.9%)가 소상공인진흥원에 배분되고 있었다. 또한 소득보장을 위한 목적으로 과학기술인공제회에 600억원이 지원되고 있었다. 또한 문화와 예술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199억원 이상으로 전체 지원액의 6.2%나 지원이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지원되는 금액이 120억 9천여만원 내외로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액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 전체적으로 낮은 지원금을 받는 사업 분야는 초중등교육, 주택, 레크리에이션 단체, 정치조직, 교부금모집조직, 자원봉사단체, 긴급 상황을 지원하는 난민지원단체, 종교집회 및 단체, 기타(북한관련)단체 등으로 나타났다.

4. 정부 부처별 민간 비영리 단체 지원 현황

1) 고용노동부

- 2010년, 고용노동부는 139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연간 204억 9,45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정부결산서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1조 2737억원 정도의 세액을 집행하였는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액은 부처 전체 예산의 1.6% 정도 된다.
-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이나 노조에 대한 지원액이 110억원 이상으로 전체 지원액의 54%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고용과 훈련관련 단체에 37억 3,334만원을 지원해 전체 지원액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고등교육 기관 즉 대학의 산학협력단 등에 지원하는 빈도가 높았는데, 이는 총 25억 6,892만원으로 전체지원액의 12.5%를 차지하였다.
- 프로그램 목적별 지원 상황을 살펴보면 고용 및 훈련 분야에 161억 1,8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59억 5245만원에 비해 2.7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 볼 수 있다. 이는 최근 청년 일자리, 지방 일자리의 부족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증가하였음을 반영한다. 더욱이 부처명을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전환하면서 이와 관련한 일자리 창출과 기회제공이라는 정책의지를 상당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 2010년도에는 부처명이 고용노동부로 바뀐 상황을 반영을 하듯 전년대비 36.4%나 지원액이 증가하여 139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연간 204억 9,45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도에도 노동단체들에 대한 지원(26억 8천만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5억 3,600만원), 노사관계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2억 5,500만원), 고용평등상담실 운영(2억 8,500만원, 15개소)에 대한 지원 등을 확정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2) 공정거래위원회

-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총 8개 비영리민간단체에 8억 4천만원 정도를 지원하였다. 이는 전체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의 738억원의 1.1% 정도를 차지한다.

-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주로 ‘법과 법률서비스’ 범주에 속하는 단체를 지원하는데, 주로 소비자보호단체, 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주를 이룬다. 주로 이들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은 소비자권의 옹호를 위한 소비자 활동, 각종 거래에 일어나는 분쟁의 조정을 위한 활동, 상품비교정보생산사업 등이다.
- 하지만 2010년도에 접어들면서 지원액은 41.9%로 급감하였는데, 이는 정보공개 자료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대한 보조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생긴 결과이다.

3) 교육과학기술부

-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15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연간 1,025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정보를 공개하였다.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참조하여 볼 때 교육과학기술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의 규모는 전체 정부지원금액의 31.5%로 가장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2010년도 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결산액이 41조 8537억원 정도라는 것을 고려하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은 전체 결산액의 0.3%도 되지 않는다.
-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주로 이공계인력 지원, 고전번역, 학술활동 지원 등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하여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단체는 ‘과학기술인공제회’로 600억원(2010년 부처 지원예산의 58.5%)의 지원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 ‘한국고전번역원’에서 한국고전번역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180억원을 지원받았다. 그 밖의 13개 단체가 245억원의 예산지원을 나누어 받고 있었다. 이들 단체는 대부분 다양한 연구 사업을 전개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 2010년도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이 전년대비 17~18배 이상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예산이 증액되었다기보다는 이와 관련된 지원 사항이 이번 정보공개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러한 예산 증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지원사업은 이공계 인력관리 특별 지원사업, 한국

고전 번역 사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이다.

4) 국가보훈처

- 2010년, 국가보훈처는 24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연간 16억 975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정보공개요구에 응하였다. 국가보훈처의 2010년 전체 결산액이 3조 4,703억원 정도라는 것을 고려할 때에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서 비영리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 부처는 주로 보훈보상, 보훈복지, 보훈행정에 대부분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중 일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보훈선양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 국가보훈처를 통하여 지원받는 단체는 주로 ‘대한민국의 건국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기념 사업회나 승모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식, 기념식 등을 주관하거나, 관련 문화 행사, 국제학술대회 등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고 있다. 2011년도에도 독립유공자, 건국유공자 등에 대한 기념사업이 확정되어 진행될 예정이다.
- 국가보훈처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은 안정적이지 않으며, 특별한 역사적 상황과 이슈에 따라 변동의 폭이 크게 나타난다.

5) 국가인권위원회

-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5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연간 1억 3,000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부처의 2010년 전체 결산액이 226억 9,711만원 정도라는 것을 고려할 때 전체 예산의 0.6% 정도를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지원받은 기관의 1/3은 주로 인권, 민주화, 여성단체 등 ‘시민 및 변호단체’ 범주에 속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는 성폭력상담소, 문화센터 등 ‘사회서비스’ 범주에 속하는 경우도 26.7% 정도 되었다. 전체 예산의 60% 정도가 인권에 대한 옹호, 대변,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지니는 단체에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검토해볼 때, 43.5% 정도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교육으로 분류가 되었다.

-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하여 지원을 받는 단체의 리스트를 검토해보면, 대체로 소규모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단체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별 단체에서 받는 지원금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전혀 없었으며, 평균 지원 금액이 866만원 내외로 제한적이다. 따라서 정부의 보조만으로 사업진행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협력사업’ 예산은 ‘시민실천프로그램’과 ‘인권단체 협력사업’이 통합된 2005년 이래 2억 7,500만원으로 동결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0년에는 인권단체협력사업 지원액이 대폭 감액되어 1억 3천만원을 15개 기관에 지원하도록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도에도 동일한 수준에서 인권단체협력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6) 국민권익위원회

-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4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연간 1억 2,000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본 백서 작업에 포함된 정부부처 중 가장 작은 규모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부처이다. 이 부처의 2010년 전체 결산액이 608억여원 정도라는 것을 고려할 때 전체 예산의 0.2% 정도를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지원받은 단체는 한국청소년회의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 ‘반부패를 위한 국민운동’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평균 3천만원 정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7) 국토해양부

- 2010년, 국토해양부에서는 13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연간 37억 9천여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정보공개요구에 응하였다. 이 부처의 2010년 결산액은 41조 134 억원 정도(일반회계계정 예산과 도로, 철도, 항만, 국가균형발전 등을 처리하는 특별회계계정 예산을 포함)라고 할 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정도로 미미한 비중을 차지한다.
- 2010년, 국토해양부에서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공공안전-법과법률서비스)에 7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해상왕장보고 재조명 평가사업을 위한 4개 과제에 12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다. 나머지 예산은 한국극지연구진흥회, 대한건축학회,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한국조경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등 다양한 전문 직업단체나 연구단체에 지원이 되거나, 한국 해양소년단연맹 등 해양문화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 국토해양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액은 2010년도에 접어들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해상왕장보고 재조명 평가사업이 추가되었으며, 지난 번 정보공개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다양한 전문 직업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이 금번에는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8) 금융위원회

- 2010년, 금융위원회는 2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연간 4억 7천여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부처의 2010년 전체 결산액이 3조 1,464억여원 정도라는 것을 고려할 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를 통해 지원받은 단체는 보험연수원, 금융연수원이며 사업의 목적은 실무금융전문인력양성으로 되어 있다.

9) 기획재정부

- 2010년, 기획재정부는 3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연간 107억 8,900여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부처의 외청을 제외한 2010년 전체 결산액이 13조 2,168억여원 정도라는 것을 고려할 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0.1%에 미치지 못한다.
- 기획재정부를 통해 지원받은 단체는 한국경제교육협회, 국제금융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며 사업의 목적은 경제교육, 국제 금융정보 분석, 물가조사 등으로 나타났다. 2011년초 기획재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을 살펴본 결과, 기획재정부는 이들 3개의 단체들에 총 100억원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의 지원규모가 예상된다.

10) 농림수산식품부

-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하면 5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11개의 사업에 대하여 연간 9억 5천만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의 결산액인 17조 6,533억원에 비하자면 상당히 미미한 액수라 할 수 있다. 이는 전년도 정보공개청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작년 백서작성에서는 111개의 단체에 총 1,143억원 이상의 지원을 하였다는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줄어든 숫자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응답 시 담당자가 동일한 기준에서 자료를 취합하였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한국여성농업인 중앙협의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신지식농업인회, 한국수산업경영인증중앙연합회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건당 평균 8,681만원 정도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정보공개에 포함되었던 농수산업체 소득보전을 위한 다양한 물가조절, 수급조절사업지원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원액이 급감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 지원 프로그램 분류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영역은 농림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수산업경영인 지원, 농림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도농교류, 도농연대교육 등 체험식 선농(先農)행사도 포함될 수 있다.

- 이번 정보공개청구에서 제출된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인단체와 연구기관에 대한 농업인교육공모사업(25억원), 농어업인단체를 대상으로 한 도농교류협력사업(16억원), 그 밖에 각종 농어업 경영인에 대한 지원사업(6억2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확정하여 연속성 있는 사업의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고하였으며, 그 외에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부서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11)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의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16억 9천만원 정도로 3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2010년에 농촌진흥청은 7,446억여원 정도의 세출 결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체 예산의 0.2% 정도의 예산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 농촌진흥청에서는 관련법에 의하여 한국4-H본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생활개선중앙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 농촌진흥청의 민간단체 지원액은 그 자체가 크지 않으므로, 앞에서 제시한 세 단체에 대한 개별 지원액에 따라 변동이 심하게 나타난다.

12) 문화재청

- 문화재청의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174억 4천만원 정도로 28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2010년 현재 문화재청의 결산액이 5,020억원 정도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예산의 3.5% 정도의 예산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는 부처라 할 수 있다.

- 문화재청은 주로 문화/역사단체에 대한 지원 빈도가 높는데 전체 28건의 지원 중에 12건의 지원이 문화와 예술분야의 단체에 지원이 되었다. 지원액도 136 억원 정도로 전체 지원액 대비 77.9%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한국 문화재보호재단'에 대한 지원금이 120억 9천여만원 정도로 전체 정부 지원액의 70%정도나 집중되었다.
- 문화재청에 의해 지원되는 사업으로는 '문화재지킴이 활동공모사업'(단체당 3백만원~1천만원지원), '문화유산방문교육 지원사업'(1천만원~3천4백만원지원) 등이며, 그 밖에 고유 전통문화보존을 위한 단체, 천연기념물 보호 단체, 국제문화재 등록 혹은 외국에 반출된 문화재 환수 등을 위한 국제행동단체들이 지원을 받았다.
- 문화재청에서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대한 지원 이외에 '한국문화재조사 연구 기관협회', '불교문화재연구소'가 각각 20억원, 11억원의 고액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외국에 반출된 문화재환수 등을 위한 국제행동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13억 6,900만원(총13건)이 이루어졌으며, 문화재 안내를 위한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안내 등에 대한 지원이 5천만원 이루어졌다.
- 2011년도에는 총 180억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13)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12억 6,359만원 정도로 13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결산액이 1조 9,189억원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주로 문화예술단체에 대해 지원하는 빈도가 높는데 전체 13 건의 지원 중에 9건의 지원이 문화와 예술분야의 목적을 지니고 지원이 되었다. 지원액은 9억원 내외로 전체 지원액 대비 71.7%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보공개에서는 문화역사마을 건립 등 사업에 대한 지원

현황 등이 취합되지 않아 지원건수가 13개로 줄게 되면서 지원총액도 86.8% 수준으로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자료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14)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하는 규모는 34억 4,857만원으로 48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산액이 3,326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해볼 때에, 전체 예산의 1% 정도의 예산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활용되었다.
-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상대적으로 시민 및 변호단체에 대해 지원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미디어교육 지원, 정보 소외자(장애인, 난청노인 등)에 대한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활용되었다. 하지만 총액으로 보면 21억 6,236억원으로 전체지원액의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평균지원액은 1,432만원 정도로 소액이었다.
- 빈도로 보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액이 많은 편인데, 주로 방송분야에 대한 지원이 많은 특색이 있다. 전체 48건에 대한 지원 중에서 14건이 방송분야단체에 대한 지원이었고, 전체 예산액의 7.9%로 소액이 활용되었다. 2011년도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화면해설방송수신기보급, 미디어교육, 시청자권익증진활동, 난청용노인용수신기보급, 디지털유료방송콘텐츠 유통시스템 구축(한국케이블TV 방송협회), 장애인기획사업 지원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 2009년도와 비교하였을 때, 2010년도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의 수준은 400억원 가까이 차이를 보인다. 이는 자료취합을 하는 담당자들의 인식의 차이에 의해 지난 정보공개에 포함된 단체가 상당부분 누락된 결과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9년 백서에 포함된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아리랑국제방송’ 지원 금액이 247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내역이 누락된 것도 이러한 차이를 상당부분 설명한다.

15) 법무부

- 법무부의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5억 8,200만원으로 소년보호협회의 청소년자립생활관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법무부의 주요 목적 중 범법자의 교정·교화에만 국한하여 지원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10년 법무부 결산액이 2조 3,862억원인 것을 놓고 보았을 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0.1%미만으로 매우 미약하다.
- 법무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도에 지원금을 17.8% 증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지원금을 1억원 증액시켜 지급시켜 점진적 인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의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343억 2,300만원 정도로 62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부처 중에 3번째로 큰 지원규모를 차지한다. 2010년 보건복지부의 세출결산액 20조 1,449억여원을 고려한다면, 전체 예산의 0.2% 정도의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활용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주로 사회서비스 단체(27건), 시민 및 변호단체(12건)에 대한 지원 빈도가 높았다. 사회서비스 단체는 장애인복지단체, 노인복지단체 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서비스 단체를 포괄하며, 시민 및 변호단체는 노인 혹은 장애인 당사자 연합회, 각종 복지권을 위한 시민단체를 말한다.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액을 본다면, 보건복지부 전체 지원액의 68.3%인 234억원 가량이 연구분야에 지원이 되었다.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대한 지원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그 밖에 53억원 가량을 27개의 사회서비스 단체에 나누어 지원하고 있다.
- 2010년도에는 2009년도에 비해 상당 수준에서의 감액이 이루어진 것으로

정보공개가 이루어졌지만, 이는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정보 취합과정에서 응답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하였는데, 2009년 정보공개 시 포함되었던 단체가 2010년도에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발생했기 때문이다. 적십자병원, 장애인개발원 등에 대한 정보가 누락되어 발생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17) 산림청

- 산림청의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199억 4천만원으로 산림조합중앙회, 지역산림조합, 임업후계자협회, 산림경영인협회 등 산림업 관련한 직업단체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산림조합중앙회에는 연간 150억원이 넘는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전체 지원예산의 75%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2010년도 산림청 결산액이 2조 806억원 정도라는 것을 고려해보면 전체 예산대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의 비율은 1%가 조금 못되는 정도로 나타났다.
- 참고로 「2009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백서」작업을 위한 자료취합시에는 그린레인지(한그루녹색회)에 대한 지원내역만 포함이 되어 산림청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금번에 산림업 관련 직업단체들이 포함됨으로써 보다 정확한 정부 지원 현황이 추계되었다.

18) 식품의약품안전청

-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19억 3,500만원으로, 한국미약퇴치운동본부에 13억원(전체지원액의 67%내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와 의료기기정부기술지원센터에 6억 3,500만원(32.8%)가 지원되었다. 이번 정보공개에는 전년도 지원내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식품안전정보센터가 제외되어 있다. 실제로 식품안전정보센터는 조직이 별도의 이사회를 갖는 민간운영의 외형을 지니고 있지만 식품안전정보를 국가를 대신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대리하여 수행하면서 100% 정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보공개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라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총 21억 5,500만원의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는 전년대비 11%이상 증액된 금액이다.

19)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의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30억 4,600만원 정도로 149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원단체수로만 보면 행정안전부 다음으로 많은데, 지원액수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액수 총액의 1%도 되지 않는다. 즉, 개별 기관에 지원되는 금액은 평균 2,000만원 내외로 작은 편이다. 2010년 여성가족부 결산액이 1,546억원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예산의 2% 정도의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활용되었다.
- 여성가족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여성단체 공동 협력 사업」이며, 이에 대한 지출이 30억원 내외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은 단체의 유형을 살펴보면 ‘시민 및 변호단체’에 대한 지원이 11억 6,800만원(55건), ‘사회서비스 단체’에 대한 지원이 8억 1,400만원(48건)으로 가장 높았다. 사업목적별로 살펴보자면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지원이 11억 6,800만원(69건)으로 가장 많았다.
- 2011년도에는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의 예산이 22억원으로 상당한 금액이 감액되었고, 지원단체수도 109개로 줄어들었다. 전반적으로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단체당 2천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20) 외교통상부

- 2010년, 외교통상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액수는 92억 8,100만원 내외로

외교통상부 2010년 세출 결산액이 1조 6,386억원 정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원액의 비중은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지원건수로 살펴보면 총 93건으로 정부부처 가운데 4번째로 크지만, 지원액수로는 중앙정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총액의 2.9%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 외교통상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62억 8천만원이었다. 이 지원금을 30개국에서 활동하는 55단체의 79개사업에 나누어 지원하고 있었다. 2010년 외교통상부 결산액 중 개도국 원조지출로 활용된 금액이 5,177억원을 약간 상회한다고 보았을 때, 이 중 1.2%만이 한국국제협력단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9억 7,700만원의 지원금으로 한아랍소사이어티를 포함한 14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외교통상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는 2011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도 9월에 공고된 한국국제협력단의 민간단체(NGO) 지원사업공고에 따르면, (1)정부의 매칭비율을 60%에서 70%로 확대했으며, (2) 최대지원액을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3)사업지원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면서 다년도 지원사업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2) 중소기업청

-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682억 2천여만원으로 6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부처 중에 교육과학기술부 다음으로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규모가 큰 부처에 속한다. 2010년 중소기업청의 세출 결산액이 1조 9,238 억원내외로 결산되었다고 할 때, 전체 지출의 3.5% 정도의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활용되었다.
-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한다고 응답을 표한 단체는 소상공인진흥원, 벤처기업협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여성벤처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이업종중앙회(異業種)중앙회로 6개이다.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소상공인진흥원이 565억 8,2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번 조사대상이 된 단체 중에 가장 큰 규모이다. 이번 조사에서 전체 중소기업청의 민간단체 지원금의 83%나 차지하는 규모이다.

- 중소기업청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2005년 118.8% 증액된 이래 정체되어 왔었다. 그러나 2009년 한국창업보육협회가 한국창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전체 정부 지원액이 1,344.7% 증액되었다. 하지만 2010년 중소기업청의 정보 공개자료에서 창업진흥원이 제외되면서 지원금액이 급감하였다. 하지만 창업진흥원도 법률에 따라 정부의 투자나 출자, 정부의 재정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의 경영공시에 의하면 실제로는 2010년 정부보조금 지원액이 1,002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금액을 포함시키면 중소기업청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상당한 수준이라 볼 수 있다.

22) 지식경제부

- 지식경제부에서 통보한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7억원으로 에너지 시민 연대에 에너지 절약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시민연대에 대한 지원액은 2008년 잠깐 상승했다가 2009년부터 급감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지식경제부의 2010년 결산액이 15조 4,230억원이나 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고 볼 수 있다.
- 이 부처는 업무 특성상 산업기술연구 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공기업, 영리단체에 지원해주는 경우가 더 많으며, 공공기관을 비영리민간단체로 볼 경우에 그 지원 비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23) 통일부

- 통일부의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6억 8천만원 정도로 3개의 비영리 민간 단체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정보를 공개하였다. 이들 세 단체는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이다. 2010년 통일부 지출 결산액이 5,131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통일부 살림의 0.1%정도만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 이번 통일부 정보공개에는 전년도 백서에는 포함되었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전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홈페이지(<http://www.dongposarang.com>) 공지사항을 확인해본 결과, 2010년도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은 여성의 사회적응지원, 고령자 지원, 쉼터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학교 및 직장 인식개선, 지방단체육성, 정주도우미, 기타 자유공모사업 주제로 공모를 실시하여 41개 단체(단체당 지원금 1,000만원 ~3,000만원 지급)를 선정한 바 있다.
- 2011년도부터는 통일부 지원민간단체의 수와 규모가 증가되었다. 통일부에서는 민족통일중앙협의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에 각각 5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에는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 밖에 1월중에 ‘민간통일운동 활동지원사업’ 공고를 통하여 25개 민간단체에 5억원을 지원하도록 확정하였다.

24) 특허청

- 특허청의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15억 1,700만원으로 한국여성발명협회에 지원하였다. 특허청의 2010년 세출 결산액이 3,353억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전체 예산의 0.5% 정도의 예산이 지원금으로 활용된 셈이다.

25) 행정안전부

-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국 민간협력과를 주무부서로 공익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통하여 매년 49억원의 재원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공모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0년에는 ①사회통합과 평화증진, ②사회복지 및 소외계층 인권성장, ③녹색성장과 자원절약, 환경보전, ④글로벌 시민의식 형성 및 성숙한 시민사회 구축, ⑤자원봉사, 기부문화 활성화, ⑥안전문화, 재해재난 극복, ⑦국제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공모를 받아 심사를 통해 지원하였다. 신청 자격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되어 있었다. 단일 공모지원사업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으나 행정안전부의 2010년 세출 결산액이 31조 8070억원이상인 것을 고려할 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비율은 매우 미미하다.

- 2010년 행정안전부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단체를 포괄하여 지원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체는 시민 및 변호단체이며, 그 다음으로 환경단체, 기타유형(북한관련 포함)단체, 국제적 행동 단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 및 훈련단체, 교육관련 단체, 경제사회지역개발 및 주택단체 등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다. 단체별 평균지원액은 3,100만원 내외로 나타났으며, 시민 및 변호단체가 전체 지원액의 31.2%를 지원받았다.
- 행정안전부의 2011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그 지원총액이 98억 7천만원으로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이는 전년도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 이 지원금을 220개 단체에 배분했는데 평균적으로 단체당 지원액이 1,300만원 이상 증가하였다.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예산이 증액된 점은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의 공모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과 대비를 이룬다.

26) 환경부

- 환경부의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119억 5,400원으로 10개의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다. 2010년 환경부의 세출결산액이 7조 5,153억원인 것을 고려한다면 전체 결산액 대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액수는 0.2%로 적은 수준이다.
-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는 환경관련단체 9개, 동물관련단체 1개이다. 환경 관련단체 9곳이 평균 4억원 내외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편차가 상당히 존재한다. 동물관련단체로서는 2008년 2월 설립된 한국야생 동식물보호관리협회 1곳에 83억원 이상이 지원되고 있었다.

- 환경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은 2008년도 20.1% 급증한 경우를 빼고는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0년에 접어들면서 전체 지원액의 규모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5.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절차와 기준 검토

1)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절차

-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절차는 대개 '사업시행계획공고 → 사업설명회 개최 → 사업계획서 접수 → 심사 및 선정 → 1차 보조금 교부 → 중간평가 및 2차 보조금 교부 → 사업계획서 제출 → 종합평가 및 사업비 정산'의 순서로 이루어진다.
-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을 확인단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단계, 사업수행 단계, 평가 및 보고 단계로 나누어 간단히 정리하여 백서에 제시하였다.

2)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심사 기준 검토

-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대상이 되는 부처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을 확인하여, 2010년 각 부처에서 공고한 공모사업 중에 비영리민간단체가 공모, 신청할 만한 사업의 리스트를 정리하였다. 여기서 학술 연구적 성격이 강한 사업을 제외한 후에 200개의 사업 공고 리스트를 추렸다. 이들 사업공고를 통해 집행되는 정부예산은 최소한 2,322억원이상으로 나타났다.
- 정부지원 공모사업 명부를 검토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이들 사업에 신청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심사기준을 정리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을 계수(計數)하였다. 예를 들어 능력, 전문성, 인력, 공신력, 예산, 적절성, 타당성, 논리, 경험 등의 키워드 59개의 키워드가 확인되었고 이들 키워드의 수를 세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유사한 개념을 일반화하여 도출된 비영리민간단체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1)적정성/타당성 (2)능력/전문성 (3)공신력 (4)효과/파급성 (5)예산/효율 (6)운영/실현가능성 (7)책임감/의지 (8)독창성 (9)평가계획 (10)홍보 (11)협력 (12)욕구대응 (13)물리적 위치.
- 마지막으로 정부 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공모사항 중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과 사업구성, 예산을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부록

- 부록에서는 백서 작성 시 비영리민간단체 분류를 위한 기준으로서 '국제비영리 조직분류방식(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ICNPO)을 적용할 때의 난점과 백서 이해에 주의할 점을 함께 제시하였다.
- 아울러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정부지원 공모사업」의 리스트를 제시하여 정부 공모에 관심이 있는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 제시된 상당수의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정례화 된 공모사업이다.
- 끝으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을 추가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제도에 대하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I.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제도

1. 비영리 조직(NPO)의 개념

비영리 조직은 그 형태와 모습이 다양하기에 쉽게 규정하기 힘들다. 한글 합성어로서 ‘비영리’라는 말은 영리를 그 목적으로 추구하지 않는다는 말을 의미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은 소유주나 이해당사자의 이윤추구가 주된 목적인 기업과 구별되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조직’이라는 말은 개인이 아니라 특정 목적을 중심으로 모인 결사(結社)라는 것을 의미할 것이다. 이를 종합적으로 정리해보자면 비영리조직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특정 목적을 중심으로 모여 활동하는 결사’라고 정리해볼 수 있다. UN(2003)에서는 비영리 조직의 개념 정의를 할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 1) 운영으로부터 얻는 이익을 구성원의 이해를 위하여 배분하지 못하게 되어 있고, 운영 이익은 영리 기업과 구분되는 특성으로 목적 기능에 활용된다.
- 2) 그들이 생산하는 사적 제품이 무엇이든 간에, 공공재의 생산에 관여한다.
- 3) 수입구조는 일반적으로 상당한 양의 자발적 시간과 자금을 포함한다.
- 4) 유급 직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
- 5) 이윤 분배의 금지로 인해 자기 자본(equity capital)¹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

1 자기 자본이란, 순수한 조직의 자본으로 총자본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을 의미한다. 비영리조직은 이윤분배의 금지 원칙에 따라 자기 자본을 구성원이 돌려받는 것을 금한다.

- 6) 많은 국가에서 특별 세제 혜택의 자격을 받는다.
- 7) 지배, 요건의 보고, 정치적 참여를 포함한 특별한 법적 규정이 있다.
- 8) 공공재 제공에 관여하지만 지배정부가 갖는 힘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Salamon(1999)이 비영리조직이 지니는 중요한 특징으로 제시한 6가지 기준에 따라 비영리조직에 관해 정리해보고자 한다.

1) 조직(Organizations)

비영리 조직은 제도화가 되어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조직은 ‘제도적 실재(institutional reality)’를 지니게 된다. 여기서 ‘제도적 실재’란 적정 정도의 내적 조직구조와 더불어, 목적, 구조, 활동의 지속성, 의미가 있는 조직 경계, 조직의 정관 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이더라도 임시적이고 비공식적인 모임은 비영리 조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2) 민간부문(Private)

비영리 조직은 제도적으로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다. 비영리 조직은 정부 기구의 일부도 아니며, 정부 관료에 의해 운영되는 기관에 의해서도 지배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사실이 정부로부터 지원이나 규제, 권한의 위임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비영리 조직은 정부로부터 사업비를 배분받을 수도 있으며,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따라 관련 법령에 의해 운영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물론 정부의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정부에서 정한 일련의 규칙에 대하여 규제를 더욱 강하게 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 비영리 조직은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의 권한을 위임을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자면, 어떤 무역협회가 전문성과 대표성을 지녔다면 정부를 대신하여 산업표준을 설정하고 이를 강제하는 권한을 위임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3) 이익무분배(Non-profit distributing)

비영리 조직은 소유주, 조직원, 이사, 설립자, 기부자들에게 이익을 돌려주지 않는다. 이는 사회사(私會社)가 소유주, 주주에게 이윤을 배당하는 것과 다르기에 시장의 일반적

원칙과 구별되는 특성이다. 비영리 조직의 특성상 수익을 축적하기도 하지만, 본래의 목적은 조직의 기본 목적과 부합되는 분야에 대한 재투자여야만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Hansmann(1980)은 비영리 조직의 이러한 이윤배분을 억제하는 측면이 가장 특징적이고 정확한 정의라고 언급하였다.

4) 자치성(Self-governing)

비영리 조직은 자신의 활동을 스스로 통제하고 조절한다. 즉 비영리 조직은 자치를 위해 자체적 의사결정절차(예: 이사회)를 가지고 있으며, 외부 조직에 의해 통제받지 않는다.

5) 자발성(Voluntary)

비영리 조직은 조직의 활동과 운영이 구성원들의 참여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 이사회는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며, 직원들도 역시 수많은 자원봉사자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6) 공익성(Public Sector)

비영리 조직은 공공의 목적에 이바지하며 공익에 기여한다. 이것은 조직의 주된 목적이 이윤을 생성하기 위한 목적이 아님을 의미한다.

이러한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종합하여 본다면, 비영리조직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윤이 발생해도 조직원들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공공의 목적을 지니고 있는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민간 조직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그림 1-1〉 Salamon이 정리한 비영리조직의 정의



2. 비영리조직과 유사 개념들

김준기(2006)은 비영리조직과 유사한 개념들로 (법률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시민단체, 시민사회단체, 시민운동단체, 관련단체를 제시하고 있다. 본 책에서는 이러한 분류를 수용하면서 이와 관련된 최근의 추이를 정리하고, 이러한 개념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를 종합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1) (법률에 의한)비영리민간단체(Non-Profit Organization)

한국에서는 2000년에 발효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정리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는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여야 하며,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않으며, (3)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운영되지 않으며, (4) 공익추구 활동에 1년 이상 참여하면서, 회원이 적어도 상시 100인 이상이어야 하며, (5)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면 관련 정부부처나 지방정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살펴보면 앞에서 정의한 비영리조직보다 협의의 개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정의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는 학술 또는 전문직 연합회, 협동조합, 사교클럽이나 노동조합, 종교단체, 정치적 결사조직 등은 포함이 되지 않는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취지 자체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대상을 좁혀서 이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이 법규에 의하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공익성, 이익무분배, 조직성이라는 특성을 강조한다고 할 수 있다.

2) 비영리법인(Incorporated Non-Profit Organiz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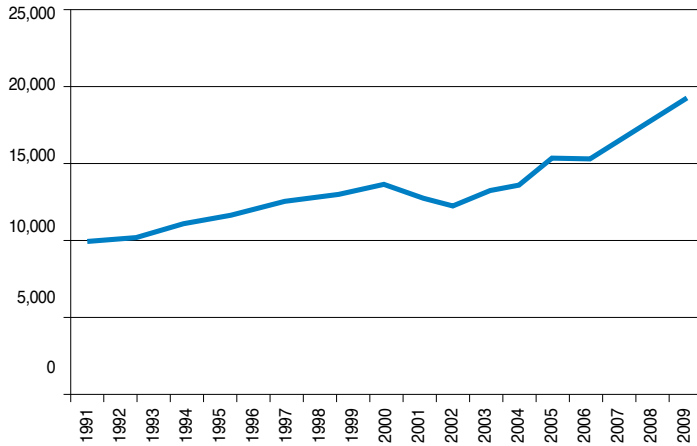
비영리 법인은 「민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각종 특별법에 따라

주무부서에 등록된 법인자격을 획득한 비영리단체를 의미한다. 한편 세제상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기본적으로 관련 근거법에 의해 설립되어야 하나 「국세기본법」 제13조의 적용을 받는 미등록 비영리단체의 경우 또한 비영리법인으로 인정받아 조세적용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외조항이 존재한다.² 국세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주는 사립학교, 대학교, 대규모 병원뿐만 아니라 각종 문화 및 여가 조직, 연구소, 종교단체, 전문직업인 및 학술단체, 재단이나 협회로서 설립된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조직 등을 들 수 있다. 이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규정보다 대상에 있어서 포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세제혜택을 얻어, 고유목적에 위해 출연 받은 재산은 「상속세법」, 「법인세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의무를 면제받는다. 하지만 「법인세법」이 정한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의무를 지게 된다.

〈표 1-1〉 국내 비영리법인현황과 변화 (1991-2009년)

연도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비영리법인수	9,716	9,936	10,326	11,050	11,487	11,959	12,575
연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비영리법인수	12,817	13,295	13,532	12,791	12,274	13,132	13,685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비영리법인수	15,406	15,448	16,669	18,023	19,203		

2 이 경우에도,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어야 하고,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관리해야 하며,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해야 한다. 이는 조직성, 이익부분배성, 자치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출처: 국세통계연보)

국내 비영리법인의 현황을 살펴보면 2009년 국세청에 신고 된 비영리법인의 수가 19,203개로 나타나 있다. 1991년도에 비해 97.6%나 증가한 수치인데, 이는 비영리법인의 수가 매년 3.8%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고 가정하였을 때 도달할 수 있는 수치라 할 수 있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2001-2002년도에 정체상태에 있었던 비영리법인의 수가 2003년부터 상대적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3) 공익법인(Public Interest Corporation)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해 정의된 개념이다. 공익법인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상속세법」에서는 공익법인이 조세혜택과 관련하여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되어 “해당 관청으로부터 허가에 의해 설립된 공익을 추구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익법인은 비영리법인의 하위범주로 해석할 수 있다. 이 기준에 따라 (1)교육관련법이나 「사립학교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종교단체나 사립학교, (2)「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서비스 조직, (3)「의료법」 및 「정신보건법」에 근거를 둔 병원, (4)「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단체, (5)문화예술조직, (6)공중보건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조직, (7)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단체, (8)기타 공익법인으로 지정된 단체를 포함하게 된다. 이들

단체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인세, 재산세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감면혜택을 받게 된다. 물론 이와 관련하여 회계서류나 사업계획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할 의무를 지니게 된다. 이는 공익법인이 공공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역할을 보완하기 때문이며, 일부 기관의 경우 국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2009년 현재 국세청에서 분류한 공익법인은 그 수가 1991년도에 비해 7.6배나 증가하였다. 국내 공익법인은 매년 점진적 증가하고 있는 것이 전반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면밀히 들여다보면, 2000~2001년, 2004~2005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국세청에서 세적(稅籍) 정리 작업을 통하여 공익법인으로 분류한 조직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표 1-2〉 국내 공익법인 현황 (1991-2009년)

종류 연도	계	활동 구분						
		교육사업	학술장학자선	사회복지	의료목적	종교보급	예술문화	기타
1991	3,790	1,070	785	641	125	180		87
1992	3,920	1,070	854	653	138	189		103
1993	3,995	1,077	849	656	146	197		129
1994	4,230	1,058	953	703	176	187		170
1995	4,461	1,055	1046	768	197	205		200
1996	4,624	1,079	1114	808	237	215		233
1997	5,269	1,101	1157	907	261	195		291
1998	5,221	1,081	1204	872	276	189		290
1999	5,486	1,096	1200	906	264	220		345
2000	5,773	978	1160	792	227	207		432
2001	11,063	1,727	1,826	1,972	382	3,810	351	995
2002	10,987	1,531	1,862	1,962	380	3,890	365	997
2003	11,177	1,512	1,896	1,970	377	3,881	367	1,174
2004	17,812	1,685	2,333	2,129	457	8,561	391	2,256
2005	26,517	1,749	2,732	2,505	452	16,414	451	2,214
2006	27,500	1,858	2,837	2,617	478	17,135	493	2,082
2007	27,793	1,751	2,937	2,692	495	17,591	561	1,766
2008	27,811	1,745	2,960	2,693	572	17,586	572	1,752
2009	28,905	1,749	3,163	2,830	610	17,958	673	1,922

(출처: 국세통계연보)

* 1991~2000년까지의 통계의 경우 활동구분 합계와 공익법인의 수와 불일치하는데, 이는 통계작성 시 출연재산이 없는 공익법인의 경우 활동구분을 해 놓지 않았기 때문임.

* 1991~2000년까지의 통계의 경우 활동구분상 문화 활동을 하는 공익법인에 대한 구분이 없었음.

4) 시민단체 (Civic Organization)

한국에서 시민단체란 주로 비정부적 활동에 참여하는 자발적 조직을 이야기한다. 그 성격상 정부의 역할을 대신하기보다는 시민사회의 의사를 대변하는 목소리(voice)로서의 조직 성격이 강하다. 시민단체는 시민사회단체, 문화예술단체, 종교계 사회단체, 기타 사회서비스 단체를 의미하며, 이 경우 국가 의존도가 높은 교육재단, 의료재단 등은 제외 된다.

5)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

시민사회단체는 복합적인 의미로 설명되지만, 일반적으로 주로 공익을 추구하는 대변적 비정부조직을 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민주화단체, 소비자·생활단체, 여성단체, 청년단체, 법·행정·정치개혁관련 단체, 인권단체, 평화·통일·민족단체, 환경단체, 지역사회단체, 빈민단체, 노동·농어민단체, 국제구호단체 등의 가치 및 신념에 근거하여 공익적 이슈를 다루는 조직을 이야기한다(김준기, 2006). 김준기는 이러한 시민사회단체를 운동방식의 급진성 정도에 따라 연성(soft) 시민사회단체, 경성(hard) 시민사회단체로 구분하여 정리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를 광의적으로 해석하는 입장도 있다. 세계은행에서는 ‘국가와 가족 사이에 있는 모든 기관들과 결사체들이 시민사회단체에 해당된다’고 지적한다(주성수, 2001). 보다 구체적으로는 NGO단체뿐만 아니라 노동조합과 여성단체 등의 회원단체, 재단 및 기업협회, 전문협회, 미디어, 두뇌집단, 연구 집단 및 훈련기관, 신용조합과 상호회, 협동조합, 풀뿌리조직과 지역기반조직, 교회와 모스크, 기도단체 및 종교기관, 대학, 스포츠단체, 문화예술단체, 합창단과 오케스트라 등이 포함된다고 본다. 이는 뒤에 논의하게 될 ‘UN의 국제 NPO 분류기준’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과 유사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다(UN, 2001).

6) 시민운동단체(Civil Movement Organization)

시민운동단체는 1980년대 중반 이후부터 1990년대에 경제, 정치, 사회적 정의를 실현할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로, 주로 대변적 영역에서 활동하는 ‘행동지향적(activistic)’ 단체를 지칭한다고 한다. 이들 단체는 대개 현상유지에 대한 도전을 강조하고, 급진적 변화를 통해 사회경제 및 정치체계의 개혁을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성(hard)’ 사회단체로 분류되기도 한다.

7) 관변단체(Quasi-autonomou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관변단체는 국가와 긴밀하고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부에서 위임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주활동 영역으로 삼는 준공공적 조직(quasi-autonomous NGO)을 일컫는다고 할 수 있다. 이들 단체는 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정부에 의해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된다.

김준기(2006)는 관변단체가 정부에 유용한 정책도구를 제공함과 동시에 정부에서 위임한 사업의 추진에 있어 보다 호의적인 사회·정치적 환경을 창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된 예로 1988년 올림픽 이전에 질서의식이나 예의범절을 확립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다양한 단체의 활동을 들 수 있다.

3. 비영리조직의 생성 및 성장에 대한 이론

“비영리조직은 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학자가 다양한 의견을 내어 놓고 있다. 비영리 조직은 그 형태도 다양하고 이들의 생성과 성장은 한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뚜렷한 답을 내어 놓기 어렵다. 현재 한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영리조직의 생성과 성장에 대한 각론을 정리하여 제시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므로 비영리조직의 생성과 성장에 대한 일반적 논의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Smith와 Grønberg(2006)는 비영리조직의 생성과 성장에 대한 설명 모델을 3가지로 제시하였다.

- 1) 수요공급관점모델 : 이 모델은 정부와 비영리 조직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보충하면서 특정한 재화와 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킨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 관점에 대해서는 시장실패, 정부실패 논의를 통해서 설명할 것이다.
- 2) 시민사회/사회운동모델 : 이 모델은 어떻게 사회, 경제, 정치적 구조가 정부와 비영리조직 사이의 관계에서 복잡한ダイナ믹을 만들어 내는지에 주목한다. 이 모델은 뒷부분에서 다원주의, 시민참여, 자원활동(volunteer activities) 등과 같은 공급자 이론의 논의를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 3) 지배나 신제도주의 모델 : 이는 비영리조직을 비롯한 사회구조들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제도화되는 맥락에 대해 설명한다.

김준기(2006)는 그 논의를 수요적 요인, 공급적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수요적 요인을 강조하는 입장은 비영리조직이 시장이나 정부가 제공하기 힘든 서비스의 욕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하기 위해 생겨나서 발전해왔다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비영리조직이 사회적 욕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어떻게 변모해왔는지를 설명하고, 현재의 비영리조직의 모습이 이를 필요로 하는 사회의 반영이라는 설명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공급적 요인은 비영리조직의 활동을 구성하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조직을 만들고 운영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이는 행위자로서의 인간의 의지와 능력이 비영리조직을 운영하게 만들어 낸 원동력이라는 입장이다. 신제도주의적 입장은 비영리부문의 역할과 기능은 사회구조와 제도 속에 역사적 발전과정을 통하여 선택, 모방, 확산된 제도적 결과물이라는 입장이다. 종합하자면 비영리 조직은 ‘필요에 대한 반응’이며 ‘선한 의지의 발현’이며, ‘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선택, 모방, 확산된 제도’라 할 수 있다. 본 책에서는 Salamon(1999)이 비영리부문의 존재의 이유에 대한 논의를 바를 기본틀로 정리하고자 한다. Salamon은 수요-공급관점, 시민사회-운동의 관점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1) 계약실패이론-시장실패

계약실패이론은 비영리조직이 시장기구의 원천적 한계에서 비롯되었다는 입장을 취한다. 전통적으로 시장에서의 소비자의 선택은 수요와 공급의 함수의 역학에 따라

결정된 가격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원리의 바탕에는 '소비자는 관련된 정보를 모두 알고 있고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시장경제의 원리는 수요에 따라 그것을 생산하는 공급자가 있게 되고,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의 계약과 거래에 의하여 충분한 양의 재화와 서비스가 공급이 되어 시장 참여자 모두가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시장은 도로, 국방, 치안과 같은 공공적 소비재를 취급하는 데 문제점을 드러내는데, 이를 시장실패라 부른다. 비배타성과 비경합성의 특징을 지니는 공공재는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생산되지 못한다. Kollock(1998)은 '공공재 딜레마'를 소개하면서 공공재는 비배타성으로 인해 서비스 생산자가 재화의 생산과 유지에 기여하지 않고 즐기고자 하는 유혹이 생겨난다고 하였다. 이러한 유혹으로 인해 적극적으로는 탐욕에 기반한 선택을 하려는 경향이 생기거나, 소극적으로는 최소한 잘 속는 풋내기(sucker)가 되지 않으려는 행동을 하게 된다. 그 결과 개인적으로는 최선의 효용을 가져오는 무임승차(free-riding)를 하게 되고, 이러한 현상이 사회 전반에 나타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는 공공재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 문제를 낳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사회 전체의 효용이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공공재는 국가의 개입이 없이 시장자율로 생산을 맡기게 되면 공급자가 무임승차에 대한 우려로 공급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원하는 양보다 훨씬 적게 생산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딜레마로 '공공의 딜레마'를 들 수 있다. 이 개념은 1968년 Science에 게재된 Hardin의 공유지 연구에 의해 분명해졌다. Hardin은 일군의 목축업자에게 공유지를 주고 자신의 소를 자유롭게 먹이도록 하였다. 각 목축업자의 이해는 많은 소를 그 곳에 데려다 놓는 것이었고, 그렇게 하면 공공에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목축업자가 소를 추가하면서 생기는 모든 혜택을 받게 되면 공공의 피해는 모든 집단이 나누어 갖는 것이다. 만약 모든 목축업자가 개별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면,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공유지는 황폐화되고 모든 이가 고통을 겪을 것이다. 이에 대해 Hardin은 "목동들은 제한된 목초지에 가축을 무제한으로 증대시키지 않을 수 없는 시스템에 갇혀 있다. 공유지는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각자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여 모두가 파국으로 달린다"고 말하고 있다(Ostrom, 1990에서

재인용).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비시장기구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Olson의 유명한 인용문구, “구성원의 수가 아주 적거나, 구성원들에게 공동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강제할 장치가 없는 한, 합리적으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은 공익 혹은 집단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Olson, 1965)”는 표현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비시장기구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정부’일 수 있다. 정부는 세금을 부담하여 공공재의 부족을 보충하고, 각종 규제 등을 통하여 공공의 자산을 보호한다. 이러한 공공재의 공급은 정부가 필요한 중요한 이유가 된다. 하지만 정부가 모든 국민이 원하는 공공재를 생산하고 공공의 자원을 보호하지는 못한다. 국민들의 이해는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상충될 수밖에 없어서 합의에 이르기 힘들고, 재원도 부족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장과 정부도 채우지 못했던 사회의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활동을 비영리조직이 하게 되었고, 사회에 필요한 재화를 공급하거나,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2) 공공재이론-정부실패

정부가 ‘시장의 실패’를 바로잡지 못한다는 점이 바로 ‘정부의 실패’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대다수 성원의 동의를 통해 정책이 집행된다. 그러한 상황에서는 소수의 정당한 요구가 무시될 수 있다. 소수의 정당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서비스와 재화를 공급하라는 요구를 하면서 비영리조직이 생성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사회에서도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발생, 그 동안 간과했었던 소수자의 권익 옹호를 위한 다양한 목소리를 낸 상황도 ‘정부실패’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그 밖에 비영리 조직을 사람들이 선호하는 이유에 대해 Salamon(1999)은 정부 운영상의 번거로움과 관성, 관료적 성격에서 원인을 찾기도 하였다. 정부를 통해서 일을 처리할 경우 세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복잡한 절차들이 있어 효율적이지 않고, 정부의 관성에 대한 염증으로 인해 사람들이 비정부적 메커니즘, 즉 비영리 조직을 선호하게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비영리 조직은 많은 이들의 합의를 도출하기 힘들거나 소수의 정당한 요구에 반응하여 신속하게 대응해야 하는 영역에서 정부를 대신하여 공공서비스를 공급한다. 정부는 이러한 공익적 사업을 하는 단체에 직접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간접적으로 세제혜택을 주는 것 외에 행정자료를 공유하거나, 우편요금을 경감시켜주는 등의 다양한 협조와 지원 방법을 취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정부는 정부 조직의 규모를 증가시키지 않으면서도 다양한 국민의 욕구에 반응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상호의존적 협력관계를 강조하면서 비영리 조직의 존재와 성장을 설명하는 입장이 상호의존이론이다.

3) 다양한 공익적 관심을 지닌 이들의 참여: 다원주의와 자유

비영리 조직은 서비스 효율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를 증진하는 역할로 설명될 수 있다.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각 개인의 독창성과 노력을 독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영리 조직도 '공익'을 위하여 개인의 독창성과 노력을 요구한다. 이러한 '행위자'로서 조직과 조직구성원을 강조하는 방식의 논의는 '공급자 이론'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시장실패', '정부실패'를 중심으로 한 이전의 논의와 구별된다. 다시 말해, 다양한 행위자에 대해 주목하는 이러한 관점은 비영리기관의 필요성만으로 이들 기관의 출현을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보다 중요한 것은 비영리단체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존재하는가 하는 공급의 문제일 수 있다. 사람들은 종교적 혹은 도덕적 확신, 이데올로기적 관심, 종교적 대의에 의해 지지자를 얻기 위한 욕망, 기존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정의감, 전문가적 관심, 창조적 발상을 위한 갈망, 기타 수많은 고려를 하면서 '공익'에 기여하고자 동기화될 수 있다. 위와 같은 동기를 가진 사람이 많은 영역에 많은 비영리 단체가 생기기 쉽다는 것이다.

4) 동일한 공익적 동기를 지닌 사람들의 결속과 단결

공익적 동기를 지닌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비영리 조직의 존재를 설명할 수는 없다. 이들이 함께 모이고 같은 목적을 위해 움직이고자 하는 필요에 공감해야 조직체가

생겨난다. 비영리 조직은 이러한 결속과 단결의 필요를 느끼는 사람들의 의지의 반영으로 생성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속과 단결은 변화를 주도하는 힘을 만들어 낼 수 있다. 비영리 조직의 생성은 그러한 구심점의 생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4. 정부와 비영리 조직과의 관계

한국에서 정부와 비영리 조직(NPO)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다룬 연구보다 정부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비정부조직(NGO)과의 관계를 유형화하는 다양한 논의들이 있다(박상필, 1999, 신광영, 1999, 권해수, 1999, 김준기, 2000, 신희권 1999, 오재일, 2000). 이러한 논의를 통해 해당 학자가 전제하고 있는 이론적 근거와 연구방법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도출되었다.

〈표 1-3〉 정부와 NGO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학자	분류기준	유형
박상필(1999)	NGO의 재정과 활동의 자율성	종속형, 협력형, 자율형, 권위주의억압형, 민주적포섭형
신광영(1999)	정부의 태도와 NGO의 조직유형	포섭적관계, 갈등적관계, 협조적관계, 지배적관계
권해수(1999)	목적과 수단의 일치여부	자율관계, 관용관계, 갈등관계, 억압관계
김준기(2000)	자원의 대체가능성과 중요성	상호의존관계, 일방적 의존관계, 상호독립적 의존관계
신희권(1999)	자금조달과 통제, 의사소통과 접촉	통합된 의존, 분리된 의존, 통합된 자율, 분리된 자율
오재일(2000)	정부의 NGO에 대한 인식, NGO의 자주성	포섭적/무관심관계, 후견적관계, 갈등적관계, 동반자관계

본 책에서는 상기 이론적 전제를 모두 검토하지는 못한다. 하지만 이들 논의에서 공통적인 사항들로 주목해야 할 관계의 측면으로 정부와 비영리 조직(NPO) 사이의 관계를 보완적, 협조적, 대립적 관계로 상정하고, 이와 관련한 논의를 정리해보고자 한다.

1) 보완적 관계

정부와 비영리 조직과의 관계를 보완적 관계로 보는 관점은 정부나 비영리 조직이 서로의 실패를 보완해준다는 입장을 취한다. 이 입장에서는 정부의 실패로 인해 정부에 의해 공급하기 어려운 공공재의 수요를 비영리 조직이 충족시키며, 정부보다 민첩하게 다양한 국민의 욕구에 부합된 공익적 활동을 수행하면서 정부의 기능을 보완한다고 주장한다.

한편 비영리 조직이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는 부분, 즉 ‘비영리 조직의 실패’에 대해서 이를 극복하도록 정부가 비영리 조직을 지원해줄 수 있다. 앞에서 정부의 실패를 설명하였으므로 여기에서는 Salamon(1987)이 제시한 비영리 조직의 실패를 4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 박애적 불충분성-비영리 조직이 충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
- 박애적 배타주의-비영리 조직이 특정 대상의 수혜자에게 주목하게 되면서 서비스 이용가능성에서의 격차가 발생한다는 점
- 박애적 온정주의-가장 많은 자원을 제공하는 사람에 의해 비영리 조직의 활동, 내용, 방식이 결정된다는 점
- 박애적 아마추어리즘-비영리 조직의 전문성 부족으로 인한 한계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

이러한 상황에 따라 정부는 상대적으로 건전하고 전문적인 비영리 조직을 공모를 통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조직에게 등록자격을 주고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해주며 규제한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비영리 조직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주로 박애적 불충분성에 대한 보충의 의미로 이해될 수 있다.

2) 협조적 관계

협조적 관계는 정부가 비용을 지불하고 비영리 조직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조체계를 말한다. 협조적 관계는 보완적 관계 이상의 밀접한 관계로, 최근 자본주의 사회의 민영화 논의와 관련되어 있다고도 볼 수도 있다. 민간 입장에서는 다양한 공익적 활동에

대한 참여욕구를 실현하는 방식으로 국가의 재원에 의존하는 것이고, 국가 입장에서는 늘어나는 국가의 책임을 민간부문의 참여를 통해 낮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시도 속에서 협조적 관계가 나타난다.

협조적인 관계를 통하여 공공 영역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증가시키는 것은 규범적으로 바람직하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 입장에서는 자율성을 훼손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또한 과거 관변 단체(유사비영리조직) 중심의 국가 지원의 역사를 지닌 한국의 상황에서는 이러한 협조적인 관계가 지향하는 바가 누구를 위함인지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3) 대립적 관계

대립적 관계는 비영리 조직이 해당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에 따라 정부의 정책 결정과 실행에 대하여 대립적 의견을 제시하여 정책 실행상 변화를 유도하거나 정부의 결단을 촉진하고자 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관계이다. 이와 관련한 활동은 대변형 시민사회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자면 예산감시운동, 장애인권익옹호운동, 4대강 반대 등을 내세운 환경보존운동, 촛불운동 등을 말하는 것이다.

반면 정부입장에서도 대립적 관계를 설정할 수 있다. 정부 입장에서 부실 비영리 조직의 내부구조에 대한 관리감독, '잔여소득배분금지'에 대한 준수여부 등을 세무 당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 정부와 대립적 관계에 있는 조직(예: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반정부 시위를 시행하고 있는 조직)에 대해 지원금 지급 금지/중단 결정을 내리는 것도 대립적 관계의 양상으로 제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우리 정부에서도 정부와 대립적 관계를 형성한 단체 중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 구성원이 소속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참여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다.

5. 정부의 비영리조직 지원 제도

정부와 비영리 조직이 관계를 지니고 있다면 조직간 교환에 주목하여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김승권(2006)은 정부와 비영리 조직사이에서 교환할 수 있는 긍정적 자원과 부정적 자원을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

〈표 1-4〉 정부와 비영리 조직 사이의 자원교환

정부	비영리 조직
<p>긍정적 자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 민간단체 지원 • 간접적 민간단체 지원 (행정지원 및 협력, 우편요금감면(25%) 등) • 세금감면 및 세금 공제제도 • 조달 및 위탁사업에 대한 경쟁제한적 규제를 통해 비영리 조직의 비교우위 제공 • 시민참여 장치의 마련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정책에 대한 적극적 지원 및 참여, 순응, 지지, 협력 • 정책에 대한 아이디어, 정보제공 • 전문인력 및 조직 동원 • 정책형성 및 진행참여 • 갈등 중재자 기능
<p>부정적 자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도적 특혜의 중지 및 방해 • 비영리 조직의 수입원에 대한 압력행사 • 수익사업에 대한 규제 • 세법규정의 강화, 세무사찰 • 비민주적 탄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 • 언론을 통한 비판적 여론 조성 • 정권퇴진, 반정부 시위 • 서비스 중단하겠다는 의견

여기서 긍정적 자원으로 제시된 것이 바로 비영리 조직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직접적으로 민간단체를 지원한다든지, 행정지원 및 협력, 우편요금감면 등으로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든지, 해당 조직이나 후원자에게 세금감면 및 세액공제를 해준다든지, 조달 및 위탁사업신청 시 자격이나 우선권을 부여한다든지, 다양한 시민참여기제를 만들어 주는 것 등이 그 예이다. 한국의 경우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두었는데 정부지원의 세부적 측면들을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³.

3 본 백서의 주된 초점은 비영리 조직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초점을 둔다. 아울러 사업공모 등에 의해 정부위탁사업에 참여하는 비영리 조직에 대한 지원도 함께 고려가 된다. 이들 지원의 면모에 대한 세부적인 실태는 표부 이하에서 논의가 될 것이다.

1) 보조금의 지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6조에서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대해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매년 3월말까지 행정안전부 또는 시도지사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단체 중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에는 정부의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다양한 위탁 사업을 공고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선정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관심을 둘 만한 ‘공모기회’, 이와 관련한 심사기준 등에 대해서는 본 백서 제Ⅳ부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절차와 기준 검토에 구체적으로 정리하였다.

2) 조세 감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0조에서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자면, 비영리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에 위해 출연 받은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법」, 「법인세법」이 규정한 바에 따라 상속세와 증여세 납부의무가 면제되게 된다.

조세 감면은 비영리민간단체 자체뿐만 아니라 중요한 재원의 부담자인 후원자에게도 적용이 된다. 국세청에서는 기부금의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득에 대해 공제가 적용이 된다. 상당수의 비영리조직은 ‘지정기부금’을 받게 되는데, 이에 대한 납세자의 소득공제 한도는 2010년도에 20%로 전년대비 5% 증가되었다. 또한 이렇게 후원자가 ‘지정기부금’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해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정을 받은 기부금단체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허가는 2년마다 갱신하도록 되어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매년 공익의 목적에 부합되고 정치적·종교적 논쟁의 여지가 없는 단체를 소득공제 대상단체로 선정하고, 국세청에서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두고 있다. 하지만 세입을 다루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에서는 세수(稅收)와 연관지어 ‘보수적’인 경향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표 1-5〉 근로소득에 대한 기부금 조세 감면

기부금 종류	공제 한도
정치자금기부금	근로소득금액
법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공제액)×50%
우리사주기부금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 공제액)×30%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제외)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기부금)×20%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근로소득금액-정치자금기부금·법정기부금·특례기부금·우리사주기부금)×10%

(출처: 국세청(2010),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안내)

3) 모금에 대한 정부의 제도 완화

임승빈(2009)은 938개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전화 설문한 결과, 전체 예산의 70~100%를 회비, 기부금, 자비 등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 약 60%에 달한다는 것을 밝혔다. 이것은 정부의 지원이 아닌 자구적 노력을 통하여 운영되고 있는 비영리 조직이 많다는 의미의 반영이며, 모금과 관련한 정부의 구제완화 및 지원이 중요하다는 정책적 함의를 갖는다. 이렇듯 비영리민간단체의 주된 재원이 되는 기부금 모금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어떠한지 다음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과거 「기부금품모집금지법(1951, 1962, 1970)」의 경우 전쟁 직후 무분별한 기부금품 강요의 폐해를 막기 위하여 도입되어, 이후 비영리민간단체의 모금이 엄격하게 금지되었고 차차 모금허용범위가 조금씩 확대되는 양상을 겪었다. 이후 이 법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1995)」로 개정되었는데, 모금허가의 기준을 구제, 구휼, 자선사업 이외의 공익영역으로 넓히고, 사회단체의 회비모금에 대한 금지 및 제한규정을 폐지하였다. 다만 이 법은 기부금품 모집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광역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조건을 부가하였으며, 기부금품은 국가, 지자체, 언론, 금융기관 등 공개된 장소에서 모금해야 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기부금품 모금에 활용되는 필요경비를 전체의 2%로 제한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국제적인 통상 기준과 현실적 비용을 고려하여 증가시켜야 한다는 여론에 부딪히게 되었다. 이러한 추세가 반영되어 2006년부터 변화하게 된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부금품 모금의

허가요건을 등록요건으로 완화하였으며, 기부금품의 규모에 따라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기부금품을 필요경비로 총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우편요금의 지원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11조에서는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공익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우편물 중 우편요금 별·후납 우편물에 대하여 일반 우편요금의 25%를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5) 행정지원 및 협력 및 시민참여 제도의 마련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13조에 의거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업관련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비영리민간기관에 대해 행정지원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한 사항 등에 대해 협조요청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업무 영역에 대하여 공익인사의 참여, 시민대표의 참여 기회를 통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지닌 인사들을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하지만 이는 임의규정으로서 사안의 중요성, 공무원의 의지, 정부의 정책기조 등에 따라 편차를 보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6. 비영리조직 분류기준과 체계

비영리 조직 연구를 위하여 전제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는 다양한 비영리 조직을 일정한 기준을 세워 분류하는 작업이다. 분류기준에 따라 비영리 조직을 바라보는 조망이 달라지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분류를 해야 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분류기준으로서 중요한 사항은 포괄성과 차별성이다. 포괄성은 연구를 통해 검토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비영리 조직을 포함할 수 있는 기준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차별성은 특정 유형에 속하는 비영리 조직을 각 기준에 맞추어 수월하게 분류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비영리 조직과 이를 둘러싼 유사개념 사이에서도 불명확한 공유영역이 있으며 사회적 합의도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위한 명확한 분류기준을 갖기 힘들다. 정부의 비영리 조직 지원의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연구자가 가장 고민해야 하는 영역도 어떠한 기준을 세우는가에 대한 것이다.

본 백서에서는 국내의 분류시도를 정리해보고, 국제적 분류기준으로서 UN의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을 제시하고 이를 백서 정리의 기준으로 삼고자 한다.

1) 국내의 분류 시도

(1) 국내 개별학자에 의한 분류

조희연(2001)은 단체의 목적과 활동영역에 따라 비영리 조직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이 분류체계는 조직의 목적, 활동영역과 관련된 주요단체를 대체로 적절하게 연결하였다. 하지만 활동영역을 살펴볼 때, 시민단체의 경우 지나치게 포괄적인 범주를 사용하였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에 대한 세분화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박태규(2000)는 한국의 비영리 조직 현황을 분석하였는데,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인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을 수정하여 오락문화, 교육연구, 보건, 사회복지, 시민단체, 종교, 전문가단체로 분류하여 노동자 수, 자원봉사자 수, 총지출 규모 등을 제시하였다.

〈표 1-6〉 조희연의 단체의 목적과 활동영역에 따른 한국 비영리 조직의 분류

목적	구분	
	활동영역	주요단체
공익단체	의료보건단체	병원, 정신병원, 요양원
	교육연구단체	초등·중등·고등사립학교, 직업학교, 연구소
	복지서비스 단체	양로원, 탁아소, 고아원, 직업훈련소, 복지관, 모자보호소, 청소년 수련원
	예술문화단체	박물관, 미술관, 오케스트라, 레크리에이션단체
	시민단체	환경보호단체, 소비자단체, 권리보호단체, 여성권리옹호단체, 국제원조단체, 모금단체
종교단체	종교단체	불교·기독교·천주교 등 각종 종교단체
집단이익추구단체	직능단체	상공회의소, 전경련, 변호사협회, 의사협회
	친목단체	컨트리클럽, 동창회, 향우회

(2) 한국민간단체총람의 분류

한국민간단체총람(2009)은 국내의 시민단체, 이익단체, 직능단체를 포함한 민간단체를 종합하여 가장 포괄적인 정리 작업을 했다고 할 수 있다. 이 자료는 7,570개 단체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을 분류하기 위한 기준은 한국민간단체총람 편찬위원회의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마련되었다.

〈표 1-7〉 한국민간단체총람의 민간단체분류(2009)

대분류	소분류	해당 단체수
환경	감시/정책제안, 환경보호, 교육/연구/계몽	955
인권	인권일반, 추모사업	218
평화/통일	평화, 통일/민족	318
여성		503
권력감시	권력감시일반, 행정부/국회/사법, 기업/언론	104
정치/경제	정치/행정, 경제, 과학기술, 지역자치, 의식계몽	811
교육/연구	교육, 연구	342
문화/체육	예술, 문화, 체육, 기타문화	302
복지	복지일반, 의료/보건, 장애인, 노인, 기타복지	1,511
청년/아동	청년, 청소년, 아동	703

대분류	소분류	해당 단체수
소비자권리		69
도시/가정	도시일반, 교통, 주택, 가정	256
노동/빈민	노동, 농어민, 빈민	243
외국인	외국인복지, 노동자, 다문화	105
모금		30
자원봉사		609
국제연대	국제원조, 국제협력, 재외동포	119
대안사회	공동체, 생협, 교육/연구/계몽	116
온라인 활동		102
기타		154

하지만 이러한 분류기준이 어떠한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만들어 졌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 분류기준에서 대분류 20개중 일부는 조직의 기능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일부는 조직의 사업 영역에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분류와 소분류가 적절하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추모사업이 인권의 하위항목으로 연결된 점, 의식계몽이 정치/경제의 하위항목으로 있다는 점은 적절하다고 판단하기 힘들다.

2) 국제적 분류시도

(1) 세계은행의 시민사회단체 분류

세계은행(2007)은 시민사회영역을 광범위하게 규정하면서 여기에 포함되는 기관과 단체를 시민사회단체(civil society organization)라 칭하였다. 세계은행의 시민사회팀은 시민사회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집을 만들면서 시민사회영역에 대한 분류를 진행하였다. 세계은행은 시민사회조직을 분류하는 많은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전제한 후, 그 기능에 따라 아래와 같이 6가지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아래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이 많다고 하였다.

〈표 1-8〉 세계은행의 시민사회단체 분류

기능구분	역할	관련 조직 예
대표 (representation)	시민집단의 목소리를 집합하여 목소리를 내도록 하는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동조합, 여성단체, 농민단체를 포함한 회원 조직 • 비정부조직, 연합회, 상부조직이나 네트워크 • 신앙기반의 조직 • 토착민 조직
기술적 전문가 (technical expertise)	연구를 수행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협회, 기업협회 • 두뇌집단이나 연구조직
옹호(advocacy)	특정 이슈에 대한 옹호하는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역협회 • 비정부조직 • 인권집단 • 뉴스와 미디어 집단 • 시위조직
역량구축 (capacity-building)	지역사회집단이나 다른 시민사회조직이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자원을 동원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키는 지원을 제공하는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단(지역, 국제, 지역사회) • 시민사회조직 지원 조직 • 훈련 조직
서비스 전달 (service-delivery)	개발 프로젝트의 실행을 지원하거나 제공하는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국가, 국제비정부 조직 • 신용 및 상호부조 연합 • 비공식, 풀뿌리, 지역사회기반의 결사
사교적 기능 (social functions)	집합적 레크리에이션과 다른 사회활동을 지원하는 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조직 • 스포츠클럽 외

(2) 국제표준산업분류방식(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ISIC)

김준기(2006)에 따르면, UN에서 고안한 국제표준산업 분류(ISIC) 방식은 국가 간 경제·산업분야에 대한 일관성 있는 통계 작성을 위해 1948년도에 고안되었다. 이 방식은 비영리 조직의 범주에서 소득의 50%이상을 수익사업 또는 정부의 보조에 의존하는 조직을 제외시키기 때문에 일부의 비영리 조직만 포함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ISIC의 비영리 조직에 포함되는 단체는 교육(초등, 중등, 평생교육), 의료 및 사회사업(일반보건서비스, 동물보건서비스, 사회사업), 기타 공동체·사회·개인을 위한 활동(위생, 사업 및 전문업, 노동조합, 기타회원조직, 연예계, 보도조직, 도서관, 문화 조직, 스포츠 및 여가 조직 등)으로만 분류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방식은

비영리 조직의 특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였으며, 분야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3)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ICNPO)

존스홉킨스 대학의 Salamon과 Anheier교수는 앞에 제시된 UN의 ISIC의 방식을 개선하여 국제비영리부문의 분류기준인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을 고안해 내었다(UN, 2003). 앞의 ISIC방식을 취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최근에 정부가 민간 기관에게 많은 역할을 부여하면서 생기는 비영리 조직의 재정을 확인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은 ISIC(3판)의 분류체계를 기본으로 존스홉킨스 비교 비영리 부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학자들이 참여하여 완성하였다. 이 자료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웨덴, 일본, 헝가리, 브라질, 가나, 이집트, 인도, 태국의 자료를 통해 확인된 다양한 비영리 조직을 분류하면서 정리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1-9〉 UN의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에 따른 시민사회단체 분류

1 문화와 레크리에이션	100	문화와 예술	방송통신, 시각예술, 건축, 공예, 공연예술, 역사, 문학, 인문협회, 박물관, 동물원, 수족관, 다목적 문화예술 단체 등
	200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클럽, 레크리에이션, 다목적 레크리에이션 조직 등
	300	서비스 클럽	서비스 클럽, 다 목적 서비스 클럽 등
2 교육	100	초중등교육	초, 중등 교육
	200	고등교육	고등교육(대학)
	300	기타교육	직업/기술학교, 성인/평생교육, 다목적 교육조직 등
	400	연구	의학, 과학기술, 사회과학, 정치학 등
3 건강	100	병원과 재활	병원, 재활병원
	200	요양원	요양원
	300	정신건강과 위기개입	정신과병원, 정신보건치료, 위기개입, 다목적 정신건강조직 등
	400	기타건강 서비스	공공보건교육, 의료처치(주로 외래), 재활의료서비스, 응급의료서비스, 다목적 보건서비스 조직 등
4 사회서비스	100	사회서비스	아동복지, 아동서비스, 주간보호, 청소년서비스, 청소년복지, 가족서비스, 장애인서비스, 노인서비스, 자조 및 다른 대인사회서비스, 다목적 사회서비스 조직 등
	200	긴급 상황 및 난민	재난/응급 예방, 구호 및 통제, 일시 쉼터, 피난처 지원, 다목적 응급 피난 지원 조직 등
	300	소득보조 및 유지	소득 지원 및 보전, 물질 원조, 다목적 소득 지원 및 보전 조직 등
5 환경	100	환경	공해 감소 및 통제, 자연자원 보전 및 보호, 환경미화 및 open spaces, 다목적 환경조직 등
	200	동물	동물보호 및 복지, 야생동물보존 및 보호, 수의서비스, 다목적 동물서비스 조직 등
6 개발과 주거	100	경제, 사회,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 및 근린조직, 경제개발, 사회개발, 다목적 경제, 사회, 지역사회개발 조직 등
	200	주택	주택 연합, 주거 지원, 다목적 주거 조직 등
	300	고용 및 훈련	직업훈련프로그램, 직업상담 및 지도, 직업재활 및 지원 작업장, 다목적 고용 및 훈련 조직 등
7 법, 옹호, 정치	100	시민 및 변호단체	시민 결사체, 대면 조직, 시민권 협회, 인종 연합, 다목적 시민 및 옹호 조직 등
	200	법과 법률서비스	법률서비스, 범죄예방 및 공공안전, 범법자 재활, 피해자 지원, 소비자 보호 및 조직, 다목적 법률 서비스 조직 등
	300	정치조직	정당, 정치행동위원회, 다목적 정치 조직 등
8 자선매개 및 봉사증진	100	교부금 모금 조직	교부금 모금 재단
	200	다른 자선 매개 및 자원봉사 증진	자원봉사증진 및 지원, 다목적 자선 매개 및 봉사조직 등
9 국제	100	국제적 행동	교류/우호/문화프로그램, 개발지원조직, 국제재단 및 구호조직, 국제 인권 및 평화조직, 다목적 국제조직 등
10 종교	100	종교집회 및 단체	개신교회, 가톨릭교회, 유대인 회당, 힌두사원, 신사, 무슬림 모스크, 복합종교조직 등
11 경영 및 전문직조직, 노조	100	기업, 직업 단체, 노동조합	기업연합, 전문직 연합, 노조, 다목적 기업, 전문지 결사 및 노조 외
12 기타	100	기타	기타

본 백서에서는 정부의 비영리 조직에 대한 지원현황을 분석할 때 비영리 조직의 분류를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을 기준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이 기준이 UN이라는 국제조직에서 공인한 분류방식이며, 동서양의 다양한 국가의 비영리 조직 비교연구를 통해 도출된 다양한 조직유형이 포괄되는 분류기준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본 기준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준이므로 국가 간 비교연구를 하게 된다면, 기초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Ⅱ.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총론적 검토

1. 연구 방법

본 연구진은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검토하기 위하여 ‘한국NPO공동회의’의 지원을 받아 중앙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현황 자료를 입수하기로 결정하였다. 자료 취합은 크게 두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비영리민간단체들이 어느 부처의 관리를 받고 지원을 받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전년도 「2009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백서」에 포함된 정부 부처는 모두 포함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현황을 확인하기로 하였다. 또한 전년도 백서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정부조직법에 나와 있는 중앙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와 관련한 실적이 있는지 확인하여 추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0년초 정부부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관련된 자료를 입수하였고, 총 35개 중앙 부처 중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26개 부처의 지원현황을 정리하였다.⁴ 이를 바탕으로 부처별로 어떤 유형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을 하고, 어떤 속성을 지닌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며,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기초적 분석을 하였다. 이미 결산이 끝난 2010년도 지원현황을 기본으로 하고, 2011년 부처별

4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응답을 해온 26개 부처는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통일부, 특허청, 행정안전부, 환경부(가나다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예정액을 취합하여 전년대비 증감의 정도를 함께 파악하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부처 홈페이지 '공고'란을 통하여 실제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모할 수 있는 정부사업명, 심사기준, 지원액 등을 확인하여 목록으로 만들고 이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의 각종 사업지원을 위하여 참조할 수 있는 편람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개요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주제

- 중앙정부 각 부처의 민간단체 지원의 현황과 추이 검토
- 중앙정부 각 부처의 사업별 지원기준과 지원 요령 검토

2) 연구자료

-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현황(지원 단체명, 지원 사업명, 지원액)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중앙정부조직, 국가인권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중앙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지원한 사항에 대해 목록화하여 획득한 자료 (2010년 중심으로, 2011년 집행계획도 함께 받음)
- 비영리민간단체가 신청할 수 있는 중앙정부의 다양한 공모사업(사업명, 공모액, 심사기준, 공고시기 등) 본 연구진이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중앙정부조직,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 공고란을 열람하여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리스트를 만들어 정리한 자료 (2010년)

3) 주요 연구 방법

- 주요 연구는 문헌연구, 통계처리를 통한 양적 자료 분석, 2차 자료 분석을 통해서 진행한다.

구분	분석내용
문헌연구	정부-비영리 조직 관계 일반론 정리 / 저술 (국가, 시장, 비정부조직, 비영리조직, 시민사회와의 관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역사 정리 / 저술 비영리민간단체 분류를 위한 법적기준, 국제기준 재정리 (행정안전부기준, ICNPO 등)
양적자료 분석 (통계처리)	2010~2011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 현황 (부처별 비교) 부처별 연도별 지급액 변화 (규모, 부처별, 단체별, 사업목적별 비교 등) 비영리민간단체의 단체구분별 지급액 비교, 연도별 변화(추이) 비영리민간단체의 사업목적별 지급액 비교, 연도별 변화(추이) 공모로 배분되는 예산액의 부처별 비교 / 변화
2차적 자료 분석	취합된 자료를 토대로 부처별 배분 기준(공통점, 차별점)과 함의도출, 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 심사/배분 기준 및 지원요령 제안

4) 조사절차

- 2011년 2월초 : 연구 성격 규정 및 절차 마련을 위한 회의
- 2011년 2월~3월 : 정부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현황 정보공개 청구 및 보완
(한국NPO공동회의주관)
- 2011년 4월~5월 : 2010~2011년초 정부 공고를 확인하여 비영리민간단체가 신청
할 수 있는 공모사업 정리
- 2011년 4월초 : 정부에 정보공개 2차 청구 및 보완 (한국NPO공동회의주관)
- 2011년 5월~6월 : 자료 코딩 및 비영리민간단체단체 유형분류, 활동 유형분류,
교차확인, 2010년 현황 기초분석
- 2011년 6월말 : 중간연구결과 발표 (한국NPO 소통과 나눔 컨퍼런스)
- 2011년 7~8월 : 부처별 지원경향분석, 정부공모사업의 심사기준 자료 분석 등
심화분석
- 2011년 9월 : 최종 원고 정리

5) 연구 상 한계 및 고려사항

- 정부에 정보공개 청구 시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하였음에도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 보조와 민간단체의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 지원의 포함여부에 대한 각 부처 담당자의 인식이 다른 경우가 있었다. 이를 테면 부처에 따라 일상적인 경상 보조를 포함하지 않고 특별 프로그램이나 공모에 의한 지원만을 한정하여 통보한 부처도 일부 있었다. 부처에 따른 특별 공모 등으로 한정하여 통보한 경우에 민간단체 경상 보조금을 포함시킨 부처보다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규모가 과소 보고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실제로 2010년도에 정보공개 시 지원대상이라고 포함되었던 단체가 지원이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는 누락된 경우도 상당 부분 발견되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였다.
-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기본적으로 정부가 제공한 정보의 속성이 다소 상이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양자를 동일기준에서 비교하였기에 연구결과를 참조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한 정보공개를 위한 분명한 가이드를 주었음에도, 연도별로 정보취합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민간단체에 대한 개념틀이 달라지면서 특정 단체가 포함되기도 하고 포함되지 못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연도별 경향 비교를 할 때에 주의가 필요하다.
- 중앙정부로 한정하여 검토한 것이라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총량을 확인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시설도 비영리민간단체라고 할 수 있지만, 이들 기관에 대한 대부분의 지원은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보조금을 이양한 후에 지방정부 재정으로 전환되어 집행된다. 이에 대한 현황을 조사표에 포함하여 정보공개를 요구하였으나 아쉽게도 관련한 자료를 보내온 부처는 존재하지 않았다. 혹은 원래 지방세 등을 주요한 세원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지역 기반의 민간단체도 존재한다. 이러한 단체의 규모와 지원액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원 현황을 확보하여 동일한 기준에서 분석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낮아 금번 백서에 포함하지 않았다.

2. 정부 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

본 연구에 포함된 정부 부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등록한 26개 중앙 부처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부처는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국가보훈처,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토해양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수산물부, 농촌진흥청,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식품의약품안전청, 여성가족부, 외교통상부, 중소기업청, 지식경제부, 통일부, 특허청, 행정안전부, 환경부(가나다순)이다. 이들 부처 중에서 「2009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백서(이하 백서)」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새롭게 추가된 부처는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이다. 또한 전년 백서와는 달리 정부조직개편으로 노동부는 고용노동부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현재 중앙정부의 각 부처에서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중앙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총 3,227억원 정도로 나타났다. 앞에서 연구상 한계에서 밝혔듯이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 보조를 제외하고 특별 사업공모 중심으로 보고한 단체도 있을 것이라는 점, 정보공개청구를 처리하는 부처의 담당자와 부처별 협조정도에서 편차가 존재할 것이라는 점, 전년도 지원금으로 알려진 3,904억원과 비교했을 때 전반적으로 과소보고가 되었을 가능성도 볼 수 있다. 국회(<http://www.assembly.go.kr>)에 공고된 2010년 대한민국 정부의 결산서를 참조로 해보면 정부결산액은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248조 6,533억원 정도에 이른다. 정부 예산 대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검토해보면 정부 결산액의 0.13%밖에 되지 않는다. 이 중에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되는 예산 58조원 정도를 제외하고 검토해보아도 전체 정부 예산액의 0.16%만이 비영리민간단체를 위한 지원에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각 중앙 부처가 지원하는 빈도와 금액은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각 부처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빈도의 평균은 31.9개 단체였다. 하지만 빈도에 있어서 법무부, 지식경제부, 특허청처럼 1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와 같이 많게는 100개 단체 이상에 지원하는 경우도 있었다. 지원액을 중심으로 보면 부처 평균 124억 1천만원 정도로 나타났으나, 부처별 지원액의 범위를 살펴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1억 2천만원의 지원을 한다고

하였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1,025억원을 지원하는 등 부처별 지원의 편차가 커서 중앙값으로 평균은 큰 의미가 없다고 하겠다. 개별 단체당 평균지원액은 3억 8,900만원정도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수백억원을 지원받는 단체와 수백만원대의 지원을 받는 단체까지 폭넓은 분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평균 지원액으로 전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앞의 연구의 한계와 고려사항에서도 밝혔듯이, 각 부처마다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를 포함시킨 일부 부처, 기획재정부에 등록된 공공기관까지 포함시킨 일부 부처, '민간단체와의 협력 사업'이나 '민간 위탁 사업'의 일부만 제한적으로 포함시킨 부처 등 다양한 편차가 존재하므로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을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산림청, 문화재청, 기획재정부가 100억원 이상의 지원을 하는 상위 7개 부처로 나타났다. 반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빈도가 큰 부처 순으로 정리해보자면,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외교통상부,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액과 지원 빈도를 대응시켜 비교해보면 보건복지부를 제외하고는 지원 빈도가 높다고 해도 지원총액이 반드시 높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즉, 지원액이 큰 부처의 경우에는 특정 민간단체에서 많은 액수의 지원을 받는 경우가 많은 경향이 나타났다는 것이고, 지원 빈도가 높은 경우에는 다수의 민간단체에서 소액의 지원금을 나누어 배분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의 경우 과학기술인공제회에서 600억원의 지원을 받는데, 이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액의 60%정도를 한 민간단체에서 지원받는다고 볼 수 있다. 다른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청의 경우에는 소상공인진흥원에서 565억원을 지원받는데, 이는 중소기업청 지원총액의 80%를 상회하는 수치이다. 이 두 단체가 수령하는 지원금 총액은 본 백서에 포함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총액의 36%가 넘는 수치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두 단체가 순수한 '비영리민간단체'인가, '재단' 등의 구성을 통해 민간의 외형을 지니고 있지만 정부와 유사한 조직으로서 정부의 역할을 나누어 수행하는 '공공기관'인가 하는 점이다.

반대되는 극단으로 지원 빈도가 높지만 지원액이 적은 경우로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을 예로 들 수 있다. 2010년의 경우,

행정안전부에서는 49억원의 예산을 158개 민간단체에 나누어 주는 형태로 사업지원을 했는데, 개별 기관 당 평균 3천만원 내외의 지원을 해주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여성단체공동협력사업의 경우에는 30억원 내외의 예산을 여성단체들에게 149건으로 나누어 지원하는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개별기관마다 지원되는 지원 금액은 2천만원 내외의 지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제시한 두 가지 상황을 요약하자면, 지원 빈도가 높은 정부 부처가 반드시 많은 금액의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고, 지원 빈도가 낮은 부처가 반드시 적은 금액의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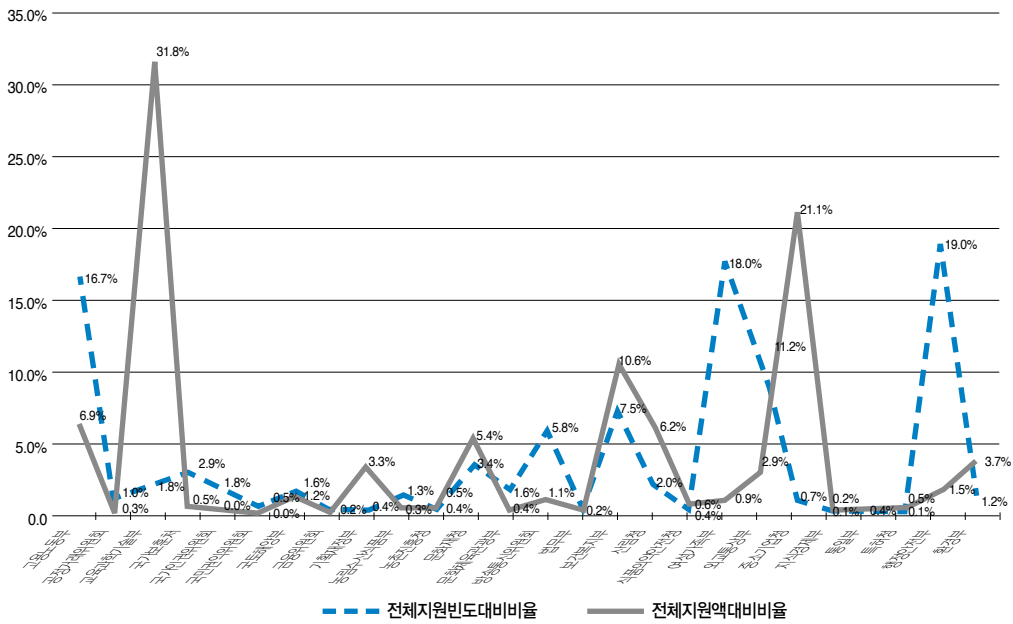
〈표 II-1〉 정부 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비교(2010년)

(단위: 천원)

부처	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 지원액	표준편차	전년대비증감
고용노동부	139	20,494,500	6.4%	147,442	286,870	5,472,167
공정거래위원회	8	844,000	0.3%	105,500	139,723	-608,000
교육과학기술부	15	102,506,000	31.8%	6,833,733	15,440,000	97,059,700
국가보훈처	24	1,697,500	0.5%	70,729	233,671	578,500
국가인권위원회	15	130,000	0.0%	8,667	1,536	-145,000
국민권익위원회	4	120,000	0.0%	30,000	7,071	120,000
국토해양부	13	3,793,000	1.2%	291,769	404,986	2,600,000
금융위원회	2	470,721	0.1%	235,361	63,038	470,721
기획재정부	3	10,789,000	3.3%	3,596,333	3,898,831	10,789,000
농림수산식품부	11	955,000	0.3%	86,818	80,682	-113,397,300
농촌진흥청	3	1,690,000	0.5%	563,333	263,978	-154,000
문화재청	28	17,444,000	5.4%	623,000	1,449,904	-1,423,000
문화체육관광부	13	1,263,597	0.4%	97,200	120,108	-8,335,966
방송통신위원회	48	3,448,570	1.1%	71,845	210,838	-38,958,260
법무부	1	582,000	0.2%	582,000	.	132,000
보건복지부	62	34,323,000	10.6%	553,597	2,940,256	-22,774,004
산림청	17	19,940,000	6.2%	1,172,941	3,293,907	19,753,000
식품의약품안전청	3	1,935,000	0.6%	645,000	578,490	-2,605,000
여성가족부	149	3,046,000	0.9%	20,443	10,056	-980,000
외교통상부	93	9,281,780	2.9%	99,804	100,051	-22,284

부처	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 지원액	표준편차	전년대비증감
중소기업청	6	68,202,000	21.1%	11,367,000	22,280,000	-20,648,000
지식경제부	1	700,000	0.2%	700,000	.	-200,000
통일부	3	680,000	0.2%	226,667	152,998	-3,836,000
특허청	1	1,517,000	0.5%	1,517,000	.	-20,000
행정안전부	158	4,900,000	1.5%	31,013	8,237	-
환경부	10	11,954,000	3.7%	1,195,400	2,592,219	9,404,000
합계	830	322,706,668	100.0%	388,803	3,136,438	-67,727,726

<그림 II-1> 정부 부처별 지원 총량 대비 지원 빈도, 지원액 비율 비교(2010년)



3. 단체 유형 및 사업 유형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

본 연구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유형을 구분하기 위하여 국제비영리조직 분류방식(ICNPO)을 활용하였는데, 각 민간단체의 유형별로 중앙 부처가 지원하는 빈도와 금액은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다. 아울러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프로그램 유형도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의 범주를 동일하게 활용하였다. 그 이유는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이 비영리민간단체를 기능에 따라 분류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실제로 어떤 사업을 하는 단체에 지원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적합한 틀을 제공해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기능별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유형화를 할 경우에, 각 부처별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유형과 지원 프로그램을 교차하여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즉, 각 개별 민간단체의 특성과 사명에 맞추어 사업을 신청하여 지원을 받는 것인지, 재정 형편이 어려워 지원금을 받기 위하여 단체의 사명과 부합되지 않는 사업까지도 떠맡게 되는지 후속 연구를 통하여 확인하기 위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는 판단도 하였다.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빈도가 높은 대상은 시민사회단체(155건, 시민, 인권, 여성, 의식개혁 등 사업), 사회서비스(107건), 국제적 행동단체(108건), 기업·직업단체·노조(103건), 문화예술단체(82건), 연구단체(5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액을 중심으로 본다면 기업·직업단체·노조에 지원되는 금액은 1,049억원 내외로 전체 비영리단체 지원액의 32.5%나 차지하였다. 이와 관련된 사업 중 565억원 정도(53.9%)을 소상공인진흥원에 배분되고 있었다. 한편, 소득보장을 위한 단체 한 곳에 600억원이 지원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을 것이다. 과학기술인공제회에 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을 안정적인 환경에서 지원하기 위한 소득보장의 방안으로 지원된다는 점이다. 이를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추후 분석에는 이들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고 분석을 하는 것이 유효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문화와 예술 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은 199억원 이상으로 전체 지원액의 6.2%나 지원이 된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지원되는 금액이 120억 9천여만원 내외로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액의 비중이 높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이렇게 지원의 비중이 높은 특정 단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분야별 지원액의 편차를 고려한다면 개별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의 정도를 대표하는 중앙치로 중위값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단체에 대한 평균 지원액은 13억 1,037만원 정도였으나 지원액 중위값은 5,000만원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기업·직업단체·노조관련 단체에 대한 평균 지원액은 10억 8,1856만원 정도였으나 지원액의 중위값은 9,400만원정도로 낮게 나타났다. 일부 특정단체에 고액의 지원을 하는 경우가 반영되어 평균 지원액과 중위값에서 차이를 보이는 결과가 나타난 것이다. 기타교육단체도 평균지원액은 6억 7207만원 정도였으나, 중위값은 2,500만원으로 편차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으며, 문화예술단체의 경우에도 평균값은 2억 4,273만원정도였으나 중위값은 2,65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 상황은 특정 단체가 부처별 지원액의 평균치를 끌어올리기도 하지만, 실제로 정부에서 지원금을 받는 대부분의 단체는 상당히 평균치보다 상당히 낮은 금액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낮은 지원금을 받는 사업 분야는 초중등교육, 주택, 레크리에이션 단체, 정치조직, 교부금모집조직, 자원봉사단체, 긴급 상황과 난민단체, 종교집회 및 단체, 기타(북한관련)단체 등이 나왔다. 교육이나 주택분야는 공공정책 영역에서 국가가 담당하기에 성격상 개별 단체가 수행하기 힘든 영역이므로 지원정도가 낮게 나온 것으로 보인다. 레크리에이션 단체도 상당히 낮은 빈도의 지원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과거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포함되었던 ‘도농교류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실제의 규모보다 적게 보고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조직과 관련한 부분은 본 연구에서는 정당에 대한 보조금이 제외되고 유권자의 권리, 여성 리더십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하는 프로그램만 포함되어 그런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 판단된다. 모금조직과 자원봉사단체의 경우는 비영리민간단체의 매우 중요한 특징으로 해당 기능은 대부분의 비영리민간단체에 포함되어 있기에 해당 기능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단체가 거의 없어 지원금 내역에서 빠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긴급 상황과 난민에 대한 지원은 각종 안전 구호단체를 중심으로 소액지원이 되었으며, 북한과 관련한 단체의 통일과 북한에 대한 직접적 구호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분류된 경우도 그리 많지 않았다. 오히려 정부의 지원이 집중된 탈북 이민자에 대한 지원의 경우 사회서비스 등으로 분류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종교집회 및 단체의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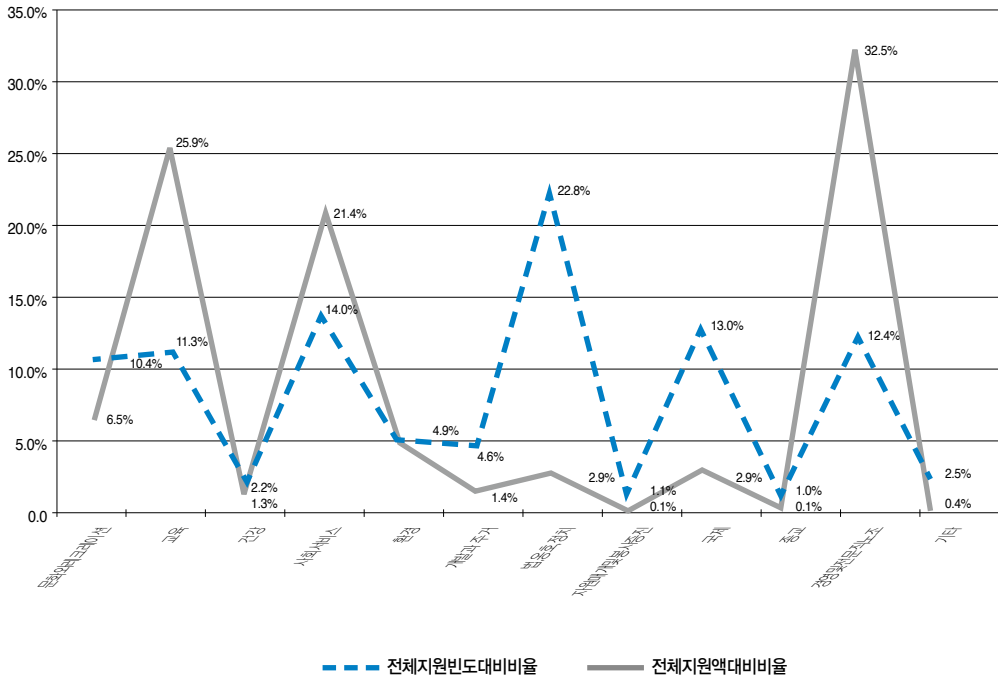
종무차원에서 종교연합모임 등에 대한 지원으로 한정적으로 진행되고, 종교적 속성을 지닌 민간단체도 '종교적' 목적보다는 다른형태의 사회공헌단체를 별도의 재단이나 사단을 구성하여 사업을 진행하므로 과소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은 단체 중 기타 유형에 들어가는 단체는 북한관련 단체가 대부분이다. 전체적으로 그 숫자도 적고 지원금이 적는데, 이는 통일부에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정보공개에서 누락시켜 보고한 결과와도 관련이 있다.

〈표 II-2〉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 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 지원액	표준편차	전년대비증감
문화와 예술	82	19,904,327	6.2%	242,736	871,485	-40,254,957
레크리에이션	4	967,997	0.3%	241,999	436,690	868,434
초중등교육	2	78,000	0.0%	39,000	15,556	-248,660
고등교육	24	2,615,002	0.8%	108,958	123,137	1,713,004
기타 교육	13	8,737,031	2.7%	672,079	2,215,296	7,913,591
연구	55	72,070,553	22.3%	1,310,374	4,059,800	43,114,510
병원과 재활	1	100,000	0.0%	100,000	.	100,000
정신건강과 위기개입	2	1,314,000	0.4%	657,000	909,339	-741,000
기타 건강서비스	15	2,671,527	0.8%	178,102	327,265	-27,930,758
사회서비스	107	8,885,100	2.8%	83,038	177,547	-12,638,097
긴급상황과 난민	8	193,207	0.1%	24,151	14,594	-1,345,293
소득보조와 유지	1	60,000,000	18.6%	60,000,000	.	55,000,000
환경	39	6,824,000	2.1%	174,974	379,373	3,127,945
동물	1	8,336,000	2.6%	8,336,000	.	6,526,000
경제·사회·지역개발	8	546,280	0.2%	68,285	82,445	-39,358,920
주택	3	175,000	0.1%	58,333	45,369	-391,000
고용 및 훈련	27	3,802,600	1.2%	140,837	234,386	2,020,127
시민 및 변호단체	155	6,975,887	2.2%	45,006	132,334	-2,189,435
법과 법률서비스	26	1,986,000	0.6%	76,385	160,717	-4,590,316
정치조직	8	354,000	0.1%	44,250	37,016	234,000
기타 자선매개 및 자원봉사증진	9	319,000	0.1%	35,444	8,263	-242,000
국제적 행동	108	9,368,467	2.9%	86,745	98,875	-1,531,498
종교집회 및 단체	8	357,000	0.1%	44,625	38,858	-1,765,000
기업·직업단체노조	103	104,911,690	32.5%	1,018,560	5,743,484	-55,558,028
기타(북한관련)	21	1,214,000	0.4%	57,810	86,686	439,625
합계	830	322,706,668	100.0%	388,803	3,136,438	-67,727,726

〈그림 11-2〉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총량 대비 비율 검토(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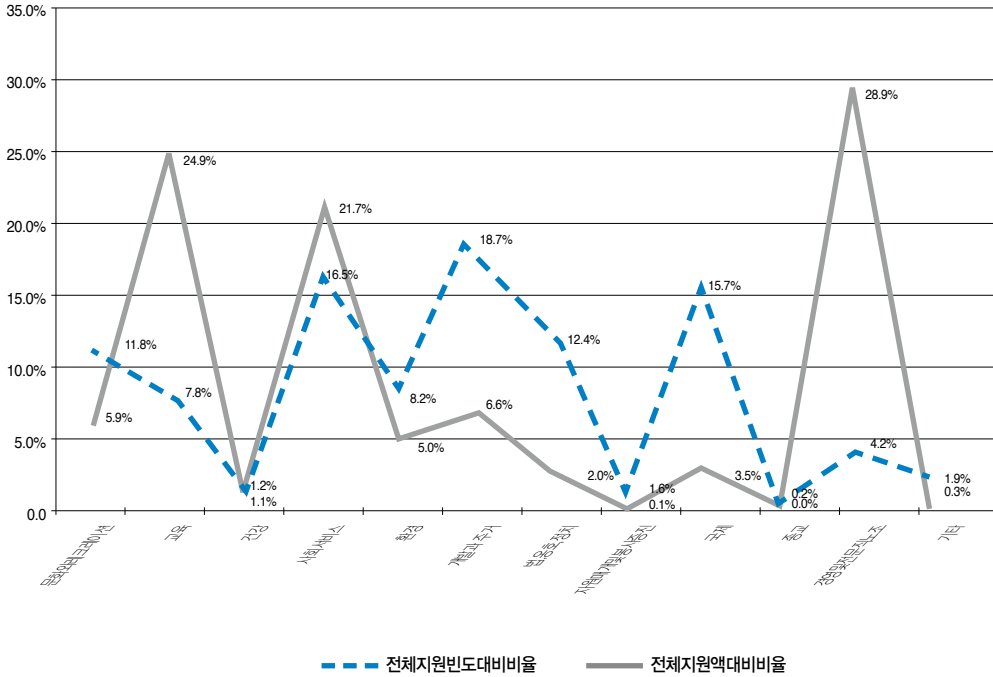


〈표 II-3〉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프로그램 목적	지원 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 지원액	표준편차	전년대비증감
문화와 예술	93	18,098,449	5.6%	194,607	785,256	-46,766,350
레크리에이션	5	1,022,997	0.3%	204,599	387,282	-1,259,566
초중등교육	2	48,150	0.0%	24,075	14,036	-5,821,866
기타교육	8	8,455,000	2.6%	1,056,875	2,822,690	4,607,000
연구	55	71,789,482	22.2%	1,305,263	4,070,478	47,713,757
정신건강과 위기개입	1	1,300,000	0.4%	1,300,000	.	-865,505
기타 건강서비스	9	2,226,527	0.7%	247,392	413,688	-9,984,848
사회서비스	129	9,821,743	3.0%	76,138	175,034	-1,800,273
긴급상황과 난민	7	145,207	0.0%	20,744	10,023	-1,145,293
소득보조와 유지	1	60,000,000	18.6%	60,000,000	.	59,950,000
환경	67	7,652,000	2.4%	114,209	296,881	-415,000
동물	1	8,336,000	2.6%	8,336,000	.	6,406,000
경제·사회·지역개발	9	2,445,000	0.8%	271,667	228,037	-85,925,000
주택	1	40,000	0.0%	40,000	.	-227,000
고용및훈련	145	18,908,721	5.9%	130,405	201,962	12,168,316
시민및변호단체	80	4,414,002	1.4%	55,175	163,486	-461,098
법과법률서비스	18	1,794,000	0.6%	99,667	189,882	-8,538,130
정치조직	3	103,000	0.0%	34,333	4,933	30,000
교부금모집조직	2	64,000	0.0%	32,000	4,243	-338,435
기타 자선매개 및 자원봉사증진	11	349,000	0.1%	31,727	9,530	349,000
국제적행동	130	11,367,363	3.5%	87,441	125,137	-2,028,431
종교집회및단체	2	148,000	0.0%	74,000	76,368	18,000
기업·직업단체·노조	35	93,118,500	28.9%	2,660,529	9,729,150	-7,164,961
기타(북한관련)	16	1,059,527	0.3%	66,220	97,664	553,527
합계	830	322,706,668	100.0%	388,803	3,136,438	-67,727,726

〈그림 II-3〉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총량 대비 비율 검토(2010년)



Ⅲ. 정부 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

1. 고용노동부

노동부는 1963년 경제개발을 위한 적극적 인력개발을 위하여 노동청으로 발족한 이래, 1981년 노동부로 승격되어 근로조건외 기준, 직업안정,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 산업안전(산업재해보상보험), 근로자의 복지후생, 노사안정, 고용평등 등 노동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2010년도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에 의하여 노동부의 명칭을 고용노동부로 변경하였다. 이러한 법 개정을 통하여 고용노동부는 정부 내 고용정책 총괄부처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고용정책의 총괄”기능을 분명히 하고,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 건강보호 등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산업안전보건” 기능을 관장사무에 추가하였다. 고용노동부는 기획조정실 이외에 노동시장, 직업능력, 인력수급, 고용평등, 고용서비스 정책 등과 관련한 고용정책을 관장하는 고용정책실과 노사협력, 근로개선, 산업예방보상, 공공노사업무를 관장하는 노사정책실을 두어 사무를 처리하고 있다.

2010년, 고용노동부는 139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연간 204억 9,450만원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2010년 정부결산서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1조 2737억원 정도의 세액을 집행하였는데,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액은 부처 전체 예산의 1.6%정도 된다.

2010년, 고용노동부에서는 기업이나 노조에 대한 지원액이 110억원이상으로 전체 지원액의 54%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고용과 훈련관련 단체에 37억

3,3344만원을 지원해 전체 지원액의 1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고등교육 기관 즉 대학의 산학협력단 등에 지원하는 빈도가 높았는데, 이는 총 25억
6,892만원으로 전체지원액의 12.5%를 차지하였다.

프로그램 목적별 지원 상황을 살펴보면 고용 및 훈련 분야에 161억 1,81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59억 5245만원에 비해 2.7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 볼 수 있다. 이는 최근 청년 일자리, 지방 일자리의 부족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민간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증가하였음을 반영한다.
더욱이 부처명을 '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전환하면서 이와 관련한 일자리 창출과
기회제공이라는 정책의지를 상당히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 시행되었던
고용평등상담실, 고용알선조직에 대한 지원 이외에 다양한 일자리 창출사업,
기술인력훈련사업 등이 시도되었다. 참고로 기업 및 노조에 대한 지원액은 전년대비 1억
8916만원정도 소액 감소하여 32억 7550만원으로 나타나서 현상 유지가 되는 수준에서
관리되는 것으로 보인다.

〈표 Ⅲ-1〉 고용노동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 빈도	지원액합계	전체지원액 대비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4	600,000	2.9%	150,000	199,631
고등교육	22	2,568,920	12.5%	116,769	125,793
연구	12	1,963,000	9.6%	163,583	248,546
고용 및 훈련	23	3,733,440	18.2%	162,323	248,317
시민 및 변호단체	17	446,600	2.2%	26,271	13,272
법과 법률서비스	2	29,000	0.1%	14,500	6,364
기업·직업단체·노조	58	11,077,540	54.1%	190,992	384,727
기타(북한관련)	1	76,000	0.4%	76,000	.
합계	139	20,494,500	100.0%	147,442	286,870

〈표 Ⅲ-2〉 고용노동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프로그램목적	지원 빈도	지원액합계	전체지원액 대비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1	15,000	0.1%	15,000	.
기타교육	1	15,000	0.1%	15,000	.
연구	12	940,000	4.6%	78,333	89,079
고용 및 훈련	114	16,181,000	79.0%	141,939	178,340
시민 및 변호단체	1	68,000	0.3%	68,000	.
기업·직업단체·노조	10	3,275,500	16.0%	327,550	897,454
합계	139	20,494,500	100.0%	147,442	286,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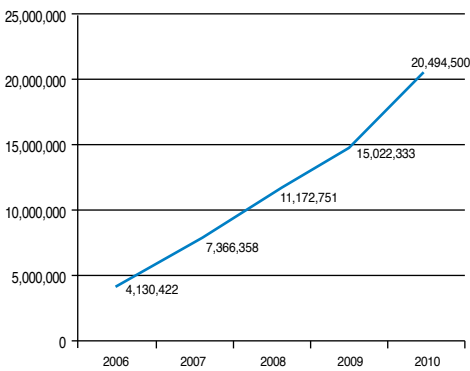
고용노동부를 통해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는 금액의 변화를 살펴보면, 2006년에는 41억 3천만원의 지원금이 집행되었는데, 2007년도에는 78.3%나 급증하여 73억 6천만원의 지원금이 집행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고용보험기금을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의 설립하는 데 지원한 것, 사회적 기업 육성 예산 및 지역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이 대폭 인상된 상황을 반영한다. 2008년도에도 2007년도보다 51.7%나 급증하였는데, 이는 제반 분야의 집중적 인상이 반영된 것이며, 한국노총연수원 구조 변경 등의 예산이 반영된 결과이다. 2009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34.5%나 증액되었는데,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상향 조정되고, 여기에 비정규직 근로자 장학금 지원제도가 생긴 결과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2010년도에는 부처명이 고용노동부로 바뀐 상황을 반영을 하듯 전년대비 36.4%나 지원액이 증가하여 139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연간 204억 9,450만원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11년도에도 노동단체들에 대한 지원(26억 8천만원),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5억 3,600만원), 노사관계관련 비영리법인에 대한 지원(2억 5,500만원), 고용평등상담실 운영(2억 8,500만원, 15개소)에 대한 지원 등을 확정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표 Ⅲ-3〉 고용노동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6~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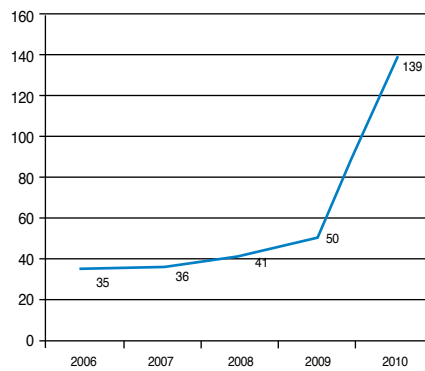
(단위: 천원)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원기관수	35	36	41	50	139
지원총액	4,130,422	7,366,358	11,172,751	15,022,333	20,494,500
전년대비 증감	-	78.3%	51.7%	34.5%	36.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변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단체수 변화



〈표 Ⅲ-4〉 2010년 고용노동부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사업명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문화와 예술	(재)대전문화산업진흥원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영상정보 네트워크
	(재)전주정보영상진흥원	디지털 영상편집 전문 인력 양성
	한국노동문화예술협회	근로자문화큰잔치
	화랑문화진흥회	U-CITY 경주지역 교류협력 관광체험사업
고등 교육	경남도립거창대학산학협력단	현장맞춤형 조선생산설계 현장인력양성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청년창직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개발 및 지역고용 창출 시범사업
	경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커리어 컨설턴트 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일자리 창출사업
	대구대학교	지역특화 자동차부품산업 인력양성방안
	대불대학교산학협력단	전남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양성사업
동국대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IPTV 미디어콘텐츠 전문인력 양성사업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고등 교육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남농수산물 소핑몰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목포대학교 산학협력단	휴건축, 환경조형 실무자 과정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차세대 지능형 향만물류 선진화 기술인력 양성사업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인터넷 콘텐츠 및 마케팅 일자리 창출 연구사업
	선문대학교 산학협력단	산학간 협력강화를 통한 지역인재양성 및 청년고용확대방안
	성루대학교 산학협력단	서울디지털산업단지IT중소기업 지원연구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	(예비)사회적기업 경영효율화를 위한 업무프로세스지원시스템 구축
	영산대학교 산학협력단	융합콘텐츠 기술인력 양성사업
	장안대학교 산학협력단	물류 전문 인력 양성사업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식품관련 기업 및 연구소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맞춤형고용 전략발굴을 위한 전북지역 고용포럼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한식의 산업화를 위한 한식 파티 플래너 양성사업
	창원전문대학 산학협력단	조선해양플랜트 전문 인력 양성과정
	한경대학교	안성평택물류, 전문인력 양성사업
호남대학교	스마트폰 앱스토어 개발자 양성사업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융합기술 전문연구인력 양성사업	
연구	(사)대구사회연구소	낙동강 고용촉진벨트 사업
	(사)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장애인고용연구관련
	(사)퍼스트경영기술연구원	사회적 기업 예비창업가 및 사회적 일자리 실무전문가 양성프로그램
	(재)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스마트폰 앱스토어 개발자 양성사업
	(재)대구경북연구원	대경광역경제권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재)대구경북연구원	대구경북 고용인적자원포럼 사업
	한국노동법학회	노사관계관련 세미나
	한국노사관계학회	복수노조허용 및 전임자 근로시간 면제제도 도입의 영향과 과제 세미나
	한국비교노동법학회	개정노동관계법 교육을 통한 노사상생문화 형성사업
	한국사회발전전략연구원	개정노동조합법의 이해와 실천방안교육
	한국선진노사연구원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선진쟁의질서 구축방안 세미나 및 노사문화교육
	한국지역고용학회	인프라확충사업
	(사)서울고용포럼	서울지역 고용인프라 구축
	(사)전남고용포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 육성전략 수립
(사)한국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식개선캠페인	
(재)대덕인재개발원	안드로이드&윈도우폰7 앱개발 고급기술인력양성사업	
(재)부산인적자원개발원	부산시 고용촉진지구 시범운영사업	
(재)부산인적자원개발원	부산지역 3PL 실무전문가 인력양성사업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고용 및 훈련	(재)한국인재뱅크	다문화 의료관광서비스 전문인력양성사업	
	강서여성인력개발센터	취약아동 학습 멘토와 장애아동 보육교사 양성과정 및 파견사업	
	경남고용포럼	경남고용포럼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녹색성장 인력양성을 위한 농촌체험지도사 양성과정	
	광명희망동지	경기도 뉴타운지구 고용촉진시범운영사업	
	광양만권일자리창출 인적자원개발사업단	광양만권 철강조선사업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사업	
	구로여성인력개발센터	이주여성 다문화 강사양성 '외국인엄마랑 함께하는 we are the world'	
	대구경북산업인력개발원	다문화가정 새일터 창출사업	
	부산지역고용파트너십포럼	부산지역고용파트너십포럼	
	서울시남부여성발전센터	도시농업지도사 양성과정	
	송파여성인력개발센터	마케터 인력양성사업	
	안산여성인력개발센터	결혼이민여성 전문성향상 프로젝트	
	인천서구여성인력개발센터	호텔객실관리 양성과정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패션스타일리스트	
	천안 여성인력개발센터	디스플레이분야 여성인력양성사업	
	한국인재개발협회	경상북도 초고령지역 고령자 능력개발 및 녹색일자리 창출사업	
	한국항공교육정보협회	공항내 지상조업업체와 연계한 고용활성화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시및 번호 단체	(사)강원살림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사)경남여성일과미래창조	경남지역 경력단절여성의 중소기업 맞춤형 직업훈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매뉴얼 개발
(사)광주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경비	
(사)대구여성회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경비	
(사)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		매체활용 홍보전문가 양성과정	
(사)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경비	
(사)미래경영포럼		녹색성장을 위한 맞춤형 인재양성 및 일자리창출	
(사)부산여성회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경비	
(사)부천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경비	
(사)서울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경비	
(사)수원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경비	
(사)안산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경비	
(사)인천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경비	
(사)전북여성노동자회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경비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경비	
(사)한국여성민우회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경비	
전국실업극복단체연대		새터민 맞춤형 취업지원연구사업	
법과 법률 서비스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경비
		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고용차별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장 노동법 교육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기업, 직업, 단체, 노동 조합	(사)MK패션산업발전협회	동,남대문 패션 및 봉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사)경기도인쇄문화협회	전자출판디자이너 인력육성 및 지식정보산업 인력양성 등 2건 연계사업
	(사)광주경영자총협회	가전부품업종, 기능/숙련 양성 및 지속가능한 지역 HRD인프라 육성사업
	(사)대덕이노폴리스벤처협회	IT전문인력양성사업
	(사)대전충남경영자총협회	대전고용포럼
	(사)부산관광컨벤션포럼	관광컨벤션 Win-Win 파트너십을 통한 융합적 고용창출 프로젝트
	(사)부산유비쿼터스도시협회	지속가능일자리 창출을 위한 커뮤니티 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사)전남지역경제인협회	신재생에너지산업 시장, 인력수요 상세조사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IT산업 전문 인력 양성 및 취업지원 패키지 사업
	(사)충북경영자총협회	전략사업 고용창출을 위한 실직자 재취업 인력양성프로그램
	(재)대전컨벤션부로	대전 MICE & 아카데미
	(재)송도테크노파크	차세대 자동차부품 품질향상을 위한 전문인력양성사업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	계층 종합일자리 지원사업
	(재)전북테크노파크	전라북도 친환경부품소재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재)충남테크노파크	3D 입체영상 기술인력양성사업
	경기경영자총협회	경기지역 지역맞춤형일자리 창출 사업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중견)기업 계약형 인재지원사업
	경북경영자총협회	전자전기, 관광서비스분야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사업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고용포럼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광역시 친환경 부품소재 산업 인적자원개발 및 취업지원사업
	노사공포럼	정책토론회, 노사공포럼지발간, 노사정학계 중견간부 연찬회
	대구컨벤션부로	대구MICE관광아카데미 운영사업
	마산상공회의소	조선기자재 설계엔지니어 양성
	미래노사발전연대	지역 내 고용창출 및 취약계층의 인적자원개발사업
	미래노사발전연대	노사관계 관련 교육, 연수 세미나 활동사업
	부산조선기자재 공업협동조합	조선기자재 설계전문가 과정
	부천산업진흥재단	부천전략산업 중소기업을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세동 노동조합연맹 등 3개소	조합원교육사업
	용인시디지털 산업진흥원	용인시 반도체 핵심고급인력 일자리 창출 및 지원사업
	울산,양산경영자총협회	울산고용포럼
	인천경영자총협회	인천지역 고용포럼
	인천광역시 관광공사 노동조합	노사세미나 및 교육사업
	전국 민간서비스 노동조합연맹	조합원교육,상담,홍보사업
	전국 지방공기업 노동조합연맹	조합원교육사업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사업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기업, 직업 단체, 노동 조합	전국사립대학교 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사업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사업, 조합원교육사업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조합원교육사업
	전국정보통신 노동조합연맹	정책연구사업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조합원교육사업
	전국화학섬유산업 노동조합연맹	조합원교육사업
	청주상공회의소	충북고용포럼
	충남벤처협회	충남고용포럼
	한국노동조합 총연맹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경비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 교육, 법률상담구조, 정책연구, 국제교류사업
	한국노사인재협회	노사관계교육
	한국노총광양지역지부	광양만권 IT분야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사업
	한국노총부천지역 지부	부천지역 중고령자 일자리창출사업
	한국노총속초지역지부	강원권 관광산업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적자원개발 보안네트워크산업 기능/숙련인력 양성 및 수원 및 수도권역 HRD사업
	한국노총수원지역 지부	
	한국노총순천지역지부	순천지역 취약계층 고용창출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사업
	한국노총이천여주지역지부	이천,여주지역 물류산업 일자리창출 및 인적자원개발
	한국노총충북지역본부	고용평등상담실 운영경비
	한국노총충주지역지부	웹기반하의 디지털문화 콘텐츠 비즈니스 전문 인력
	한국노총평택지역 지부	평택지역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한국디지털컨버전스협회	서울서남부지역 방송영상 산업맞춤형 전문 인력양성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인천지회	여성친화적 남동공단 조성 시범사업	
한국조정증재협회	협상조정전문가 양성	
기타	(사)서정보교육원	IT인적자원 개발 및 고용 창출사업

2.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 및 불공정거래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설립된 국무총리 소속의 중앙행정기관이자 합의제 준사법기관으로 경쟁정책을 수립하여 공정거래 사건을

심의, 의결, 처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중앙부처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은 공정거래법 제1조에 의거,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의 남용과 과도한 경제력의 집중을 방지하고,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창의적인 기업 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여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직은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처장을 중심 계선을 형성하고 있으며 산하에 기획조정관, 경쟁정책관, 시장구조개선정책관, 소비자정책국, 시장감시국, 카르텔조사국, 기업협력국으로 나뉘어 있다.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총 8개 비영리민간단체에 8억 4천만원 정도를 지원하였다. 이는 전체 공정거래위원회 예산의 738억원의 1.1% 정도를 차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주로 '법과 법률서비스' 범주에 속하는 단체를 지원하는데, 주로 소비자보호단체, 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주를 이룬다. 주로 이들 단체는 소비자권의 옹호를 위한 소비자 활동, 각종 거래에 일어나는 분쟁의 조정을 위한 활동, 상품비교정보생산사업 등을 실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1년에도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대한 소비자단체 보조사업(4억 3백만원)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하도급분쟁조정지원을 위한 사업(1억 8천만원), 특수판매 및 전자상거래분야 자율조정 지원사업(1억 4,100만원), 소비자단체들을 대상으로 한 상품테스트 정보생산사업(9,800만원)을 확정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표 Ⅲ-5〉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 빈도	지원액합계	전체지원액 대비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법과 법률서비스	7	810,000	96.0%	115,714	147,657
기업·직업단체·노조	1	34,000	4.0%	34,000	.
합계	8	844,000	100.0%	105,500	139,723

〈표 Ⅲ-6〉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 빈도	지원액합계	전체지원액 대비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법과 법률서비스	8	844,000	100.0%	105,500	139,723
합계	8	844,000	100.0%	105,500	139,7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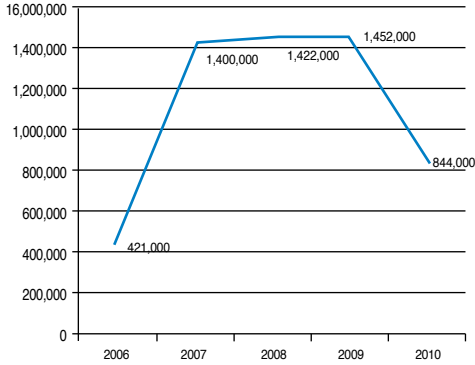
2003년,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2억 9천만원정도의 소액을 지원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가장 급격한 상승세를 보인 시점은 2007년으로, 약 10억원 가까이 상승하였다. 소비자단체협의회에 소비자 상담, 소비자생활실태조사, 소비자교육사업 등에 대해 보조하기 시작하면서 급격한 상승 요인이 발생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는 다음의 표와 같다. 하지만 2010년도에 접어들면서 지원액은 41.9% 급감하였는데, 이는 정보공개자료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대한 보조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나 생긴 결과라 할 수 있다.

〈표 Ⅲ-7〉 공정거래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2006~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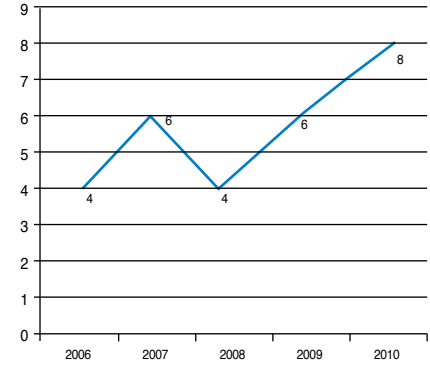
(단위: 천원)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원기관수	4	6	4	6	8
지원총액	421,000	1,408,000	1,422,000	1,452,000	844,000
전년대비 증감		-24.4%	42.7%	13.7%	-41.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변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단체수 변화



〈표 Ⅲ-8〉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법과 법률 서비스	녹색소비자연대	상품테스트 정보생산사업
	소비자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모임	상품테스트 정보생산사업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하도급분쟁조정 지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상품테스트 정보생산사업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소비자단체 보조사업*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산하 자율분쟁조정위원회	특수판매, 전자상거래분야 자율분쟁조정 지원사업
기업 및 노조	한국소비자연맹	상품테스트 정보생산사업
	중소기업중앙회	하도급분쟁조정 지원

3. 교육과학기술부

이명박 정부가 시작되며 정부조직개편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가 통합되어 교육과학기술부가 출범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교육을 살리고, 과학기술강국을 건설하여 선진일류국가를 건설하려는 목표를 지니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는 장관을 중심으로 차관 2명이 각각 교육 분야(기획조정실,

인재정책실, 평생직업교육국, 학교지원국, 교육복지국), 과학/학술분야(과학기술정책실, 학술연구정책실, 국제협력국, 원자력국)를 나누어 관리하도록 구조화되어 있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15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연간 1,025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서 얻은 자료를 참조하여 볼 때 교육과학기술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의 규모는 이번 백서에 포함된 정부지원총액의 31.5%나 되는 가장 큰 규모이다. 하지만 이 교육과학기술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규모는 2010년도 이 교육과학기술부의 결산액이 41조 8537억여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에 0.3%도 되지 않는다. 물론 비영리조직에 해당되는 각급 사립학교, 고등교육기관, 평생 교육 기관, 연구소 등이 이 부처의 지원으로 운영이 될 것이라 판단되지만 정보공개 청구를 통하여 얻은 현재의 자료에 한정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주로 이공계인력 지원, 고전번역, 학술활동 지원 등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었다. 교육과학기술부를 통하여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단체는 '과학기술인공제회'로 600억원(2010년 부처 지원예산의 58.5%)의 지원을 받았다. 그 다음으로 '한국고전번역원'에서 한국고전번역을 위하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180억원을 지원받았다. 그 밖에 13개 단체가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245억원의 예산지원을 나누어 받고 있었다. 대부분 이들 단체는 다양한 연구 사업을 전개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운영비(388억 5,200만원), 한국파스퇴르연구소의 연구비 및 건설비(133억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학술지원 및 과학기술계 현안조사 등(110억원), 한국고전번역원에 대한 고전번역사업(80억 6,700만원),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이공계 인력관리 특별지원사업(51억 1,400만원), 한국산업협회에 연구소 설립지원 및 기술혁신 연구역량 강화사업(48억 9,550만원), 기타 과학기술분야 및 퇴직교원 활동지원, 주부교실 운영지원사업 등(105억 8,300만원)을 지원하기로 확정하였다. 2011년도에 집행 예정된 교육과학기술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총예정액은 918억원을 상회하는데, 제출된 정보공개자료로 제한하여 지원규모를 검토할 때 정부부처 중에 가장 큰 규모라 할 수 있다.

〈표 Ⅲ-9〉 교육과학기술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 빈도	지원액합계	전체지원액 대비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연구	10	40,048,000	39.1%	4,004,800	5,532,654
소득보조와 유지	1	60,000,000	58.5%	60,000,000	.
시민 및 변호 단체	1	28,000	0.0%	28,000	.
기업·직업단체·노조	3	2,430,000	2.4%	810,000	512,152
합계	15	102,506,000	100.0%	6,833,733	15,440,835

〈표 Ⅲ-10〉 교육과학기술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 빈도	지원액합계	전체지원액 대비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연구	10	40,048,000	39.1%	4,004,800	5,532,654
소득보조와 유지	1	60,000,000	58.5%	60,000,000	.
시민 및 변호단체	1	28,000	0.0%	28,000	.
기업·직업단체·노조	3	2,430,000	2.4%	810,000	512,152
합계	15	102,506,000	100.0%	6,833,733	15,440,8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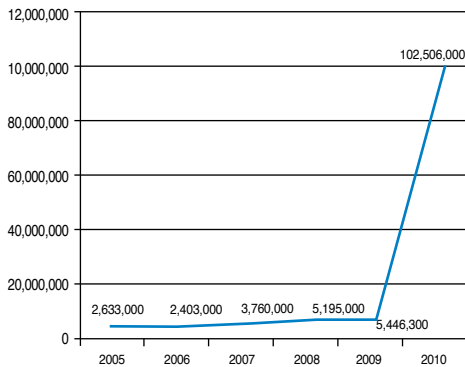
교육과학기술부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은 2007년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 시기에 '고전문헌 국역지원'에 대한 지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2008년에도 예산이 급증하는데, 이 때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이 확대되고, '아태이론물리지원센터'에 대한 예산보조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는 다음의 표와 같다. 2010년도에는 전년대비 17~18배 이상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예산이 증액되었다기보다는 이와 관련한 지원 사항이 이번 정보공개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이러한 예산 증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지원사업은 이공계인력관리특별지원사업, 한국고전번역사업에 대한 정부의 투자이다.

〈표 Ⅲ-11〉 교육과학기술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5~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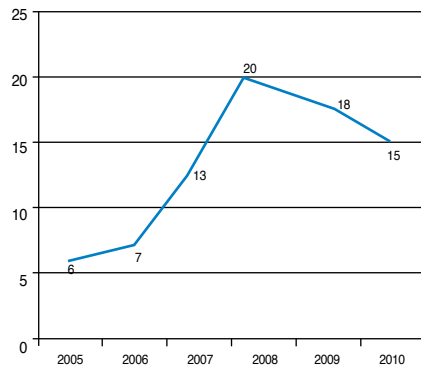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원기관수	6	7	13	20	18	15
지원총액	2,633,000	2,403,000	3,760,000	5,195,000	5,446,300	102,506,000
전년대비 증감	-	-8.7%	56.5%	38.2%	4.8%	1782.1%

(단위: 천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변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단체수 변화



〈표 Ⅲ-12〉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명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연구	아시아태평양이론물리센터	학술연구, 국제협력
	연구소재중앙센터	연구소재관련 연구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번역
	한국공학교육인증원	공학교육인증평가, 관련 연구
	한국공학한림원	공학기술산학연 네트워크, 공학기술이해증진사업, 정책연구 외
	한국과학기술한림원	기초과학연구 진흥 기반조성과 관련한 조사, 연구, 자문, 교류협력 외
	한국비파괴검사협회	비파괴검사기술 정보관리, 실태조사, 전문 인력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연구소설립지원, 기술혁신연구역량강화 지원
	한국원자력아카데미	방사선안전전문화구축사업비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연구비 및 건설비 등 지원
소득 및 유지	과학기술인공제회	이공계인력관리특별지원사업
시민 및 변호단체	전국주부교실중앙회	주부교실운영
기업 및 노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학술활동지원, 과학기술계 현안 조사, 자문, 건의, 기술교류 등
	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퇴직교원교육활동 지원
	한국기술사회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 추진사업, 기술사 기술향상 교육훈련

4.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와 보훈대상자의 영예로운 삶이 유지, 보장되도록 보상금 지급, 교육, 취업, 의료, 대부 등의 보훈정책을 수립하여 지원하는 부서이다. 아울러 독립, 호국, 민주화 관련 기념 추모 행사를 통해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도록 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또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국가안보를 간접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2010년, 국가보훈처는 24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연간 16억 9,750만원정도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고 정보공개요구에 응하였다. 국가보훈처의 2010년 전체 결산액이 3조 4,703억여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에 극히 제한적인 수준에서 비영리단체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 부처는 주로 보훈보상, 보훈복지, 보훈행정에 대부분의 예산을 활용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보훈선양을 위해 활용되고 있다. 국가보훈처를 통하여 지원받는 단체는 주로 '대한민국의 건국과 독립유공자에 대한 기념 사업회'나 '승모회' 등이다. 이들 단체는 순국선열에 대한 추모식, 기념식 등을 주관하거나, 관련한 문화 행사, 국제학술대회 등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2011년도에도 독립유공자, 건국유공자 등에 대한 기념사업이 확정하여 진행할 예정이다.

〈표 Ⅲ-13〉 국가보훈처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 빈도	지원액합계	전체지원액 대비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23	1,694,500	99.8%	73,674	238,467
시민 및 변호단체	1	3,000	0.2%	3,000	.
합계	24	1,697,500	100.0%	70,729	233,671

〈표 Ⅲ-14〉 국가보훈처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프로그램 목적	지원 빈도	지원액합계	전체지원액 대비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24	1,697,500	100.0%	70,729	233,671
합계	24	1,697,500	100.0%	70,729	233,6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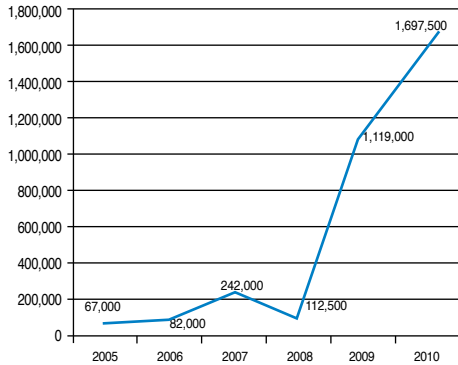
국가보훈처의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은 특별한 역사적 상황과 이슈에 따라 변동의 폭이 크게 나타난다. 특히 2007년 지원예산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이 시기에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 보조가 상당히 늘었고, ‘헤이그 특사 순국 100주년 기념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또한 2009년에는 전년 예산의 9배가량이 증액되는데, ‘류관순 열사 순회공연’에 따른 예산 편성, ‘김구 선생 서거 60주년 기념식’, ‘임시정부수립 90주년 기념사업’, ‘안중근 의사 기념사업’ 지원의 증액에 기인한다. 2010년도에는 청산리대첩 90주년 기념 사업비 지원, 광복군 창설 70주년 기념 사업비 지원 등의 기념일에 대한 예산 지원이 추가되고, 더 많은 독립유공자 기념회에 대한 지원이 소액 진행되면서 예산이 51.7%가량 증액되었다. 국가보훈처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국가의 독립 등과 관련한 역사적 사건과 관련한 기념사업의 시기적 발생에 따라 변동의 폭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표 Ⅲ-15〉 국가보훈처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5~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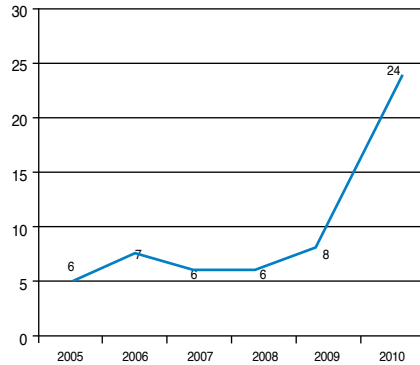
(단위: 천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원기관수	5	7	6	6	8	24
지원총액	67,000	82,000	242,000	112,500	1,119,000	1,697,500
전년대비 증감	-	22.4%	195.1%	-53.5%	894.7%	51.7%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변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단체수 변화



〈표 Ⅲ-16〉 2010년 국가보훈처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명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문화와 예술	(사)건국대통령이승만박사기념사업회	기념행사 등 사업비 일부 보조
	(사)고당조만식선생기념사업회	기념행사 등 사업비 일부 보조
	(사)단재신채호선생기념사업회	기념행사 등 사업비 일부 보조
	(사)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기념행사 등 사업비 일부 보조
	(사)매한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기념행사 등 사업비 일부 보조
	(사)몽양여운형선생기념사업회	기념행사 등 사업비 일부 보조
	(사)민세안재홍선생기념사업회	기념행사 등 사업비 일부 보조
	(사)배설선생기념사업회	기념행사 등 사업비 일부 보조
	(사)백산안희제선생독립정신계승사업회	기념행사 등 사업비 일부 보조
	(사)백야김좌진장군기념사업회	청산리대첩 90주년 기념사업비 지원
	(사)산남의진기념사업회	기념행사 등 사업비 일부 보조
	(사)안동독립운동기념사업회	기념행사 등 사업비 일부 보조
	(사)안중근의사승모회	기념행사 등 사업비 일부 보조
	(사)안창남기념사업회	기념행사 등 사업비 일부 보조
	(사)여천홍범도기념사업회	기념행사 등 사업비 일부 보조
	(사)우사김규식선생기념사업회	기념행사 등 사업비 일부 보조
	(사)유관순열사기념사업회	기념행사 등 사업비 일부 보조
	(사)유석조병옥선생기념사업회	기념행사 등 사업비 일부 보조
	(사)장준하기념사업회	기념행사 등 사업비 일부 보조
	(사)철기이범석장군기념사업회	기념행사 등 사업비 일부 보조
(사)한국광복군동지회	광복군 창설 70주년 기념사업비지원	
(사)한민회	기념행사 등 사업비 일부보조	
(사)할버트박사 기념사업회	기념행사 등 사업비 일부 보조	
시민 및 변호단체	(사)3.1여성동지회	기념행사 등 사업비 일부 보조

5.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는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한 각계의 오랜 노력의 결실로 김대중 대통령이 집권하던 2001년에 설립된 국가 인권 현안을 다루는 중앙부처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관련 법령, 제도, 정책, 관행의 조사연구를 통하여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며, 국가기관 혹은 지자체, 법인, 단체, 사인(私人)에 의한 인권침해실태를 조사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며, 국민의 인권의식을 향상하기 위한 조사, 교육, 홍보를 실시하며, 국내외 인권단체와 협력을 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권단체협력사업'을 통하여 국민의 인권향상과 관련한 사업안을 공모하여 심사를 통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는 15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연간 1억 3,000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부처의 2010년 전체 결산액이 226억 9,711만원 정도라는 것을 고려할 때 전체 예산의 0.6% 정도를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지원받은 기관의 1/3은 주로 인권, 민주화, 여성단체 등 '시민 및 변호단체' 범주에 속하고 있었으며, 그 밖에는 성폭력상담소, 문화센터 등 '사회서비스' 범주에 속하는 경우도 26.7% 정도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의 60% 정도가 인권에 대한 옹호, 대변, 사회적 약자나 피해자에 대한 관심을 지니는 단체에 활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 검토해볼 때, 43.5%정도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권교육으로 분류가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하여 지원을 받은 단체의 리스트를 검토해보면, 대체로 소규모의 재정상태가 어려운 단체가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 개별 단체에서 받는 지원금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전혀 없었으며, 평균 지원 금액이 866만원 내외로 제한적이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원을 받는 단체로서는 정부의 보조만으로 사업진행을 위한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Ⅲ-17〉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 빈도	지원액합계	전체지원액 대비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2	19,097	14.7%	9,549	30
연구	1	5,767	4.4%	5,767	.
기타 건강서비스	1	9,527	7.3%	9,527	.
사회서비스	4	36,677	28.2%	9,169	746
긴급상황과 난민	2	16,207	12.5%	8,104	1,610
시민 및 변호단체	5	42,725	32.9%	8,545	2,022
합계	15	130,000	100.0%	8,667	1,536

〈표 Ⅲ-18〉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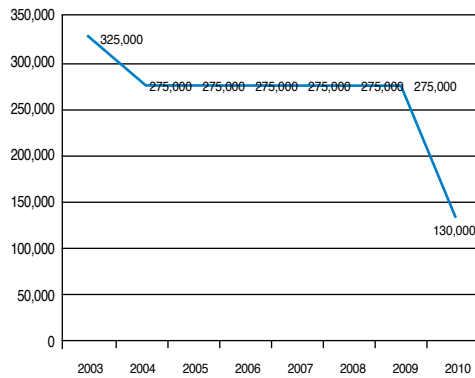
프로그램 목적	지원 빈도	지원액합계	전체지원액 대비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2	19,097	14.7%	9,549	30
기타건강서비스	1	9,527	7.3%	9,527	.
사회서비스	2	19,099	14.7%	9,550	29
긴급상황과 난민	2	16,207	12.5%	8,104	1,610
시민 및 변호단체	7	56,543	43.5%	8,078	1,949
기타(북한관련)	1	9,527	7.3%	9,527	.
합계	15	130,000	100.0%	8,667	1,536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협력사업’ 예산은 ‘시민실천프로그램’과 ‘인권단체 협력사업’이 통합된 2005년 이래 2억 7,500만원으로 동결되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2010년에는 인권단체협력사업 지원액이 대폭 감액되어 1억 3천만원을 15개 기관에 지원하도록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도에도 동일한 수준에서 인권단체협력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9〉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2003~2010년)

	2003	2004	2005	2006~2009	2010
시민실천 프로그램	125,000	125,000	125,000	-	
인권단체 협력사업	200,000	150,000	150,000	275,000	130,000
인권단체 협력사업 지원 대상 단체수	자료 미확보	자료 미확보	20개 단체	매년 29~33개 단체	15개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변화



〈표 Ⅲ-20〉 2010년 국가인권위원회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문화와 예술	마포공동체라디오	작은 목소리 큰 울림-인권 라디오 공익광고 제작 프로젝트
	이주노동자의방송	제5회 이주노동자 영화제
연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대전지소	인권감수성 키우기 UCC 창작 교실
기타건강 서비스	한국이주민건강협회	인권의 눈으로 바라 본 이주아동·청소년의 건강권-이주아동, 청소년 건강권 증진을 위한 심포지엄과 캠페인 Health Up! Dream Up!
	광주전남 북한이주민지원센터	청소년 & 대학생 인권익식 증진을 위한 남북 자유 인권 학교 '함께 여는 고른 누리'
사회 서비스	북한이주민지원센터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자원봉사자 인권교육
	새터민 청소년 생활 공동체 우리 집	새터민 청소년 남한사회 적응교육 프로그램(삶의 통일, 사람의 통일)
	청소년 희망공동체숲	청소년 인권영상 제작단
긴급상황 및 난민	난민인권센터	난민을 위한 심리상담 및 실태조사
	노숙인복지와인권을 실천하는사람들	홈리스들의 만남의 장-주말 배움터
시민 및 변호단체	성 인종차별반대 공동행동 (대표 언니네트워크)	성 인종차별 사례 조사와 인식개선 사업
	장애물없는 생활환경 시민연대	찾아가는 장애인 인권학교, 2010년도 건축학과 순회교육
	전북인권교육센터	찾아가는 인권도서관 문화마당-무지개 인권축제
	참여론대구시민연대	'인권의 눈으로 본 언론' 교육 및 '인권침해 언론보도' 사례집 발간
	한국HIV/AIDS 감염인연대	HIV/AIDS 감염인 인권지원 network "아름다운 친구 만들기"

6.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부패방지과 국민의 권리보호 및 구제를 위하여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2008년 2월말에 새롭게 탄생한 기관이다. 따라서 이 부처는 과거 국민고충처리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해왔던 일을 부처에 속한 개별국(個別局)에서 역할을 나누어 그대로 수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중심으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권익제도기획관을 두고 있으며, 하위 부서로 기획조정실 이외에 고충처리국, 부패방지국, 행정심판국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부처는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공직사회 부패 예방, 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행정쟁송을 통하여 행정관청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주요 업무이다.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는 4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연간 1억 2천만원의 지원을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본 백서 작업에 포함된 정부부처 중 가장 작은 규모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재정지원을 하는 부처로 나타났다. 이 부처의 2010년 전체 결산액이 608억여원 정도라는 것을 고려할 때 전체 예산의 0.2% 정도를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지원받은 단체는 한국청소년회의소, 한국어성단체협의회,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 '반부패를 위한 국민운동'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평균 3천만원 정도의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2011년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 신뢰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일부 확정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교육활성화를 위한 트러스트 스쿨 운동, 투명신뢰사회구현을 위한 지방의원반부패 청렴서약 사업, 어린이, 청소년, 여성을 대상으로 한 청렴/투명성 의식 증진을 위한 사업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표 Ⅲ-21〉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 빈도	지원액합계	전체지원액 대비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사회서비스	1	30,000	25.0%	30,000	.
시민 및 변호단체	2	50,000	41.7%	25,000	-
정치조직	1	40,000	33.3%	40,000	.
합계	4	120,000	100.0%	30,000	7,071

〈표 Ⅲ-22〉 국민권익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프로그램 목적	지원 빈도	지원액합계	전체지원액 대비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시민 및 변호단체	3	80,000	66.7%	26,667	2,887
정치조직	1	40,000	33.3%	40,000	.
합계	4	120,000	100.0%	30,000	7,071

〈표 Ⅲ-23〉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사회서비스	한국청소년회의소	청렴 신뢰회복 범국민운동
시민 및 변호단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더 큰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청렴성 향상 국민운동
	홍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전국투명지킴이사업
정치조직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투명신뢰사회구현을 위한 6.2지방선거 청렴성 서약 및 공약화 사업

7. 국토해양부

국토해양부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국토환경을 조성하고, 국토·해양공간을 기획·관리하여 편리한 교통물류 서비스를 제공하여 경제활동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기획과 사업을 운영하는 중앙 부처이다. 국토해양부는 제1차관을 중심으로 주택 토지, 건설 및 수자원, 국토 개발과 관련한 사무를, 제2차관을 중심으로 교통, 물류, 항공, 해양 정책과 관련된 사무를 수행하고 있다.

2010년, 국토해양부에서는 13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연간 37억 9천여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다고 정보공개요구에 답변하였다. 이 부처의 2010년 결산액이 41조 134억원 정도(일반회계계정 예산과 도로, 철도, 항만, 국가균형발전 등을 처리하는 특별회계계정 예산을 포함)라고 할 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정도로 미미한 비중을 차지한다.

2010년, 국토해양부에서는 ‘한국교통장애인협회’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공공안전-법과법률서비스 분야)에 7억 9천만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해상왕장보고 재조명 평가사업을 위한 4개 과제에 12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다. 나머지 지원금은 한국극지연구진흥회, 대한건축학회,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한국조경학회, 한국콘크리트학회 등 다양한 전문 직업단체나 연구단체에 전달되거나, 한국해양소년단연맹 등 해양문화단체에 지원되고 있다. 2011년도에도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양문화보급을 위한 지원을 위해 해양문화재단, 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한국해양소년단연맹에 총 23억 8천만원의 예산 지원을 검토하고 있으며, 교통장애인협회에 장애인예방실천사업 등에 7억 9천여만원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그 밖에 해양법학회나 건설/토목/교통관련 학회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국토해양부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8년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11억 5천만원을 지원하였고, 2009년에는 11억 9천만원을 지원하여 지원액의 변동은 3.7%정도로 크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2010년도에 접어들어 그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총액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해상왕장보고 재조명 평가사업이 추가되었으며, 지난 번 정보공개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던 다양한 전문 직업단체에 대한 지원예산이 금년에는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근거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표 Ⅲ-24〉 국토해양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 빈도	지원액합계	전체지원액 대비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3	2,140,000	56.4%	713,333	613,379
연구	8	560,000	14.8%	70,000	73,485
사회서비스	1	300,000	7.9%	300,000	.
시민및번호단체	1	793,000	20.9%	793,000	.
합계	13	3,793,000	100.0%	291,769	404,986

〈표 Ⅲ-25〉 국토해양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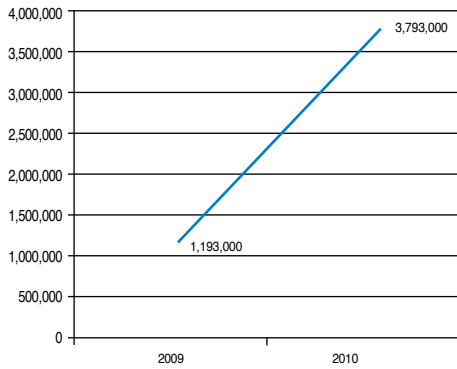
단체범주	지원 빈도	지원액합계	전체지원액 대비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3	2,140,000	56.4%	713,333	613,379
기타교육	1	250,000	6.6%	250,000	.
연구	7	310,000	8.2%	44,286	11,339
사회서비스	2	1,093,000	28.8%	546,500	348,604
합계	13	3,793,000	100.0%	291,769	404,986

〈표 Ⅲ-26〉 국토해양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9~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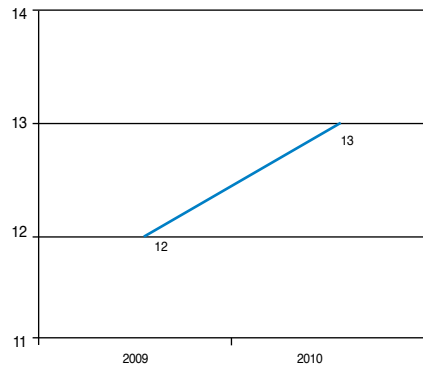
(단위: 천원)

연도	2009	2010
지원기관수	12	13
지원총액	1,193,000	3,793,000
전년대비 증감	-	217.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변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단체수 변화



〈표 Ⅲ-27〉 국토해양부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문화와 예술	(사)이순신리더쉽연구회	총무공 학술연구 및 홍보사업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해상왕장보고 재조명, 평가사업 4개 과제 11개 세부추진계획
	(재)해양문화재단	해양문화행사 및 교육사업, 해안누리길 홍보 지원
연구	국제법학회	해양법분야 국제학술대회지원(국내)
	국제해양법학회	해양법분야 국제학술대회지원(국외)
	대한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한국강구조학회	강구조공사 표준시방서 개정
	한국극지연구진흥회	극지과학 홍보 및 교육
	한국조경학회	조경설계기준 개정
	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 개정
한국콘크리트학회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개정	
사회서비스	한국해양소년단연맹	해양소년단 전국대회 및 해양훈련장비 구입
시민 및 변호단체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장애예방실천사업, 장애예방홍보사업, 장애인 복지사업 등

8.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금융 산업의 선진화와 금융 시장의

안정,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 위원회는 다음의 세 가지 정책목표를 중점과제로 설정하였다. (1)시장불안요인에 선제 대응하고 실물경제 지원강화에 주력한다. (2)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서민금융을 내실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3)금융시스템을 선진화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충하도록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하여 금융감독원에 대한 감독과 지도업무를 수행하고 금융관련 주요사항을 심의 의결을 하는 역할을 하며, 증권 선물시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업무를 수행한다. 조직은 위원장, 부위원장 이외에 기획조정관, 금융정책국, 금융서비스국, 자본시장국으로 나뉘어 업무를 수행한다.

2010년, 금융위원회는 2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연간 4억 7천만원 내외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부처의 2010년 전체 결산액이 3조 1,464억원 정도라는 것을 고려할 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금융위원회를 통해 지원받은 단체는 보험연수원, 금융연수원이며 사업의 목적은 실무금융 전문 인력 양성으로 되어 있다.

〈표 Ⅲ-28〉 금융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 빈도	지원액합계	전체지원액 대비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기타교육	2	470,721	100.0%	235,361	63,038
합계	2	470,721	100.0%	235,361	63,038

〈표 Ⅲ-29〉 금융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프로그램 목적	지원 빈도	지원액합계	전체지원액 대비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기타교육	2	470,721	100.0%	235,361	63,038
합계	2	470,721	100.0%	235,361	63,038

〈표 Ⅲ-30〉 금융위원회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기타교육	금융연수원	실무금융전문인력양성
	보험연수원	실무금융전문인력양성

9.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는 2008년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앙정부의 역할을 축소, 통합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정부조직법이 개정, 공포되어 기존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을 운용하는 기획예산처 만나 개편된 부처이다. 기획재정부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중·장기 경제사회발전방향 및 연차별 경제정책방향의 수립과 총괄 조정, (2)전략적인 자원 배분과 배분된 예산의 성과평가, (3)조세정책 및 제도의 기획·입안 및 총괄·조정, (4)국고, 국유재산, 정부회계, 국가채무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관리 총괄, (5)외국환 및 국제금융에 관한 정책의 총괄, (6)대외협력 및 남북경제교류협력 증진, (7)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관리 및 감독이다. 기획재정부는 7개국(경제정책국, 정책조정국, 국고국, 재정정책국, 공공정책국, 국제금융국, 대외경제국), 18개의 관·단, 91개의 과로 구성된 큰 부처이다. 또한 관련 소속기관으로 복권위원회 사무처를 두고 있으며 외청으로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두고 있다.⁵

2010년, 기획재정부는 3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연간 107억 8,900만원 내외의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부처의 외청을 제외한 2010년 전체 결산액이 13조 2,168억원 정도라는 것을 고려할 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0.1%에 미치지 못한다. 기획재정부를 통해 지원받은 단체는 한국경제교육협회, 국제금융센터,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이며 사업의 목적은 경제교육, 국제금융정보분석, 물가조사 등으로 나타났다. 2011년초 기획재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계획을 살펴본 결과, 기획재정부는 이들 3개의 단체들에 총 100억원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결정하여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의 지원규모가 예상된다.

5 http://www.mosf.go.kr/_info/info02/download/mosf_brochure.pdf

〈표 Ⅲ-31〉 기획재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 빈도	지원액합계	전체지원액 대비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기타교육	1	8,040,000	74.5%	8,040,000	.
연구	1	2,000,000	18.5%	2,000,000	.
법과법률서비스	1	749,000	6.9%	749,000	.
합계	3	10,789,000	100.0%	3,596,333	3,898,831

〈표 Ⅲ-32〉 기획재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프로그램 목적	지원 빈도	지원액합계	전체지원액 대비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기타교육	1	8,040,000	74.5%	8,040,000	.
연구	1	2,000,000	18.5%	2,000,000	.
법과법률서비스	1	749,000	6.9%	749,000	.
합계	3	10,789,000	100.0%	3,596,333	3,898,831

〈표 Ⅲ-33〉 2010년 기획재정부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기타교육	한국경제교육협회	경제교육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연구	국제금융센터	국제금융시장 및 외환시장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
법과 법률서비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특별물가조사 및 지역현안조사

10.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과 식품산업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2008년 정부조직 개편으로 기존의 농림부에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업과 보건복지부의 식품산업 업무를 통합하여 확대 개편되었다. 이 부처도 복수차관제를 도입하여 제1차관은 기획과 정책을 총괄하고 제2차관은 농수산 식품 등 생산 분야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요한 임무는 '농림, 수산, 축산, 식량, 농지, 수리, 식품산업진흥, 농어촌개발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하면 5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11개의 사업에 대하여 연간 9억 5천만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의 결산액인 17조 6,533억원에 비하자면 상당히 미미한 액수라 할 수 있다. 이는 전년도 정보공개청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작년 백서작성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는 111개의 민간단체에 총 1,143억원이상의 지원을 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와 비교했을 때 2010년도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응답 시 담당자가 동일한 기준에서 자료를 취합하였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한국여성농업인중앙협의회,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전국농업기술자협회, 신지식농업인회, 한국수산업 경영인증중앙연합회에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건당 평균 8,681만원정도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정보공개 시 포함되었던 농수산업체 소득보전을 위한 다양한 물가조절, 수급조절사업지원이 제외되었기 때문에 지원액이 급감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2009년도에는 낙농진흥회에 원유수급조절사업에 대한 지원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 단체에 연간 426억 5천만원(전체 농림수산식품부 지원액의 37.2%)을 할당하여 지원하였다. 또한 농어촌 지역개발을 위한 각종 단체와 이들의 자조단체에 자조금 형태로 385억원 정도(33.6%)를 지원하고 있었다. 이를 올해에도 반영한다면 농수산업 관련단체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 분류를 살펴보면 평균적으로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는 영역은 농림어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수산업경영인 지원, 농림수산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등으로 나타났으며, 도농교류, 도농연대교육 등 체험식 선농(先農)행사도 포함될 수 있다. 2009년도의 정보공개자료를 토대로 놓고 보자면, 농림수산식품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은 농어민, 축산인 당사자의 생계와 소득에 직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영역에 대한 지원 비중이 높다는 점이 특징이지만, 2010년도 정보공개자료를 토대로 살펴보면 농림어업인 단체 지원, 이들에 대한 교육이 중심이 되는 지원을 중심으로 자료가 취합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정보공개청구에서 제출된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의 주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 농림수산물부는 농어업인단체와 연구기관에 대한 농업인교육공모사업(25억원), 농어업인단체를 대상으로 한 도농교류협력사업(16억원), 그 밖에 각종 농어업 경영인에 대한 지원사업(6억2천만원)에 대한 예산을 확정하여 연속성 있는 사업의 형태로 진행된다고 보고하였으며, 그 외에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이 다양한 부서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표 Ⅲ-34〉 농림수산물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 빈도	지원액합계	전체지원액 대비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경제사회지역개발	2	46,000	4.8%	23,000	16,971
기업·직업단체·노조	9	909,000	95.2%	101,000	82,804
합계	11	955,000	100.0%	86,818	80,682

〈표 Ⅲ-35〉 농림수산물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프로그램 목적	지원 빈도	지원액합계	전체지원액 대비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레크리에이션	2	56,000	5.9%	28,000	24,042
경제사회지역개발	1	100,000	10.5%	100,000	.
고용 및 훈련	5	239,000	25.0%	47,800	41,342
기업·직업단체·노조	3	560,000	58.6%	186,667	80,829
합계	11	955,000	100.0%	86,818	80,682

농림수산물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2008년에서 2009년 사이에 23억원 정도 즉 24.8%나 인상되었다. 이러한 인상은 농촌정보문화센터를 비롯한 선농증진 사업, 농어업 농어촌 가치 소비촉진 홍보, 농축산 가구에 대한 지원이 확장된 결과이다. 이 시기에 낙농진흥비, 각종 자조금 기금, 축산농가 생산량 조절 등 농어촌 지역의 생산 농가에 대한 지원액이 다소 증가되었다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2010년도에는 정보취합 시 과거에 포함되었던 지원내역이 상당수 누락되면서 지원총액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료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표 Ⅲ-36〉 농림수산식품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2007~2010년)

(단위: 천원)				
연도	2007	2008	2009	2010
지원기관수	110	115	111	11
지원총액	88,144,200	91,601,800	114,352,300	955,000
전년대비 증감		3.9%	24.8%	-99.2%

〈표 Ⅲ-37〉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경제, 사회, 지역사회개발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농촌체험(신나는어린이농촌체험)
	신지식농업인회	감와인 제조과정, 매실가공 실무교육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경영인대회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경영인교육훈련
	(사)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	경영인해외연수
기업 및 노조	전국농업기술자협회	도시민(소비자)생활농업교육, 말산업전문가 양성과정, 고품질 조경수재배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	농촌체험(농촌알리기)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	혁신인재비즈니스 아카데미과정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	창업마케팅경영회계과정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	농식품가공리더과정
	한국여성농업인 중앙연합회	전업농 교육

11.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은 농촌진흥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소속으로 설립된 중앙부서이다. 농촌진흥법 제1조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국가의 기본 산업인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험연구사업,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 관련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등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농촌진흥청의 조직은 기획조정관 이외에, 연구정책국, 농촌지원국,

기술협력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밖에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원 등을 부설 조직으로 두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16억 9천만원 정도로 3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0년에 농촌진흥청은 7,446억원 정도의 세출 결산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전체 예산의 0.2% 정도의 예산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주로 한국4-H본부,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생활개선중앙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 2010년에는 한국4-H본부에 7억 4,100만원,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에 6억 8,900만원, 생활개선중앙회에 2억 6천만원을 지원하였다.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은 후세대 농업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표 Ⅲ-38〉 농촌진흥청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 빈도	지원액합계	전체지원액 대비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사회서비스	1	741,000	43.8%	741,000	.
경제사회지역개발	1	260,000	15.4%	260,000	.
기업·직업단체·노조	1	689,000	40.8%	689,000	.
합계	3	1,690,000	100.0%	563,333	263,978

〈표 Ⅲ-39〉 농촌진흥청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프로그램목적	지원 빈도	지원액합계	전체지원액 대비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사회서비스	1	741,000	43.8%	741,000	.
경제사회지역개발	1	260,000	15.4%	260,000	.
기업·직업단체·노조	1	689,000	40.8%	689,000	.
합계	3	1,690,000	100.0%	563,333	263,978

농촌진흥청의 민간단체 지원액은 앞에서 제시한 세 단체에 대한 개별 지원액에 따라 변동이 심하다. 2005~2009년까지의 변동을 살펴보면 2007년 지원액이 28.6%나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원액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지원의 형태는 한국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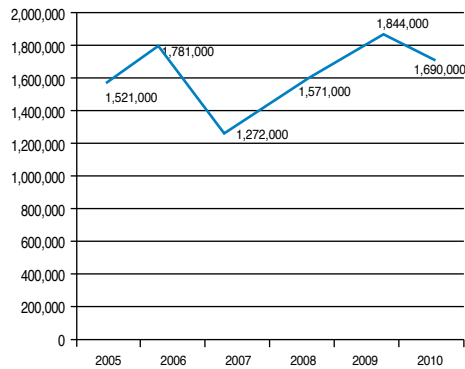
H본부에 대한 지원이다. 2006년, 2008년에 시설개보수 관련하여 각각 3억원씩 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2007년에는 예산이 지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2007년 농림수산식품부의 지원내역을 보면 한국4-H본부와 관련하여 4-H활동청소년장학금, 해외연수 지원 명목으로 1억 8천여만원을 지급했음을 알 수 있다. 2009년에는 지원액이 17.4%인상되었는데, 한국4-H본부의 예산상 변동이 작았던 것을 고려해본다면, 한국농촌지도자중앙협의회에 농민회관 설비 및 관리명목으로 1억 9천여만원의 지원이 있었으며, 생활개선중앙회에 여성비즈니스활동지원 명목으로 5천만원의 지원된 것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0년도에 들어 지원 금액이 소폭 감액된 것은 민간단체의 설비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관련 지원액을 삭감하여 감액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농촌진흥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는 예산이 더욱 감액되어 이들 세 단체에 대한 지원금 총액이 15억원선으로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표 Ⅲ-40〉 농촌진흥청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5~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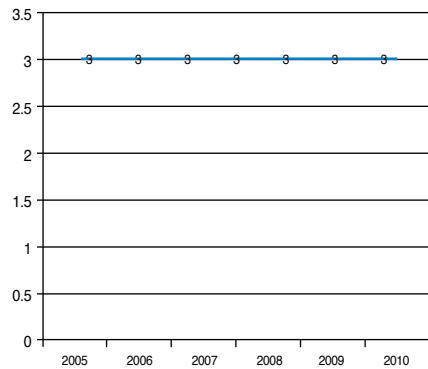
(단위: 천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원기관수	3	3	3	3	3	3
지원총액	1,521,000	1,781,000	1,272,000	1,571,000	1,844,000	1,690,000
전년대비 증감	-	17.1%	-28.6%	23.5%	17.4%	-8.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변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단체수 변화



〈표 III-41〉 2010년 농촌진흥청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사회서비스	(사)한국4H본부	청소년 농심배양 및 농업·농촌 후계농업인력 양성
경제, 사회, 지역사회개발	(사)생활개선중앙연합회	전국적 지역조직체를 활용, 후계여성 농업인력 양성 및 선진농업기술 실천을 위한 사업추진
기업 및 노조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농업·농촌을 선도하는 핵심지도자 양성

12. 문화재청

문화재청은 문화관광부의 산하의 외국(外局)으로 편성되어 있다가 정부조직법 개편으로 1999년 승격된 부처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여 민족문화를 계승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기본임무로 하는 부처이다. 문화재청은 문화재를 지정하고 등록하고, 문화재의 변경과 발굴을 허가하고, 문화재를 보존·육성하며, 각종 주요 유적지를 직접 관리하고, 우리 문화재를 세계에 알리고, 남북 문화재를 교류를 모색하며, 문화재를 조사 연구한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은 기획조정관 이외에 문화재정책국, 문화재보존국, 문화재활용국으로 나누어 업무를 처리하고 있으며, 그 밖에 주요 문화재별로 관리소를 두고 있고, 박물관과 중앙과 지방에 연구소를 두고 있다.

문화재청의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174억 4천만원 정도로 28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2010년 현재 문화재청의 결산액이 5,020억원 정도로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 예산의 3.5% 정도의 예산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활용된다고 볼 수 있다.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는 부처라 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주로 문화/역사단체에 대한 지원 빈도가 높는데 전체 28건의 지원 중에 12건의 지원이 문화와 예술분야의 단체에 지원이 되었다. 지원액도 136억원 정도로 전체 지원액 대비 77.9%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대한 지원금이 120억 9천여만원 정도로 전체 정부 지원액의 70%정도나 집중되었다. ‘재단법인 한국문화재보호협회’라는 이름으로

1980년에 설립된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전통의례재현사업, 전통예술공연, 전통공예전시, 전통문화체험, 문화유산교육, 도서출판, 전통음식관광자원화사업, 한국의집전통혼례, 전통공예상품,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센터, 문화교류, 문화재조사연구, 세시절행사(설, 정월대보름, 입춘, 단오, 추석, 동지)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경우 2011년도에도 재단운영경비와 소규모 발굴비 명목으로 120억 1,9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다. 또한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불교문화재연구소’가 각각 20억원, 11억원의 고액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외국에 반출된 문화재환수 등을 위한 국제행동단체들에 대한 지원이 13억 6,900만원(총13건)이 이루어졌으며, 문화재 안내를 위한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안내 등에 대한 지원이 5천만원 이루어졌다.

〈표 Ⅲ-42〉 문화재청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 빈도	지원액합계	전체지원액 대비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12	13,588,000	77.9%	1,132,333	2,061,888
연구	6	3,663,000	21.0%	610,500	804,357
시민 및 변호단체	1	15,000	0.1%	15,000	.
국제적행동	9	178,000	1.0%	19,778	12,696
합계	28	17,444,000	100.0%	623,000	1,449,904

〈표 Ⅲ-43〉 문화재청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프로그램목적	지원 빈도	지원액합계	전체지원액 대비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9	11,893,000	68.2%	1,321,444	2,251,211
연구	3	4,125,000	23.6%	1,375,000	1,506,444
고용 및 훈련	1	7,000	0.0%	7,000	.
기타자선매개 및 자원봉사증진	2	50,000	0.3%	25,000	14,142
국제적행동	13	1,369,000	7.8%	105,308	290,371
합계	28	17,444,000	100.0%	623,000	1,449,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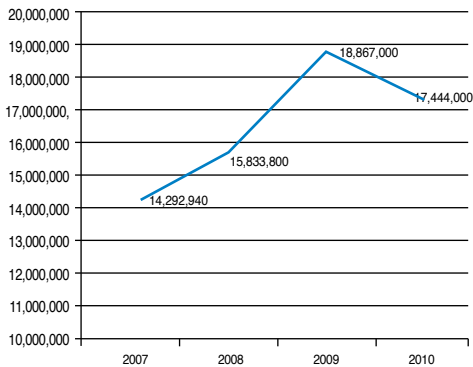
문화재청의 정부 지원액은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2010년에 상당부분 감액되었다. 2007년 이래 연간 10.8~18.3%증가하면서, 2년 동안 지원액이 44억원 가량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대한 지원금 증액으로 상당부분 설명이 가능하다. 2007년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의 연간 지원액은 90억 8천만원 정도였다가, 2008년에 111억 3천만원으로 22.7% 증액 되었으며, 2009년에는 140억 8천만원으로 다시 26.5% 증액되었다. 즉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대한 지원은 2년 동안 50억원 정도, 즉 55%나 증액되었다. 2010년도에는 지원액이 소폭 감액되었는데,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대한 지원액이 전년대비 20억원 정도 감액되는 대신에 발굴연구 등에 대한 지원이 증액되면서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14억원 정도의 감액되었다. 참고로, 문화재청의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에는 총 180억 6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표 Ⅲ-44〉 문화재청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2007~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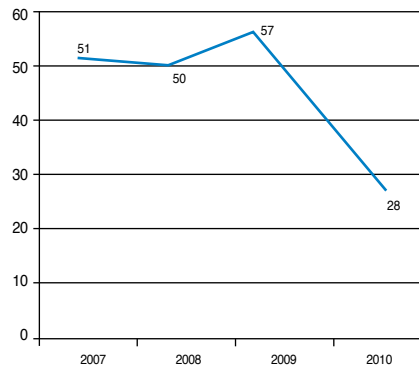
연도	2007	2008	2009	2010
지원기관수	51	50	57	28
지원총액	14,292,940	15,833,800	18,867,000	17,444,000
전년대비 증감	-	10.8%	19.2%	-7.5%

(단위: 천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변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단체수 변화



〈표 Ⅲ-45〉 2010년 문화재청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문화와 예술	(사)한국고택문화재소유자협의회	중요민속문화재(전통가옥) 경상보수비 지원
	(재)한국문화재보호재단	소규모발굴비 지원
	고인돌사랑회	고인돌 홈페이지 구축
	남북역사학자협의회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전주이씨대동종약원	조선왕릉 제향행사 지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지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캄보디아 문화재보존처리 장비 지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몽골 무형문화재 보호제도 구축 지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아태무형유산센터설립운영지원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북악산서울성곽 개방운영지원
	한국의재발견	궁궐안내 자원봉사단체 지원
	연구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사)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협회		한국문화재조사연구기관 협회 지원
(재)불교문화재연구소		폐사지 학술조사
국제문화재법연구회(구, 한국국체사법연구회)		문화재 환수 관련 자료집 발간 및 국제문화재법 연구회 운영
여성문화유산연구회		여성문화재지킴이 스토리텔러 과정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센터		제6회 문화재환수협의회 개최
시민 및 변호단체	서울KYC	궁궐안내 자원봉사단체 지원
국제적 행동	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후원회	일본 공내청 소장 조선왕조의궤 환수여건 조성
	문화재제자리찾기운동후원회	아델리아 홀 문건 조사 및 국제심포지엄 참가 지원
	연지사종 반환 국민대표	연지사종 학술조사보고서 발간
	연지사종 반환 국민대표	제5회 문화재환수협의회 개최
	이천오충석탑 되찾기 범시민운동 추진위원회	이천오충석탑 환수활동 및 국제심포지엄 개최 지원
	이천오충석탑 되찾기 범시민운동 추진위원회	일본 오쿠라 호텔 소재 이천오충석탑 환수활동 지원
	이천오충석탑 되찾기 범시민운동 추진위원회	문화재 반환 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 지원
	이코모스한국위원회	세계유산 관련 국제활동 지원
	이코모스한국위원회	2010 세계유산포럼 국제워크숍 개최 지원

13.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향유기반을 확대하고, 콘텐츠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관광레저 산업을 육성하고, 우리 문화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국가의 문화, 체육, 관광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명의 차관을 두고 기획조정실을 위시하여 문화콘텐츠사업실, 문화예술국, 관광산업국,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중무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홍보지원국,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소속기관은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정책방송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12억 6,359만원정도로 13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결산액이 1조 9,189억원 정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미미한 수준의 지원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주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빈도가 높는데 전체 13건의 지원 중에 9건의 지원이 문화와 예술분야의 목적을 지니고 지원이 되었다. 지원액은 9억원 내외로 전체 지원액 대비 71.7%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에 대한 지원이 4억여원으로 나타났으며, 한국도서관협회 등 도서관문화보급을 위한 지원액이 5억 4천만여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는 개천절 사업에 대한 지원, 청소년 치어리딩 페스티벌에 대한 지원, 한국종교연합선도기구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의 2011년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사항을 살펴보면 특기할 만한 사항이 관찰된다. 장애인단체에 장애인대체자료 제작 작업에 14억원을 투입하고, 도박중독치유 지역 센터에 6억원을 투입하는 점이다.

〈표 Ⅲ-46〉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 빈도	지원액합계	전체지원액 대비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8	1,035,600	82.0%	129,450	142,873
레크리에이션	1	29,997	2.4%	29,997	.
연구	1	20,000	1.6%	20,000	.
시민 및 변호단체	1	30,000	2.4%	30,000	.
종교집회 및 단체	2	148,000	11.7%	74,000	76,368
합계	13	1,263,597	100.0%	97,200	120,108

〈표 Ⅲ-47〉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프로그램목적	지원 빈도	지원액합계	전체지원액 대비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9	905,600	71.7%	100,622	139,070
레크리에이션	1	29,997	2.4%	29,997	.
시민 및 변호단체	1	180,000	14.2%	180,000	.
종교집회 및 단체	2	148,000	11.7%	74,000	76,368
합계	13	1,263,597	100.0%	97,200	120,1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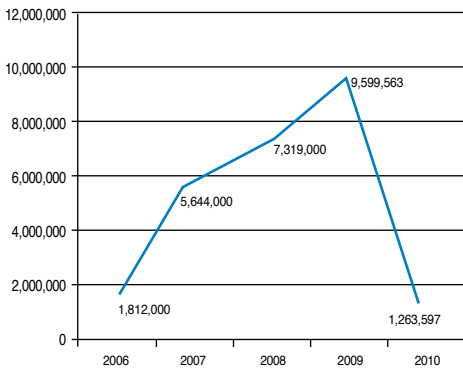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원단체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지원액의 규모는 매년 그 이상의 비율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2007년 증가폭이 상당히 큰 편이었는데, 그 이유는 2007년에 ‘한국문화원연합회’를 통하여 진행된 ‘문화역사마을’ 건립에 22억 5천만원이 지원되면서 인상폭을 견인했다고 볼 수 있다. 그 이후에도 매년 27억원~30억원의 지원금이 집행되었다. 하지만 이번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보공개에서는 문화역사마을 건립 등 사업에 대한 지원현황 등이 취합되지 않아 지원건수가 13개로 줄게 되면서 지원총액도 상당히 줄어들게 되었다. 따라서 자료해석에 주의가 요구된다.

〈표 Ⅲ-48〉 문화체육관광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6~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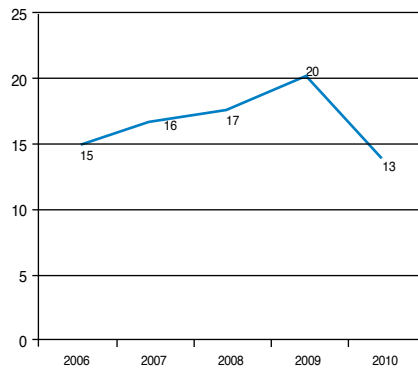
(단위: 천원)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원기관수	15	16	17	20	13
지원총액	1,812,000	5,644,000	7,319,000	9,599,563	1,263,597
전년대비 증감	-	211.5%	29.7%	31.2%	-86.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변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단체수 변화



〈표 Ⅲ-49〉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문화와 예술	(사)국립민속박물관	전통문화지도사 양성교육 사업 지원
	(사)국립민속박물관	외국인 한국전통문화체험 사업 보조금 지원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작은 도서관을 통한 다문화사회 인식개선 사업
	(사)한국도서관협회	한-몽 고대문화유산 보존협력 세미나, 워크숍
	(사)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도서관책 꾸러미 돌려보기
	(사)현정회	개천절 대체전 지원
	겨레얼살리기국민운동본부	2010년 겨레얼 살리기 정신문화사업 등 지원
레크리에이션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 관련자료 발간 및 보급, 도서관 이용활성화 및 사서자격증 발급업무 지원
	대한치어리딩협회	청소년 치어리딩 페스티벌
연구	(사)인천문화진흥연구원	아시아인들의 화합의 장 마련을 통해 이주민, 다문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계기 유도
시민 및 변호단체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2010년도 전통생활문화 보급사업
종교집회 및 단체	불교여성 개발원	G20 세계종교지도자회의의 지원
	한국종교 연합선도기구	2010년도 세계종교청년문화캠프 등 지원

14.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기술 등의 발전으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나아가 국민들이 보다 풍요로운 방송통신융합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직된 대통령 직속 합의제 행정기구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는 구(舊)방송위원회의 방송 정책 및 규제 기능과 구(舊)정보통신부의 통신서비스 정책과 규제 기능을 총괄하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보장하며, 방송과 통신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담당하는 주요 기능은 방송통신 융합정책의 수립과 융합서비스의 활성화 및 관련 기술 개발, 전파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전파자원의 관리, 방송통신정책의 수립과 방송통신 시장의 경쟁 촉진, 방송통신망의 고도화와 방송통신의 역기능 방지, 방송통신 이용자 보호정책의 수립과 방송통신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조사 및 분쟁 조정 등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34억 4,857만원으로 48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의 결산액이 3,326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해볼 때에, 전체 예산의 1% 정도의 예산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활용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상대적으로 시민 및 변호단체에 대한 지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주로 미디어교육 지원, 정보 소외자(장애인, 난청노인 등)에 대한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활용되었다. 하지만 총액으로 보면 21억 6,236만원으로 전체지원액의 6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평균지원액은 1,432만원 정도로 소액이었다. 빈도로 보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액이 많은 편인데, 주로 방송분야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전체 48건에 대한 지원 중에서 14건이 방송분야단체에 대한 지원이었지만, 전체 예산액의 7.9%로 소액이 활용되었다. 2011년도에도 방송통신위원회는 화면해설방송수신기보급, 미디어교육, 시청자권익증진활동, 난청용노인용수신기보급, 디지털유료방송콘텐츠 유통시스템 구축(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장애인기획사업 지원 등에 지원할 예정이다.

〈표 Ⅲ-50〉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 빈도	지원액합계	전체지원액 대비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14	425,130	12.3%	30,366	49,645
고등교육	1	36,082	1.0%	36,082	.
기타교육	2	36,310	1.1%	18,155	6,852
연구	6	243,786	7.1%	40,631	18,218
사회서비스	10	434,590	12.6%	43,459	57,983
환경	1	16,000	0.5%	16,000	.
고용 및 훈련	1	10,160	0.3%	10,160	.
시민 및 변호단체	11	2,162,362	62.7%	196,578	424,128
기업·직업단체·노조	2	84,150	2.4%	42,075	39,492
합계	48	3,448,570	100.0%	71,845	210,838

〈표 Ⅲ-51〉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프로그램목적	지원 빈도	지원액합계	전체지원액 대비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19	272,252	7.9%	14,329	6,041
초중등교육	1	14,150	0.4%	14,150	.
기타교육	1	23,000	0.7%	23,000	.
연구	14	471,482	13.7%	33,677	15,997
사회서비스	5	206,227	6.0%	41,245	41,110
환경	1	16,000	0.5%	16,000	.
시민 및 변호단체	6	2,245,459	65.1%	374,243	532,294
기업·직업단체·노조	1	200,000	5.8%	200,000	.
합계	48	3,448,570	100.0%	71,845	210,838

한편 방송통신위원회의 2008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406억원 정도로 66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지원하였다. 2009년과 비교해 보았을 때 지원단체의 수는 대폭 줄었으나, 지원액의 규모는 전년대비 4.4% 증액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얻은 자료와 비교해본다면 400억원 가까이 차이를 보인다. 이는 자료취합을 하는 담당자들의 인식의 차이에 의해 지난 정보공개에 포함된 단체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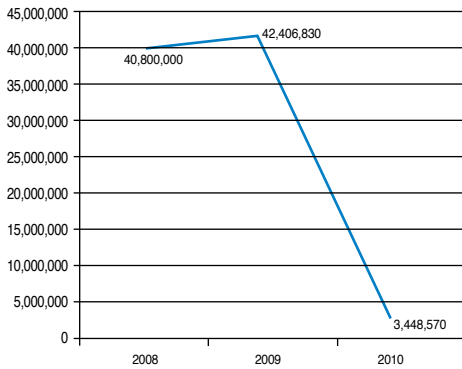
상당히 누락된 결과라 신중하게 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09년 백서에 포함된 ‘국제방송교류재단’의 ‘아리랑국제방송’ 지원금액이 247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한 내용이 누락된 것도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원인을 상당부분 설명한다.

〈표 Ⅲ-52〉 방송통신위원회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8~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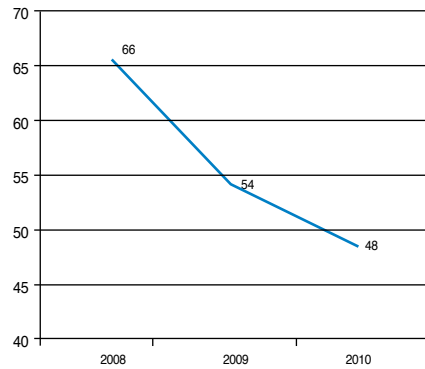
연도	2008	2009	2010
지원기관수	66	54	48
지원총액	40,600,000	42,406,830	3,448,570
전년대비 증감	-	4.5%	-91.9%

(단위: 천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변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단체수 변화



(표 III-53) 2010년 방송통신위원회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문화와 예술	(사)관악공동체라디오	미디어교육 '소리up'하라'
	(사)마포공동체라디오	라디오를 통한 공명, 소외계층 라디오 제작 교육
	(사)미디어영상교육진흥센터	미디어교육 '실버세대, 문화의 중심에 서다'(어르신 UCC)
	(사)제주영상위원회	지역 미디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사)청풍영상위원회	똑똑똑! 미디어 흔들어 깨우기
	부산영상포럼	전국 장애인방송현황 조사 및 정책제언
	성서공동체 르	공동체라디오 발전을 위한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인산미디어센터 미디코	시간을 달리는 카메라
	울산미디어문화네트워크	초등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 프로젝트 -이제는 미디어다
	인터넷문화협회	온 국민이 참여하는 바른 UCC 릴레이 캠페인
	전북영상협회	실버미디어 체험 프로그램
	전주시민미디어센터	평화마을 어린이미디어교실 '애들이 미디어로 함께 놀자!!'
	한국방송공사외(컨소시엄)	청소년네트켓 리더캠프 우리가 만드는 즐거운 인터넷 세상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디지털유료방송콘텐츠 유통시스템 구축 지원
고등교육	신문대학교산학협력단	장애인 방송접근권 확장을 위한 가이드라인 연구
기타교육	노들장애인아간학교	장애인의 방송접근 활성화를 위한 사례집단 운영 및 정책간담회 사업
	한국평생능력개발원	행복 공감 '실버영상기자단이 뜬다'
연구	(사)한국방송학회	미디어 중독 예방활동에 대한 교재개발
	미디어미래연구소	전파이용 규제비용의 원가분석 및 합리적인 재정운용 방안 연구
	미디어전략연구소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방송소외계층 범주 및 권익 개선방안 연구
	부산사회조사연구원	차상위층의 방송미디어 접근과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연구
	한국전자파학회	전파의 창의적 이용혁신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한국전자파학회	우주전파 변화로 인한 방송통신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대응체계 법제도 연구
사회서비스	(재)청소년폭력예방재단	몽교육 미디어야 놀자
	(재)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 보급사업
	(재)한국천주교살레시오회 돈보스코정보문화센터	소외청소년 이동 미디어 교육캠프 '꿈을 짚는 이동시네마 MC몽'
	강서사회복지회	다문화가정 구성원을 위한 멀티미디어 배우기
	돈보스코정보문화센터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만들기
	삼동청소년회	호남지역 시청자참여프로그램 시청자 참여현황 조사 및 타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시청자 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방안 연구
	인천서구 외국인사회복지센터	함께 사는 세상 만들기
	자연과청소년	도담도담 미디어 캠프
	한국국제나가족지원센터	장애인의 영상교육권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난청노인용 방송수신기 보급사업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환경	녹색미래녹색세상녹색지구	친환경성중심으로 보는 시청자 권익 보호제도 운영실태 및 만족도 조사
고용 및 훈련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네모로 그리는 동그란 세상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	중증장애인 전문영상인력 양성사업 '미디어 우리가 주인이다'
	(사)한국농아인협회	2010년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수신기 보급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을 위한 DVS수신기 보급 사업
	언론인권센터	미디어융합매체시대의 이용자권익 확대를 위한 정책연구
	인간교육실현학부모연대 제주지부	유해매체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조사 및 분석을 통한 "우리아이가 행복한 제주 만들기"
	인터넷윤리실천협의회	인터넷 윤리 전문학술지 발간
	진주시민미디어센터	뉴스, 교복을 입다
	클린콘텐츠 국민운동본부	웹진과SNS를 활용한 인터넷 클린콘텐츠 국민운동 온라인 캠페인
	학부모정보감시단	이용자의 시청TV이해와 불만유형 조사에 따른 정책제안 프로그램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미디어속 장애인의 날 역동 20년 실태조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IPTV 등 뉴미디어에서의 장애인방송접근권
	(사)한국디지털 컨버전스협회	학교(공교육)미디어 교육활동 지원
	기업 및 노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15. 법무부

법무부는 행정 각 부에 대한 법령 자문, 국가 송무의 수행 및 지휘·감독, 검찰 사무의 지휘·감독, 인권 옹호와 법률 구조, 범법자의 교정·교화, 출입국 관리 및 외국인정책과 국적 사무를 관장하는 부처이다. 이를 위하여 하부조직으로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등을 두고 있다. 관련한 부설 부직으로 법무연수원, 지방교정청,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치료감호소, 위치추적관제센터,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 지방교정청장 소속 하의 교도소·구치소 및 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등 229개 기관이 있다.

법무부의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5억 8,200만원으로 소년보호협회의 청소년자립생활관을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법무부의 주요 목적 중에서 범법자의

교정·교화에만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2010년 법무부 결산액이 2조 3,862억원인 것을 놓고 보았을 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0.1%미만으로 매우 미약하다.

〈표 Ⅲ-54〉 법무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프로그램 목적	지원 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사회서비스	1	582,000	100.0%	582,000	.
합계	1	582,000	100.0%	582,000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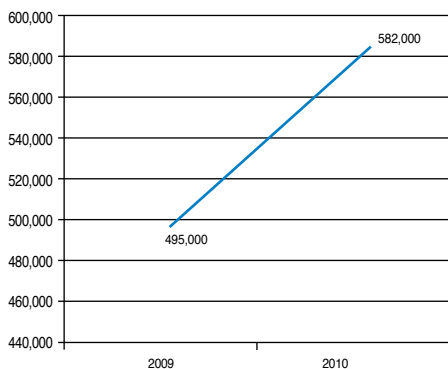
법무부의 소년보호협회 지원금 변동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도에 지원금을 17.8% 증액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2011년도에는 지원금을 1억원 증액시켜 지급시켜 점진적 인상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5〉 법무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9~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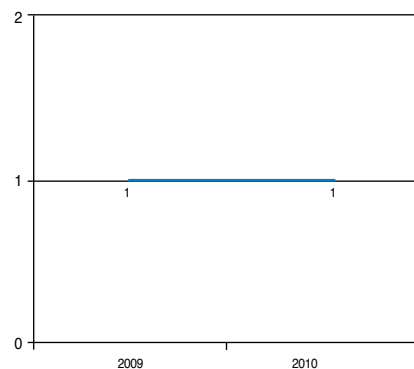
(단위: 천원)

연도	2009	2010
지원기관수	1	1
지원총액	495,000	582,000
전년대비 증감	-	17.6%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변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단체수 변화



〈표 Ⅲ-56〉 2010년 법무부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사회서비스	한국소년보호협회	청소년자립생활관 운영비

16.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빈곤, 질병, 노령 등 사회적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일자리와 균등한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 복지를 위한 맞춤형 보건·복지·가족 정책으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중앙 부처이다. 이를 위하여 장관을 중심으로 사회정책선진화 기획관을 두고, 기획조정실 이외에 보건 분야와 관련하여 보건의료정책실, 건강정책국, 보건산업정책국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분야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정책실, 장애인정책국, 저출산고령화정책실을 두고 있다. 정리하자면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보건정책, 복지정책을 총괄하는 중앙 부처이다.

보건복지부의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343억 2,300만원정도로 62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부처 중에 3번째로 큰 지원규모를 차지한다. 2010년 보건복지부의 세출결산액 20조 1,449억여원을 고려한다면, 전체 예산의 0.2% 정도의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활용되었다. 하지만 본 자료에는 보건복지부에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 사회복지시설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되는 금액이 제외되어 있음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고려할 경우에는 그 비중이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생각된다.

보건복지부는 주로 사회서비스 단체(27건), 시민 및 변호단체(12건)에 대한 지원 빈도가 높았다. 사회서비스 단체는 장애인복지단체, 노인복지단체 등을 비롯한 각종 사회서비스 단체를 포괄하며, 시민 및 변호단체는 노인 혹은 장애인 당사자 연합회, 각종 복지권을 위한 시민단체를 말한다.

보건복지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액을 본다면, 보건복지부 전체 지원액의 68.3%인 234억원 가량이 연구분야에 지원이 되었다. 이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대한 지원이었다. 보건복지부는 그 밖에 53억원 가량을

27개의 사회서비스 단체에 지원하고 있다.

〈표 Ⅲ-57〉 보건복지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 빈도	지원액합계	전체지원액 대비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1	10,000	0.0%	10,000	.
고등교육	1	10,000	0.0%	10,000	.
기타교육	1	40,000	0.1%	40,000	.
연구	5	23,435,000	68.3%	4,687,000	10,346,318
기타 건강서비스	4	1,723,000	5.0%	430,750	574,603
사회서비스	27	5,381,833	15.7%	199,327	272,719
시민 및 변호단체	12	536,000	1.6%	44,667	35,039
법과 법률서비스	1	10,000	0.0%	10,000	.
국제적행동	4	611,167	1.8%	152,792	40,952
종교집회 및 단체	1	30,000	0.1%	30,000	.
기업·직업단체·노조	5	2,536,000	7.4%	507,200	735,399
합계	62	34,323,000	100.0%	553,597	2,940,256

〈표 Ⅲ-58〉 보건복지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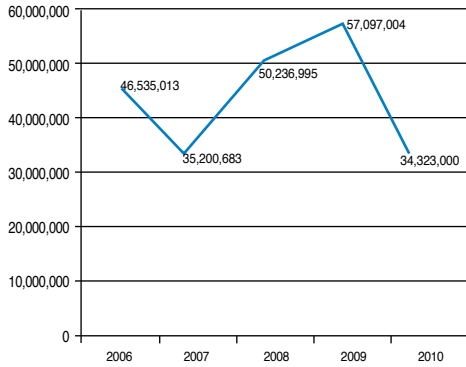
프로그램목적	지원 빈도	지원액합계	전체지원액 대비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7	470,000	1.4%	67,143	65,183
레크리에이션	1	40,000	0.1%	40,000	.
기타교육	1	30,000	0.1%	30,000	.
연구	4	23,375,000	68.1%	5,843,750	11,567,537
기타 건강서비스	5	1,743,000	5.1%	348,600	530,443
사회서비스	29	5,422,417	15.8%	186,980	266,600
고용 및 훈련	2	45,000	0.1%	22,500	3,536
시민 및 변호단체	5	190,000	0.6%	38,000	19,235
기타자선매개 및 자원봉사증진	2	61,000	0.2%	30,500	7,778
국제적행동	4	475,583	1.4%	118,896	77,591
기업·직업단체·노조	2	2,471,000	7.2%	1,235,500	628,618
합계	62	34,323,000	100.0%	553,597	2,940,256

보건복지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액 변동 추이를 살펴본다면 단체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금액이 대폭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세부적으로 본다면 2007년도에는 전년대비 24.4%가 감액되었는데, 전반적 정책기조가 바뀐 영향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2006년도에 검사혈액원을 통합하고 검사 자동화시스템을 확충하는 데 232억원을 지급했었던 이례적 상황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2008년도에는 다시 전년대비 42.7%가 증액되었다. 그 결정적 요인은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이름을 변경되면서 출범한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대하여 166억원 내외의 지원액이 고정적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2009년도에는 적십자 병원의 기능보강에 대한 지원 요인이 발생하여 다시금 13.7% 증액되었다. 하지만 2010년도에 대폭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신중하게 해석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2009년 보건복지부의 정보공개 시 포함되었던 단체가 2010년도에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를 테면 2009년에 적십자(병원, 혈액원, 헌혈의집 운영)에 대한 지원금이 총 270억원 정도나 되었는데 이 정보가 누락되었으며, 연간 174억원이상 지원이 된 한국장애인개발원에 대한 정보도 빠져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지원금액이 과소평가되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들 단체에 대한 지원은 누락되었지만 다양한 단체가 새로이 추가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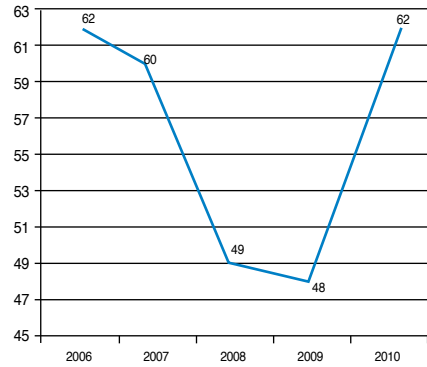
〈표 Ⅲ-59〉 보건복지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2006~2010년)

연도	(단위: 천원)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원기관수	62	60	49	48	62
지원총액	46,535,013	35,200,683	50,236,995	57,097,004	34,323,000
전년대비 증감		-24.4%	42.7%	13.7%	-39.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변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단체수 변화



〈표 III-60〉 2010년 보건복지부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문화와 예술	한국효도회	효행장려 및 촉진 사회분위기 조성
고등교육	경민대학	제2회 전국 효 만화 애니메이션 공모전
기타교육	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이동청소년인권증진지원
연구	한국노인과학 학술단체연합회	제20차 세계노년학 노인의학대회 준비사업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정보개발원 운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0년도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동청소년인권증진지원
	한국치매학회	치매예방캠페인
기타 건강서비스	대한암협회	암예방 순회교육 및 암예방 캠페인 추진
	대한영양사협회	비만예방을 위한 영양정보 개발 및 보급
	인구보건복지협회	노인의 행복한 성 생활을 위한 프로젝트
	한국실명예방재단	노인 안 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사회서비스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	입양단체 지원 및 입양사후관리 지원
	굿네이버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이동청소년인권증진지원
	굿네이버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지원
	대한사회복지회	입양단체 지원 및 입양사후관리 지원
	동방사회복지회	입양단체 지원 및 입양사후관리 지원
	동지	입양단체 지원 및 입양사후관리 지원
	부스리기사랑나눔회	지역아동정보센터
	뿌리의 집	입양단체 지원 및 입양사후관리 지원
실종아동전문기관	실종아동 보호 및 지원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사회서비스	어린이재단	실종치매노인 찾기 및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보급사업	
	원광효도마을	전 국민의 효행정신 함양을 위한 효행큰잔치 운영	
	재외공관(해외입양단체)	입양단체 지원 및 입양사후관리 지원	
	중앙입양정보원	입양단체 지원 및 입양사후관리 지원	
	한국 YMCA, 부스리기사랑나눔회,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아동복지교사 중앙지원단	
	한국국악협회	입양단체 지원 및 입양사후관리 지원	
	한국노인복지진흥재단	효행지도사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한국노인의전화	베이비부머 세대와 고령자를 위한 생애설계 및 건강교육 사업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노인전문 상담인프라 구축 및 모델화 사업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독거노인보호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	노인여가 활성화를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우수프로그램 보급사업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새생명지원센터	소아암환아 이차암 예방 및 정서적 지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	
	한국사회봉사회	입양단체 지원 및 입양사후관리 지원	
	한국아동단체협의회	대한민국아동총회	
	한국아동단체협의회	아동청소년인권증진지원	
	한국아동복지협회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행사	
	한국아동복지협회	어린이날 행사	
	홀트아동복지회	입양단체 지원 및 입양사후관리 지원	
	시민 및 변호단체	대한노인회	제10회 대통령기 전국 노인게이트볼 대회
		대한노인회	노인자원봉사자 교육경진대회 및 교통안전봉사자 발대식
대한노인회		어르신 노풍당당 찾아드리기	
대한노인회		노인생활 소식지 발행	
대한노인회		제14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한국골든에이지포럼		새롭고 모범적인 고령자의 삶 발굴 및 조명	
한국시니어클럽협회		전국 노인 일자리사업 현장방문을 통한 일하는 노인 역량강화사업-노인의 소통과 교류를 통한 임파워먼트 프로그램	
한국치매가족협회		치매 서포터즈 양성교육	
한국치매협회		치매 케어컨퍼런스 국제 교류사업	
한국치매협회		치매 예방관리 교육 및 평가사업	
한국치매협회		치매 예방과 치료를 위한 보급형 인지재활 프로그램의 운용 및 확대사업	
한국치매협회		국가치매지식정보포털 기반구축 사업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법과 법률서비스	한국생활안전연합	시니어안전지도자가 간다 : 노인 낙상사고 예방교육 및 안전한 가정환경 조성사업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한방해외의료봉사활동
국제적행동	대한한방해외의료봉사단	국내외국인한방진료
	한국입양홍보회	입양단체 지원 및 입양사후관리 지원
	해외입양인연대	입양단체 지원 및 입양사후관리 지원
	종교집회 및 단체	한국교회노인학교연합회
기업 및 노조	대한간호협회	2단계 치매 서포터즈 양성사업
	대한간호협회	노인의 성 건강 리더 양성 프로그램
	대한간호협회 산하 보건간호사회	보건교육경연대회 경비일부보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관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17. 산림청

산림청은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에 발맞추어 국가의 산림자원을 보존, 관리하고, 이를 산업 영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는 중앙부처이다. 이 부처는 국토의 64%나 차지하는 산림의 보호·육성, 산림자원의 증식, 우량종묘 개발 및 보급, 산림사고 및 병충해 방지, 야생조수의 보호, 목재 수급의 조정, 해외산림자원 개발 및 임산물 수출입 등의 업무를 관할한다. 이를 위하여 산림자원국에서는 산림정책, 산림자원관리, 녹색일자리창출, 목재생산, 국제협력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산림이용국에서는 산지관리, 국유림관리, 산림휴양등산업무, 산림경영소득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산림보호국에서는 산림환경보호, 도시숲경관, 산불방지, 치산복원, 산림병해충방지와 관련한 업무를 돌보고 있다.

산림청의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199억 4,000만원으로 산림조합중앙회, 지역산림조합, 임업후계자협회, 산림경영인협회 등 산림업 관련한 직업단체에 대한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산림조합중앙회에는 연간 150억원이 넘는 지원을 하고 있다. 이는 산림청의 비영리민간단체 전체 지원예산의 75%를 상회하는

수치라 할 수 있다. 그 밖에 그린레인지, 사단법인 미래숲 등 산림보호단체에 총 10억원이 넘는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도 산림청 결산액이 2조 806억원 정도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전체 예산대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의 비율은 1%가 조금 못되는 정도로 나타났다. 참고로 「2009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백서」작업을 위한 자료 취합 시에는 그린레인지(한그루녹색회)에 대한 지원내역만 포함이 되어 산림청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 극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하였으나, 금번에 산림업 관련 직업단체들이 포함됨으로써 보다 정확한 정부 지원 현황이 추계되었다. 2011년도에도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한 지원, 지역 산림조합에 대한 산림조합특화사업지원(지역별로 5억씩 5개 조합), 임업후계자협회, 산림경영인협회에 대한 지원, 그린레인지, 한국녹색문화재단 등 산림보호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어진다. 그 밖에 한국등산지원센터에 21억 8,800만원이 신규 지원되는 것이 특기할 만한 사항이다.

〈표 Ⅲ-61〉 산림청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 빈도	지원액합계	전체지원액 대비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레크리에이션	1	897,000	4.5%	897,000	.
환경	5	1,817,000	9.1%	363,400	231,069
기업·직업단체·노조	11	17,226,000	86.4%	1,566,000	4,102,818
합계	17	19,940,000	100.0%	1,172,941	3,293,907

〈표 Ⅲ-62〉 산림청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프로그램목적	지원 빈도	지원액합계	전체지원액 대비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레크리에이션	1	897,000	4.5%	897,000	.
환경	5	1,817,000	9.1%	363,400	231,069
경제사회지역개발	4	2,000,000	10.0%	500,000	-
기업·직업단체·노조	7	15,226,000	76.4%	2,175,143	5,183,119
합계	17	19,940,000	100.0%	1,172,941	3,293,907

〈표 III-63〉 2010년 산림청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레크리에이션	한국등산지원센터	건전한 등산문화의 확산과 국민의 등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등산지원센터의 필요경비 보조	
	(사)미래숲	사막화방지 조림사업 지원	
	(사)한국자생식물협회	자생식물 전시회 개최지원	
환경	곡성산림조합	웰빙 임산물 유통센터 조성사업	
	그린레인저	푸른 숲 선도원 육성 지원	
	한국녹색문화재단	숲체원 시설 운영비 보조	
	김제산림조합	조경수 생산포지 조성	
	나주산림조합	목재원목 가공전시판매장 조성	
	산림경영인협회	산림경영모델학교 운영지원	
	산림경영인협회	산림경영인협회 하계연찬회 지원	
	산림경영인협회	산림경영지 발간 지원	
	기업 및 노조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조합 구조개선사업 지원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지도사업 지원
영덕산림조합		임산물 유통센터 조성사업	
임업후계자협회		산림경영모델학교 운영지원	
임업후계자협회		임업후계자협회 전국대회 지원	
진도산림조합		추모공원(수목장) 조성	

18.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안전한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등의 기준·규격·시험방법 등의 제·개정과 유통되는 제품의 품질관리를 위한 지도,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는 중앙부처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운영지원과와 기획조정관 이외에, 위해예방정책국, 식품안전국(산하 영양정책관, 식품기준부), 의약품안전국(산하 의약품심사부), 바이오생약국(산하 바이오생약심사부), 의료기기안전국(산하 의료기기심사부)을 두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19억 3,500만원으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13억원(전체지원액의 67%내외), 한국희귀의약품센터와

의료기기정부기술지원센터에 6억 3,500만원(32.8%)가 지원되었다. 이번 정보 공개에는 전년도 지원내역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였던 식품안전정보센터가 제외되어 있다. 실제로 식품안전정보센터는 조직이 별도의 이사회를 갖는 민간운영의 외형을 지니고 있지만 식품안전정보를 국가를 대신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역할을 대리하여 수행하면서 100% 정부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정보공개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라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표 Ⅲ-64〉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프로그램 목적	지원 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정신건강과 위기개입	1	1,300,000	67.2%	1,300,000	.
기타 건강서비스	2	635,000	32.8%	317,500	160,513
합계	3	1,935,000	100.0%	645,000	578,490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상 변동은 아래와 같다. 1999년도 자료부터 취합이 되었는데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경우 한국희귀의약품센터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2곳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오다가, 2009년부터 식품안전정보센터가 개소하면서 지원단체가 3곳으로 늘었다. 지원액의 변동을 살펴보면 2000년도의 지원액 변동은 한국희귀의약품센터에 대한 지원이 증가한 것과 관련되어 있고, 2002년도에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대한 지원이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 2005~2007년까지는 지원액이 감소되는 방향으로 조정되었다. 2009년에는 식품안전정보센터가 개소하면서 30억원 정도의 예산(개소자금 및 사무비)을 지원받게 되면서 전체 지원 총액이 대폭 증액되었다. 하지만 과거 지원받았던 두 단체에 대한 지원액은 15억원 내외로 감소하였다. 2010년도에는 전년도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분류되어 포함되었던 식품안전정보센터에 대한 지원이 정보공개자료에서 제외되면서 지원액이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식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도별 예산현황을 살펴보면 2010년도의 운영경비로 식약청 식품안전정보센터예산으로 편성되어 재배정하여 13억 8천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전년도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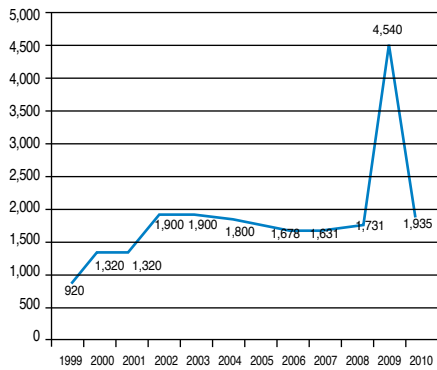
비교하였을 때 12억원 정도 줄어든 수치이기는 하지만 이 12억원은 센터 개소와 관련된 경비라 할 때 크게 삭감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도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한국희귀의약품센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에 총 21억 5,500만원의 지원을 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이는 전년대비 11%이상 증액된 금액이다.

〈표 Ⅲ-65〉 식품의약품안전청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추이(1999~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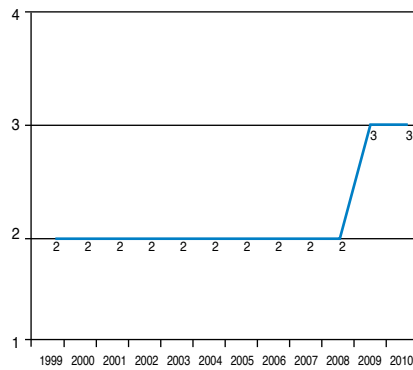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원기관수	2	2	2	2	2	2	2	3	3
지원총액	920	1,320	1,900	1,800	1,678	1,631	1,731	4,540	1,935
전년대비 증감	-	43.5%	43.9%	-5.3%	-6.8%	-2.8%	6.1%	162.3%	-57.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변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단체수 변화



〈표 Ⅲ-66〉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청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정신건강과 위기개입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 폐해 홍보, 중독자 사회복지지원사업 등 보조
	의료기기정보기술지원센터	의료기기 국내외 기술정보 제공사업 등 보조
기타 건강서비스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희귀질환자 치료용 의약품 공급 지원사업 등 보조

19. 여성가족부

여성가족부는 여성정책을 기획, 종합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며, 정부의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평가하고, 여성의 인력을 개발하고 활용하는 등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는 부처이다. 아울러, 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 이주여성 및 여성장애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포괄한 여성의 권익을 옹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2010년 1월부터는 가족 해체 및 다문화 가족 등 현안 사항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의 청소년 및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가족 기능을 여성부로 이관하도록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서, '여성가족부'로 개편되었고, 여성·종합 및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뿐만 아니라 가족정책,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 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 및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30억 4,600만원정도로 149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 지원단체수로만 보면 행정안전부 다음으로 많은데, 지원액수로는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되는 액수 총액의 1%도 되지 않는다. 즉, 개별 기관에 지원되는 금액은 평균 2,000만원 내외로 작은 편이다. 2010년 여성가족부 결산액이 1,546억원정도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예산의 2% 정도의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활용되었다. 여성가족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업은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이며, 이에 대한 지출이 30억원 내외로 나타난 것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받은 단체의 유형을 살펴보면 '시민 및 변호단체'에 대한 지원이 11억 6,800만원(55건), '사회서비스 단체'에 대한 지원이 8억 1,400만원(48건)으로 가장 높았다. 사업목적별로 살펴보자면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지원이 11억 6,800만원(69건)으로 가장 많았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한 사업 중에 사회서비스 성격에 가까운 것은 아동, 청소년, 여성에 대한 성폭력/폭력 방지 및 지원, 장애인, 탈북여성, 성매매피해여성, 가정폭력피해여성 등 취약여성에 대한 지원활동에 대한 지원이다. 여성가족부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하였다. 여성의 사회참여와 관련된 사업들은 지역특성을 살린 여성 일자리 창출, 취약 여성 대상의 일자리 창출과 훈련 등을 방법으로 내세운 사업들이다. 또한 양성평등, 일과

가정이 함께 유지될 수 있는 문화의 확산을 위한 활동에 대한 지원도 일관성이 있게 지원되어 온 분야라 할 수 있다. 특이한 사항은 여성가족부의 비영리민간단체의 공모신청에 대한 지원을 할 때 환경과 관련한 활동에 대한 지원이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현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이라는 구호와 일치하는 것이며, 2009년도부터 시행계획 공고 시 '여성의 저탄소 녹색성장', '녹색생활실천'이라는 영역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의 결과이다. 공모에서 선정된 단체의 사업명을 살펴보면, '탄소저감', '탄소포인트제', '에코맘', '에코피플', '여성녹색운동가', '그린스타트' 등의 표현이 눈에 띈다.

〈표 Ⅲ-67〉 여성가족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 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8	175,000	5.7%	21,875	10,934
초중등 교육	1	28,000	0.9%	28,000	.
기타교육	6	120,000	3.9%	20,000	9,695
연구	2	43,000	1.4%	21,500	707
정신건강과 위기개입	1	14,000	0.5%	14,000	.
사회서비스	48	814,000	26.7%	16,958	8,947
긴급상황과 난민	1	14,000	0.5%	14,000	.
환경	6	156,000	5.1%	26,000	6,066
경제사회지역개발	2	45,000	1.5%	22,500	7,778
고용 및 훈련	3	59,000	1.9%	19,667	5,859
시민 및 변호단체	55	1,168,000	38.3%	21,236	11,286
법과 법률서비스	7	178,000	5.8%	25,429	10,659
정치조직	1	31,000	1.0%	31,000	.
국제적행동	3	74,000	2.4%	24,667	4,509
종교집회 및 단체	1	16,000	0.5%	16,000	.
기업·직업단체·노조	2	73,000	2.4%	36,500	2,121
기타(북한관련)	2	38,000	1.2%	19,000	11,314
합계	149	3,046,000	100.0%	20,443	10,056

〈표 Ⅲ-68〉 여성가족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프로그램 목적	지원 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4	109,000	3.6%	27,250	8,732
기타교육	1	37,000	1.2%	37,000	.
연구	2	46,000	1.5%	23,000	16,971
사회서비스	69	1,168,000	38.3%	16,928	8,503
환경	26	667,000	21.9%	25,654	8,280
경제사회지역개발	1	17,000	0.6%	17,000	.
고용 및 훈련	20	449,000	14.7%	22,450	13,016
시민 및 변호단체	21	439,000	14.4%	20,905	9,808
법과 법률서비스	3	46,000	1.5%	15,333	6,506
정치조직	1	31,000	1.0%	31,000	.
기타자선매개 및 자원봉사증진	1	37,000	1.2%	37,000	.
합계	149	3,046,000	100.0%	20,443	10,0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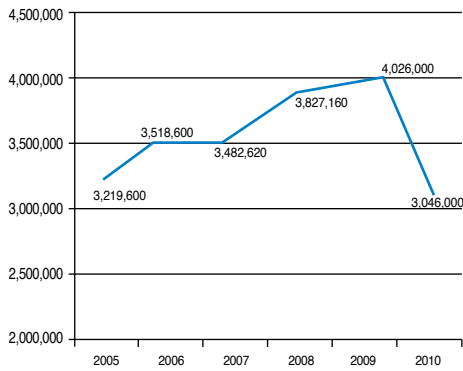
여성가족부의 정보공개자료만을 토대로 분석해보면, 지원액은 2007년을 제외하고는 전체 지원액이 점증하다가 2010년도부터 다시 감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의 구성은 ‘성매매 방지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여성자원활동 활성화 지원’,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으로 되어 있다. 2010년도의 지원금이 대폭 감소한 것처럼 나타난 것은 전년도 정보공개 시 포함된 ‘성매매 방지 및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 ‘여성자원활동 활성화 지원’이 누락되어 공개되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실제로 여성가족부가 이와 관련된 일을 하며, 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예를 들어 청소년쉼터, 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진흥센터 등)을 하면서 관련된 지원 실적이 증가되었으리라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2010년도 여성가족부의 비영리단체 지원현황은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을 통한 공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현황만이 반영되었다는 점을 유념하여 제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한편 2011년도에는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의 예산이 22억원으로 상당한 금액이 감액되었고, 지원단체수도 109개로 줄어들었다. 전반적으로 여성가족부 공공협력사업의 경우 평균적으로 단체당 2천만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 Ⅲ-69〉 여성가족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2005~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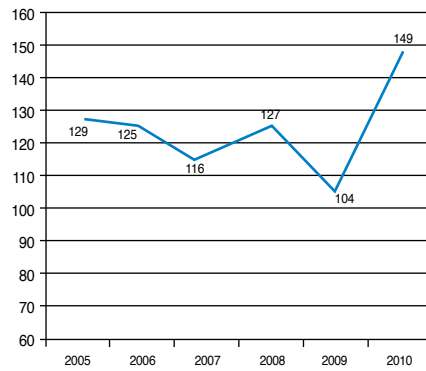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원기관수	129	125	116	127	104	149
지원총액	3,219,600	3,518,600	3,482,620	3,827,160	4,026,000	3,046,000
전년대비 증감	-	9.3%	-1.0%	9.9%	5.2%	-24.3%

(단위: 천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변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단체수 변화



(표 III-70) 2010년 여성가족부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문화와 예술	느티나무도서관재단	마을도서관 자원활동가 역량강화를 통한 지역사회 돌봄 네트워크 활성화
	(사)사회문화나눔협회	엄마와 함께하는 농어촌유학체험캠프
	(사)국민독서문화진흥회경기화성지부	"장애여성의 역량강화를 위한 독서지도사, 음악치료사, 영상그림책지도사 양성프로젝트"
	(사)한국문화예술진흥회	울음심리치유사
	(사)화랑문화진흥회	관광체험사업 여성분야 일자리 창출사업
	어린이문화예술학교	성폭력 예방 교육극 < 나의 수호천사, 미미 >
	장애인문화공간	장애여성 문화 영상제작단 "장애 '여성' 문화활동 '향'유기"-여향
	전주시민미디어센터	엄마랑 책이랑 공동체미디어학교
초중등 교육	(사)한국과학기술클럽협회	특기적성 과학교육 강사 양성 (여성청년실업극복 일자리 창출 취업연계-유치원 방과후 학교 등)
	노들장애인야간학교	성인중증장애여성의 위한-'기분 좋은 상상교실'
	(사) 서울시니어아카데미	여성노인을 활용한 지역사회 아동 돌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 '골목학교 할머니 선생님'
기타교육	(사) 한국평생교육협회	Convergence Couple 만들기를 통한 여성의 사회진출 환경조성
	서울지역사회교육협의회	고학력 경력단절여성의 전문일자리 연계를 위한 매너코칭지도사 양성사업
	의정부지역사회교육협의회	여성 인력 강화를 위한 "방과후 아동지도사 2급 양성" 과정
	한국지역사회교육협의회	여성이 만드는 글로벌 시민문화 프로젝트
	(사)한국상담심리연구원	가정폭력예방을 위한 의사소통 교육
연구	(사) 여성문제연구회	양성평등문화 확산 기여를 위한 TV속 남녀캐릭터 분석
	정신건강과 위기개입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 서울특별시지부
사회서비스	(사)아산우리가족상담센터	한부모가정 희망코칭 "따로 또 같이" 프로그램
	(사)열린사회복지교육재단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생활실천 프로젝트
	(사)영광여성의전화 부설 영광여성상담센터	농어촌 초등학교를 위한 폭력예방교육 "아이, 평화를 만나다"
	(사)한국성폭력상담소	7회 성폭력생존자말하기대회
	(사)한국여성상담센터	성폭력 근절을 위한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연구 및 교정, 치료 매뉴얼 개발
	(사)한국청소년인성교육협회	여성녹색운동가 양성과 탄소절감운동의 전개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아동의 안전한 등하교 프로젝트 '체험식 유괴방지 및 성폭력 예방교육' 및 '아동지킴이집교육'
	늘푸른상담센터	성폭력 대처에 따른 여성 임파워먼트 향상 프로그램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소	우리가족 희망프로젝트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나는 내 인생의 프로그래머! ~ (가정폭력 피해여성 역량강화 프로그램)
	로렘의집	작은 몸짓으로 이 사랑을
	문경청소년문제상담소	애들이 안전한 세상에 날개를 펴자
	부산YWCA 새터민지원센터	남북여성이 함께하는 두레방공동체
	(사)강릉여성의전화	경력단절 여성들이 만드는 행복한 "소꿉쟁이 인형극단"
	(사)부산성폭력상담소	아동성폭력 피해아동 및 피해우려지역 안전망 확충사업-등·하교 지도도우미 활동을 중심으로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사회서비스	사)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귀가 안전지킴이사업
	(사) 글로컬커뮤니티 함께우리	다문화가정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양육과 교육문제 지원 프로그램-'우리 아이 손잡 go!'
	(사) 로템나무	아빠가 변했어요! 다문화가족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 복지실천여성협의회	초등학생 등하교 수호천사 'safe_同行'
	사천YWCA건강가정상담소	장애인 엄마, 가화만사성 부모능력개발 첫걸음 프로젝트
	사회복지법인 밝은미래복지재단	소통을 통한 희망찾기-경력단절 결혼이민자 여성을 위한 파트타임 사무도우미사업
	사회복지법인생명 의전화 울산지부부설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함께 풀어나가는 성교육
	서서울생명의전화	보호관찰청소년과 보호자 특별교육 프로그램 "고사미용 나누기"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합니다)
	서울시립청소년직업체험센터 haja	녹색 여성농업 촉진을 위한 <울면은 회사>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여성장애인성폭력 전문상담원 양성교육
	소우주성교육센터	십대들의 성문화 지킴이! 섹슈얼리티 또래지도자 양성
	양산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 행위자 교정치료 프로그램, "Start New Life !!"
	여성간담전화경북1366	다문화 가정 자녀 등하교길 도우미 사업
	열린가족네트워크	저소득 조손가족 멘토링 통합프로그램 "파랑새 가족"
	움사랑지역아동센터	가정멘토링(fmfamily mentor)을 통한 지역사회내 위기가정지원체계 마련
	익산성폭력상담소	안전길제공과 중노년여성의 사회참여를 통한 여성친화도시만들기 프로젝트 '핑크로드지킴이'
	인천시아동, 여성보호지역 연대실무협의회	지역 요보호아동을 위한 등하교길 안전도우미 '울엄마' 제도 운영사업
	장애인성폭력익산상담소	여성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행복을 꿈꾸는 女心"
	전남성폭력상담소	건전한 공동체 구축을 위한 사회폭력 추방운동
	전북성폭력상담소	"아름다운 동행"찾아가는 Social Worker
	전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성폭력 피해 여성 장애인을 위한 "오뎅이 교육"
	제천성폭력상담소	지적장애인의 건강한 성 정체성 확립을 위한 성교육 "너와 나 우리 함께"
	진해가정상담센터	아동 등하교길 지킴이
	창암재활원	장애 아동 및 장애 청소년의 자립,재활능력 향상을 위한 ONE STOP 서비스 사업
	청소년폭력예방재단	부모성장! 아이 성장!-교육과 상담을 통한 부모역량 강화
	충남가족과성상담소	청소년성매매 예방프로그램 "청소년 성매매, 너, 나, 우리, 이제 그만!!"
	치매미술치료협회	치매미술치료사, 건강미술요법사 양성과정
	칠곡종합상담센터	행복한 노년의 삶, 은빛 찾아가는 성교육 (더 당당히 백수까지 샘솟는 성문화 알기)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제26회 아구노리 (전국장애청소년 아영대회)
	한국여성의집	취약계층여성(성매매피해여성중심으로)의 진로탐색 프로그램 개발 및 매뉴얼 보급
한국언극치료협회	시각장애인 여성을 위한 언극치료프로젝트-중심, 마음을 보다	
함평열린가정상담센터	아동 청소년 성폭력예방 및 양성평등의식 변화 교육	
해남성폭력상담소	(성폭력피해여성지원을 위한)전남지역성폭력상담기관 네트워크강화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긴급상황 및 난민	(사)피난처	탈북여성과 난민여성의 정서적 안정지원
	(사)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기후변화시대 여성 에너지 절약 상담사 양성을 위한 여성 녹색소비자 대학 사업
환경	(사)에코맘코리아	에코 맘 지도자 양성 교육
	(사)한국환경보전실천교육회	여성 녹색전문가 양성을 통한 학교녹색교육 지원
	그린웨이리연합	녹색생활실천(여성녹색지도자 양성 및 에너지 절감 교육)
	원자력을이해하는여성모임	녹색생활실천 공동협력사업
	풀빛문화연대	숲을 품고 미래를 유망하라 ~! : 지역밀착형 여성 생태문화지도자 네트워크 사업
	경제,사회, 지역사회 개발	(사)광주전남행복발전소
새마을운동중앙회		농어촌 결혼이민여성을 위한 한국조기정착 지원 프로그램, 「Love Korea」
고용 및 훈련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재무상담센터> 인프라 구축 및 시범운영
	(사)경남여성일과미래창조	그린 플래너 양성 및 그린 워킹맘 확산 캠페인
시민 및 변호단체	오가니제이션 요리	일하는 여성을 위한 여성친화적 돌봄 사업
	(사)늘푸른희망연대	가정의 양성평등문화확산을 위한 여성사랑 캠페인
	(사)대한어머니회 중앙연합회	여성 녹색환경문화운동, 탄소 down 저축 up!
	(사)대한주부클럽연합회	가정별 탄소시장 참여 및 캠페인을 통한 저탄소 녹색소비 활성화 프로그램(부제 : 녹색가계부 작성을 통한 CO2배출량 감축프로그램)
	(사)여성문화네트워크(WN)	Dream in Korea II
	(사)전국주부교실 충남도지부	저 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 주부의 역할 교육 및 워그린 녹색소비생활실천운동
	(사)전국주부교실경북도지부	탄소발자국 줄이기 운동
	(사)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남녀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 만들기
	(사)충북여성민우회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한국농인협회 경북협회 경산지부	여성장애인 및 취업취약여성의 "희망잡(JOB)기"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한국부인회충북본부	녹색생활실천-현명한 녹색소비 지침 마련 및 교육
	(사)한국시각장애인여성연합회 대전지부	시각장애여성의 변화와 참여를 위한 자기관리교육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중증여성시각장애인 생활문화학교
	(사)한국여성단체협의회	녹색여성전문가 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YWCA경기지역협의회	실천하는 녹색가족! 탄소저감 프로젝트
	가정을건강하게하는시민의모임	가족품앗이를 통한 가족 소모임 자조활동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	「강원여성 녹색생활실천 전도민화」 프로젝트 추진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미래를 품다.
	광주여성장애인연대	여성장애인성폭력 지원체계구축 프로젝트 "함께 해요! 성폭력 없는 밝은 세상을 위하여!!"
	김해여성복지회	양성평등문화확산을 위한 "가야 여왕 허황옥" 순회공연
남양주기독교청년회(YMCA)	소통능력강화를 통한 평화가족문화 만들기	
내일을여는멋진여성전남협회	모시를 이용한 조화예술 공예품 교육	
대전 이주여성 인권센터	결혼이주여성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함께 날자, 무지개"	
부천기독교청년회(부천YMCA)	식생활교육 사업단(강사) 양성과정	
(사)가정을건강하게하는 시민의모임군산지부	Gunsan Mom 해피하우스 만들기 사업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시민 및 번호단체	(사)경남여성회	꿈꾸는 여성, 희망을 현실로!
	(사)나눔과연대	가정 음식물 쓰레기 제로화 “녹색, 건강 리사이클”
	(사) 광주사랑어머니회	담지자-담(膽)력있고 지(智)혜로운 여자(自)
	(사) 시각장애인여성회	여성시각장애인들의 새로운 도전! 아로마 테라피(사랑은 향기를 타고)
	(사) 유엔인권정책센터	국제여성인권활동가 역량강화 워크숍
	(사) 한국척수장애인협회	퇴원기 여성척수손상환자 및 재가 여성척수장애인의 지역사회복귀를 위한 리더십 향상 프로그램(통통통) 아카데미
	(사)전국주부교실중앙회	에코 피플 “녹색생명가꾸기”
	서귀포YWCA	워킹 맘을 위한 행복프로젝트 ‘여성친화 가정+기업 만들기’
	서울YWCA	내 일(job & future)이 있는 여성리더십 육성사업 “Job & 來日 Up”
	성남YWCA	찾아가는 다문화교육 “무지개 빛 다문화 공연”
법과 법률서비스	순천시여성단체협의회	지역특산물 연계하는 수공예품 기능인력 양성
	(사)여성노동법률지원센터	가정친화적 인사노무제도 확산 및 조직 내 여성리더 역량강화 프로그램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우리 아이 안전한 학교 길을 위한 ‘등하굣길 안전지킴이(Walking School Bus)’ 제도 시범운영
	강원소비자연맹	탄소포인트제(에너지절약실천대회)
	다시함께센터	시민의 인식전환을 위한 반성매매 핸드북 제작·팔색조(8色照) 콜로키움’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대전지부부설대전열린성폭력상담소	몸으로 그리는 성화
	울산성매매피해상담소	성범죄 예방 구축활동, 우리 동네는 우리가 지킨다
정치조직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학교에서의 성인지적 폭력예방교육 교안 및 교재개발-여성폭력 통합교육 인프라 구축 및 교육사업
	(사)한국여성유권자연맹	2010 지방선거, 여성정책 들여다보기
국제적행동	(사)국제직업능력개발교류협회	국내 외국인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강사양성과정
	(재)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미래의 글로벌 여성 경제 인재발굴 및 양성을 위한 교육과 훈련기회 제공사업
	유니세프한국위원회	직장 여성의 모유수유 지원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
종교집회 및 단체	(사)한국여성불교연합회	건강가정의 육성을 위한 전문인 교육사업
기업 및	(사)한국여성경영자총협회	준고령여성 퍼플잡(Purple job)/실버웃음트레이너
	(사)한국여자의사회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의료인교육 및 의료업무 매뉴얼 개발
기타	(사)새롭고하나된조국을위한모임	탈북여성 가정(家長) 가정 돕기 및 일자리 창출
	고향쉼터	북한이탈부모를 위한 아동양육지원 프로그램

20. 외교통상부

외교통상부는 국가의 외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외국과의 통상 및 통상교섭을 하며, 대외 경제 관련 외교정책을 수립, 시행 및 종합, 조정하는 역할을 하며, 조약 및 기타 국제협정에 대한 사무를 관장한다. 아울러 재외국민을 보호·지원하고, 외국과의 문화협력 및 대외적 공보사업을 하며, 국제사정 조사 및 이민 사무를 관장하는 부서이다. 외교통상부는 한국국제협력단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통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나누어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은 정부차원의 대외무상협력사업을 전담 실시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와 개발도상국가와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를 증진하고, 이들 국가들의 경제사회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대한민국과 외국간의 각종 교류 사업을 통해 국제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도모하고 국제적 우호친선을 증진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2010년, 외교통상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한 액수는 92억 8,100만원 내외로 외교통상부 2010년 세출 결산액이 1조 6,386억원정도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지원액의 비중은 상당히 적다고 할 수 있다. 지원건수로 살펴보면 총 93건으로 정부부처 가운데 4번째로 크지만, 지원액수로는 중앙정부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되는 총액의 2.9%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외교통상부가 개별 기관에 지원하는 금액은 평균 9,980만원 내외이다. 외교통상부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62억 8천만원이었다. 이 지원금을 30개국에서 활동하는 55단체의 79개 사업에 나누어 지원하고 있었다. 2010년 외교통상부 결산액 중 개발도상국 원조지출로 활용된 금액이 5,177억원을 약간 상회한다고 보았을 때에 이중에 1.2%만이 한국국제협력단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9억 7,700만원의 지원금으로 한아랍소사이어티를 포함한 14개 단체에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하여 지원받은 단체의 유형을 살펴보면 주로 국제행동단체에 집중되어 있다. 국제행동단체의 경우 단체의 사명이 국제구호

분야로 한정된 경우도 있었고, 국내외 복지활동을 병행하는 단체도 상당수 있었다. 기본적으로 국내외 복지활동을 병행하는 단체도 국제적 기반의 활발한 활동을 한다고 알려진 단체의 경우 국제행동단체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2010년 외교통상부의 민간단체 지원현황에 추가된 분야가 국제교류분야인데, 한아랍소사이어티가 9억원이나 되는 지원을 얻었으며, 다음으로 한중공동연구프로젝트(3억 6,000만원), 한일신시대공동연구프로젝트(2억 7,000만원), 실크로드재단(2억 7,000만원), 한일협력위원회(2억 2천만원)의 순(2억원이상 받은 단체만 제시)으로 나타났다. 교류대상 지역은 중동, 일본, 중국, 중남미, 아시아 지역 중심이었으며, 기타 사업으로는 한국사 다국어 번역출간, 영문 외교지 발간 등에 대한 지원을 들 수 있다.

〈표 Ⅲ-71〉 외교통상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 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병원과재활	1	100,000	1.1%	100,000	.
기타건강서비스	3	180,000	1.9%	60,000	21,794
사회서비스	3	212,000	2.3%	70,667	5,132
경제사회지역개발	2	165,280	1.8%	82,640	17,480
주택	1	110,000	1.2%	110,000	.
시민및변호단체	2	170,200	1.8%	85,100	59,256
정치조직	1	135,000	1.5%	135,000	.
기타자선매개 및 자원봉사증진	1	45,000	0.5%	45,000	.
국제적행동	78	8,086,300	87.1%	103,671	108,221
종교집회및단체	1	78,000	0.8%	78,000	.
합계	93	9,281,780	100.0%	99,804	100,051

〈표 Ⅲ-72〉 외교통상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프로그램 목적	지원 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2	140,000	1.5%	70,000	28,284
연구	1	270,000	2.9%	270,000	.
국제적행동	90	8,871,780	95.6%	98,575	99,958
합계	93	9,281,780	100.0%	99,804	100,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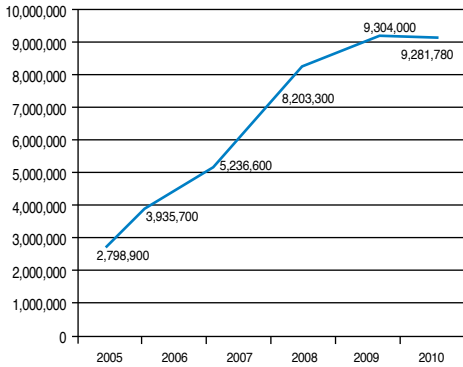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한 지원 대상과 지원액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사회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지원을 받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국가로의 위상을 강화하려는 정부의 의도들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08년도의 증가폭이 상당히 큰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민간단체 지원사업에 30억원이상 증액시켰기 때문이다. 2009년도의 증액은 민간단체 지원사업 예산의 점증적 상승과 개발협력인지강화사업으로 7억 2천만원을 지원한 요인이 컸다. 하지만 2010년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현황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의 개발협력인지강화사업, NGO봉사단 파견 지원사업 등이 누락되어 보고되었으므로 실제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이 감소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 실제로 전년도 한국국제협력단의 민간단체지원사업만 살펴보면, 지출액에 비해 3억 4,29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번 정보공개에는 추가된 한국국제교류재단에 대한 29억 7,700만원의 지원금이 추가되어 외교통상부 지원의 총량은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에서의 지원정도를 보였으며,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누락된 정보를 추가한다면 국제협력, 국제교류와 관련한 민간단체의 사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민간단체 지원을 확대하는 추세는 2011년도에도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도 9월에 공고된 한국국제협력단의 민간단체(NGO) 지원사업 공고에 따르면, (1)정부의 매칭비율을 60%에서 70%로 확대했으며, (2)최대지원액을 1억 5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3)사업지원기간을 최대 10년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하면서 다년도 지원사업을 확대하였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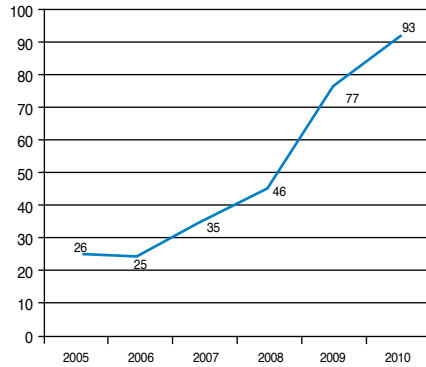
〈표 Ⅲ-73〉 외교통상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5~2010년)

(단위: 천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원기관수	26	25	35	46	77	93
지원총액	2,798,900	3,935,700	5,236,600	8,203,300	9,304,064	9,281,780
전년대비 증감	-	40.6%	33.1%	56.7%	13.4%	-2.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변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단체수 변화



〈표 Ⅲ-74〉 2010년 외교통상부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병원과 재활	분당차병원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무료진료봉사활동사업
기타건강 서비스	인구보건복지협회	탄자니아 청소년 성건강 증진사업
	장미회	네팔 티미시 지역 보건의료지원사업
	한국건강관리협회	캄보디아 중부지역 기생충 관리사업
사회서비스	은평천사원	우간다 카토케 지역 기초교육 및 이동진료사업
	한국노인복지회	미얀마 농촌 빈곤노인 자조모임을 통한 소득증대와 홈케어사업
경제, 사회, 지역사회개발	한국선의복지재단	베트남 썩션현 빈민의료진료소 운영사업
	가나안농군운동본부	중국고소득 작물재배 교육 및 농업기술 대안학교 설립사업
주택	가나안농군운동본부	요르단 시범농장 건축 및 농업교육사업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네팔 안락한 주택건축을 통한 쾌적한 주거마을 형성사업
시민 및 변호단체	여성이어는미래	코트디부아르 말라리아 감염 예방을 위한 살충모기장지원 및 예방교육사업
	한국YMCA전국연맹	동티모르 커뮤니티에 기반한 지속가능한 자족형 태양광 에너지 공급사업
정치조직	아시아정당회의	아시아 정당간 협력
자선매개 및 자원봉사증진	함께하는사람들	네팔 포카라 한방보건진료실 및 카트만두 새람사회교육센터 지원사업
	21C한중교류협회	한중친선교류사업
	국경없는교육가회	부르키나파소 AIDS감염 위험에 노출된 국민모맹 자립역량 지원사업
	국제아동돕기연합	탄자니아 탕가시 5세미만 아동건강관리센터 운영사업
국제적행동	국제옥수수재단	동티모르 옥수수 종자개발 및 농촌개발사업
	국제옥수수재단	캄보디아 옥수수종자개발 및 국제교류협력사업
	굿네이버스	네팔 무구, 훔라지역의 아티스 재배를 통한 소득 증대 및 아동교육 지원사업
	굿네이버스	미얀마 보갈레이 지역 재건 및 소득증대사업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국제적행동	굿네이버스	인도네시아 서부 수마트라 지진피해지역 학교 재건축 및 지진피해아동 정서지원사업
	굿네이버스	과테말라 파피시아 지역개발사업
	굿피플	미얀마 짜웃단구 교육 및 의료시설 복구사업
	굿피플	필리핀 카파스시아이따족 대상통합지역개발사업
	글로벌비전	베트남 메콩 델타지역 번째성 빈곤퇴치를 위한 통합적 지역개발사업
	글로벌케어	베트남 타이빙성, 라이쳐우성 식수공급 및 이동진료 사업
	기쁜우리월드	탄자니아도시빈민지역 미혼모가정 및 한부모가정 역량강화사업
	대륙복지회	중국 연길시 의료복지사업
	동북아평화연대	중국 동부3성 초우생소 환경개선사업
	동서문화개발교류회	인도네시아 람퐁지역 개발사업
	문화소사이어티	세네갈 옴부르지역 청소년 교육개발사업
	비전케어	가나 시력개선 및 실명 예방사업
	사단법인 코피온	중국연변지역 청소년 심리치료 및 리더십 함양교육 사업
	서비스포피스	네팔 사라이지역 행복도서관 지원사업
	서울국제친선협회	과테말라 아동 보소시설과 무료 초등학교 운영보조 사업
	세계선린회	캄보디아 극빈층 아동들 양육 및 교육사업
	세계화장실협회	케냐나이로비 고르고초 및 비완다니 빈민가 공중화장실 건립 및 위생교육사업
	세이브더칠드런	네팔 분쟁영향지역 아동교육 지원사업
	세이브더칠드런	라오스 루앙프라방 기초보건사업
	세이브더칠드런	니제르 5세미만 영유아를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사업
	실크로드재단	대중앙아지역 교류사업
	어린이재단	스리랑카 시암발란두와 징겨 영유아 발달 및 교육향상사업
	엄홍길휴먼재단	네팔스리빈두게서르 초등학교 신축지원사업
	월드비전	방글라데시 보그라 지역개발사업
	월드비전	인도네시아 서부 수마트라 지진피해지역 학교재건 지원사업
	월드비전	바룸부지역 교육사업
	월드비전	레소토 마프텡 지역 식량위기 대응 생계 자립지원사업
	월드비전	수단 할툼 마요 국·유민캠프 식수위생사업
	위드	몽골학교급식시범학교운영사업
	지구촌공생회	몽골 게르촌 농업교육사업
	지구촌공생회	캄보디아 안전한 식수 확보를 위한 공중위생교육과 대안 식수원 보급사업
	지구촌공생회	케냐 카지아도 지역 식수지원 및 농업육성사업
지구촌나눔운동	동티모르 로스팔로스 지역개발사업	
지구촌나눔운동	몽골 유목민 정착을 위한 축산시범마을 보급사업	
지구촌나눔운동	베트남 하노이 빈곤층 장애인 재활 및 사회통합지원사업	
지라니문화사업단	케냐지라니 청소년교육개발사업	
팀앤티	인도네시아 빠리아만 지진피해지역보건위생사업	
팀앤티	케냐 분고마지역 우물개보수사업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국제적행동	평화의료재단	파라과이 의료센터 건립사업
	푸른아시아	몽골 바양노르숨 사막화, 황사방지 성공모델 구축을 위한 조림사업
	플랜한국위원회	가나 달라니리 지역 학교 인프라 개선사업
	플랜한국위원회	카메룬 동부 베르토나주 영유아 발달 및 교육지원사업
	하트하트재단	몽골 울란바타르 칭글테, 수흐바타르 구 결식아동 건강증진사업
	하트하트재단	방글라데시 가지뿔지역 시력회복지원사업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베트남 빈푹성 영양 보건위생, 직업훈련 및 유아교육 지원사업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스리랑카 아동교육지원사업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필리핀 한센인 재활지원사업
	한국국제봉사기구	에티오피아 비소프투지역 어린이 영양급식을 위한 농업개발사업
	한국로타리총재단	탄자니아 프와지니역 모자보건센터개선사업
	한국외교협회	영문 '외교'지 발간 등
	한국제이티에스	스리랑카 아누라다푸라 지역 농업지원사업
	한국제이티에스	인도네시아 서부 수마트라 지진피해지역 주택건축사업
	한국제이티에스	캄보디아 라타나끼리주 취약계층 교육지원사업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스리랑카 코이카-DORABAWILA교육센터 역량강화사업
	한국희망재단	방글라데시 다카 등 6개지역 빈곤아동초등교육 지원사업
	한끼의식사기금	방글라데시 빈곤층 여성과 아동을 위한 교육지원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몽골울란바타르지역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사업
	한마음한몸운동본부	캄보디아 권리와 자립에 기반한 지체장애우 자력화 지원사업
	한베재단	베트남교육을 통한 노동조합연맹이자 삶의 질 개선사업
	한아랍소사이어티	대중동지역문화교류
	한울한운동	스와질랜드 까풍아 자립센터 빵공장 설립 및 직업교육사업
	한일신시대공동연구프로젝트	일본과 공동으로 한일관계연구
	한일여성친선협회	한일여성친선교류
	한일친선협회중앙회	한일친선교류사업
	한일협력위원회	한일친선교류사업
	한중공동연구프로젝트	중국과 공동으로 한중관계연구
	한중남미협회	대중남미지역 교류사업
	한중미래숲	중국 서북부지역 황사, 사막화방지 한중우호녹생생태원 조성 시범사업
	한중미카리브경제인협회	대중남미지역 교류사업
	한중친선협회	한중친선교류사업
	해외한민족교육진흥회	알기 쉬운 한국어 다국어 번역출간 등
	종교집회 및 단체	한국가톨릭의료협회

21.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중소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업진흥청을 폐지하고 통상산업부의 중소기업국을 확대하여 1996년에 공식 출범한 중앙정부 조직이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지원체제 구축, 중소기업 성장 지원(자금, 인력, 수출, 판로확대), 중소기업정책의 기획,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활성화,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지원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전체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조정관 이외에 중소기업정책국, 소상공인정책국, 창업벤처국, 경영지원국, 기술혁신국을 두어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의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682억 2천만원 내외로 6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지원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정부부처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 다음으로 비영리단체에 대한 지원규모가 큰 부처에 속한다. 2010년 중소기업청의 세출 결산액이 1조 9,238억원내외로 결산되었다고 할 때, 전체 지출의 3.5% 정도의 예산이 중앙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데 활용되었다.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한다고 응답을 표한 단체는 소상공인진흥원, 벤처기업협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한국여성벤처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이업종중앙회(異業種)중앙회로 6개이다. 이들 기관에 대한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소상공인진흥원이 565억 8,200만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번 조사대상이 된 단체 중에 가장 큰 규모이다. 이 규모는 전체 중소기업청에서 민간단체 지원을 활용하는 자금의 83%나 차지하는 규모이다. 이 규모는 이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된 비영리 단체 지원 총액인 3,904억원의 21% 정도나 차지하는 규모이다. 소상공인진흥원은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창업 및 안정된 경영지원을 위한 교육, 컨설팅 지원, 정부의 소상공인 정책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관한 다양한 정보전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케이블방송,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소규모 점포의 현대화, 효율화를 위한

조직화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⁶ 그 다음으로 벤처기업협회는 6억 6,97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으며,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장애인창업교육, 장애인기업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지원을 목적으로 2억원을, 한국여성벤처협회는 1억 3천만원을 받았으며, 그 외의 단체는 1억원 미만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이들 단체에 지원되는 프로그램은 역시 소상공인 지원,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 중소기업 육성 및 창업활성화 분야, 다양한 기업운영의 경험을 가진 중소기업(이업종(異業種)) 사이의 교류활동에 대한 지원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표 Ⅲ-75〉 중소기업청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프로그램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프로그램 목적	지원 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기업·직업단체·노조	6	68,202,000	100.0%	11,367,000	22,278,258
합계	6	68,202,000	100.0%	11,367,000	22,278,258

중소기업청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2005년 118.8% 증액된 이래 정체되어 왔었다. 그러나 2009년 한국창업보육협회가 한국창업진흥원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전체 정부 지원액이 1,344.7% 증액되었다. 하지만 2010년 중소기업청의 정보 공개자료에서 창업진흥원이 제외되면서 지원금액이 급감하였다. 창업진흥원도 법률에 따라 정부의 투자나 출자, 정부의 재정으로 설립·운영되는 ‘공공기관’인데, 실제로는 2010년 정부보조금 지원액이 1,002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⁷ 따라서 이 금액을 중소기업청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에 포함시키면, 지원액 수준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을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두는 비영리민간단체라는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진흥원은 법인격으로는 민간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가의 기능을 대신하면서 흡수된 상황에서 ‘민간’이라고 부르기 힘든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이번 백서 작업에서는 정부의

6 이 단체는 엄밀히 말해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정부의 투자나 출자,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설립 운영되는 기관으로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과 구분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의미함.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http://www.alio.go.kr/>)”을 통해 알 수 있음.

7 앞에서 제시한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의 경영공시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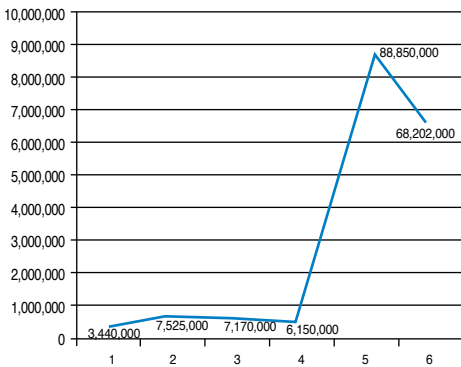
정보공개를 충실히 반영하여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의 수준을 정리하였다. 하지만 본 백서의 결과를 해석할 때 ‘공공기관’의 속성을 비영리민간으로 볼지, 정부기능의 한 부분으로 볼지 충분히 고민하여 원칙을 세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표 Ⅲ-76〉 중소기업청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 (2008~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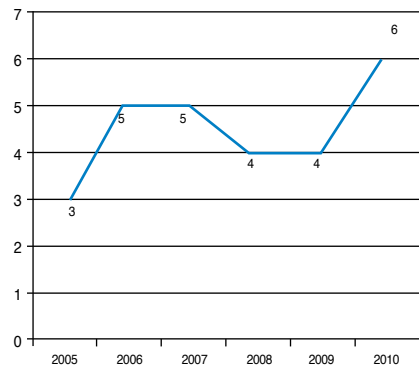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원기관수	3	5	5	4	4	6
지원총액	3,440,000	7,525,000	7,170,000	6,150,000	88,850,000	68,202,000
전년대비 증감	-	118.8%	-4.7%	-14.2%	1344.7%	-23.2%

(단위: 천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변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단체수 변화



〈표 Ⅲ-77〉 2010년 중소기업청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기업 및 노조	(사) 벤처기업협회	벤처기업 성장 인프라 구축 지원
	(사) 한국여성벤처협회	여성벤처 활성화 사업 예산지원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중소기업 기술혁신대전개최 등 위탁사업수행
	(사)중소기업이업종중앙회	이업종 교류활동에 대한 지원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장애인창업교육 /장애인기업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구축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소상공인진흥원	준비된 창업 및 경영혁신 지원/수요자 중심의 정책 및 경영연구/정보제공 및 커뮤니티 강화/중소소매업의 자생력 확보지원/시니어 창업 및 아이디어 상업화	

22. 지식경제부

지식경제부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산업자원부의 산업·무역·투자·에너지정책, 정보통신부의 IT산업정책, 우정사업, 과학기술부의 산업기술 R&D정책, 재정경제부의 경제자유구역기획, 지역특화기획 기능을 통합해 2008년 신설된 정부부처이다. 지식경제부는 2명의 차관을 두고 있으며, 제1차관 산하에 기획조정실 이외에 산업경제실과 성장동력실을 두어 산업성장과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제2차관 산하에 무역투자실과 에너지자원실을 두어 수출과 교육의 확대균형을 꾀하고 에너지 절약과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한 정책을 실행한다.

지식경제부에서 통보한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7억 원으로 에너지시민연대에 에너지 절약사업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다고 하였다. 지식경제부의 에너지시민연대에 대한 지원액은 2008년 잠깐 상승했다가 2009년부터 급감하고 있는 추세로 보인다. 지식경제부의 2010년 결산액이 15조 4,230억 원이나 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 부처는 업무 특성상 산업기술연구 등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공기업, 영리단체에 지원해주는 경우가 더 많으며, 공공기관을 비영리민간단체로 볼 경우에 그 지원 비율은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표 III-78〉 지식경제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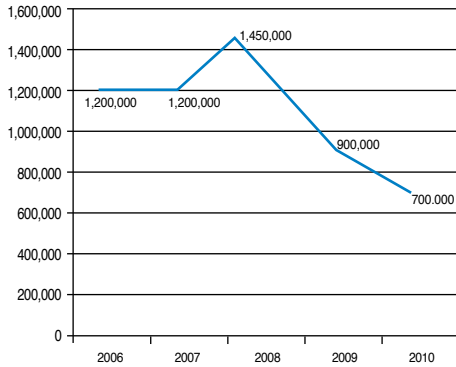
단체범주 / 프로그램 목적	지원 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환경	1	700,000	100.0%	700,000	.
합계	1	700,000	100.0%	700,000	.

〈표 III-79〉 지식경제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 변동 추이(2008~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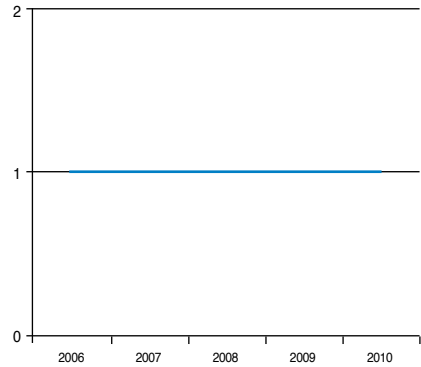
(단위: 천원)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원기관수	1	1	1	1	1
지원총액	1,200,000	1,200,000	1,450,000	900,000	700,000
전년대비 증감	-	0%	20.8%	-37.9%	-22.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변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단체수 변화



〈표 Ⅲ-80〉 2010년 지식경제부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환경	에너지시민연대	범국민적 에너지절약운동의 전국적 확산

23. 통일부

통일부는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 협력, 인도지원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통일교육, 홍보, 그 밖에 통일과 관련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 부처이다. 이를 위하여 기획조정실 이외에 통일정책실, 정세분석국, 교류협력국을 두고 있다. 또한 남북회담본부를 두고 있으며, 통일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남북출입국사무소,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 남북피해자지원단을 운영, 관리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책지원사무소로 하나원을 운영하고 있다.

통일부의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6억 8천만원 정도로 3개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해 지원하고 있다고 정보를 공개하였다. 이들 세 단체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민족통일중앙협의회,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이다. 2010년 통일부 지출 결산액이 5,131억원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통일부 살림의 0.1%정도만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통일부 정보공개에는 전년도 백서에는 포함되었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전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대한 지원이 누락되어 있다. 북한이탈주민재단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설립근거가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도 통일부 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정보취합과정에서 민간단체의 속성보다는 공공기관으로 인식되어 누락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로 인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민간협력사업’이 정보공개에서 빠지게 되었다. 실제로 이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의 홈페이지(<http://www.dongposarang.com>) 공지사항을 확인해본 결과, 2010년도에 여성의 사회적응지원, 고령자 지원, 쉼터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학교 및 직장 인식개선, 지방단체육성, 정주도우미, 기타자유공모사업 주제로 공모를 실시하여 41개 단체(단체당 지원금 1,000만원~3,000만원 지급)를 선정한 바 있다.

통일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2006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에 대한 예산이 3억원 내외에서 17억원으로 급증하였기 때문이다. 2009년에는 북한이탈주민재단(당시 북한이탈주민후원회)에 대한 지원액이 42억원에 이르기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이후 민족화해범국민협의회라는 통일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2009년부터 3억 5,000만원에서 3억 1,500만원으로 감액되었다. 한편 2011년도부터는 통일부 지원민간단체의 수와 규모가 증가되었다. 통일부에서는 민족통일중앙협의회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에 각각 5억원씩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에는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 밖에 1월중에 ‘민간통일운동 활동지원사업’ 공고를 통하여 25개 민간단체에 5억원을 지원하도록 확정하였다.

〈표 III-81〉 통일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 프로그램 목적	지원 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기타(북한관련)	3	680,000	100.0%	226,667	152,998
합계	3	680,000	100.0%	226,667	152,998

〈표 Ⅲ-82〉 2010년 통일부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기타 (통일)	(사)민족통일중앙협의회	평화통일 국민운동
	(사)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 운동
	(사)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이산가족 권익 보호

24. 특허청

특허청은 지식경제부장관 소속하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와 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부처이다. 특허청은 산업 재산권을 적기(適期)에 보호함으로써 산업기술 개발의 촉진을 지원하고, 산업 재산권 행정의 체계를 구축하여 기술경쟁 시대에 대처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2010년, 특허청은 비영리민간단체에 15억 1,7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여성발명협회에 지원하였다. 특허청의 2010년 세출 결산액이 3,353억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전체 예산의 0.5% 정도의 예산이 지원금으로 활용된 셈이다.

특허청의 한국여성발명협회에 대한 예산지원은 높은 비율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2001년 1억 4700만원이었던 것에 비하여 매년 20~30%대의 증액을 하여, 2009년에는 15억 1,700만원까지 증액되었다. 특히 2009년에는 2008년에 비해 4억 4,500만원, 즉 43.6%정도가 증액되었다. 2005년도부터는 한국청소년발명영재단에 2천만원을 지원하면서 지원의 대상을 확대했으나 이번 정보공개에서는 지원여부가 포함되지 않았다.

〈표 Ⅲ-83〉 특허청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 프로그램 목적	지원 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기업·직업단체·노조	1	1,517,000	100.0%	1,517,000	.
합계	1	1,517,000	100.0%	1,517,000	.

〈표 III-84〉 2010년 특허청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기업 및 노조	한국여성발명협회	여성발명진흥사업, 여성발명인력 양성

25.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재난 안전, 정보화, 지방정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고 지역발전을 지원하는 중앙 부처이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행정자치부, 중앙인사위원회, 비상기획위원회와 정보통신부 일부 업무가 통합되면서 출범하였으며, 공무원 인사, 지방행정, 국민안전, 국가 정보화 등을 책임지는 역할을 맡게 되었다.

행정안전부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 및 등록을 주관하는 부처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방행정국 민간협력과를 주무부서로 공익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을 통하여 매년 49억원의 재원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공모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0년에는 ①사회통합과 평화증진, ②사회복지 및 소외계층 인권성장, ③녹색성장과 자원절약, 환경보전, ④글로벌 시민의식 형성 및 성숙한 시민사회구축, ⑤자원봉사, 기부문화 활성화, ⑥안전문화, 재해재난 극복, ⑦국제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공모를 받아 심사를 통해 지원하였다. 신청 자격은 행정안전부에서 관장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되어 있었다. 단일 공모지원사업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으나 행정안전부의 2010년 세출 결산액이 31조 8070억원이상인 것을 고려할 때,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비율은 매우 미미하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단체들은 일회성, 이벤트성 행사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기존의 사업에서 드러난 단점을 극복하지 못하였지만, 많은 단체들이 적은 예산으로도 체계적으로 행사 및 회의를 기획하여 해당 부분의 담론 및 여론 형성, 공익활동증진과 민중사회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사)한국사회문화원에서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2010년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최종보고서」에 제시된 분야별 민간단체의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표의 내용과 같았다.

〈표 III-85〉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사업(2010년)의 유형별 사업 평가 요약

<p>사회통합과 평화증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6·25 한국전쟁 60주년의 실상을 후대에 알리기 위한 사업이 대부분으로 전적지 방문과 참전용사 추모사업, 전쟁의 역사를 책자나 동영상으로 제시하여 일반시민과 청소년에게 배포하는 사업이 주류를 이루었음. 한국전쟁의 실상을 진후세대에 알리기 위한 작업은 전쟁의 참혹한 역사를 이해하고 새롭게 하는데 기여를 하였으나 프로그램 기획이 단체의 임원인 고령세대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젊은 세대와의 소통과 참여를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안보현안과 관련해서는 2010년에 발생한 천안함 사태와 연평도 포격에 대한 대규모 규탄대회와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세미나를 하고, 남북한 사회통합을 위한 사업으로 탈북민의 남북 사회 적응 등이 주류를 이루었음. 안보의식 강화를 위한 강연이나 세미나는 단체의 회원이나 지부 중심의 행사를 통해 진행되면서 내부 행사적 성향이 강하고 젊은 세대의 참여가 저조한 특징이 보임.
<p>사회복지 및 소외계층 인권성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관련 사업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직접적 수혜사업이라기보다는 사회재활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이 실시되어 사회적 파급효과가 확대될 것으로 보임. 사회취약계층 사업은 아동성범죄 예방, 재소자와 소년원 청소년들의 적응사업, 교통약자인 노인과 장애인을 배려한 교통의식 개선 캠페인, 빈곤층을 위한 무료진료와 집짓기 사업 등으로 진행되었음. 이 사업은 전문성과 특수성을 살려 사회복지정책에서는 수용하기 어려우나 취약계층의 삶에 필수적인 지원들을 사업으로 수행함.
<p>녹색성장과 자원절약, 환경보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성장과 환경보전 관련 사업은 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캠페인, 세미나 등을 통해서 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적 차원의 프로그램과 특히 청소년들의 녹색생활 실천을 위한 박람회 개최와 실천사례 공모 등 다각적인 사업들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파급효과를 위해 노력하였음. 해양구조관련 단체들을 중심으로 수행된 하천과 바다의 수질환경 정화사업은 수도권의 상수원인 한강유역과 해양의 수중 쓰레기 제거 사업으로써 단체의 전문성을 살린 특화된 사업임. 그러나 하천과 해양환경 보존 및 개선을 위해 단순히 수중쓰레기 제거뿐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의 프로그램과 병행하였다면 수질환경 개선에 효과가 컸을 것으로 판단됨.
<p>글로벌 시민의식 형성 및 성숙한 시민사회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위문화 정착, 불법광고 방지 등 법질서 준수 관련 사업들은 주로 전단지 배포 등을 통한 홍보 및 캠페인 행사를 수행함으로써 지속적인 의식변화 보다는 일회성 사업에 그치고 있었음. 행사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는 있었지만 인식의 변화까지 이끌어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판단됨. 올바른 화장실 문화를 위한 사업들은 수행단체들의 축적된 경험과 체계적인 사업수행을 통해 파급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음. 인터넷 문화와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들은 약성넷글, 개인정보 유출, 불건전한 성매매, 자살문화 확산 등과 같은 사회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예방하는 데 기여하였으나 사업 수행 방법의 체계화와 구체화가 요구됨.
<p>자원봉사, 기부문화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을 통해 균형적인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의 캠페인 진행과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영역 개발, 브레인 웨어링 운동 및 재능 기부, 자원봉사 특수번호 1365 인식과 홍보를 위한 캐릭터 제작, 자원봉사 전문 방송 송출 등의 사업을 실시함. 개인이 가진 재능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재능 기부가 이수와 되면서 재능을 기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과 관련한 사업들을 수행함. 재능을 기부한 기부자들을 주축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한 번의 일회성 나눔이 아닌 지속적인 대안을 위한 가치 기반을 형성하지 못한 점이 아쉬우며 캠페인과 강연회에서 직접 기부행동을 유도함으로써 실천적 기부로 확대하지 못한 점이 아쉬움. 재능기부의 대부분이 대학생들의 지식기부 형태로서 좀 더 다양한 재능기부 영역에 관한 개발이 필요하며 재능기부를 물질적인 기부와 동일하게 인정해 줄 수 있는 인건제도에 관한 개발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음.

안전문화, 재해재난
극복

- 기초질서 계도를 위한 캠페인 및 환경 보호 활동사업들은 인원동원의 문제로 대부분 단체의 내부행사들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여 기존 사업들과의 차별성을 찾기 어려우며 여름철 해수욕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민간 해양구조 활동은 민간 해양구조원을 양성하여 전국 해수욕장에 배치함으로써 피서객을 위한 안전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 충실하였음.
- 사회적 약자와 관련한 안전사업은 주로 교통안전을 주제로 하였으며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워킹스쿨 사업과 시니어 교통안전지도자 양성 및 활동을 통해 어린이들과 노인들 스스로 교통사고에 대처할 수 있는 자생능력 함양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함. 워킹스쿨 사업은 언론의 보도를 통해 사회적 관심을 촉구하는 부수적인 성과를 보였음.
-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은 어린이들에게 관련 지식을 제공하는 뮤지컬을 제작하여 전국 각지에 순회공연을 실시하여 어린이들의 범죄예방에 기여하였음. 뮤지컬을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납치, 유괴 및 성폭력 등에 대한 예방법을 깨닫게 하였으며 매일 마주치는 주위 사람들이 납치와 유괴, 성폭력을 자행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공연에 반영해 교육의 실질적 효과를 높임으로써 어린이 범죄예방에 기여하였음.

국제교류협력

- 국제교류와 협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가 브랜드 인지도 제고 및 국제 위상 제고를 위해 아시아 빈곤국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지원 사업, 보건위생 사업, 학교건축 및 설비 보강 사업과 종자개발을 통한 경제 자립지원 사업, 각종 국제 대회에 참석하여 소속 단체의 사회적 문제 해결과 국제간 연대를 모색한 사업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 해외에서 사업을 실시한 단체들의 경우 대부분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나 전문 의료진을 개발국에 파견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지 환경에 관한 면밀한 검토와 준비부족, 파견 전 충분한 교육 등의 미흡으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으며 한국의 실무자가 현지에 상주하지 않는 경우 현지와 한국 간 업무 협조가 긴밀하지 못해 사업 진행이 원활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음.
- 해외 자원봉사 경험이 많지 않은 단체들의 경우 사업진행에 많은 문제들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프로그램을 답습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음. 우월적 시각에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장기적인 지원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청소년들의 해외자원봉사 이력에만 도움을 줄 뿐 국가 브랜드 인지도와 국제 사회에서의 대한민국의 위상정립에 기여하는 바는 크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각종 국제 대회에 참석하여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 사업들은 국제 대회 참석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와 역할 분담을 통해 발제자로 혹은 토론자로 참석하는 성과를 보였음.

2010년 행정안전부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단체를 포괄하여 지원한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단체는 시민 및 변호단체이며, 그 다음으로 환경단체, 기타유형(북한관련 포함)단체, 국제적 행동 단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용 및 훈련단체, 교육관련 단체, 경제사회지역개발 및 주택단체 등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다. 프로그램 목적별로 살펴보면 시민 및 변호, 환경, 국제적 행동, 사회서비스 순으로 지원 빈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 고용 및 훈련, 교육, 주택, 정치조직, 종교 등의 목적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었다. 단체별 평균지원액은 3,100만원 내외로 나타났으며, 시민 및 변호단체가 전체 지원액의 31.2%를 지원받았다.

〈표 Ⅲ-86〉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지원 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7	217,000	4.4%	31,000	9,165
레크리에이션	2	41,000	0.8%	20,500	707
초중등교육	1	50,000	1.0%	50,000	.
기타교육	1	30,000	0.6%	30,000	.
연구	3	89,000	1.8%	29,667	4,933
기타 건강서비스	5	124,000	2.5%	24,800	7,981
사회서비스	11	353,000	7.2%	32,091	7,739
긴급상황과 난민	5	163,000	3.3%	32,600	11,327
환경	17	517,000	10.6%	30,412	10,435
경제사회지역개발	1	30,000	0.6%	30,000	.
주택	2	65,000	1.3%	32,500	10,607
시민 및 변호단체	46	1,531,000	31.2%	33,283	6,490
법과법률서비스	8	210,000	4.3%	26,250	9,423
정치조직	5	148,000	3.0%	29,600	4,722
기타자선매개 및 자원봉사증진	8	274,000	5.6%	34,250	7,960
국제적행동	14	419,000	8.6%	29,929	8,748
종교집회 및 단체	3	85,000	1.7%	28,333	5,859
기업·직업단체·노조	4	134,000	2.7%	33,500	5,802
기타(북한관련)	15	420,000	8.6%	28,000	9,000
합계	158	4,900,000	100.0%	31,013	8,237

〈표 Ⅲ-87〉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프로그램목적	지원 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문화와 예술	13	437,000	8.9%	33,615	8,694
초·중등교육	1	34,000	0.7%	34,000	.
기타교육	2	60,000	1.2%	30,000	-
기타건강서비스	2	43,000	0.9%	21,500	7,778
사회서비스	20	590,000	12.0%	29,500	7,709
간접상황과 난민	5	129,000	2.6%	25,800	6,181
환경	25	834,000	17.0%	33,360	11,158
경제사회지역개발	2	68,000	1.4%	34,000	5,657
주택	1	40,000	0.8%	40,000	.
시민 및 변호단체	35	1,127,000	23.0%	32,200	6,543
법과 법률서비스	6	155,000	3.2%	25,833	6,998
정치조직	1	32,000	0.7%	32,000	.
교부금모집조직	2	64,000	1.3%	32,000	4,243
기타 자선매개 및 자원봉사증진	6	201,000	4.1%	33,500	10,075
국제적행동	23	651,000	13.3%	28,304	7,498
기업·직업단체·노조	2	65,000	1.3%	32,500	3,536
기타(북한관련)	12	370,000	7.6%	30,833	8,451
합계	158	4,900,000	100.0%	31,013	8,237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의 추이는 큰 변화가 없다,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총 49억원의 예산에서 변동이 없었으며, 지원 단체수만 118개에서 ~ 159개로 분포하였다. 특기할만한 사항은 2011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의 경우 그 지원총액이 98억 7천만원으로 급격하게 증가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전년도의 2배가 넘는 수치이다. 이 지원금을 220개 단체에 배분했는데 평균적으로 단체당 지원액이 1,300만원이상 증가하였다.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예산이 증액된 점은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등의 공모사업 예산이 줄어든 것과 대비를 이룬다.

〈표 III-88〉 2010년 행정안전부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문화와 예술	국학원(사)	더불어 함께 하는 어울림 세상-다문화가정문화소통 캠프
	국학원(사)	선진 국군으로의 도약을 위한 군간부 리더십 강화 프로젝트
	대한민국건국기념사업회(사)	대한민국 건국정신 고취를 위한 대학생 및 초, 중, 고교 교사 워크숍
	도산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사)	청소년을 위한 애기애타(愛己愛他) 리더십프로그램
	충효예술선운동본부	글로벌시민의식 형성 세미나 및 캠페인
	한국종이접기협회(사)	종이접기 자원봉사 및 종이접기 체험학습
	효나라운동중앙회	효 운동과 나눔 활성화를 위한 국민계몽 사업
레크리에이션	자전거사랑전국연합회	전 국민 평상복 자전거 타기 대행진 캠페인
	자전거타기운동연합(사)	자전거 생활화운동 지도자교육
초·중등 교육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친환경 녹색마인드 학부모 양성 운동
기타 교육	전국한자교육추진총연합회(사)	교도소 수용자를 위한 인성 및 한자교육 교재발행
연구	미래사회와종교성연구원	다문화 가정 사회 환경 적응을 위한 다문화가족 캠프
	민생경제정책연구소	친서민 정책 유용한 정보 홍보
	한국위기관리연구소(사)	신종플루확산 대비 멀티미디어 방송시스템구축
기타 건강 서비스	대한보건협회(사)	초등학교 학부모 대상 저출산 대책을 위한인구교육 순회연수 프로그램 운영
	대한적십자사	취약계층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위한교육지원
	성산장기려기념사업회	저소득 주민 무료진료 지원
	장미회(사)	간질환자들의 욕구 조사 및 간질 바로 알리기
사회 서비스	한국건강관리협회	몽골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사업
	나눔과기쁨(사)	사랑의 손길, 나누는 기쁨(취약계층에 대한 반찬 나눔)
	색동회(사)	어린이 범죄예방 동화 뮤지컬 전국 순회공연
	청소년과 사람사랑	발달장애청소년 사회적 인권개선 지원사업
	파라미타청소년협회	한국, 캄보디아 의료 및 교육 교류
	평화문제연구소	한민족 통일네트워크 구축사업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청소년 인권외교를 위한 교육과 나눔 축제
	한국스카우트연맹	제 16회 평화통일체험활동(세계청소년과 함께하는 휴전선 155마일 횡단)
	한국청소년보호연맹(사)	취약계층청소년 취업알선 및 직장적응지도프로그램
	한국청소년연맹	글로벌 청년 봉사단 국제교류 및 봉사
	한국청소년연합(사)	녹색생활 캠페인 및 녹색생활 실천사례 공모대전
	한국청소년연합(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부문화센터' 설치 운영
	한국구조연합회(사)	4대강 살리기 수중환경정화 활동
	긴급상황 및 난민	한국인명구조견협회
한국재난안전네트워크		여름철 물놀이 생명지킴이 캠페인
한국해상재난구조단(사)		한강수질 정화 및 바다정화 사업
해양구조단(사)		민간 해양구조 봉사활동 활성화 사업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환경	NGO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국민정신 문화 선양을 위한 교육홍보실천캠페인전개
	낙동강환경보호운동본부	영남지역 자원재활용 등에 대한 환경 세미나
	내무회녹색사랑봉사단	저탄소 녹색생활화 캠페인 및 강연회
	녹색미래실천연합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박람회 개최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청소년들이 펼치는 푸드 마일리지 줄이기
	범국민에너지운동본부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ON/OFF라인 네트워크 에코(ECO)프로모션 및 교육 캠페인 활동
	애플녹색전국연합(사)	만화를 통한 녹색성장 홍보
	자연환경사랑운동본부	강 살리기 국민실천운동 및 저탄소 녹색성장운동
	천심녹색성장4대강살리기실천연합(사)	녹색성장과 4대강 살리기 계몽 및 홍보사업
	코리아독도녹색운동연합	녹색성장과 자원절약 환경보존 캠페인 및 체험
	한국그린피아연맹	지구사랑 나라사랑 글로벌 그린코리아 캠페인
	한국수중환경협회	4대강 살리기 콘텐츠 공모전 및 홍보, 교육캠페인
	한국해안보존운동본부(사)	바다수중정화 실천운동 및 회원 한마음 수련회
	한국해양환경안전협회(사)	해양폐기물수거 및 불가사리 등 위해생물구제
	해양환경국민운동연합(사)	청소년 수상 안전교육
	환경실천연합회	종이팩 재활용을 위한 분리배출 전개
	환경실천연합회(사)	청소년 G20 저탄소 녹색성장 포럼 개최
경제사회 지역사회 개발	전국귀농운동본부	자전거활용 생태농활 체험
주택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다문화가정 초청 우리 전통놀이 체험행사
	한국사랑의집짓기운동연합회	무주택저소득층을 위한 사랑과 희망의 집짓기
시민 및 변호	(사)한국장애인연맹(DPI)	다양함이 아름답게 공존하는 인권도시 만들기 [청소년을 위한 찾아가는 인권교육]
	4월회(사)	세대 간 융합(Generation Fusion)을 향한 캠퍼스 강연남북자, 국군포로 및 탈북자 문제에 관한 시민의식 함양 3대 프로젝트
단체	6.25 한국전쟁진실알리기운동	6. 25 한국전쟁의 진실 홍보 및 교육
	6.25남침피해유족회	6. 25 바로 알리기, 안보교육 및 6. 25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걷고싶은도시만들기시민연대(사)	영구임대아파트 무장애 마을(barrier free)만들기
	국가정체성회복국민협의회	과거사 진실규명 및 6. 25진상 캠페인 활동
	국민행동본부(사)	헌법수호 및 선진시민정신 함양 캠페인 및 홍보
	대한민국625참전유공자회	국가 안보교육 및 보훈의식 제고 순회교육 및 행사
	대한민국민족훈국토지킴이회(사)	외국인유학생 우리나라 역사 문화세미나 및 탐방
	대한민국사랑회(사)	건국대통령 바로 알리기 도서 제작 및 보급
	대한민국포병전우회	6. 25전쟁 60주년 호국안보 거양사업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	안보강의 교육 및 강의내용 회보발간 추념행사
	대한민국해양연맹(사)	해양사상고취운동을 통한 녹색성장 구현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사)	국내거주 외국인 한국문화 체험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단체	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	여성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포럼
	밝고힘찬나라운동	21세기 청년 의식개혁 교육
	밝은미소운동본부	자살예방캠페인-친구가 되어주세요
	불법광고를근절하는시민의모임	불법옥외광고물 근절 홍보캠페인 사업
	사회정의실현시민연합(사)	선진시위문화정착 홍보 및 캠페인
	선플달기국민운동본부(사)	선플 누리단 글로벌시민 실천캠페인
	시대정신(사)	보수와 진보와의 대화, 인재양성을 통한 사회통합 촉진운동
	신사회공동선운동연합	동아시아 생명평화연대 포럼
	애국단체총협의회	국민들의 법과 질서 준수 정신의 전파 및 확산캠페인
	육군발전협회	국가안보의식 고취 및 민족의식 함양 강연 및 체험
	육삼동지회(사)	성숙한 시민사회 구축을 위한 법질서 바로세우기 캠페인 및 세미나
	자주국방네트워크	6.25 전쟁 60주년 기념 참전부대 변천사 홍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사)	한국,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장애인 국제교류대회
	좋은사람청소년운동본부	ECO-GREEN KOREA ! (친환경 녹색성장 캠페인)
	클린콘텐츠국민운동본부	건전한 인터넷과 미디어 사용 문화 조성을 위한 전국단위 클린콘텐츠봉사대 결성 및 운영
	탈북여성연대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과의 화합을 위한함께 어울림 프로그램)
	태평양아시아협회(사)	PAS청년해외봉사단 파견사업
	한국간이식인협회	장기기증 활성화 홍보를 위한 "나눔 공간"책자발간
	한국농아인협회(사)	수화로 듣는 한국 DVD 제작
	한국백혈병환우회	환자! 권리의식의 잠을 깨워라 (부제: 10대 환자 권리 증진운동)
	한국소년보호협회	소년원 출원학생 등 소외계층 청소년 사회적응 지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	국제 장애인단체 네트워크 구축 및 장애인지원
	한국장애인문화협회(사)	장애인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맞춤형 정보제공대행서비스
	한국장애인인권포럼(사)	장애인 중입검정고시 온라인 교재 개발 및 보급 사업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회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 구축
	한국지체장애인협회(사)	장애인 전문상담요원 양성
	한국척수장애인협회(사)	중증 장애인을 위한 재활 도감 제작
	한국화상인협회(사)	재난 및 화재 화상 안전문화 형성 교육 및 홍보
	한국화장실협회	성공적인 G-20 정상회의 개최를 위한 녹색화장실 품질인증 실시 및 시설기준 표준매뉴얼 개발
	한국화장실협회	계층 간 갈등해소와 화합을 위한 사랑의 화장실 지어주기
	행복한 미래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다문화가정 사회융합 지원사업(교육 및 바자회 등)
	희망코리아(사)	4대강 살리기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대국민 교육, 학술, 홍보 행사 개최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법과법률 서비스	교통문화운동본부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의식개선사업
	보험소비자연맹	교통사고 유발환경 개선사업
	소비자문제를연구하는시민의모임	친환경제품 보급 및 녹색소비 활성화 운동-유통업체의 그린 마케팅 확산-
	어린이교통안전연구소	선진국형 『워킹 스쿨버스』 도입 및 활용사업
	조세정의를위한한국납세자연합회	세금의 바르게 내기와 홍보를 통한 납세문화조성 사업
	한국생활안전연합	시니어 안전지도사 교육 및 세미나(노인교통사고 걱정 없는 선진 대한민국 프로젝트)
	한국소비생활연구원(사)	지식 나눔 전개
정치조직	한국소비자연맹	안전한 전자상거래 이용 문화 구축을 위한소비자교육
	21세기여성정치연합(사)	여성의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포럼
	바른선거시민모임중앙회	양극화 해소와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의식포럼
	의회를사랑하는사람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남북여성 교류 및 네트워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G20 개최에 따른 여성의 리더십 고취 및 교육
	한국장애인유권자연맹(사)	전국장애인과 함께하는 문예글짓기대회
	사랑나눔연대	장애인, 독거노인 등 찾아가는 자원봉사
자선매개 및 자원봉사 증진	사랑실은교통봉사대	무연고자 사랑의 장례 및 합동추모제사
	새마을교통봉사대	선진 교통문화 만들기 캠페인 및 워크숍
	어머니포순이봉사단	아동성범죄 예방을 위한 어머니 네트워크 구축
	한국112무선봉사단(사)	G20정상회의를 대비한 안전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 캠페인
	한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	전 국민 자원봉사 확산을 위한 '출발자원봉사1365' 홍보
	한국자원봉사협의회(사)	전문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재능 공모사업
	해병대전우회안전봉사문화단체	해병대전우회 안전봉사문화단체 재해재난구호 및 캠페인
국제적 행동	국제농업개발원(재)	조선족 농촌마을 부흥을 위한 획기적 소득증대 사업
	국제아동돌봄기연합(사)	인도네시아 보고르 아동복지센터 운영
	국제옥수수재단(사)	인도네시아 아체주 옥수수 종자개발 및 종자보급 지원사업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사)	한-몽 수교 20주년 기념 한국 알리미의 문화공연 및 의료봉사
	국제전략교류협회	한중 국제전략 교류 및 주변 3개국 예비역단체교류
	국제한국입양인봉사회(사)	"글로벌 코리아" GK 리더십 캠프 운영(해외거주 해외입양 청소년)
	글로벌비전(사)	라오스 취약계층 어린이 교육 및 주민 소득증대 사업
	밝은사회클럽 국제본부	LA 한인거주지역 다민족 지도자 한국연수사업
	열린의사회	한국몽골 의료보건 교류협력 및 몽골지역
	지구촌사랑나눔(사)	전 국민 기부 활성화 캠페인
국제적 행동	푸른아시아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과 함께하는 국제 청소년 환경 리더십 프로그램
	한국미안마친선교류협회	미안마 한국기술종합대학 건립
	한국해외봉사단원연합회	Global Korea G20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봉사단 봉사활동
	한미친선좋은친구협회(사)	주한미군 모범장병 및 부모초청 문화교류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종교집회 및 단체	날마다좋은날(사)	취약계층 다문화가정의 전통혼례 명절차례 장례지원 사업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사회통합과 평화증진을 위한 전국 강연
	대한불교청년회(사)	라오스 해외 봉사 및 문화교류
기업 및 노조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사)	교통사고 사상자 절반 줄이기 및 녹색교통호보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재래시장 살리기 운동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해외 직능경제인단체와 협력네트워크 구축
	한국소기업소상공인 연합회(사)	소기업소상공인 업체 일자리 창출 세미나 및 캠페인
	NK지식인연대	탈북자들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한 "선진화시민교육
	국민생활안보협회	대국민 안보의식 고양 교육 및 홍보
	남북청소년교류연맹	문화예술과 함께하는 청소년 통일교실
	남북청소년교류평화연대(사)	학교 통일교육의 실태와 방안 포럼 및 자매 결연
	동북아평화연대	발해의 꿈을 키우는 고려인문화센터 지원사업
	민족통일중앙협의회	북한이탈청소년과 함께하는 병영체험
기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2010 북한 인권 국제회의(북한인권 운동 전략검토 회의)
	북한인권시민연합(사)	남북출신 청소년 문화교류 프로그램
	선진통일교육센터	북한 어린이 생활체험과 인권/통일 교육
	열린북한	아름다운화장실 가구기 캠페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다시 고향을 떠난 재이주 고려인동포 정착 지원사업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	자유대한 수호세미나 교육 및 보고대회
	자유수호국민운동(사)	자유민주주의체제와 시장경제 활성화 운동
	총호안보연합(사)	통일안보 정책연구와 교육을 통한 국민안보통일관 확립
	통일교육문화원	북한이탈주민 안착을 위한 금융, 경제교육

26. 환경부

환경부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보전하여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연,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여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는 사무를 담당하는 중앙부처이다. 환경부는 기획조정실 이외에 환경정책실, 물환경정책국,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을 두고 있다.

환경부의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은 119억 5,400원으로 10개의 단체가 지원을 받고 있다. 2010년 환경부의 세출결산액이 7조 5,153억원인 것을 고려한다면 전체 결산액 대비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액수는 0.2%로 적은 수준이다. 환경부에서 지원을

받는 단체는 환경관련단체 9개, 동물관련단체 1개이다. 환경관련단체 9곳이 평균 4억원 내외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편차가 상당히 존재한다. 이를 테면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는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실천운동추진사업을 하면서 정부로부터 21억 8,000만원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자원순환시민연대, 환경보전협회,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무지개세상은 2억원 미만,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자연환경국민신탁, 한국자연공원협회는 1억원 미만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동물관련단체로서는 2008년 2월 설립된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1곳에 83억원이상이 지원되고 있었다.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8조 2항에 따른 특수법인으로서 밀렵감시, 유해동식물 구제, 수렵관리, 야생동식물 보호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Ⅲ-89〉 환경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범주별 / 프로그램 목적별 정부 지원 현황(2010년)

(단위: 천원)

단체범주 / 프로그램 목적	지원 빈도	지원액 합계	전체 지원액 대비 비율	평균지원액	표준편차
환경	9	3,618,000	30.3%	402,000	691,273
동물	1	8,336,000	69.7%	8,336,000	.
합계	10	11,954,000	100.0%	1,195,400	2,592,2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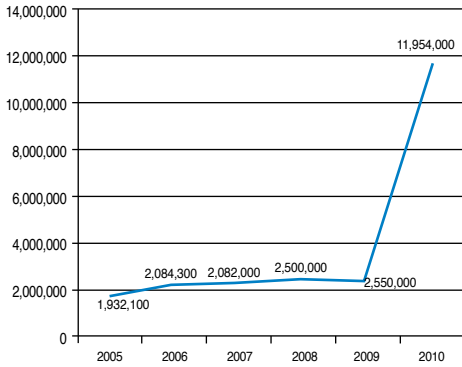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는 2008년도부터 12개가 급감하였다. 2008년도부터 ‘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에 지원을 집중하면서 지원기관수가 급감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은 2008년도 20.1% 급증한 경우를 빼고는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10년에 접어들면서 전체 지원액의 규모가 대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Ⅲ-90〉 환경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추이(1999~200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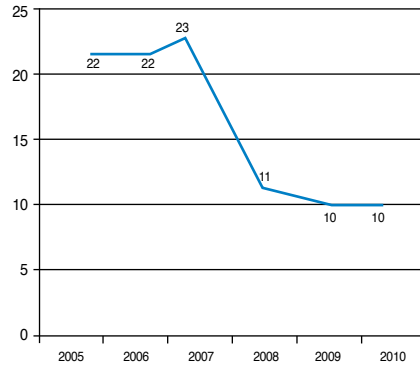
(단위: 천원)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지원기관수	22	22	23	11	10	10
지원총액	1,932,100	2,084,300	2,082,000	2,500,000	2,550,000	11,954,000
전년대비 증감	-	7.9%	-0.1%	20.1%	2.0%	368.8%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 변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대상 단체수 변화



〈표 Ⅲ-91〉 2010년 환경부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및 지원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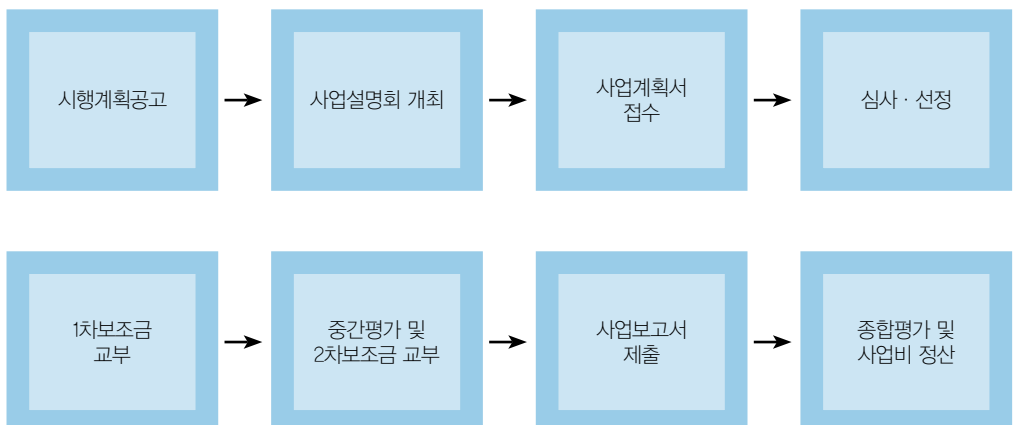
구분	단체명	지원사업명
환경	그린스타트 네트워크	온실가스 줄이기 범국민실천운동추진 지원
	무지개세상	자연생태 동영상 홈페이지 구축, 운영 등
	무지개세상	생태계 영상물 제작, 자연생태계 연구조사
	자연환경국민신탁	신탁자연환경 자산관리
	자원순환사회연대	쓰레기문제 해결을 위한 범국민운동 지원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방의제21 관련 사업
	한국자연공원협회	자연공원홍보, 전국 자연공원대회 개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생태계 학술조사, 자연환경안내원 교육 등
	환경보전협회	환경의 날 기념식 행사 주관
동물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민간 밀렵감시단 운영 등

IV.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절차와 기준 검토

1.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절차

정부 부처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절차는 법률이나 자체 규정에 의해 매년 고정적으로 특정 기관에 제공되는 예산을 제외하고, 많은 경우 사업공모의 방식을 따르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업공모를 하게 되는 경우에 아래의 <그림 IV-1>와 같이 진행된다. 여기서 사업설명회에 대한 개최를 하지 않고 ‘사업신청안내’ 문서 등으로 갈음하는 경우도 많다. 연간 사업을 진행한 후에 사업보고서와 함께 평가서, 정산서 등을 제출하면 한 해의 지원사업이 마무리 된다.

<그림 IV-1>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지원 절차 재정리 (2011년)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의 지원을 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 이를 확인단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단계, 사업수행 단계, 평가 및 보고 단계로 나누어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1) 확인단계

- 정부의 지원을 기대할 경우에 우선 정부에서 어떠한 사업공모를 하는지 사전에 미리 알고 준비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서 과거에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어떤 사업을 지원해 왔는지 확인해 두어야 한다. 모든 공모사업은 각 부처 홈페이지 '공지' 혹은 '공고' 게시판에 나와 있다. 과거의 공고현황을 보려면, '민간', '단체', '지원', '공모', '공고'라는 키워드가 도움이 된다.
- 이 단계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은 조직의 사명, 조직의 주요 활동(경험)이다. 기본적으로 조직이 원래 지향하는 바와 관련이 없이 예산 지원만을 목적으로 사업에 뛰어들게 된다면 소기의 성과도 거두기 힘들뿐더러, 가장 중요한 무형의 자원인 조직의 존재 이유까지도 의심받을 수 있다. 기본적으로 새로운 분야에 대해 지원을 할 경우에 조직의 사명과 과거 활동경험을 살펴보면서 공고된 사업이 우리 단체에 어울리는지 반드시 고민해보고, 조직의 관리자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또한 조직이 섬기는 이들의 요구와 사회적 요구를 검토하여 공모 신청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2)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사업계획서는 지원 부처가 제공하는 서식과 작성안내를 충분히 숙지한 후 작성되어야 한다. 만약 사업공고가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정확하게 작성하는 것이 좋다. 사업설명회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참여하여 공모사업의 취지와 사업계획 작성 요령에 대해 분명한 이해를 갖도록 해야 한다. 부처에 따라서 사업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응모조차 못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도 있다.
- 지원부처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는 심사기준에 들어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면서

사업계획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심사기준으로 중요한 것은 공모사업과 사업내용의 부합성, 수행기관의 사업관련 이해도, 능력과 공신력/경험, 사업의 효과와 파급효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 사업의 운영가능성 및 실현가능성, 사업관련 의지, 사업의 독창성, 평가계획의 구체성 등을 들 수 있다.

- 사업계획서는 공모사업의 목적과 일치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SMART한 원칙에 따라 목표를 구성하여 준비되어야 한다. SMART한 원칙이란, 구체적이고(specific), 측정가능하며(measurable), 실현가능하며(attainable), 결과중심적이며(result-oriented), 시간제한이 있는(time-frame) 형태로 목표가 구성되어야 하는 원리를 일컫는다.
- 사업계획서는 공모사업과 관련한 적절한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적절한 방법론과 논리, 전략이 현실성 있게 제시되어야 한다.
- 지원부처가 제공하는 제출 마감일을 반드시 고려하여 미리 시간을 두고 작성하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하여, 사업 공고가 게시되기 이전에 해당 부처의 관심 분야를 미리 예측해두고 대략적인 사업의 목표와 방향성을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는 사전에 고민해 두는 것이 좋다. 나중에는 시간에 쫓겨서 계획서를 효과적으로 구성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3) 사업수행

- 사업수행자로 선정되었을 경우에,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애초에 계획되었던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해당 부처가 제시하는 모든 지침과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회계처리 과정과 관련한 요건이 까다로운 경우가 있는데, 번거롭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단체의 잉여 자금이 아니라 국민의 세금을 집행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
- 지원 부처와 지속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좋다. 사업의 진행 정도에 대한 자료를 원하면 즉시 제공하고, 사업 진행과 관련한 궁금증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소통해야 한다. 민간단체의 공신력, 사업수행능력과 의지를 믿고 맡기는 것이지만, 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불안할 수 있다.

- 당해 연도 사업이 실패하는 것은 이후에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업을 잘 해보고자 하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넘어서 '애초에 계획했었던 목표를 달성했다는 객관적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잘 수행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한 꾸준한 모니터링과 자기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에 요구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한다(doing a good job),'를 넘어서 '선한 일을 잘 한다(doing a good job well),'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4) 평가 및 보고

- 평가는 투명하고 성실하게 사업을 수행했다는 과정에 대한 평가, 사업 진행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목표달성에 대한 평가이다.
- 이는 사업계획단계와도 관련이 있는데, 목표를 분명하게 해두고 이를 달성했다는 것을 계량적으로 입증하여 사업의 영향력을 밝히는 것이 좋다. 이를 테면, '수회의 ~한 활동을 하였다'는 것보다 '~에게 ~한 변화를 이루었다'는 형태의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실제로 상당수의 부처에서 공모신청 시 평가계획도 공모심사요소로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지원금을 받은 단체의 평가결과를 참조로 하여 이후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기도 한다.
- 평가는 사업종결 이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사업 계획 시 목표를 수립할 때 목표달성정도를 측정 가능한 형태로 구성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 역시 미리 구성해 두고 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사업 진행과 관련된 기록, 참여한 사람들(진행자, 대상자, 관련자)의 다양한 평가를 정리해 두면 평가 작업이 수월하고 정확해진다.

2.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심사 기준 검토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하는 경우는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 법령이 있어서 예산에 편성하여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중앙정부가 특정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민간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 전문성과 의지를 지닌 민간단체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정부가 특정한 주제를 주고 공모공고를 내게 되면 민간단체가 그와 관련된 제안 사업을 신청하고 그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나뉘는 것이다.

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심사 기준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중앙부처 홈페이지의 공고 게시판을 확인하여, 2010년 각 부처에서 공고한 공모사업 중에 비영리민간단체가 공모 신청할 만한 사업의 리스트를 정리하였다. 여기서 학술 연구적 성격이 강한 사업을 제외한 후에 200개의 사업 공고 리스트를 추렸다. 이들 사업공고를 통해 집행되는 정부예산은 최소한 2,322억 원 이상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하지 못한 이유는 공고문에 공고를 통해 집행되는 예산 총액을 제시하지 않고, 대신 개별 단체에게 얼마 정도씩 지원이 가능하다는 형식으로 기록된 공고도 많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민간단체와 협력을 목적으로 특정 주제를 주고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사업의 방법을 결정하는 공모사업도 포함되어 있고(〈표Ⅶ-1〉참조), 기타 민간단체에게 참여의 기회를 열어둔 정부용역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추린 200개의 사업공고 리스트에는 법률이나 자체 결정에 의해 특정 단체에 고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제외되어 있다. 따라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지원의 총량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제Ⅲ부에서 제시한 각 부처별 정보공개결과와 이 리스트에서 확인된 금액을 교차하여 합집합을 도출한 후에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아쉽게도 Ⅲ부에 포함된 정부의 정보공개자료에 포함되지 않은 공모사업도 상당수 확인이 되었다. 차년도 백서 연구 시에는 정부 부처 홈페이지에 나타난 사업공고를 확인하여 공모사업에 대한 리스트를 사전에 확인한 후, 각 부처별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할 때 리스트에 포함된 공모사업에 포함된 단체 명부를 반드시 포함해서 정보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이다.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정부지원 공모사업」 명부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표 Ⅳ-1〉 민간단체와 협력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공모사업의 예

부처명	사업명	사업예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단체협력사업	130,000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교육 우수 프로그램 공모	3,000,000
농림수산식품부	도농교류협력사업	1,600,000
보건복지부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1,610,000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민간단체 국고보조사업 공모	
여성가족부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3,050,000
외교통상부(KOICA)	민간단체 지원사업	
외교통상부(KOICA)	국제개발협력이해증진사업	
통일부(북한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후원회 공모사업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5,000,000

정부지원 공모사업 명부를 검토하면서, 비영리민간단체가 이들 사업에 신청하기 위하여 고려해야 할 심사기준을 정리하기 위하여 심사기준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들을 계수(計數)하였다. 예를 들어 능력, 전문성, 인력, 공신력, 예산, 적절성, 타당성, 논리, 경험 등의 키워드 59개의 키워드가 확인되었고 이들 키워드의 수를 세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단, 동일 사업의 심사기준에 동일 키워드가 반복될 경우에 해당 심사기준의 중요도가 과장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 한 번으로 계수하였다. 그 다음에는 표현은 다르지만 개념적인 유사성에 따라 관련된 단어들을 종합하여, 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 공모사업 진행시 유념해야 할 심사기준을 일반화하여 제시하였다.

2)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심사 기준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심사기준으로 등장하는 키워드의 계수를 통하여 도출한 주요한 심사기준을 다음의 13가지 요인으로 묶어서 정리하였다. 각 부처별로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있고, 사업유형별로 다양한 심사기준을 적용하지만 유사한 개념을 종합하여 일반화하여 논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물론 정부의 공모사업 지원을 고려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경우 해당 공고에 맞추어 사업공모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심사 기준을 비영리민간단체에서 미리 숙지하고 조직운영 시 유념하게 되면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기반이 될 수 있어, 어떤 사업공고가 제안되더라도 편안하게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아래에 제시한 심사기준들은 독립적인 개념은 아니고 상호 영향을 주는 관계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능력/전문성, 적정성/타당성, 공신력은 다른 기준으로 구분하여 정리되었지만, 능력과 전문성은 사업계획의 적절성으로 판단할 수도 있는 것이며, 조직의 공신력의 결정 요인이기도 하다. 따라서 관련 개념이 분명하게 나뉠 수 없고, 특정 개념 설명 시 따로 분류된 다른 개념을 빌어 설명할 수밖에 없다. 다음은 정부의 공모사업 시 자주 등장하는 기준들이다.

(1) 적정성/타당성

‘적정성/타당성’이라는 기준은 사업 공모 시 공고된 주제와 신청기관의 사업내용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의 정책, 사업목적과 사업계획(수행방법, 인력, 수행예산 등)의 일치여부와 관련된다.

(2) 능력/전문성

‘능력/전문성’이라는 기준은 사업에 대한 경험, 이해도와 지식이 있는 수행할만한 인력을 확보하는 등 전문적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3) 공신력

‘공신력’이라는 기준은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에 대한 ‘신뢰’와 관련된 것이다. 이는 기존의 사업실적, 조직의 규모, 조직의 인프라, 기존 사업수혜자의 만족도 등에 있어서 확신을 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4) 효과/파급성

‘효과/파급성’이라는 기준은 사업수행을 통하여 사업목표가 달성될 수 있으리라는 근거를 보여주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사업의 가치 등에 대한 분명한 비전을 보여주거나, 연속 사업의 경우에 과거의 실적과 경험을 통해 입증해야

한다.

(5) 예산/효율

‘예산/효율’이라는 기준은 사업 수행을 할 때 예산이 방만하지 않게 효율적으로 선용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경우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도 사업 예산의 일부를 부담을 해야 함을 말한다. 이러한 자부담 요건은 사업 수행을 하기 위해 일정 정도의 비영리민간단체의 헌신을 강제하는 것이고, ‘민간에 대한 보조의 원리’를 구현하는 것이다.

(6) 운영/실현가능성

‘운영/실현가능성’이라는 기준은 사업 수행의 현실성과 관련된 것이다. 공모에 선정되기 위하여 조직의 역량, 예산, 시간적 여유 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이상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을 지양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정부 공모사업을 신청하면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기준에서 ‘할 수 있는 것만 제한적으로 한다!’는 형식의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되면 공모당선 가능성이 낮아진다. 따라서 ‘어느 지점이 실현가능하면서도 조직의 의지를 보여주는 지점인가’라는 고민은 조직이 깊어질 숙제가 되기도 한다.

(7) 책임감/의지

‘책임감/의지’라는 기준은 사업 수행에 얼마나 조직이 헌신(commitment)할 수 있는지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 지원이 없더라도 사업을 지속할 의지가 있는지, 조직에서 사업에 대한 비전은 분명한지를 검토해야 한다. 비영리민간단체가 다양한 사업을 병행하는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은 ‘많은 사업 중에 하나’일 수 있다. 그러므로 조직에서 국민의 세금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할 때에는 조직의 일상적인 사업 이상으로 사업에 책임감과 의지를 가져야 함을 정부가 요구하는 것이다.

(8) 독창성

‘독창성’이라는 기준은 민간이 지닌 전문적 역량을 활용하여 새로운 방식의 문제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하는 사업은 국민의 세금이 소요되며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심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심스럽다. 그로 인해, ‘검증된 사업’을 보수적으로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지니고 관련분야에 전문적 역량과 경험을 지닌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할 때에는 정부와 달리 비영리민간단체가 가질 수 있는 강점인 독창성을 기대하게 된다. 또한 독창적인 사업을 수행하여 효과가 나타났다면, 이후에 정부의 정책으로 편입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실험’을 비영리민간단체를 통해 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다.

(9) 평가계획

‘평가계획’이라는 기준은 사업수행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공모사업의 경우 공공의 재원을 활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사업의 효과와 관련한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제출할 때부터 평가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를 심사기준에 반영하기도 하는 것이다.

(10) 홍보

‘홍보’라는 기준은 사업수행의 대상을 모집하는 것, 정부가 지원한 사업의 성과를 대외에 공표함을 의미한다. 사업수행의 대상을 잘 모집하는 것은 사업의 대상자를 확보하여 국민의 세금이 선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으며, 사업의 성과를 대외에 공표하는 것은 민간 지원의 정당성을 정부가 확보하고 정부의 사업에 대해 국민들이 긍정적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11) 협력

‘협력’이라는 기준은 사업 수행을 할 때 관련 사업을 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협력의 대상은 정부관계부서(예를 들어 고용알선을 하는 단체의 경우 고용안정센터와의 협조), 서비스 수혜를 받는 이용당사자,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을 포괄한다.

(12) 욕구대응

‘욕구대응’이라는 기준은 사업을 수행할 때 관련 사업이 이루어지는 환경의 요구, 수혜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예를 들자면 지역일자리창출사업을 한다고 할 경우에 지역의 일자리 수요에 맞추어 일자리가 창출되어야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공모 심사 기준으로 대응성을 제시하게 된다.

(13) 물리적 위치

‘물리적 위치’라는 기준은 사업수행이 특정한 장소에서 이루어질 경우 사업의 수혜자가 쉽게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표 IV-2〉 정부의 민간단체 지원에 검토되는 주요 심사기준과 표현방식(2010년)

기준	빈도	표현방식(빈도)
적정성/타당성	351	적정성(72), 타당성(62), 적절성(49), 적합성(36), 부합(13), 충실(24), 구성(29), 논리(12), 구체성(17), 전략(16), 체계성(11), 일정(9), 대응성(1)
능력/전문성	281	능력(79), 인력(61), 전문성(60), 역량(43), 이해도(36), 지식(2)
공신력	132	실적(34), 경험(29), 규모(24), 공신력(17), 신뢰도(5), 기반(5), 인프라(2), 만족도(2), 신인도(4), 안정(8), 확산성(2)
효과/파급성	92	효과(69), 파급(15), 기여도(6), 가치성(2)
예산/효율	86	예산(56), 효율(7), 가격(6), 자부담(5), 민간자원(5), 재정(4), 경제성(3)
운영/실현가능성	75	가능성(50), 실현가능성(25)
책임감/의지	28	지속성(11), 의지(7), 책임성(5), 성실(3), 비전(2)
독창성	27	참신성(19), 독창성(7), 매력(1)
평가계획	25	평가(25)
홍보	20	홍보(20)
협력	20	협력(10), 연계(9), 파트너십(1)
욕구대응	5	대응성(5)
물리적 위치	3	입지(2), 위치(1)

3) 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 대상의 주요 공모 사업

정부 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공모사항 중에서 비영리민간단체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과 사업구성, 예산을 <표Ⅳ-3>와 같이 정리하였다. 정부가 민간단체를 대상으로 공고를 내어 공모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는, 민간단체에서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성이 있거나, 전국 단위의 전면적 사업시행을 하기 이전에 시범사업의 형태로 시행하거나, 공공의 전달체계가 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간과 협력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경우 등이다. 이러한 공모 사업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민간과 정부의 협력적 파트너십 관계이다.

<표Ⅳ-3> 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 대상의 주요 공모 사업(2010년)⁸

부처	비영리민간단체 주요 공모사항 (예산수준)
	<p>[지역 일자리 창출 관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사업은 지역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특화사업을 주요 내용으로 함. 지역특화사업추진을 기본으로 포럼개최, 연구사업 중 하나를 택하여 신청하는 패키지 사업의 형태를 지니기도 함(110억 원 수준). 참고로,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관련 인프라 확충사업도 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4억 원 수준의 지원이 가능함. <p>[구직희망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취업 지원/고용환경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은 여성, 노숙인, 건설근로자, 산업단지, 결혼이민자, 간병, 가사도우미 취업지원사업이나 구직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취약계층(북한이탈주민 포함) 취업알선 및 집단상담 아웃소싱, 고령자 인재은행, 중견전문인력 고용센터 운영과 관련한 사업 지원을 해주기 위한 사업임(사업유형별로 최소 370만원에서 최대 7,400만원 수준).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위탁(인소싱) 사업의 경우 취업희망자 등에 대한 집단상담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지역 고용안정센터 등과 연계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프로그램 회당 23만원에서 180만원까지 지원함).
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젝트 운영, 디딤돌 일자리 사업 등은 참여자별로 취업지원금이나 보너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음. 여성고용촉진건설링 사업, 고령자 고용안정건설링 비용지원 사업 등과 관련한 위탁 사업체를 모집하고 있음. 취약근로자 고용차별 개선 사업의 경우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련한 사업장 방문, 집체교육을 실시하는 내용 등으로 되어 있음(20억 원 수준). 최저임금 4,110지킴이 운영사업에 대한 지원은 최저임금의 준수를 위하여 민간단체를 참여시키는 사업임(위반사례 500건 적발 시 2천만 원의 기본금을 제공, 건당 활동사례금14,000원을 제공). 장애인식개선지원 사업은 장애인근로자 문화행사, 청소년 장애 및 장애인식개선교육, 장애인고용관련 정기간행물 발간/배포를 주요 사업으로 함(9,100만원 수준). <p>[청년 창업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청년 창직, 창업인턴제 운영사업의 경우 청년 창직, 창업인턴제 지침에 의거하여 인턴 및 연수시행자를 모집하여, 채용알선, 사전사후 관리 등 사업운영을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구조를 띠고 있음(총 32억 원의 지원규모로 인턴 1인당 40만원, 성공보수 200만원 지급).

8 본 연구진이 파악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정부지원 공모사업」 정보는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 구성은 공모사업별로 '부처명, 공모사업명, 세부사업, 예산(단위:천원), 지급액(단위:천원), 심사기준, 공고일을 제시하고 있다.

	<p>[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기업 민간위탁지원사업은 사회적 기업현장 지원, 인증지원, (예비)사회적 기업 경영자문 및 경영컨설팅 지원, 지역별 자원연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역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일자리 사업 참여기관 및 참여자 교육지원, 정부재정지원 사업 심사 및 모니터링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20억 원 수준). 기타 사회적 기업이 아카데미 수행기관, 모니터링 및 평가수행기관 지원, 사회적 기업 사회가치도구개발 평가사업, 사회적 기업 관련자 교육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함. 또한 2010년도에는 문화예술분야, 환경분야, 영구임대 상가 입주 희망단체 등에 대한 사회적 기업 민간위탁지원사업을 수행하였음.
고용노동부	<p>[노사관계, 작업장 혁신을 위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은 노조나 노동자 단체에 대하여 고용유지, 창출을 위한 생산적 교섭 진행, 노사갈등 관리 및 파트너십 지원 등 협력적 노사관계 발전 등을 위한 지원을 함(3억 1,900만원 수준). •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노사파트너십 증진, 일터혁신 및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함(40억 원 수준). • 작업장혁신지원사업의 경우 노사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작업장 혁신프로그램(통합진단, 임금직무혁신, 고성과 근무체계 및 평생학습체계 개선 등)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임(29억 3,5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녹색상품 비교정보생산 시민단체 지원사업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중 가격과 품질에 대한 상품비교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함. 2010년도에는 유기농식품, 친환경식품, 프리미엄제품 등의 이름으로 고급제품을 강조하며 기존제품에 비해 가격을 인상한 품목에 대한 정보생산 제공을 주요한 주제로 선정하였음(9,800만원).
교육과학기술부	<p>[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육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사업 통합 위탁 사업기관 공모는 여성과학기술인 지원 및 활용사업, 여학생 이공학교육 지원사업 운영에 대한 민간위탁기관 선정을 목적으로 함(60억 원). • 성인문해교육지원사업의 경우 글을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지원함(기관당 1,500만원 이내의 지원을 하는 것을 골자로 총 20억 원의 예산을 배정). • 다문화가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을 지원함(단위기관별 1억 원 내외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되, 기관 당 20%의 자부담을 요구함). • 탈북청소년 민간교육시설 재정지원 사업 공모의 경우 탈북청소년에 대한 민간교육시설 내실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골자로 함. • 기타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 사업 공모, 학부모지원센터 위탁기관 공모 등을 수행함.
국가보훈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25전쟁 60주년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행사 연계사업을 보조하기 위한 보조사업자를 공모함(1억 7천만 원).
국가인권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에 공모함(4,500만원). • '인권단체협력사업'의 경우 ①인권옹호 및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영역 개발과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②인권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연대강화를 위한 사업, ③국제인권조약 관련 사업 중 시의적절하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④인권증진에 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대한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공모. (2010년에는 사업 총액 1억 3천만 원을 15개 기관에 나누어 배분)
농림수산식품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농교류 협력사업의 경우 농어촌체험, 농어촌 지키기, 농어촌 알리기, 농어촌 폐교 공간 활용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와 농촌의 활발한 교류를 통하여 농업경제의 활성화와 농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도시인의 여가활동지원을 골자로 하여 추진됨. (16억 원 예산 범위에서 민간단체별로 최대 8천만 원까지 지원하며, 체험마을의 경우에는 2~3천만 원을 지원하되 자부담 30%부담을 원칙으로 함) • 농업교육 우수프로그램 공모 사업의 경우 농업인 교육 프로그램, 해외연수, 귀농교육과 관련한 사업을 신청 받아 지원함(30억 원).
농촌진흥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형 전통식문화 개선을 위한 농촌교육농장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에 대한 공모를 실시함(7천만원).
문화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재 생생(生生)사업 지원 공모의 경우 문화재의 내재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하여 활용하고, 다양한 문화유산을 융합하여 새로운 부가 가치를 창출하거나 지속가능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구성됨. 이 사업은 지역문화진흥과 지역주민에 대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구조를 지향함 (8억 5천만 원). • 무형문화유산 온라인 전수조사 보조사업자 공모의 경우 무형유산 기초자료 수집 및 인정, 국가 및 지방문화재 등의 등록문화재를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함(1억 원).

부처	비영리민간단체 주요 공모사항 (예산수준)
문화체육관광부	<p>[문화예술 활성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역사회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사업의 경우 관련 개별 프로그램을 지원(일반공모형)하거나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를 지원(기획공모)하도록 구조화됨. (58억 9천만 원 예산으로 일반공모의 경우 사업 당 최대 1,500만원(단체 당 3천만 원), 기획공모의 경우 5천만 원~1억 원 수준에서 지원되도록 함) • 어린이 창작 프로그램 CAMP 사업(Creative Arts Making Program) 사업자 공모의 경우, 어린이가 창작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 개발, 진행, 전시, 매뉴얼화 하는 사업을 공모하여 추진한 것임(20억 원). • 청소년 전통예술캠프 추진단체 공모의 경우 전통공연예술(기악, 성악, 무용, 탈춤, 연희), 전통문화체험 강습 및 발표회로 구성된 캠프를 운영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임(단체별로 800~1,200만원 차등지원). <p>[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예술 창작, 향유 기회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문화예술 향수 및 장애인 예술가 창작활동프로그램은 장애인문화예술단체 특성화를 지원하고(4천만 원), 장애인예술가나 단체의 창작활동을 지원하며(3천만 원), 장애인들이 문화체험을 하기 위한 지원을 하거나(4천만 원), 풀뿌리 장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1억 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기타 장애인 문화예술 축제 사업이 별도로 진행됨(9억 5천만 원). • 복권기금 문화나눔사업 공모의 경우 소외계층(사회복지시설, 농산어촌, 임대주택, 다문화 국민 대상, 새터민, 교정시설, 군부대)을 대상으로 한 문화경험을 주기 위한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는 사업임(최대 7천만 원, 자부담 10%의무). • 군/교정시설, 소년원학교 체험형 문화예술교육의 경우 군장병, 교정시설 수형자, 소년원 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체험형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지원사업임(프로 : 그램 당 8백만 원~1천만 원). • 소외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사업의 경우 소외아동·청소년에 대한 음악 교육의 기회를 주는 것으로 교육 프로그램 기획, 워크숍, 참여자 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임(5억 원, 단체 당 1억 원 이내). • 예술치유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의 경우 예술치유 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예술치유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1억 2,500만원, 기관 당 56만원 이내). <p>[소외지역의 문화 기회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여성문화콘텐츠 발굴사업 공모의 경우 여성문화 관련 콘텐츠 개발 및 생산, 자료화를 지원하는 사업임(사업별로 1,200만원~2천만 원 내외). • 지역다문화 프로그램 공모사업의 경우 다문화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을 하거나, 생활친화형 다문화 동아리를 지원하거나, 지역도서관 연계사업을 지원하는 형태임(사업 당 5백~3천만 원). • 생활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의 경우 문화소외지역(영구임대아파트 단지, 서민단독주택밀집지역, 농산어촌) 주민들이 문화예술활동을 매개로 한 공동체 만들기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임(3억 원, 1개 사업 당 최대 6천만 원 이내). <p>[레크리에이션, 관광 기회 제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 전통예술캠프 추진단체 공모의 경우 전통공연예술(기악, 성악, 무용, 탈춤, 연희), 전통문화체험 강습 및 발표회로 구성된 캠프를 운영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임(단체별로 800~1,200만원 차등지원). • 복지관광 지원사업의 경우 사회적 약자들의 관광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임(참여자 1인당 최대 15만원 이내 지원). • 장애인관광버스 개조 지원사업(1억 8천만 원). • 생활체육공모사업의 경우 전국 규모의 생활체육대회, 대상별/연령별/수준별에 맞는 강습회, 소외계층 생활체육사업 등에 대한 지원을 함(12억 원, 사업별로 5천만 원 이내).
방송통신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청자 권익증진 사업은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접근권을 보장하고, 시청자 참여프로그램의 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임(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사업 22억 9,400만원,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 14억 8천만 원). •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및 미디어교육 지원사업은 시청자 권익증진활동과 정보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임.
법무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경우 각 지역별로 거점(학교, 이주민지원센터 등)과 사업운영기관(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복지관 등)을 선정하고 법무부 산하 출입국사무소와 연계하여 이민자가 한국사회에 잘 적응하고 사회통합을 촉진하도록 지원하는 구조의 사업을 민간과 함께 추진하도록 되어 있음. 실제로 5단계 465시간 내외로 구성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주민들은 국적취득을 위한 기간이 단축되고, 시험이 면제되는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음(거점 기관당 5,200만원~8,900만원).

[아동·청소년복지/보육관련]

- 아동복지서비스 인프라 운영과 관련하여 아동복지교사 중앙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11억 7천만 원), 지역아동센터 중앙지원운영사업(3억 원), 중앙보육정보센터 위탁 운영사업(4억 원)을 공모에 의해 선정함.
- 아동 안전을 위하여 영유아부모대상 아동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 사업(9억 7,500만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위탁 운영사업(4억 1천만 원)을 제공함.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전국사업자 공고에는 저소득 가정 아동에게 주1회 방문하여 독서지도하고, 수준에 맞는 도서를 지급하며, 월1회 이상 부모에게 독서지도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음(335억 원).
- 아동권리, 참여와 관련하여 아동권리모니터링센터 운영 위탁 공모(9천만 원), 아동·청소년 참여 프로그램 공모(1억 원)를 실시함.
- 청소년복지와 관련해서는 청소년쉼터 역량강화 사업 관리 운영자 공모(상한 1억 원), 아동·청소년 매체역량 증진사업과 관련하여 미디어 교육, 매체이용습관 교육 지원(2억 2,900만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16억 1천만 원/ 프로그램당 3천만 원), 성폭력 가해청소년 위탁 교육 사업 지원(1억 2천만 원) 등을 실시함.

[노인복지관련]

- 노인복지민간단체 국고보조사업 공모사업은 1차의 경우 치매 및 노인건강지원, 베이비부머 세대 사회참여지원, 노인의 사회적 역할 강화 지원, 독거노인 보호 및 지원, 노인복지국제교류, 효행장려 및 지원을 주제로 하여 공모하였으며, 2차의 경우 노인의 날 행사개최, 효행장려 활성화, 치매예방관리 및 노인건강지원, 노인여가활성화,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사업 평가를 주제로 두고 공모하였음.
- 기타 치매전문인력 교육사업, 노인자원봉사활성화 지원을 위해서도 공모를 진행함.

[결혼이민자, 다문화가족 복지관련]

- 결혼이민자에 대한 통번역 서비스에 대한 지원(5억 1,300만원),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중앙관리기관 공모(6억 7,800만원),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사전정보제공 위탁사업 (2억 5천만 원)을 공모를 통해 진행함.

보건복지부

[건강 관련]

- 산후조리교육기관 모집,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기술지원 및 교육운영 사업 수행기관 모집(7억 1,200만원)에 지원함.
-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 정보조사사업(51억 6,800만원)은 영양플러스 사업 평가 및 프로그램 기술지원, 비만관리, 수돗물 불소농도조정, 구강보건교육 및 홍보, 군인·전의경 금연지원, 산모건강관리사업, 모성건강지원환경조성,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 암 예방 홍보, 음주폐해예방관리, 생명존중정신건강증진,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이라는 세부 사업목표를 가지고 진행됨.
- 아동청소년유해약물 예방사업(1억 3천만 원),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홍보사업(1억 원) 등에 대해 공모를 실시하여, 대국민대상의 예방적 홍보활동을 전개함.
- 장기기증 및 이식홍보 사업 수행기관 공모(6억 원)를 통하여 대국민 장기기증 홍보를 할 기관을 선정함.

[출산 증진]

- 출산장려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국민 참여 캠페인과 인구교육사업을 위한 사업공모를 실시함(13억 5천만 원, 단위사업별로 캠페인은 최대 1억 원까지, 교육사업의 경우 1억 5천만 원~3억 원까지 신청가능).
- ‘결혼과 출산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국민 참여사업’ 공모를 통해서도 결혼지원, 출산지원, 일가족 양립이라는 세부 주제의 사업 공모를 실시하였음(6억 4천만 원, 단위사업별 5천만 원/ 연대사업 시 최대 1억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개발형 및 청년사업단) 신규 사업 공모를 실시함(개발형 80억 원, 청년사업단 60억 원).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신규 사업 공모를 실시함. 2010년 공고되어 2011년 수행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아동발달서비스 지원, 취약계층 아동정서발달 지원서비스, 문제아동 조기개입서비스, 인터넷·게임중독 아동치료서비스, 노인맞춤형 운동처방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 여행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구 렌탈 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나홀로 아동 방과후 돌봄 서비스, 정신질환자 토탈 케어 서비스였음(215억 원).

산림청

- 녹색자금 지원 대상 사업의 일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시대 산림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녹색홍보사업에 대한 지원을 함(7억 9,500만원, 사업 당 1억 원 이내).
- 목재체험교실 운영 사업 공모 사업을 통하여 목재체험행사, 목재체험교실, 목공지도사 양성교실, 초중등교사 목공체험 등 수행을 지원함(6억 원).

부처	비영리민간단체 주요 공모사항 (예산수준)
<p>여성가족부</p> <p>여성가족부</p>	<p>[여성, 리더십, 양성평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의 경우, ①여성사회참여확대(여성의 경제·사회·정치 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사업), ②여성인권 증진 및 취약계층지원(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사업, 여성장애인, 탈북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지원사업), ③양성평등 문화 확산(사회 각 분야 남녀 차별적 문화개선사업, 양성평등의식개선사업 등), ④일가정양립 문화 확산(일·생활 조화를 위한 가정, 직장, 지역사회 문화 확산사업), ⑤온(溫) 가족 행복 키움(가족가치 확산사업, 이혼후기, 한부모 가족 지원사업 등), ⑥녹색생활실천(생활 속 탄소절감, 녹색교육 및 체험 등)을 기본으로, 기타 사업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지원 가능함(예산 30억 5천만 원, 단년도 사업은 사업 당 4천만 원 이내, 2개년도 사업은 7천만 원 이내 지원). • 여성 리더십 향상과 관련된 주제로 여성인력 리더십 교육 수행기관 모집 공모(1억 원), 재외차세대 여성리더 양성 지원사업에 대한 민간 보조(5천만 원)를 시행함. • 양성평등과 관련된 주제로 생애주기별 양성평등 의식교육 사업 수행단체 공모를 시행함(사업비 780만원 내외, 컨설팅비용 30만원 내외 지원). <p>[다문화/이주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 이주여성 지원을 위하여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 사업(8억 3,700만원),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전국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대회 행사(5천만 원) 지원함. <p>[가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가족포럼이 구성 등과 관련한 가족문화조성 공모사업 지원(8천만 원), 저출산고령화 대책관련, 시대적 여건과 가치관 변화에 따른 합리적이고 건전한 의례문화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교육 등을 모색하는 건강가정의례 지원사업 지원(4천만 원, 과제당 2천만 원 내외)을 함. • 아이돌보미 사업 전자 바우처 개발, 시범 운영 주관기관 공모사업을 지원함(3억 원). <p>[청소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보호와 관련해서는, 청소년보호프로그램(유해약물 피해 예방, 유해정보 감시 및 개선, 매체 역기능 예방, 건전 매체 환경 조성) 공모사업(1억 9,700만원), 위기청소년 사이버 채팅 상담(5천만 원), 매체물 분야(방송, 영상, 간행물, 게임) 모니터링 사업자 공모(4억 5천만 원), 아동청소년 성보호 프로그램 개발 사업자 공모(1억 원) 등의 사업을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여 진행함. • 청소년 육성과 관련해서는, 인성함양,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을 주제로 한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지원사업을 진행함. (프로그램 당 2,500만원 내외),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사업 컨설팅 및 평가사업을 통하여 문화예술활동, 과학정보활동, 봉사협력활동, 진로탐색, 체험활동 등 6개 분야의 대표적 프로그램을 매뉴얼화 하는 작업을 실시하였음(1억 5천만 원). • 청소년 인권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및 청소년 교육/관련기관 종사자 대상으로 맞춤형 권리교재 개발 추진단체를 공모하기 위해 선정함.(5천만원)
<p>외교통상부</p> <p>외교통상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교통상부는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을 통하여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을 수행함. <p>[한국국제협력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단체(NGO) 지원사업을 통하여 개도국의 빈곤해소, 경제사회개발을 위한 민간차원의 협력차원에서 적절한 내용을 담은 사업을 NGO가 제출하고 이를 심사하여 지원함(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하며 최대 2억 원까지 지원). 대부분의 사업공모가 당해연도 이루어질 사업에 대하여 상반기에 집중되는 것에 반하여, 한국국제협력단의 민간단체 지원사업공모는 대개 9월경에 있으며, 그 다음해에 이루어질 국제구조단체의 사업지원을 한다는 점이 다름. • 국제개발협력 이해 증진 사업 공모를 통하여 대학교내 국제개발협력관련 교과과정 신설, 관련 워크숍, 세미나를 지원함(6개월 기준 2천만원~3천만원). •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지원 민간단체 사업 공모를 통하여 직접적인 질병퇴치사업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연간 3억 원 이상, 개별단체 당 총사업비의 70%까지 지원하며 최대 5억 원까지 지원). <p>[한국국제교류재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청소년 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국가와 교류협력에 전문성을 지닌 민간단체의 참여를 유도함
<p>중소기업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보육센터 사업자 신규 지정 및 건립계획 지원을 함. (10억원, 센터별 발굴과제 1건당 1,800만원 내외 지원함(정부 출연금은 75% 이내로 하고, 민간부담금 25% 매칭).)

부처	비영리민간단체 주요 공모사항 (예산수준)
통일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하나센터)에 민간참여를 유도함. 하나센터는 지역으로 전입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한 초기집중교육(3주)과 사후지원(1년)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임(센터 당 1억 4천만 원 이내). • 북한이탈주민후원회 공모를 통해 ① 여성사회적응지원(2천만 원 이내), ② 고령자지원(1천만 원 이내), ③ 의료지원체계 구축·운영(3천만 원 이내), ④ 컴퓨터운영(3천만 원 이내), ⑤ 취업지원 프로그램(2천만 원 이내), ⑥ 학교 및 직장 인식개선(2천만 원 이내), ⑦ 지방단체 육성(1,500만원 이내), ⑧ 정주도우미사업(1천만 원 이내), ⑨ 기타 자유공모사업(1,500만원 이내)에 대한 공모를 받아 사업에 참여할 민간단체를 선정함.
행정안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으로 사회통합과 평화증진, 사회복지와 취약계층 권익신장, 녹색성장과 자원절약 환경보전, 글로벌 시민의식 형성 및 성숙한 시민사회구축, 자원봉사 및 기부문화 활성화, 안전문화 재해재난극복, 국제교류협력 등 주제를 제안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신청을 받아 지원단체를 선정함(50억 원, 단체별로 최저 1,500만원~최대 1억 원의 지원). 2011년도에는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의 규모가 2배정도로 대폭 증가하였음.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교사 대상 환경교육 지도자 과정에 대한 운영에 교육대학, 환경관련 NGO 및 민간교육기관에 위탁을 실시함. (교육대학은 3천만 원 이내, 환경관련 NGO는 2,500만원 이내에서 지원함.)

한국 사회에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와의 관계를 논의하는 연구들이 산발적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실제로 포괄적 자료를 확보하여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들에 대해 어떻게 지원하는지’에 대한 풍부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하는 경우는 전년도에 발간한 ‘2009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백서’가 거의 유일했다. 이러한 논의가 단발성 연구에 그치지 않고 연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2010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백서’라는 모습으로 나오게 된 것은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들 사이의 협력적 관계의 역사를 정리해두는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해둔다는 의미가 있다.

본 백서는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의 후원을 받아, ‘한국NPO공동회의’의 행정적 지원을 통하여 작성되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현황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1년 초 중앙정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정부가 2010년에 지원한 830건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단체, 지원하고 있는 프로그램, 지원액, 연도, 지원기준을 검토하였다. 또한 2010년 이전에 지원한 사항은 전년도 백서를 참조하고, 2011년도 지원계획을 함께 포함하여 그 추이를 분석하였다.

비영리민간단체, 이들과 정부와의 관계, 정부의 지원방안 등의 주제가 일반 대중, 비영리민간단체 실무자 모두에게 생소한 주제이므로, 본 백서의 제 I부에서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제도와 관련 이론, 논의들을 우선적으로 정리하여 밝혔다.

비영리민간단체를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윤이 발생해도 조직원들에게 분배하지 않으며 공공의 목적을 지니는 자발적이고 자치적인 민간조직'으로 규정하고, 비영리민간단체조직의 생성과 성장에 대한 일반론을 소개하며,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와의 관계를 보완적 관계, 협조적 관계, 대립적 관계로 나누어 한국적 상황을 정리하였다. 본 백서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정부 지원의 양상은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와의 관계에서 보완적 관계 내지는 협조적 관계를 상정한다. 정부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더불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거, 보조금 지원, 조세감면, 우편요금의 지원, 행정지원 및 협력, 시민참여제도 등의 방식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기부금품모집및사용에관한법」에 의거하여 모금에 대한 정부의 제도를 완화하여 간접적 지원을 한다. 비영리민간단체와 관련한 지원과 관련하여 부처별 대상 사업의 변동, 예산의 변동은 있었지만 제도적 변화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긍정적인 측면에서 작은 변화가 감지되었는데, 비영리조직이 받는 '지정기부금'의 납세자 소득공제 한도가 2010년도에는 20%로 전년대비 5% 증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현황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지원을 받는 단체에 대한 유형분류,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분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백서에서는 전년도 백서에서 차용한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를 동일하게 활용하여 단체의 속성, 지원사업의 기능적 속성에 대한 분류작업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가 특정 유형의 단체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변동시켜 왔는지 연도별 추이분석을 위한 기초자료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국제적으로 공인된 분류 기준이므로, 추후 국가 간 비교를 위한 기초데이터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중앙부처는 고용노동부를 위시한 26개의 중앙부처였다. 현재 중앙 정부의 각 부처에서 취합한 자료를 토대로 볼 때, 중앙 정부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원금은 총 3,227억 원 정도로 나타났다. 2010년 대한민국 정부의 결산액이 특별회계까지 포함하면 248조 6,533억 원 정도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부 예산 대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금의 규모는 정부

예산의 0.13%에 불과한 상황이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여 부처에 따라 민간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까지 포함하여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민간단체 지원을 위한 주요공모사업만으로 한정하여 정보를 제공한 경우도 있으므로 전반적인 지원현황은 과소보고 되었을 우려가 있다. 더욱이 중앙정부의 2010년 사업공고 확인을 통해 학술용역을 제외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 가능한 200개 사업을 검토해본 결과 정보공개에 누락된 사업도 상당히 많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업의 규모가 최소 2,000억 원 정도라고 생각해보는 때 이를 포함하면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여 수행하는 사업의 규모는 전체 결산액의 2%에 가까이 수렴할 것으로 생각된다. 아울러 중앙정부에만 한정된 연구이다 보니,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에 교부하여 다시 지방정부단위에서 개별 단체로 지원되는 유형의 지원이 누락되기도 하였다. 이를테면 각 급 학교에 대해 지원되는 교육부예산지원, 개별 시설로 지원되는 보건복지부 등의 지원액이 누락된 것이다. 전년도에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각 부처에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에 지방정부를 통하여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경우를 같이 제시해달라고 하였으나 한 부처에서도 관련한 사업이 있다고 응답하지 않아 반영하지 못하였다.

2010년 정부의 각 부처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빈도의 평균은 31.9개 단체였으며, 각 부처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는 지원액을 보면 부처 평균 124억 1천만 원의 지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개별 단체 당 평균지원액은 3.88억 원 정도로 나타나지만, 부처에 따라 수백억원을 지원받는 단체와 수백만원대의 지원을 받는 단체까지 폭넓은 분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평균 지원액으로 전체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액을 살펴보면 교육과학기술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산림청, 문화재청, 기획재정부가 100억 원 이상의 지원을 하는 상위 7개 부처로 나타났다. 또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빈도를 살펴보면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외교통상부(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보건복지부, 방송통신위원회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액과 지원 빈도를 비교해볼 때 보건복지부를 제외하고는 지원 빈도와 지원액이 비례하지는 않았다는 점은 특정 민간단체에서 많은 액수의 지원을 받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실제로 자료를 확인해보니 특정 단체에 수백억 원 이상의 지원을 하는 경우도 확인이 되었는데, 이는 정부와

비영리민간단체와의 관계에서 보완적 관계를 넘어 더욱 긴밀한 협조적 관계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단체의 경우 정부가 출연한 자산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재단)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 취합단계에서 부처별로 이러한 단체가 포함되기도 하고 누락되기도 하였는데, 차년도 백서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체를 비영리민간단체로 분류하여 연구에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 분명한 기준을 세워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에 따라 검토해보면, 지원 빈도가 높은 분야는 시민사회단체, 사회서비스, 국제적 행동단체, 기업·직업단체·노조, 문화예술단체, 연구단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원액 순으로 본다면 기업·직업단체·노조에 지원되는 금액이 1,049억 원 내외로 전체 비영리단체 지원의 32.5%나 차지하였다. 이 중에서 '소상공인진흥원'이 565억 8,200만원이나 차지한다. 그 다음으로 연구단체에 720억 원 내외의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전체 비영리 단체의 22.3%나 차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소득보조와 유지 분야에 600억 원이 지급되었는데, 사실 이는 '과학기술인공제회'라는 단일 조직에 대한 지원이다. '소상공인진흥원'이나 '과학기술인공제회'와 같이 특정 조직에 고액의 지원이 되는 경우는 대부분의 재원을 세금으로 충당하며 정부의 기능을 대신하는 '공공기관적' 특성을 지닌 경우가 대부분이다.

본 백서에서는 정부 부처별로 구분하여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현황을 살펴보았다. 이 과정에서 각 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액, 예산대비 비중을 제시하였으며,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에 따라 어떤 단체, 어떤 사업에 지원이 이루어졌는지 검토하였다. 또한 정보공개 청구 시 과거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현황을 통보한 경우에는 지원단체의 수와 지원액의 추이, 변동의 사유를 확인하여 소개하였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위하여 정부가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지 제시하고자 구체적으로 민간단체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설명회 자료'를 검토하였다. 여기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의 공모사업에서 지원을 받기 위하여 해야 할 과업을 비교적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 본 백서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정보

공모를 준비하기 위하여 확인단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단계, 사업수행 단계, 평가 및 보고 단계에서 해야 할 일과 유념할 점을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정부 공모사업을 준비할 때 비영리민간단체에서 관심을 두어야 할 점은 ‘어떤 부처에서, 어떤 사업을, 어느 시기에, 어떤 심사기준을 가지고 응모를 하는가’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단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정부부처 홈페이지 공고란을 수시로 검토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수의 사업은 매년 큰 변화 없이 반복적으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공모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사항들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유익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정부부처 홈페이지 공고를 확인하여 학술용역을 제외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200개 사업을 추려 내용을 요약하고, <부록>에 표로 제시하였다. 더불어 해당 사업 공고 시 제시된 주요 심사기준을 검토하였다. 정부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 심사기준으로 자주 등장하는 용어를 키워드로 삼아 계수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심사기준을 일반화하고, 해당 기준이 의미하는 바를 정리하였다. (1)적정성/타당성, (2)능력/전문성, (3)공신력, (4)효과/파급성, (5)예산/효율, (6)운영/실현가능성, (7)책임감/의지, (8)독창성, (9)평가계획, (10)홍보, (11)협력, (12)욕구대응, (13)물리적 위치.

본 백서의 의의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검토한 국내 최초의 포괄적 시도이며,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이라는 국제기준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구분하여 외국의 상황과 비교하기 위한 기초적 자료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의 지원을 원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실제적 가이드를 제공했다는 데 실용적 가치가 있다.

본 백서작업은 2년차를 맞이한다. 이로 인해 1년차 백서보다 보완된 점이 있다. 2010년에 정부부처별로 공고된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사업공고를 보다 면밀하게 확인하고, 심사기준 등을 세심하게 계수하고, 이를 목록화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이 주요한 변화이다. 이는 개별 민간단체에서 정부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사업공모의 기회를 얻기 위하여 준비되어야 할 점들에 대한 실용적 정보를 제공해준다. 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있다. 본 백서 구성을 위해 활용하는 정보의 질과 기준의 통일이 더욱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부처의 정보공개자료에 의존하면서, 정부부처에서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하면서도 포함시키지 않은 자료가 있어도 이를

확인하여 보완하지 못하였다. 취합된 자료를 보면 부처 담당자별로 어떤 단체가 비영리민간단체인지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그로 인해 전년도에 포함되었던 단체가 올해 백서 작업에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많았다. 차년도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다양한 유형을 사전에 조사하여 부처 간 취합 자료의 질에서의 편차를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해당연도 백서를 구성할 때 각 부처별로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고가 무엇인지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확인하여 리스트로 정리하고, 정보공개 청구 시 해당 공고와 관련하여 선정된 단체명과 사업명, 지원금액 등을 구체화하여 기록할 수 있도록 하여 정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된다.

연구 주제 자체가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백서'이므로, 비영리민간단체가 정부와의 관계에서 정부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눈치를 보는 '을(乙)'의 입장인 것처럼 비추어질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사업공모를 하는 영역의 대부분은 공익적 특성은 있어 '해야 하는데 비영리민간단체의 전문성과 의지에 기대지 않으면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유념해 두어야 한다. 우리는 실제로 비영리민간단체가 재정적인 측면에서 정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단체가 '정부의 실패'를 보완하며 사회를 함께 풍요롭게 해나가기에 정부가 비영리민간단체에 의존한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나아가 많은 비영리민간단체는 진정성을 자산으로 자발적 노력과 헌신의 과정을 통하여 '정부가 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 이번 백서가 비영리민간단체의 정부와 사회와의 관계를 정리하는 초석이 되었으면 한다. 그 위에 멋진 건물을 세워 나가는 후속 연구도 기대하고, 비영리민간단체가 사회전반의 발전을 위해 약진하는 모습도 간절히 기대한다.

1. 백서 작성시 비영리민간단체 분류를 위한 기준과 고려 사항

「2010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백서」도 비영리민간단체 분류를 위하여 UN이 규정한 국제 비영리민간단체분류체계인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Nonprofit Organizations, ICNPO)을 적용하였다. 이 체계는 존스홉킨스 비교 비영리 부문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학자들이 참여하여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 스웨덴, 일본, 헝가리, 브라질, 가나, 이집트, 인도, 태국의 자료 등 다양한 국가의 비영리 조직을 분류하면서 만든 것이라 포괄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국제기준이므로 장기적으로 정확한 자료가 잘 정리되면 국가간 비교에도 유용한 자료를 산출할 수 있는 유익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내에서 정부에 의해 지원받은 비영리민간단체를 분류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정부로부터 건네받은 자료가 비영리민간단체명칭과 사업명 정도였다는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홈페이지 검색, 한국NGO총람 등을 통하여 비영리민간단체의 주요 사업을 검토하여 그 기능에 따라 특정 범주에 포함시켰다. 자료 검색을 해도 단체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도 다음과 같은 어려움이 있었다.

1) 다양한 목적을 복합적으로 지향하는 단체의 경우

하나의 단체가 다양한 사업을 복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류가 어려웠다. 예를 들면 국내에서 저소득 계층을 위한 사회서비스를 하는 단체가 국제구호를 병행하는 경우이다. 혹은 소비자운동(법과 법률서비스 분류)을 하는 단체가 문화사업, 사회서비스, 환경분야의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도 그 예가 될 것이다. 혹은 성매매방지/성폭력 관련 상담을 하는 단체는 성매매방지라는 측면에서는 범법행위 예방이라는 측면에서 법과 법률서비스로 분류될 수 있고, 상담을 통한 지원이라고 보면 사회서비스의 측면으로 분류가 될 수 있었다. 이 경우에 가장 정확하게 분류를 하기 위해서는 예산 사용내역을 본다든지, 해당 단체의 정관을 검토하여 핵심기능을 파악하는 것이겠지만, 1차년도 백서작성에서는 가용한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1,000여건의 지원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기 힘들었고, 2차년도에도 마찬가지이다. 대신에 홈페이지를 통해 주요사업, 조직의 목적과 사명 등을 확인하고, 주로 관계하는 부처가 어떠한지 확인하여 분류하였다. 그러한 정보로도 충분히 결론을 짓기 어려우면 기관명을 토대로 분류를 해 넣었다.

2) 한국적 특수성에 따라 존재하는 단체의 경우

민간 비영리 조직 중에서 한국적 특수성에 따라 존재하는 조직들이 있었다. 대표적인 것이 북한관련 단체이다. 북한관련 단체도 그 이념적 정향에 따라 다양한 성격을 지닌 사업이 전개되었는데, 그 주요한 내용은 안보, 평화, 통일, 탈북자 이민자 지원 등으로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였다. 이를 기존의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에 적절하게 분류해 넣기 어려웠다. 기본적 원칙은 안보, 평화, 통일을 기타항목(북한관련)으로 정리하고, 탈북 이민자를 지원하는 단체와 사업의 경우 우리 국민으로 이미 편입되었다고 보고 사회서비스로 분류해 넣었다.

또한 국민 의식 개혁, 국민 의식 계몽, 문화시민운동 등과 관련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에 대한 분류에서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 단체의 경우 정부가 수행하는 다양한 정책 수행을 측면에서 지원해주는 준공공적 속성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와 같은 단체의 취지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모인 ‘시민 및 변호단체’로 분류하였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지니는 단체들, 동일한 사안에 대해 정반대의 의견을 제시할 단체들이 같은 분류에 포함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3)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에 따라 사업을 분류하면서 생기는 어려움

이번 백서를 구성할 때 단체의 속성과 실제로 그 단체가 수행하는 활동 사이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보기 위하여 단체의 분류기준과 지원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분류 기준으로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을 동일하게 활용하였다.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은 기능에 초점을 맞춘 분류방식이어서 기관의 프로그램을 구분하는 데에도 대체로 유용하고 수월한 기반이 되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특정 주제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를 풀어내는 방식은 다양하고 복잡적이어서 어려움이 있었다. 예를 들어 ‘인권교육’은 ‘인권’을 중요한 기능으로 보면 ‘시민 및 대변’의 속성으로 분류가 가능하고, ‘교육’을 중요한 기능으로 보면 ‘기타교육’으로 분류해 넣을 수 있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환경교육’이라면 ‘환경단체의 기능’, ‘초중등교육’의 기능을 모두 하였기에 한 범주로 포함하여 넣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목적과 관련하여 분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즉, 인권교육 프로그램은 인권 프로그램으로,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환경 프로그램으로 환원하여 분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표 VI-1〉는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를 분류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논의와 회의를 통하여 확정된 분류작업기준표이다.

(표VI-1) 국내 비영리민간단체 분류기준 작업표 (ICNPO기준의 적용)

대분류	중분류	해당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예	연구진 검토후 확정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활동구분
1 문화와 레크리에이션	100 문화와 예술	방송통신, 시각예술, 건축, 공예, 공연예술, 역사, 문학, 인문협회, 박물관, 동물원, 수족관, 다목적 문화예술 단체 등	문화재 반환, 예절교육, 송모회(보후처), 민족(역사), 역사바로세우기
	200 레크리에이션	스포츠 클럽, 레크리에이션, 다목적 레크리에이션 조직 등	
	300 서비스 클럽	서비스 클럽, 다 목적 서비스 클럽 등	
2 교육	100 초중등교육	초, 중등 교육	사생대회, 학교의식개혁,
	200 고등교육	고등교육(대학)	장학재단(한국노총, 농촌희망재단, 4사)
	300 기타교육	직업/기술학교, 성인/평생교육, 다목적 교육조직 등	
	400 연구	의학, 과학기술, 사회과학, 정치학 등	학회, 연구회
3 건강	100 병원과 재활	병원, 재활병원	
	200 요양원	요양원	
	300 정신건강과 위기개입	정신과병원, 정신보건치료, 위기개입, 다목적 정신건강조직 등	북한이탈자 정신건강지원
	400 기타건강서비스	공공보건교육, 의료처치(주로 외래), 재활의료서비스, 응급의료서비스, 다목적 보건서비스 조직 등	성산장기려선생기념회, 헌혈 봉사단
4 사회 서비스	100 사회서비스	아동복지, 아동서비스, 주간보호, 청소년서비스, 청소년복지, 가족서비스, 장애인서비스, 노인서비스, 자조 및 다른 대인사회서비스, 다목적 사회서비스 조직 등	Barrier-Free, 다문화인식개선, 가정폭력예방교육, 초등학교 성교육, 성폭력 금지 프로그램 * 탈북지원
	200 긴급상황 및 난민	재난/응급 예방, 구호 및 통제, 일시 쉼터, 피난처 지원, 다목적 응급 피난 지원 조직 등	
	300 소득보조 및 유지	소득 지원 및 보전, 물질 원조, 다목적 소득 지원 및 보전 조직 등	
5 환경	100 환경	공해 감소 및 통제, 자연자원 보전 및 보호, 환경미화 및 open spaces, 다목적 환경조직 등	
	200 동물	동물보호 및 복지, 야생동물보존 및 보호, 수의서비스, 다목적 동물서비스 조직 등	

대분류	중분류	해당되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예	연구진 검토후 확정된 비영리민간단체 및 활동구분
6 개발과 주거	100 경제, 사회,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 및 근린조직, 경제개발, 사회개발, 다목적 경제, 사회, 지역사회개발 조직 등	농수산물소비촉진, 수협, 농협, 귀농운동, 농촌개발,
	200 주택	주택 연합, 주거 지원, 다목적 주거 조직 등	
	300 고용 및 훈련	직업훈련프로그램, 직업상담 및 지도, 직업재활 및 지원 작업장, 다목적 고용 및 훈련 조직 등	
7 법, 옹호, 정치	100 시민 및 변호단체	시민 결사체, 대면 조직, 시민권 협회, 인종 연합, 다목적 시민 및 옹호 조직 등	민주화운동, 인권, 양성평등, 장애인식개선, 장애인인권, 나라사랑, 국민의식개혁, 생활개혁, 문화시민운동, 탈북자 연대
	200 법과 법률서비스	법률서비스, 범죄예방 및 공공안전, 범법자 재할, 피해자 지원, 소비자 보호 및 조직, 다목적 법률 서비스 조직 등	성매매금지 프로그램
	300 정치조직	정당, 정치행동위원회, 다목적 정치 조직 등	
8 자선 매개 및 봉사증진	100 교부금 모금 조직	교부금 모금 재단	
	200 다른 자선 매개 및 자원봉사 증진	자원봉사증진 및 지원, 다목적 자선 매개 및 봉사조직 등	
9 국제	100 국제적 행동	교류/우호/문화프로그램, 개발지원조직, 국제재단 및 구호조직, 국제 인권 및 평화조직, 다목적 국제조직 등	국제학술대회, 재외동포, 국제문화재 등록, 한국 바로 알리기
10종교	100 종교집회 및 단체	개신교회, 가톨릭교회, 유대인 회당, 힌두사원, 신사, 무슬림 모스크, 복합종교조직 등	
11 경영 및 전문직 조직, 노조	100 기업, 직업단체, 노동조합	기업연합, 전문직 연합, 노조, 다목적 기업, 전문지 결사 및 노조 외	
12 기타	100 기타	기타	북한한 관련 구호, 통일, 평화, 안보

이러한 분류과정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연구진이 취한 방법은 교차 분석의 방법이었다.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이 각자 분류를 실시하고, 이를 교차 비교하였다. 서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4차례에 걸쳐 각각 2시간 이상의 회의를 거치면서, 서로의 이해를 분명하고 의견 일치를 모색하였다. 2차년도 백서작업에 참여한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이 일치하여 분류작업이 훨씬 수월하게 진행되었지만, 교차분석을 통해 오류를 줄여나가기 위한 작업을 충실히 이행되었다. 그 다음에는 동일하거나 비슷한 단체가 일관성이 없이 서로 다른 분류로 되어 있는 경우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를 코딩하여 전산에 입력한 후, 다양한 기준으로 정렬시켜 검토하면서 오류를 줄여나가기로 하였다.

국제비영리조직분류방식(ICNPO)에 따라 2010년 정부의 지원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리스트와 지원받은 사업명은 제Ⅲ부 본문에 들어 있다. 이 리스트를 제공하는 이유는 지원을 받은 단체가 본인의 단체의 속성이 잘못 분류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다.⁹

2.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정부지원 공모사업」

표참조(p205)

9 문의하거나 수정될 사항이 있으면, 백서 연구진이나 한국NPO공동회의에 연락을 취하면 된다.

부처	연도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단위:천원)	지급액 (단위:천원)	심사기준 1차	2차유무	공고일	마감일
고용노동부	2010	2010년도 장애인 인식개선 자문사업 공모	장애인근로자 문화행사, 청소년 장애인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고용 관련 정기간행물 발간·배포	91,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목적 적합성(20), 사업계획 타당성과 적정성(30), 사업수행능력(30), 사업의 효과성(20) 	×	2009-12-17	2010-01-04
고용노동부	2010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	노사파트너십 증진 프로그램, 일터혁신 및 경쟁력 제고 프로그램, 기타	4,0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정지원금:3,800,000 일반관리비:350,000 연구개발비: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태도(15): 사업참여의지(5), 사업에대한 책임성(5), 과제성공에 대한 확신성(5)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수행능력(25): 사업수행과정 및 특수성이해(10), 원 장래진단 이해 정도(10), 인력 전문성 및 재정능력(5) 제안내용의 적절성(30): 제안프로그램의 체계성 및 참신성(10), 세부실행 전략의 타당성(10), 참신성 및 발전가능성(10) 	○	2009-12-22	2011-01-11
고용노동부	2010	2010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 지역간경쟁방식 사업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화사업 : 지역직원의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지역주민의 일자리창출, 고용촉진, 능력개발 등을 추구하는 사업 패키지 사업 : 포털사업, 특화사업, 연구사업 중 2개 이상 결합된 사업으로 특화사업은 반드시 포함 	11,000,000	-	지역수요에의 대응성(30), 사업수행능력, 파트너십(30), 사업전략(20), 기대효과(20) 등	×	12/31/2009	2011-01-13
고용노동부	2010	2010년도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운영기관 모집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턴 1인당 월 280 취업성공 보수 1인당 50 	-	×	1/8/2010	2010-01-18
고용노동부	2010	취업촉 뉴스타트 프로젝트 운영기관 모집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본운영비 : 참여자 1인당 1,000(단체별 분할 지급) 취업보너스 : 취업된 참여대상자별 1인당 최대 200~500 	-	×	2010-01-08	2010-01-18

부처	연도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단위:천원)	지급액 (단위:천원)	심사기준 1차	2차유무	공고일	마감일
고용노동부	2010	10년도 사회적기업 민간위탁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통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현장 지원 •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자문 및 경영컨설팅 지원 • 지역별 자원연계(지자체, 기업, 프로브노 등) 활성화 • 지역별 (예비)사회적기업 네트워크 구축 • 지역별 상공사에 발굴 및 사회적기업 홈페이지 등 홍보 • 사회적기업·사회적일자리사업 참여기관 및 참여자 교육 지원 • 정부계정지원사업 심사 지원 및 모니터링 • 그 밖에 (예비)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 ○특별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브노 사업 총괄 • 진로단위의 자료 제작 	2,00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능력(70): 전문성(20), 수행경험(15), 수행업체 규모 및 공신력(15), 지역 자원 연계(10) • 참여연력우수성(15): 인력구성 적정성(5), 인력 경험여부(5), 인력의 전문성(5) • 사회적기업 이해정도(15): 사회적기업 및 인증제 논리성(5) • 가격평가 	○(F7)	1/8/2010	2010-01-18
			고용노동부	2010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13,36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취업지원 사업: 1개소당 연간 74,000 • 노숙인 취업지원 사업: 1개소당 연간 74,000 • 건설근로자 지원사업: 1개소당 연간 58,000 • 산업단지 취업지원사업: 1개소당 연간 74,000 •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 1개소당 연간 69,500 • 구직자 스펀드관리프로그램(EAP) 민간위탁사업: 1개소당 연간 46,000 • 취약계층 취업알선 및 집단상담 아웃소싱: 1개소당 연간 46,000 (복합이탈주민: 50,000) • 고령자언제은행: 월3,700 •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 간병·가사도우미취업지원사업: 월 인건비 인당 1,650 / 운영경비 1,500/ 시설설치비 연간 20,000 	×
고용노동부	2010	취업지원 민간위탁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여성 취업지원 사업 ② 노숙인 취업지원사업 ③ 건설근로자 취업지원사업 ④ 산업단지 취업지원사업 ⑤ 결혼이민자 취업지원사업 ⑥ 구직자 스펀드 관리 프로그램(EAP) 운영위탁 ⑦ 취약계층 취업알선 및 집단상담 아웃소싱 ⑧ 고령자언제은행 ⑨ 중견전문인력 고용지원센터 ⑩ (하반기) 간병·가사도우미 취업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수행능력 • 고용지원센터와의 사업연계 등 사업별로 상이 		2010-10-25	2010-11-05

부처	연도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단위천원)	지급액 (단위천원)	심사기준 1차	공고일	마감일
고용노동부	2010	2010년도 「지역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중 “인프라활용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 사업 참여기관 건설행 • 지역노동시장 평가 및 컨설팅 실시 • 교육프로그램 운영 • 정보지 발간 • 지역고용 통합정보 웹사이트 보완·운영 	400,000	-	전문성 및 사업수행능력(30), 제안내용의 적합성(20), 계획의 타당성(20),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20), 평가결과 활용 가능성(10)	1/14/2010	1/29/2010
고용노동부	2010	취업성공 패키지 지원사업 「취업알선·등 민간위탁사업 운영기관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알선 업무 위탁사업, 취업지원 진과정 위탁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금(취업알선업무: 위탁인원 1인당 1년기준 1,000) • 취업성공금(100/300) • 근로성공금(100/500) 	-	2010-01-14 2010-01-25 2010-08-11 2010-08-20	
고용노동부	2010	노사관계 비영리법인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사관계 관련 비영리법인이 고용유지·창출을 위한 생산적 교섭지원, 노사 갈등관리 및 노사 파트너십 프로그램 개발·운영, 중소기업사업장 인사노무관리 지원 등 협력적 노사관계의 발전과 작업장혁신 및 새로운 노사문화 형성을 위해 수행하는 각종 사업 	31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에 필요하고 직접 소요되는 비용 지원 • 자부담 최소 10%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목적적합성(10), 사업계획타당성, 충실성(25), 사업내용실행성(25), 사업결과효과성(25), 제안내용참신성(15) 	2010-01-14 2010-01-25	
고용노동부	2010	「지역근로자 고용차별개선사업」공고	고용상 차별예방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과정개발 및 사업장 방문 또는 집체교육실시	2,00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 타당성·충실성,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사업효과성 등 	2010-01-20 2010-01-29	
고용노동부	2010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위탁(인소성)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상담프로그램(CAP), 취업행방·정신, 세부채취업체, 제대군인) •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2,37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상담프로그램: 회당 최대 1,800 • 단기집단상담프로그램: 회당 230~2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능력: 비전과전략(10),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경험 및 실적(15), 취업지원관련전문성(20), 담당인력 전문성(인력구성의 적정성, 담당인력의 경험여부, 인력의 전문성), 사업에 대한 이해정도(사업수행 과정 및 특수성 이해, 사업집행 진단 및 발전방안 제시 역량), 제안 프로그램의 적실성(제안 전략의 체계성, 세부실행계획의 적실한, 세부실행계획의 실행가능성) 	2010-01-20 2010-01-29	
고용노동부	2010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210,8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능력(노사협력 및 정부시상 업무 역량 수행업체의 규모 및 공신력, 민간자원 동원능력), 참여인력 전문성(인력구성의 적정성, 담당인력의 경험여부, 인력의 전문성), 사업에 대한 이해정도(사업수행 과정 및 특수성 이해, 사업집행 진단 및 발전방안 제시 역량), 제안 프로그램의 적실성(제안 전략의 체계성, 세부실행계획의 적실한, 세부실행계획의 실행가능성) 	2010-01-22 2010-02-01 (PT)	

부처	연도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단위천원)	지급액 (단위천원)	심사기준 1차	2차유무	공고일	마감일
고용노동부	2010	2010년도 중소기업 창립취임인턴제 교육훈련 위탁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턴구직자·인턴참여자의 중소기업 이해 증진 및 인턴근무 직무적응도 향상 인턴 중도포기자 및 인턴이수후 미취업자 진로지도 등 	1,496,22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능력평가: 과업의 이해도(15), 과업수행 계획의 적정성(20), 수행체계의 적정성(20), 기업의 수행능력(25) 가격평가: 입찰가격 평가(20) 	×	2010-02-08	2010-02-19
고용노동부	2010	다담돌 일자리사업 시행	-	-	월750 /인	-	×	2/8/2010	-
고용노동부	2010	2010년 「적극적고용 개선조치 지원」사업 위탁기관 모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종별·직급별 남녀근로자 현황분석, 이행실적의 평가 및 지원, 조사·연구·교육·홍보 등의 사업 AA-Net 관리 운영 	708,000	-	사업계획 타당성·충실성,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사업효과성 등	×	3/8/2010	3/19/2010
고용노동부	2010	여성고용촉진 컨설팅 사업 위탁수행기관 선정	-	32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 타당성·충실성, 사업계획 실현가능성, 사업효과성 등 	×	2010-03-09	2010-03-19
고용노동부	2010	2010년 고품격고용 안정컨설팅 비용지원사업 위탁기관 선정 공고	고령자 고용안정 촉진 등을 위해 고품격 임금체계 개선, 고령자 적합직무개발, 근로형태 다양화 등 컨설팅 및 교육·훈련/ 컨설팅	2,185,000	-	사업목적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실행계획실현가능성, 시설·인력 적정성, 사업효과성, 수행적정성	×	2010-03-09	2010-03-19
고용노동부	2010	2010년도 근로자과건 우수기업 인증사업	근로자과건 우수기업 선정 사업의 전 과정	-	13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자능력(25): 정부시장 업무 역량, 수행 업체의 규모 및 공신력 참여인력의 전문성(25): 인력구성의 적정성, 인력의 전문성 사업에 대한 이해정도(25): 사업수행 과정 및 특수성 이해, 사업진행 진단 및 발전방안 제시 역량 제안 프로그램의 적절성(25): 제안 전략의 체계성, 세부실행계획의 실행가능성 	○ (PT)	3/9/2010	2010-03-22
고용노동부	2010	2010년도 작업장 혁신지원 사업 운영 임찰	노사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작업장 혁신 프로그램(통합진단, 임금직무 혁신, 고성과 근무체계 및 평생학습체계 개선 등)	2,83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작업장혁신지원 사업 1,890,000(일반회계) 내 고성과근무체계개선 사업 1,045,000(고용보험기금) 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태능력 및 적정성(30): 사업수행적정성(10), 유사사업 수행경험(10), 업체의 역량 및 공신력등(10) 태도(15): 사업 참여지 정도(5), 사업에 대한 책임성(5), 과제성공에 대한 확신성(5) 작업장 혁신 지원사업 수행능력(25): 사업수행 과정 및 특수성 이해(10) 현 정책 진단 이해 정도(10), 인력의 전문성 및 발전가능성(5) 제안내용의 적절성(30): 제안 내용의 체계성 및 사업효과성(20), 참신성 및 발전가능성(10) 	○ (PT)	3/10/2010	2010-03-18

부처	연도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단위천원)	지급액 (단위천원)	심사기준 1차	2차유무	공고일	마감일
고용노동부	2010	2010년 중소기업 공용구조 개선지원사업 위탁사업자 선정	인사관리 체계 개선, 비정규직 능력개발 프로그램 구축, 임금·직무 제설계·조직문화개선을 위한 컨설팅 사업	2,440,000	-	사업목적의 타당성, 예산의 적정성, 실행계획의 실현가능성, 시설·인력 적정성, 사업효과성, 수행적정성	×	3/10/2010	2010-03-18
고용노동부	2010	단시간근로 일자리 창출 컨설팅 지원사업 위탁사업자 선정	-	870,000	-	• 사업계획의 타당성, 충실성, 실현가능성, 사업 수행의 적정성, 사업 효과성 등	×	2010-03-11	2010-03-19
고용노동부	2010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수탁회합기관 공모	검정위탁기관을 변경하고자하는 다음 종목의 2011년 이후 시험문제 출제, 검정시험 관리 및 체점 자격증의 교부·재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	-	-	• 비영리법인의 적합성 여부 • 검정실행을 위한 조직·인력·시설 능력; 검정조직의 구성, 인적자원의 구성시설 및 장비 • 산업계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체계; 산업계 요구 반영체계, 관련단체 요구반영 체계 • 자격검정의 전문성 및 대표성; 출제기준, 문항개발, 평가방법 개발 방안, 검정시험 및 관리 방안, 체점 및 사후관리 방안, 해당 종목에 대한 대표성 • 기타 사항: 보안유지 계획, 내외부 피드백 체계 구축 방안 • 수탁회합기관의 강점	×	4/1/2010	2010-04-27
고용노동부	2010	청년 창업·창업 인턴제운영기관 모집	청년 창업·창업 인턴제 지침에 의거 인턴 및 연수시행자 모집, 정부지원금 지급, 채용 합선, 사진·사후 관리 등 사업 운영의 전반적 사항을 민간기관에 위탁	3,200,000	-	• 위탁운영비: 인턴 1인당 400 • 성공보수: 창업·창업 이행 시 1인당 200	×	2010-04-02	2010-04-12
고용노동부	2010	사회적기업 문화예술 분야 민간 위탁 지원사업 수행기관 입찰 공모	-	70,000	-	업체능력(전문성(30), 수행경험(15), 수행업체 규모 및 공신력(5), 지역자원연계(20), 참여인력의 우수성(인턴구성의 적정성(5), 인턴의 경험여부(5), 인턴의 전문성(5)), 사회적기업 이해정도(사회적 기업 인증제도 이해정도(10), 사회적기업에 대한 문제집단 논리성(5))	0 (PT)	2010-04-16	2010-04-26

부처	연도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단위천원)	지급액 (단위천원)	심사기준 1차	2차유무	공고일 마감일
고용노동부	2010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사업 총괄수행기관 공모	-	80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능력: 역량 및 교육 관련 전문성(10), 유사사업 수행경험(10), 수행업체 규모 및 공신력(5), 민간자원 동원능력(5) • 참여인력의 전문성: 인력구성의 적정성(10), 인력의 경험여부(5), 인력의 전문성(5) • 사회적기업 및 아카데미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수행 과정 및 특수성 이해(10), 현 정책진단 이해정도(10), 인행 아카데미사업 문제진단 능력성(5) • 제안교육 프로그램 적절성: 제안전략 체계성(10), 제안전술 참신함(10), 제안전술 실행가능성(5) 	0 (PT)	2010-04-23 2010-05-04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사업수행기관 공모	5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능력: 역량 및 교육 관련 전문성(10), 유사사업 수행경험(10), 수행업체 규모 및 공신력(10) • 참여인력의 전문성: 인력구성의 적정성(5), 인력의 경험여부(10), 인력의 전문성(5)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10), 사회적기업가 양성을 위한 교육에 대한 이해(10) • 제안내용 적절성: 교육평가 프로그램 기획능력(15), 제안전술 실행가능성(15) • 가격평가 	×	2010-04-23 2010-05-04
고용노동부	2010	사회적기업 사회적 가치 평가도구(SROI) 개발·평가사업	-	20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능력: 전문성(30), 수행경험(20), 수행업체 규모 및 공신력(20) • 참여인력 우수성: 인력구성 적정성(5), 인력의 경험여부(5), 인력의 전문성(5) • 사회적기업 이해정도: 사회적기업제도 이해정도(10), 사회적기업에 대한 문제진단 능력성(6) 	0 (PT)	2010-04-26 2010-05-04
			(예비) 사회적기업 경영지원 모니터링 수행기관 공모	10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능력(50): 전문성(30), 수행경험(10), 수행업체 규모 및 공신력(10) • 참여인력의 우수성(20): 인력의 경험여부(10), 인력의 전문성(10) • 사회적기업 이해정도(30): 사회적기업 및 인증제도 이해정도(10), 사회적기업 경영문제 분석 등(20) 	0 (PT)	2010-05-10 2010-05-19

부처	연도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단위:천원)	지급액 (단위:천원)	심사기준 1차	2차유무	공고일	마감일	
고용노동부	2010	사회적기업 및 예비 사회적기업의 대표자·관리자·실무자 등의 교육사업	-	18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용력: 역량 및 교육 관련 진문성(10), 유사사업 수행경험(10), 수행업체 규모 및 공신력(5), 민간서원·동원능력(5) • 참여인력의 전문성: 인력구성의 적정성(10), 인력의 경험여부(5), 인력의 전문성(5) • 사회적기업 및 아카데미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수행 과정 및 특성 이해(10), 현 정책진단 이해정도(10), 연행 아카데미사업 문제진단 능력성(5) • 재안교육 프로그램 적절성: 재안진략 체계성(10), 재안진출 참신함(10), 재안진출 실행가능성(5) 	○ (FT)	2010-05-12	2010-05-24	
고용노동부	2010	사회적기업 환경 분야 민간위탁 지원사업 수행기관 공모	-	7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능력(70): 전문성(30), 수행경험(15), 수행업체 규모 및 공신력(5), 지역 자원 연계(20) • 참여인력우수성(15): 인력구성 적정성(5), 인력 경험여부(5), 인력의 전문성(5) • 사회적기업 이해정도(15): 사회적기업 및 인증제 이해정도(10), 사회적기업에 대한 문제 진단 능력성(5) 	○ (FT)	2010-05-19	2010-05-28	
고용노동부	2010	사회적기업 인증별 네트워크/지역분야 육성을 위한 부차협력 네트워크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기업 인증별 네트워크 • 지역분야 육성을 위한 부차협력 네트워크 지원사업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업종별 네트워크: 250,000 (건당 50,000) • 전략분야 육성: 220,000 		필요시	2010-05-26	2010-06-04
고용노동부	2010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교육기관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전문과정 • 실무전문과정 • 연구전문과정 	-	-	최소 15,000~최대30,000	×	2010-06-30	2010-07-14	
고용노동부	2010	사회적기업 3주년 성과평가사업 수행기관 공모	-	65,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능력(70): 전문성(30), 수행경험(20), 수행업체 규모 및 공신력(20) • 참여인력우수성(15): 인력구성 적정성(5), 인력 경험여부(5), 인력의 전문성(5) • 사회적기업 이해정도(15): 사회적기업 및 인증제 이해정도(10), 사회적기업에 대한 문제 진단 능력성(5) 	○ (FT)	2010-07-20	2010-07-29	

부처	연도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단위천원)	지급액 (단위천원)	심사기준 1차	2차유무	공고일	마감일
고용노동부	2010	10년도 소셜벤처 경연대회 사업 총괄수행기관 공모	①공통자료 제작 및 멘토링 서비스 가이드라인 제시 등 사전준비, ②지역별 경연대회 지원, ③전국 경연대회 개최 ④초기사업비 지원, ⑤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네트워킹 구축·운영 지원 등 사후관리	1,20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능력: 역량 및 소셜벤처 관련 전문성(10), 유사사업 수행경험(10), 수행업체 규모 및 공식력(5), 민간자일동일능력(5) • 참여인력우수성: 인력구성적격성(10), 인력의 경험여부(5), 인력의 전문성(5) • 소셜벤처 및 경연대회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과정 및 특수성 이해(10), 현장책임단 이해정도(10), 작년 경연대회 사업 문제진단 논리성(5) • 제안대회 진행안의 적절성: 제안전략의 체계성(10), 제안전술의 참신함(10), 제안전술의 실행가능성(5) 	0 (PT)	2010-07-27	2010-08-05
고용노동부	2010	2010년도 소셜벤처 지역별 경연대회 사업 수행기관 공모	①지역별 대회 개최 및 운영 ②사전설명회 개최 및 참가자 오리엔테이션, ③멘토링 서비스 제공, ④지역내 기업 및 지방연론 후원 유도	558,8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능력: 역량 및 소셜벤처 관련 전문성(10), 유사사업 수행경험(10), 수행업체 규모 및 공식력(5), 민간자일동일능력(5) • 참여인력우수성: 인력구성적격성(10), 인력의 경험여부(5), 인력의 전문성(5) • 소셜벤처 및 경연대회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과정 및 특수성 이해(10), 현장책임단 이해정도(10), 작년 경연대회 사업 문제진단 논리성(5) • 제안대회 진행안의 적절성: 제안전략의 체계성(10), 제안전술의 참신함(10), 제안전술의 실행가능성(5) 	0 (PT)	8/10/2010	2010-08-16
고용노동부	2010	지역 일자리공시제 건설팅사업 수행기관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일자리공시제 시행계획 모델 발급 • 지자체에 대한 건설팅 제공 • 시행계획 경진대회 등 지역 일자리공시제 확산 	628,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타당성(30), 수행능력(50), 지역협력활성화 방안(10), 사업비의 효율성(10) 	×	2010-08-10	2010-08-19
고용노동부	2010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 전략분야 신택조사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	15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기관능력(50): 전문성(20), 수행경험(15), 수행기관 규모 및 공식력(15) • 참여인력우수성(15): 인력구성 적격성(5), 인력 경험여부(5), 인력의 전문성(5) • 네트워킹 역량 및 사회적기업 이해정도(35): 네트워킹 역량(20), 사회적기업 정책전문성(10), H43 사회적기업에 대한 문제 진단 논리성(5) 	×	2010-08-31	2010-09-09
고용노동부	2010	(최저임금) 4,110 지급이 운영사업 수행기관 모집	-	8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금: 30,000(기본실적 최저임금 위반사례 500건 당상시 정산) • 활동사태금: 건당 14 	×	2010-09-09	2010-09-17

부처	연도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단위천원)	지급액 (단위천원)	심사기준 1차	2차유무	공고일 마감일
고용노동부	2010	연구유예 참가 임주 희망 사회적기업 공모	-	-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상가입점의 적합성, 사업계획의 적합성, 지역사회기여 또는 일자리 창출효과 등	×	2010-10-01 2010-10-20
고용노동부	2010	2011년도 고용평등상담실 운영 희망단체 공모	-	-	• 운영경비 일부	-	×	2010-10-22 2010-11-15
공정거래위원회	2010	녹색 상품비교정보 생산 시민단체 모집공고	•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 중 가격과 품질에 대한 상품비교정보생산 및 제공 • 특히, 유기농식품, 친환경 제품, 프리미엄제품 등의 이름으로 고급제품임을 강조하여 기존제품에 비해 가격을 인상한 품목에 대해서 정보생산·제공	98,000	-	• 정보생산방식(45): 품목신청(15), 테스트항목(15), 테스트방법(15) • 정보제공방식(30): 정보제공방식(15), 정보전달방식(15) • 단체인양(25): 정보생산 및 문제해결능력(15), 예산산출의 타당성(10)	×	3/30/2010 4/9/2010
교육과학기술부	2010	2010년도「한-아세안(SEAMEO) 교육협력사업」지원 계획	-	80,000	-	사업추진 목적의 타당성, 사업목적의 구체성, 사업내용의 타당성, 사업 추진 방법의 적절성, 아세안 센터 및 기관과의 실질적 파트너십 형성, 사업 추진 결과의 활용도, 기존 추진 사업과의 중복성 및 차별성 증진	-	2010-09-09 2010-09-19
교육과학기술부	2010	성인문제교육 지원사업	-	2,000,000	기관거점 육성비: 기관당 15,000 이내 기관운영비: 기관당 6,000 이내 프로그램운영비: 기관당 6,000이내	-	○ (서면, 현장 평가)	2010-09-11 2010-04-02
교육과학기술부	2010	제7회 평생학습대상 사업계획 공모	-	-	대상 각 5,000~10,000 우수상 각 3,000~5,000	-	-	2010-06-28 2010-08-23
교육과학기술부	2010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지원 사업」통합 위탁사업기관 공모	•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사업(활용) • 학생 이공학교육 지원사업(육성)	6,000,000	-	• 사업운영계획의 우수성 • 신청기관의 센터에 대한 참여 및 지원의지 • 관련 협력기관의 원활한 협력계획 정도 • 센터소장 내정자의 적합성 등	○ (발표)	2010-06-29 2010-07-27
교육과학기술부	2010	제2회 방과후 학교 대상(大獎) 「방과후가 행복한 학교」	• 교사상 • 학교상 • 지역사회파트너상	-	-대상(1): 5,000 • 최우수상(5): 3,000 • 우수상(3): 1,000	<지역사회파트너상> • 가치 및 의식: 설립 목적과 방과후학교 사업과의 연계성, 사업의 지속적 참여 정도 등 • 운영의 적절성: 전문 인력 확보, 단위 학교와의 협력 정도 등 • 성과: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기여도, 지역 내 타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정도 등 • 독창성: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사업 수행 정도 등	○	2010-07-08 2010-08-31

부처	연도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단위:천원)	지급액 (단위:천원)	심사기준 1차	2차유무	공고일	마감일
교육과학기술부	2010	「다문화가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공고	-	1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위기관 100,000 내의 •20% 대응투자해야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체계: 기관 비전, 목표/기관 구성원 및 담당자 전문성 • 학습환경 및 교육시설: 지역다문화가정비용/ 학습시설현황/기관, 단체와 네트워크 구축현황 • 프로그램 전문성: 유사프로그램운영실적/ 예산편성절점성/학습자관리 지원체계/ 전문강사 확보현황/홍보계획 및 학습자 모집방안 	2010-07-20	2010-08-13	
교육과학기술부	2010	탈북청소년 민간교육시설 운영 재정지원사업 공고	탈북청소년 민간교육시설 운영 내실화 지원	-	평가기준에 의거 차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립목적 • 기관운영: 교육시설 확보, 교육시설 등의 안전 확보, 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 교육여건 개선 노력 정도, 학생 및 교직원수 • 교육과정: 학교 및 사회적응 교육과정 운영수준, 수준별 구성정도, 자체개발 프로그램의 참신성 및 기대효과 • 직원관리 • 기관특성: 탈북 청소년 교육 전문 정도, 학교 복귀 유도 및 진학, 취업 지원정도 (유형별로 배점다르고 차등지원함) 	2010-07-23	2010-08-18	
교육과학기술부	2010	「전국 문해교육 백일장대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해교육백일장 • 문해교육프로그램운영부문 • 문해교육 프로그램 자치단체 지원부문 	-	-	-	×	2010-07-30	2010-08-15
교육과학기술부	2010	합일재단합성 교육지원사업 공모계획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및 교재(도서) 구입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를 시설의 운영 목적 및 성과 등 	×	2010-08-09	2010-08-16
교육과학기술부	2010	전국 학부모지원센터 위탁사업기관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기획 • 교육지원 • 학부모상담 • 교육정보제공 	12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직의 안정성 및 효율성, 사업계획의 충실성, 예산집행 계획, 지역학부모지원센터 지원계획 및 연계 능력 등 	×	2010-10-13	2010-10-22
국가보훈처	2010	「6·25전쟁 60주년 기념사업」 문화예술행사 일제사업」 보조사업자 제공모	-	17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기획역량(30) • 사업추진, 대응 역량(25) • 인력, 조직관리역량(15) • 홍보역량(10) • 수임, 지출 계획의 효과성(20) 	×	2010-08-06	2010-08-16

부처	연도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단위천원)	지급액 (단위천원)	심사기준 1차	공고일	마감일
국기인권위원회	2010	인권단체협력사업	① 인권옹호 및 신장을 도모할 새로운 분야(영역)의 개발 및 활성화가 필요한 사업 ② 인권관련 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연대 강화를 위한 사업 ③ 국제인권조약 관련 사업 중 시의성 있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 ④ 인권증진에 관한 지역단체간의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130,000	-	사업과제 적합성, 사업단계의 수행능력, 파급효과, 신청예산의 적정성	2010-02-25	2010-03-12
국기인권위원회	2010	다문화 인권교육 프로그램 개발 용역 임차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체험사업 • 농어촌 지키기 사업 • 농어촌 알리기 사업 • 농어촌 폐교공간 활용사업 	45,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수행 능력 (20) • 과제내용의 적정성 (30) • 과제 수행방법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20) • 연구결과와 활용성 (20) • 가격 평가 (10) 	2010-05-26	2010-06-15
농림수산식품부	2010	『도농교류 협력사업』시행계획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촌 체험사업 • 민간단체 상환: 80,000 • 체험마을 상환: 20~30,000 (자부담 30% 원칙) 	1,60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내용의 타당성, 추진체계, 사업단계의 적합성, 사업효과 • 사업시행단계의 전문성, 책임성, 농어업, 농어촌에 대한 기여도 •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최근 2년간 평가결과, 국회 등 지적사항 반영 등 	2010-01-25	2010-02-18 (발표회)
농림수산식품부	2010	농업교육 우수프로그램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인교육프로그램 • 해외연수 • 귀농교육 	3,000,000	-	창의성(30%), 논리성(20%), 실현가능성(20%), 농정부합성 및 기대효과(30%)	2010-01-27	2010-02-08
농촌진흥청	2010	2010 한국형 전통문화 확산을 위한 농촌교육농장 교육과정 공모계획	-	70,000	-	-	2010-09-03	2010-09-13
문화재청	2010	『무형문화유산 온라인 전수조사』보조사업자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와 시범지역의 무형유산 기초자료 수집 및 입력 • 무형유산 온라인 전수조사 시스템 개발을 위한 기초 마련 	10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능력 • 과제내용의 사업목적 적합성 • 사업 수행계획의 타당성(실현가능성) • 예산안의 적정성 • 사업효과 등 	2010-09-27	2010-09-06

부처	연도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단위천원)	지급액 (단위천원)	심사기준 1차	2차유무	공고일	마감일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11년도 문화재 생생(生生)사업 지원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및 지방문화재로 지정되어 있거나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문화재를 활용하는 사업 문화재의 내재적 가치를 새롭게 발굴·활용하는 사업 다양한 문화유산을 융·복합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거나 지속가능한 역사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 지역 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지역 주민 전체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 	8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범사업 옥상형(20,000 내외) 우수사업 발전형(80,000~1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의 적절성·지자체의 관심 및 지원 등 사업 추진력(30); 계획적질성(10); 추진 역량(20) 콘텐츠의 우수성(40); 프로그램가치성(25); 참신성(15) 목표달성 가능성(15) 지속발전 가능성(15); 지속발전 가능성 및 브랜드화 가능성(15) 	-	2010-11-18	2010-12-06
문화체육관광부	2010	아시아 전통음악 작연개발 및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사업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동남아시아 지역 8개국 내외 전통음악 작연 개발 극장 상영용 다큐멘터리 제작 (2편) 2차년도 개발결과물의 웹서비스를 위한 사이트 개발 사업결과물 활용계획 	-	600,000 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기관 개요(10) 기획의 우수성(30) 제작 및 추진계획의 타당성(40)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20) 	○	12/22/2009	1/5/2010 (PT/현장)
문화체육관광부	2010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유공모: 개별 프로그램 지원 기획공모: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지원 	5,88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공모: 사업당 최대 15,000 / 1개 단체당 최대 30,000 기획공모: 사업당 50,000~1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 부합성 및 공모기준 반영 여부 프로그램 체계성 및 적합성, 실행 집문성 지역의 필요성 및 효과성 지역연고 및 네트워크 기반의 체계성 (기획공모 해당) 가점부여 '09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참여한 경우(공통) 사회적 기업(에비사회적 기업) 전환 계획이 있거나 지정된 경우(공통) '10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사업 선정된 경우(공통) 기초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한 경우(기획공모 해당) 	-	2009-12-30	2010-01-22
문화체육관광부	2010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부처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상황분석, 정책 브랜딩, 홍보 논리·메시지개발, 전략 및 집행프로그램 등 홍보기획안 제시	288,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안(70): 홍보목표, 전략의 타당성(20), 실천계획 구체성(30), 기획내용 참신성 및 창의성(20) 업체현황(10): 수행실적(5), 수행능력(5) 가격제안(20) 	○	2010-01-11	2010-01-22 (PT)

부처	연도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단위천원)	지급액 (단위천원)	심사기준		공고일	마감일
						1차	2차유무		
문화체육관광부	2010	생활체육 공모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 및 경연대회 등의 사업 대상별, 연령별, 수준별에 맞는 강습회 소의계층 대상 생활체육 사업 기타 생활체육진흥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1,200,000	사업별 50,00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체계성 사업내용: 사업목적 및 필요성, 사업내용의 충실성 자체예산 확보율: 확보노력 기대효과: 체육진흥 기대효과 (진동수예단체의 경우 단체역량/전국중무별 연합회의 경우 전국연합회성과평가) 	-	2010-02-11	2010-03-03
문화체육관광부	2011	북진기금 문화나눔사업 공모 - 소외계층 문화습회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복지시설 농산어촌 임대주택 다문화대상, 새터민 교정시설 군부대 순회사업 	-	최대 70,000 (자부담 10%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취지에 대한 적합성(30) 문화향수권자들의 문화 욕구 충족도 및 파급효과(30)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20) 사업수행역량(20) 	-	2010-03-03	2010-03-10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10년도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및 장애인 예술가 창작활동프로그램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고/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사업 북진/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애인 문화예술단체 특성화 사업 : 40,000 장애인예술가(단체) 창작활동 지원사업 : 최대 지원규모 30,000 장애인 문화향수 지원 : 최대 지원규모 40,000 홀부미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 최대 지원규모 1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취지에 대한 적합성 사업수행역량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 예술적 역량 또는 성장 잠재력 	×	2010-03-03	2010-03-10
문화체육관광부	2010	문화바우처 서울, 충북 지역주관처 공모	지역 저소득층의 문화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심의, 관람 지원을 위한 사업 홍보, 프로그램 관람 진행 등	-	-	-	-	2010-03-03	2010-03-12
문화체육관광부	2010	지역다문화 프로그램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다문화 프로그램 발굴 및 보급을 위한 공모 생활친화형 다문화 동아리 지원 지역 도서관 연계 프로그램 	-	1개 사업당 5,000 ~ 30,000 내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속가능성 다문화프로그램의 다양화, 유형화, 체계화 기대효과 및 발전계획 	○ (법집)	2011-03-04	2010-03-19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10년도 복지관광 지원 신청 안내	-	-	1인당 150 이내	대상 적합성, 외부후원 또는 자부담 비율, 여행상품 구성(교육프로그램 등) 및 내용의 충실성, 신청기관 및 진행여행사의 적합성, 기타 복지관광 사업에서 의도하는 내용등	-	2010-03-08	2010-04-08
문화체육관광부	2010	한-중앙아시아 예술커뮤니티 구축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3차 한-중앙아시아 문화자원 협력회의 참석 제2차 한-몽 문화자원 협력회의 개최 한-중앙아시아 신화·설화·응용서사시 포럼 개최 	18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의 이해 및 목적 부합성(15) 사업 수행계획의 적절성(40) 사업 수행 능력(35) 사업비 내역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10) 	×	2010-03-09	2010-03-19

부처	연도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단위:천원)	지급액 (단위:천원)	심사기준 1차	2차유무	공고일	마감일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10 장애인문화예술 축제	-	95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인경영상태(10) • 수행실적(10) • 장애인문화예술 관련 응집 역량(20) • 행사 기획역량(10) • 행사 운영역량(10) • 홍보역량(10) • 인력, 조직관리 역량(10) • 지원기술 및 대응역량(10) 	○	2010-09-10	2011-09-24 (현장평가)
문화체육관광부	2010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신규지원 공모 안내	문화소외지역(임대아파트 단지, 서민단독주택 밀집지역, 농산어촌 등)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매개체로 한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 지원	300,000	1개사업당 최대 60,00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의적절성 • 지원의 필요성 • 운영의 적절성 • 성과의 명확성 	×	2010-09-10	2010-09-29
문화체육관광부	2010	공공도서관 진립·운영 진설행 사업	기본설계 진단, 진립·운영 방향 제시, 워크숍 개최, 종합 결과보고서 작성, 진립·운영모델 정립, 매뉴얼 보완	500,000	-	사업계획, 사업단계의 전문인력 구성, 수행능력, 과제 실적 등	×	2010-09-12	2010-09-22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군/교정시설, 소년원학교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군 장병, 교정시설 수행자, 소년원학교 재학생 대상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718,000	• 1개 프로그램당 8,000 ~ 최대 10,00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단계·기관의 사업운영역량 적합성 검토 • 지원사업 취지 및 내용에 대한 이해도 • 수행대상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적합성 및 차별성 • 수행대상에 대한 교육 경험 및 실적 등 	×	2010-09-12	2011-09-19
문화체육관광부	2010	소외이동청소년 오케스트라 교육 지원사업	• 해당지역 오케스트라 교육 프로그램 기획·실행교육강사(매개자) • 워크숍 기획·운영 • 교육참여자 관리	500,000	단체당 100,00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취지 부합성(20): 사업 취지 이해도, 자원 필요성 및 효과성 • 사업계획 구체성(40): 사업목표-실행계획 적합성, 운영계획 적절성, 예산계획 적절성 • 사업운영 역량(40): 사업실행 전문성, 전문인력 보유 여부, 향후 자생적 오케스트라 교육사업 기반조성 실행전략 등 	○	2010-04-20	2010-05-07 (PT)
문화체육관광부	2010	지역여성문화콘텐츠 발굴사업 추진 단계공모	• 콘텐츠 개발 기획수립과 콘텐츠 생산 및 시범사업 • 콘텐츠 생산과 자료화, 홍보기반마련 • 작품보완 및 2차 저작물, 홍보마케팅	-	1개 사업 최대 12,000~20,000 내의 신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로그램 기획 • 성과계획 • 예산 적정성 • 기 추진 성과 	-	2010-04-23	2010-05-06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10년도 청소년 진흥예술캠프 추진단계 공모	진흥공연예술(가악, 상악, 무용, 탈춤, 연희) 진흥문화체험 각숙, 발표회 등의 프로그램 구성으로 캠프운영	-	8,000~42,000 차등지급	운영실적, 사업계획, 단체의 건실성 등	-	2010-04-27	2010-05-11

부처	연도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단위천원)	지급액 (단위천원)	심사기준 1차	2차유무	공고일	마감일
문화체육관광부	2010	한-아세안 문화예술포럼 국고보조사업자 공모	-	20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의 타당성(15) 사업기회역량(15) 사업추진역량(25) 인력, 조직관리역량(15) 홍보역량(10) 예산, 수입, 지출계획 효과성(20) 	×	2010-05-19	2010-06-01
문화체육관광부	2010	장애인 관광용 버스 개조 지원 사업	-	18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비스 활용계획 및 개조계획의 적합성(* 제안서 현장발표 평가) : 활용계획, 개조계획 개조비용 총액에서 외부재원 확보 규모 지원기관의 적합성 여부 및 사회공헌 관련 실적평가 	○	2010-05-31	2010-06-28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10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사업』 2차 공모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복합예술, 대중예술 등 문화예술 전 분야의 문화예술 창작 프로그램	-	최대 3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취지에 대한 적합성(30) 문화향수권자들의 문화 욕구 충족도 및 파급효과(30)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20) 사업수행역량(20) 	×	2010-06-03	2010-06-16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10 장애인 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사업 3차 공모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복합예술, 대중예술 등 문화예술 전 분야의 문화예술 창작 프로그램	-	최대 3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취지에 대한 적합성(30) 문화향수권자들의 문화 욕구 충족도 및 파급효과(30) 사업계획의 충실성, 타당성(20) 사업수행역량(20) 	×	2010-07-09	2010-07-20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10 한·일 축제현마당 국고보조사업자 공모	-	143,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기회역량(30), 사업추진역량(20), 인력, 조직관리 역량(15), 홍보역량(10), 예산, 수입, 지출계획의 효과성(20) 	×	2010-07-22	2010-08-02
문화체육관광부	2010	아시아문화아카데미 시범운영 및 운영프로그램연구 사업계획 공모	-	40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이해도(20) 사업수행 계획의 적절성(30) 사업수행능력(40) 사업비 내역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10) 	○ (법집)	2010-07-26	2010-08-05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한-남아시아 예술기부네트워크 구축	-	20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 타당성(15), 사업기회역량(15), 사업추진역량(25), 인력, 조직관리 역량(15), 홍보역량(10), 예산, 수입, 지출계획의 효과성(20) 	○ (법집)	2010-08-03	2010-08-16
문화체육관광부	2010	제1회 외국인 우리말 겨루기 대행사 공모	-	45,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상태(10), 수행실적(25), 행사 기획역량(15), 행사 운영 역량(15), 홍보역량(15), 인력, 조직 관리역량(10), 지원기술, 대응역량(10) 	-	2010-08-30	2010-09-01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10년도 복지관광 추석맞이 특별행사	대상별 특성화(주제)에 맞는 여행프로그램을 여행사 및 프로그램 전문가와 협의하여 구성	-	개인당 당일여행 70 / 숙박여행 150	대상별 예산범위 내에, 팩스 접수순으로 지역 및 대상을 고려	-	2010-09-01	2010-09-10

부처	연도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단위천원)	지급액 (단위천원)	심사기준 1차	2차유무	공고일	마감일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 교류지원센터 특성화 시범사업 국고보조 사업자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디어 발굴 및 전략 수립을 위한 전문가 워크숍 조직 · 운영 • 아시아문화교류지원센터 특성화 방안 도출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 아시아문화교류지원센터 운영계획 수립 • 아시아문화교류지원센터 특화프로그램 기획 및 시범운영 	1,20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계획역량 • 인력 · 조직관리 역량 • 예산, 수입 · 지출계획의 효과성 등 	○ (PT, 면접)	2010-09-07	2010-09-24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방문자서비스센터 운영전략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국고보조사업자 공모	-	80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계획역량 • 인력 · 조직관리 역량 • 예산, 수입 · 지출계획의 효과성 등 	○ (PT, 면접)	2010-09-07	2010-09-24
문화체육관광부	2010	진흥 활쏘기 정제성 확립방안 수립 사업공모	전국 각지의 민간 활쏘기 심태조사, 진흥 활쏘기 정립 및 이를 통한 국궁 활성화 방안 제시, 동결과물 제작, 배포 등	7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 내용의 적합성(20) • 과제의 추진 방법 및 추진 일정의 적절성(20) • 사업자의 과제 수행 능력(40) • 사업비 산출 내역 및 집행 계획의 적절성(20) 	×	2010-09-14	2010-10-08
문화체육관광부	2010	어린이 창작 프로그램 CAMP 사업 국고보조사업자 공모	-	2,00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이해도(20) • 사업수행 계획 적절성(30) • 사업수행능력(40) • 사업비 내역 및 집행계획의 적절성(10) 	○ (면접)	2010-09-17	2010-10-29
문화체육관광부	2010	복합전시관 개관콘텐츠 개발 및 1차 제작 사업공고	-	71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이해도(20) • 사업수행 계획의 적절성(30) • 사업수행 능력(40) • 사업비 내역 및 집행계획의 적절성(10) 	○ (면접)	2010-09-17	2010-10-29
문화체육관광부	2010	「예술극장 2차 기획인 규제공모 및 제작사업」	-	8,00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이해도(20) • 사업수행 계획 적절성(30) • 사업수행능력(40) • 사업비 내역 및 집행계획의 적절성(10) 	○ (면접)	2010-10-08	2010-11-16
문화체육관광부	2010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문화정보원(지원센터) 준비관 개관전시사업자 선정	-	30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이해도(15) • 사업수행 계획 적절성(40) • 사업수행능력(35) • 사업비 내역 및 집행계획의 적절성(10) 	○ (면접)	2010-10-08	2010-10-20
문화체육관광부	2010	도서관 지원 독서 · 교육 · 문화프로그램 공모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회 내외 프로그램: 1,000~2000 /회 	프로젝트과 도서관과의 연관성, 진문성, 예산규모, 인적구성, 프로그램 내용 등	×	2010-10-13	2010-10-21

부처	연도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단위천원)	지급액 (단위천원)	심사기준 1차	2차유무	공고일	마감일
문화체육관광부	2010	예술자유 활성화 지원사업	예술자유 실현인력 및 참여기관을 각각 공모 선정하고, 예술자유가 필요한 기관에 적합한 프로그램과 실행인력 매칭, 지원	125,000	기관 당 560 이내	• 본 사업 취지에 대한 이해도 • 보유시설 및 사업지원 시 관리 가능 인력 현황 • 수혜대상에 대한 이해도 평가 등	-	2010-10-13	2010-10-20
문화체육관광부	2010	민주인권평화기념관 운영방안 설계물 위한 시범사업	• 민주인권평화기념관 기획운영위원회 구성 · 운영 • 민주인권평화기념관 세부운영계획 수립 • 민주인권평화기념관 운영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장기포럼 및 국제워크숍 기획 · 운영 • 국내외 유사사례 조사 · 분석 및 기관 · 인력 DB 구축	200,000	-	• 사업이해도(15) • 사업수행 계획 적절성(40) • 사업수행능력(35) • 사업비 내역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10)	○ (법집)	2010-10-29	2010-11-19
문화체육관광부	2010	오펜스트라 교육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단계 공모	-	130,000	• 한 단체당 18,000 이내	• 기존 활동경험 및 사업운영역량(50): 기 추진 교육활동 내용, 사업실행 전문성 • 제안한 사업계획(50): 프로그램 운영 필요성, 계획 적절성, 예산계획 적절성	-	2010-11-08	2010-11-16
문화체육관광부	2010	2012 예술엑스포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 공모	2012 예술엑스포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예술엑스포 기간(2012.5.12~8.12) 동안 엑스포 회장 안, 또는 밖에서 개최할 수 있는 모든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	-	-	• 적합성 • 실행가능성 • 독창성 • 기능성 • 기타	○ (PT/ Q&A등)	2010-11-16	2010-12-10
문화체육관광부	2010	예술극장 2차 기획전 국제공모 및 제작사업 국고보조사업자 공모	• 예술극장 2차 국제공모 및 창작워크숍 진행 • 예술극장 발문 작품 제작지원 및 사업 • 예술극장 개관 브랜딩 발문 및 사전제작(pre-production)	800,000	-	• 사업이해도(20) • 사업수행 계획 적절성(30) • 사업수행능력(40) • 사업비 내역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10)	○ (법집)	2010-11-19	2010-12-08
문화체육관광부	2010	아시아 지역 암각화의 문화적 가치발굴과 콘텐츠 자원화 사업 - 수관사업자 선정 공모	• 암각화에 반영된 상징성과 문화적 맥락을 종합한 조사연구 · 수집 • 콘텐츠화와 창조적 발상이 가능한 서사구조 및 조형요소 발굴을 위한 암각화 자원수집 방안 제시 • 다양한 문화 콘텐츠로 변환 가능한 콘텐츠 자원화 전략 도출	330,000	-	• 사업의 이해 및 목적 부합성(15) • 사업 수행계획 적절성(40) • 사업수행 능력(35) • 사업비 내역 및 집행계획의 적정성(10)	×	2010-12-07	2010-12-20

부처	연도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단위천원)	지금액 (단위천원)	심사기준 1차	2차유무	공고일	마감일
방송통신위원회	2010	2010년도 시청자 권익 증진사업 안내 권익 지원사업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송소의계중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지원사업 	3,774,000	방송소의계중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2,294,000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제작 1,480,000	<방송소의계중 방송접근권 보장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50): 사업목표(20), 사업내용(30) 신청단계(10): 단체역량 예산편성(30) 평가결과(10) <시청자 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의 적정성(30) 공정성 및 체계성(20) 지원계획 수립 적절성 등(20) 전담인력 배치여부(10) 자체 재원부담 비율(20) 	×	2/8/2010	2/19/2010
방송통신위원회	2010	2010년도 시청자 권익 증진활동 및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	-	<시청자 권익증진활동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40): 사업목표(10), 사업내용(30) 단체역량(30): 단체역량(10), 전문성 확보(20) 예산편성(20) 평가결과(10) <미디어교육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40): 사업목표(10), 사업내용(30) 단체역량(20): 단체역량(20) 예산편성(30) 평가결과(10) 	×	3/8/2010	3/19/2010
법무부	2010	인민자 사회통합 프로그램 지침운영기관 모집	-	-	지침기관당 52,000~8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덕량: 인민자 지원 및 다문화 사회통합 추진 역량(20), 다양한 참여자 수용 능력및 여건(10), 지침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능력(10) 추진체계: 지침기관으로서 적격성(15), 효과적인 정책 추진 기능성 및 독창성(10), 일반운영기관(에칭기관)의 적정성 (15) 사업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재정 집행계획의 적절성(10), 운영기관 발전계획 등과의 연계 정도(10) 	-	2010-01-08	2010-01-20
법무부	2011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운영기관 모집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어과정, 한국사회이해과정, 기타 	-	-	-	-	12/29/2010	1/7/2011

부처	연도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단위천원)	지급액 (단위천원)	심사기준 1차	2차유무	공고일	마감일
보건복지부	2010	2010년도 이동복지교사 중앙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자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 및 시도지원센터 사업운영 총괄 • 이동복지교사 프로그램(매뉴얼) 개발·보급 및 교사 교육훈련 • 이동복지교사 지원사업 관리·점검 및 평가 • 기타 교사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1,17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단체 기본요건(30) : 사업 취지, 필요성, 사업운영 계획 등 • 사업수행 능력(30) : 사업 추진 경력 및 사업수행 능력, 성과 • 단체 자격 요건(30) : 기관의 신뢰성, 수행인력 전문성 • 예산운용능력(10) : 예산책정의 합리성 	×	11/11/2009	11/26/2009
보건복지부	2010	지역이동센터 중앙지원 운영사업자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이동센터 운영 지원 전반에 대한 사항 • 지역이동센터 종사자 교육 기획·시행 • 전산관리시스템 구축·관리 • 지역이동센터 홍보 및 네트워크 구축 • 기타 지역이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조사·연구 사업 • 이동복지교사 중앙지원센터와 협력체계 구축 	30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탁단체 기본요건(30) : 사업 취지, 필요성, 사업운영 계획 등 • 사업수행 능력(30) : 사업 추진 경력 및 사업수행 능력, 성과 • 단체 자격 요건(30) : 기관의 신뢰성, 수행인력 전문성 • 예산운용능력(10) : 예산책정의 합리성 	×	2009-11-11	2009-11-26
보건복지부		디딤씨앗통장(CDA) 후원 등 관리운영 사업자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DA사업 후원관리 • CDA사업 분석 및 평가 등 관리 운영 	27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과제: 사업내용(15), 사업방법 타당(10), 목표 달성가능성(10), 활용 및 파급효과(10) • 사업자: 사업경력(15), 사업팀의 구성(15) • 사업기간: 사업수행일정(10) • 사업비: 책정의 합리성(15) 	-	12/8/2009	12/17/2009
보건복지부		이동인지능력 향상서비스 '10년 전규사업자 공모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대상거주에 주 1회 이상 방문 1:1 독서지도 2. 아동 수준에 맞는 도서 지급(또는 대여) 3. 월 1회 이상 부모(보호자)에게 독서지도 아동과의 상호관계 교육 등 관련정보 제공 	33,500,000 -		사업 수행 능력, 서비스 공급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12/14/2009	12/24/2009
보건복지부	2010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민간보조사업 중앙관리기관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번역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프로그램·매뉴얼 개발·보급 • 통번역 인력 양성·보수교육 등 전문성 강화 등 	513,000 -		사업내용의 적합성, 목표의 명확성 및 수행기관의 전문성, 사업장 및 사업비 산정내역의 적정성 등	×	2010-01-04	2010-01-18
보건복지부	2010	「다문화가족의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민간보조사업 중앙관리기관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어발달 진단 및 교육에 필요한 교재·교구 지원 및 표준화된 프로그램·매뉴얼 개발·보급 • 전문인력 양성·보수교육 및 수퍼비전 실시 	678,000 -		사업내용의 적합성, 목표의 명확성 및 수행기관의 전문성, 사업장 및 사업비 산정내역의 적정성 등	×	2010-01-04	2010-01-18

부처	연도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단위천원)	지급액 (단위천원)	심사기준 1차	2차유무	공고일	마감일
보건복지부	2010	(인천시/전북)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	-	1,632,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인당 1,500/성과급 취업시 850, 6개월이상 지속시 850, 수급자 탈수급시 1,1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수행능력: 사업수행업체 전문성 정도, 관련사업 및 유사사업 성공여부, 사업수행기관 인력, 시설, 재무구조 등 참여인력의 우수성: 사업총괄책임자의 전문지식 정도, 인력구성의 적정성, 인력의 전문성 사업수행계획: 사업목적과 방향에 부합하는 수행계획에 대한 평가, 사업총괄책임자가 직접 관여하여 진행하는 영역과 범위 서비스 내용: 프로그램의 적정성(서비스 제공내용 및 제공시기, 횟수 등), 유관기관의 협력(지역사회 자원과의 연계체계 구축계획 등) 시범사업 이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에 대한 이해 및 추진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0-01-04(인선) 2010-01-28(전북)	2010-01-29(인선) 2010-02-05(전북)
보건복지부		장애인지원재활시설 "경영권실용 지원" 사업수행기관 모집	장애인지원재활시설의 경영진반에 걸쳐 전문 컨설턴트의 진단 및 지도를 통해 경영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 대안 제시	130,000	-	-	×	1/8/2010	1/22/2010
보건복지부	2010	「최소보육센터」역량강화, 사업 관리운영 사업자 공모	-	10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서 	×	2010-01-12	2010-01-25
보건복지부	2010	우수 협약 해외진출지원사업 위탁기관 공모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2회), 해외 한의약 시장 정보 분석 지원, 기타 우수 한의약 해외진출사업 지원 등	6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50): 사업계획의 적절성(20), 사업 성과목표 및 지표의 구체성·타당성(10), 사업 성과목표 및 지표의 달성 가능성(10), 사업비 집행계획의 구체성·적절성(10) 사업수행능력(50): 유사업무 경험사례 등 사업 수행 능력(20), 인력 및 시설 규모의 적절성 등 전문성(20), 참여업체 관리, 실적 관리 등 사업 추진의 효율성(10) 	×	2010-01-13	2010-01-26
보건복지부	2010	중앙보육정보센터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	400,000	-	-	○	2010-01-13	2010-01-22
보건복지부	2010	제38회 보건의 날 기념행사 위탁기관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사내용: 기념행사 및 유공자 포상 행사주제: 건강과 도시화 (1000개의 도시 - 1000개의 삶) 	53,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 및 인력의 적절성, 유사사업실적의 우수성, 행사목적의 적절성, 세부사업내용의 적절성, 세부사업 추진방법의 적절성, 홍보 및 일반계획의 적절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등 	○	2010-01-14	2011-01-25
보건복지부	2010	장기인증 및 이식 홍보사업 수행기관 공모	2010년도 태국민 장기기증 및 이식 홍보	60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50): 사업계획 내용의 적절성(20), 사업추진 방법의 타당성(10), 사업목표의 달성 가능성(10), 사업결과와 활용 및 기대효과(10) 사업수행기관(40): 사업수행 기관의 전문성(10), 유사사업 수행경험(20), 사업수행 기관의 지원(10) 사업비(5): 사업비 책정의 합리성 사업기간(5): 사업추진 일정의 적절성 	×	2010-01-14	2010-01-26

부처	연도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단위:천원)	지급액 (단위:천원)	심사기준 1차	2차유무	공고일	마감일
보건복지부	201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개발형 및 창립사업단) 신규 사업 공모	-	1,400,000	개발형: 8,000,000 창립사업단: 6,000,000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 서비스제공 필요성(15) • 계획 내용의 충실성(15)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대상자 선정기준(10), 서비스 문구(10), 비우체 지원단가 산정 적절성(10), 성과 목표, 지표 설정의 적절성(10) • 사업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15) • 정부투자 효율성(15)	×	2010-01-20	2010-02-04
보건복지부	2010	노인복지민간단체 국고보조사업 공모	• 치매 및 노인간강 지원 사업 • 배이비부머 세대 사회참여지원 사업 • 노인의 사회역할 강화 지원 사업 • 독거노인 보호 및 지원 사업 • 노인보 건복지 국제교류 사업 • 효행장려 및 지원 사업 • 노인권익향상 지원 사업	-	-	사업대상 범위와 사업대상 기관의 적정성, 적정사업비 산출	○ (법집)	2010-01-22	2010-02-05
보건복지부	2010	이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개발방지 교육 위탁사업기관 공모	-	410,000	• 등록감독, 수강명령, 교도소제소자(40시간): 49회 × 6,300천원 • 교도소제소 잔여기간 1년미만자(90시간): 8회×12,500천원	• 사업계획(30): 타당성(10), 구체성(10), 전문성(10) • 신청단체 역량(40): 사업추진능력(20), 성범죄자 대상 사업실적(20) • 사업비(10): 책정의 합리성 • 사업기대효과(20)	×	2010-01-25	2010-01-29
보건복지부	2010	결혼이민자를 위한 현지 사전정보제공 위탁사업	• 콜센터 운영(몽골) • 현지 사전정보제공프로그램 운영(몽골, 캄보디아, 베트남, 필리핀) • 현지 사전교육관계자 초청 연수프로그램 운영	250,000	-	• 관리부문(20): 경영태(5), 사업수행조치(10), 일정 및 보고계획(5) • 계획부문(50): 유사분야경험(15), 대상사업 이해도(10), 추진전략(5) • 운영부문(50): 콜센터운영(15), 교육프로그램운영(15), 정기간 협력강화방안논의 및 상담원교육(10), 홍보방안(5), 기타제안(5)	×	2010-01-26	2010-02-05
보건복지부	2010	영유아 부모대상 아동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교육 사업자 공모	-	975,000	• 교육 매뉴얼 및 부모용 안전수첩 개발: 15,000 • 부모시설 및 산후조리원 대상 부모교육 실시(1,100회): 735,000 • 부모교육 수료자 가운데 안전관리미 15,000개 배포: 225,000	• 사업계획(60): 계획의 현실성 및 창의성(20), 추진 방법의 타당성(10), 목표 달성가능성(10), 결과의 활용 및 기대효과(20) • 사업수행기관(20): 수행기관의 전문성(10), 유사사업 추진경험 및 수행인력 구성의 적절성(10) • 사업비(10): 책정의 합리성 • 사업기간(10): 추진 일정의 적절성	×	2010-01-26	2010-02-02

부처	연도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단위천원)	지급액 (단위천원)	심사기준 1차	2차유무	공고일	마감일
보건복지부	2010	아동·청소년 참여 캠페인 및 인구조육 프로그램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아동·청소년 정책 및 제도 개선관련 프로그램 복지·환경·교통·보건 등 지역사회 현안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해 가는 실천프로그램 	10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의 타당성·구체성·참신성(20) 예산편성의 적절성(20) 사업기대효과(20) 신청단체인력(30) 홍보 및 안전관리(10) 	×	2010-01-27	2010-02-16
보건복지부	2010	출산장터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국민참여 캠페인 및 인구교육 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이날기 좋은대상 만들기 국민참여 캠페인 지역주민·직장인 및 종교단체 인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민참여 캠페인: 900,000 지역주민, 직장인, 종교단체인 구교육: 4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캠페인: 단위사업별 50,000여대(인대사업 1억까지) 지역주민 및 직장인 대상 교육: 300,000 종교단체 및 신자 교육: 150,000 	<p><캠페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내용: 참신성, 효과성, 파급성, 지속성 등 단체역량: 추진역량, 인적적 사업추진 기반 등 <p><지역주민, 직장인, 종교단체인구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단체: 사업내용의 전문성, 유사경험, 전국적인 사업추진 능력 등 종교단체: 사업내용의 충실성, 목표달성의 가능성, 결과의 활용 가능성, 추진인력의 전문성 등 	×	2010-02-02	2010-02-19
보건복지부	2010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장장보조사업 수행기관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양플러스사업 평가 및 프로그램 기술지원 비만관리 수돗물소농도조정 구강보건교육·홍보 군인·전의경 금연지원 산모건강관리사업 (가임기여성건강증진) 모성건강지원환경조성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 암예방홍보 음주폐해예방관리 생명존중장신건강증진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5,163,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양플러스사업 평가 및 프로그램 기술지원: 150,000 비만관리: 460,000/176,000 수돗물소농도조정: 142,000 구강보건교육·홍보: 93,000 군인·전의경 금연지원: 1,000,000 산모건강관리사업 (가임기여성건강증진): 340,000/ 80,000/172,000/100,000 모성건강지원환경조성: 90,000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 120,000 암예방홍보: 200,000 음주폐해예방관리: 820,000/270,000 생명존중장신건강증진: 635,000 정신질환 편견해소 및 인식개선: 220,000/ 1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20) 사업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35)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20) 자체평가 계획의 적절성(10)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15) 	×	2011-02-09	2010-02-22 (PT실시)

부처	연도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단위천원)	지급액 (단위천원)	심사기준 1차	2차유무	공고일 마감일	
보건복지부	2010	지역사회 직장충진사업 광역교육기관 공모 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공모원 · 방문인력교육과정 보건소 건강행태개선사업 공모원 전문 교육과정 	845,6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직무교육: 711,190 보건소 건강행태개선사업 담당자 전문교육 : 134,5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수행기관의 조직, 기능, 전문성 등 사업수행능력 상근 인력의 규모 및 책임연구원의 최근 유사사업 추진실적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질적 수준: 동 사업에 대한 이해도, 관할 시도 담당자와의 협력방안 및 진박, 세부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 교육운영방법의 적절성, 예산집행계획의 적절성, 자체 교육운영평가 계획 	×	2010-01-29 2010-02-04	
보건복지부	2010	장애인인권 침해예방센터 사업자 공모	-	1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센터장1, 팀원2) 72,000 운영비 13,000 사업비 6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40): 타당성(10), 구체성(10), 전문성(10), 적절성(10) 공모기관역량(30): 사업추진능력(10), 단체 전문성(10), 청소년 성교육 또는 간접육성관련 활동 실적(10) 사업일정(10): 일정의 적절성 사업비편성(10): 사업비 편성 적절성 사업기대효과(10) 	×	2010-02-02 2010-02-11 (PT있음)	
보건복지부	2010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상벌외 신고의무 대상기관 종사자 교육 사업자 선정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등의 종사자 등에 대한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등 교육실시 법제정에 따른 취업제한제도 및 신고의무제도 변경사항 안내 	6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YP연구학교 지원활동: 315,000 YP프로그램 동아리 지원활동: 18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YP연구학교 지원활동 사업계획서의 성실도(20), 사업추진능력(20), 사업추진방법의 효과 및 적절성(40), 신청예산의 성실도(20) YP프로그램 동아리 지원활동 사업계획서의 성실도(20), 사업추진능력(20), 사업추진방법의 효과 및 적절성(40), 신청예산의 성실도(20) 	×	2010-02-04 2010-02-19
보건복지부	2010	청소년으로 자각이(YP)활동 보급단체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지도층등(멘토)과 저소득층 아동등(멘티)을 연계하는 멘토링 사업 전국 확대 및 휴먼네트워킹 교육 · 연구 · 진문정 제고사업 등 나눔운동 및 휴먼네트워킹 국민참여 확대 등을 통한 나눔문화 확산 	485,000	1,6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수행능력(40): 사업 수행의지 및 전문성(25), 조직 및 인력관리(15) 휴먼 네트워킹 사업계획(45): 서비스 제공계획(35), 예산집행계획(5), 서비스 품질관리(5) 기관 일반현황(15): 대외 신뢰도(5), 조직 안정성(5), 시설 · 장비 구비(5) 	×	2010-02-05 2010-02-17 (발표/ 대면심사)	
보건복지부	2010	휴먼네트워킹 사업수행기관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아이 매체 활용 지도 교육(학부모 미디어교육) 우아의 진정한 매체이용 습관 형성 지원 	22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리 아이 매체 활용 지도 교육(학부모 미디어교육): 150,000 우아의 진정한 매체이용 습관 형성 지원: 79,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의 충실성 등 사업계획의 성공적 수행 가능성(40) 사업 추진체계 구성 및 역할배분의 적절성 등 신청단체역량(30) 예산편성 등 사업비 책정의 적절성(20) 사업기대효과(10) 	×	2010-02-08 2010-02-19	

부처	연도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단위천원)	지급액 (단위천원)	심사기준 1차	2차유무	공고일	마감일
보건복지부	2010	아동권리모니터링 센터 운영 위탁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3·4차 국가보고서 분석 및 심의준비 •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선택의정서 이행 관련 개선과제 발굴 • 옴부즈퍼슨 운영 지원 	90,000	-	사업내용(40), 사업수행능력(30), 예산운용(15), 기타(운영여건 등 15)	×	2010-02-08	2010-02-24
보건복지부	2010	2010년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수행기관 선정(인천시)	공급적으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기초상담, 근로여건 조성, 근로능력 개발, 일자리지원 및 사후관리 등의 사업 전 과정을 담당	1,633,000	-	-	○ (만점)	2/10/2010	2010-02-23
보건복지부	2010	상반기 청소년활동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시행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부의 09 개정 교육과정에 도입되는 창의적 체험활동에 활용 가능한 프로그램 • 청소년활동의 지역화를 위한 “지역단위 청소년코디네이터” 사업 	1,610,000	프로그램당 3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의 타당성, 구체성, 참신성(30) • 예산편성의 적정성(30) • 사업기대효과(20) • 홍보, 안전관리(20) 	×	2010-02-12	2010-03-09
보건복지부	2010	2010년도 국민건강증진기금 민간강상보조사업 (통합홍보) 수행기관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고 및 인문홍보 • 캠페인 • 홍보, 교육자료 개발 	7,890,000	-	사업목표 및 성과 지표의 적절성(20), 사업 내용 및 수행 방법의 적절성(35),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10), 자체 평가, 계획의 적절성(20), 기대효과 및 활용 전략의 우수성(15)	○	2/23/2010	3/15/2010
보건복지부	2010	성폭력 가해청소년 위탁교육 사업자 공모	성폭력 가해청소년 치료교육	120,000	-	사업계획의 타당성, 구체성, 전문성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추진 능력 및 정범죄 청소년 대상 사업실적 등 사업추진 역량 등	×	2010-02-26 (2011-04-21)	2010-03-09
보건복지부	2010	청소년 해외태마체험 프로그램 주관단체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 및 직업관련체험 • 지속가능한 발전 • 다문화 가정 청소년 지원 • 기타 청소년 정책 및 글로벌이슈 주제 	-	프로그램당 20,000 내외	사업의 타당성 및 독창성, 기대효과, 예산편성의 적정성, 단체(기관)의 최근 청소년관련 국제활동실적 등	×	2010-02-26	2010-03-19
보건복지부	2010	2010년도 아동청소년 유해악물 예방활동 사업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청소년 대상 유해악물 불법 판매업소 모니터링 • 아동청소년 유해악물 예방 대국민(우동업체 포함) 홍보활동 • 아동청소년 대상 유해악물 불법 판매행위 개선활동 등 	130,000	-	-	×	2010-02-26	2010-03-08

부처	연도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단위천원)	지급액 (단위천원)	심사기준 1차	공고일	마감일
						2차유무		
보건복지부	2010	미야류중독자 치료보호 홍보사업 공모	미야류중독자 치료보호 지정기관 안내 및 상담 절차 등 홍보	10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20): 사업목표 구체성과 현실성(10), 목표에 따른 성과지표 적절성(10) 사업 내용 및 수행방법의 적절성(35): 목표와 내용의 일관성(10), 내용의 적절성(10), 일정 및 추진방법 적절성(10), 외부기관 활용계획 우수성(5) 예산 및 인력의 적절성(10): 예산편성 적절성(6), 사업수행 인력 적절성(5) 자체 평가 계획의 적절성(20): 평가의 객관성(10), 평가방법의 적절성(10) 기대효과 및 활용전략의 우수성(15): 기대효과 우수성(10), 활용전략 우수성(5) 	×	2010-09-02 2010-09-15
보건복지부	2010	"2010년 중국 청소년 초청사업" 주관단체 공모	-	1,134,000	-	단체 신인도, 프로그램 내용, 예산 타당성 등	×	2010-09-02 2010-09-12
보건복지부	2010	학교 인구조육 활성화 사업 수행기관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조육 시범학교 지정·운영 인구조육 교과연구회 구성·운영 학교 인구조육 담당 교사 양성 연수 대학 인구조육 관련 교수 워크숍 개최 	120,000	-	사업내용의 적함성, 사업계획의 창의성 및 타당성, 사업내용의 충실성, 사업결과 활용 및 효과, 사업기관의 전문성 및 사업실적, 사업방법의 효과성, 사업의 실현 가능성,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	×	2010-09-09 2010-09-17 (PT실시)
보건복지부	2010	World u-Health Forum 2010 행사 개최 사업자 공모	-	95,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50): 사업계획 적절성(20), 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추진일정 적절성(10), 사업비 집행계획의 구체성 및 적절성(10) 사업수행능력(50): 유사업무 경험사례 등 사업 수행 능력(20), 투입인력 전문성 및 효율성(20), 사업추진의 효율성(10) 	×	2010-09-15 2010-09-29 (PT실시)
보건복지부	2010	결혼과 출산이 행복한 세상 만들기 국민참여사업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결혼지원 출산지원 일과 가정 양립 	640,000	단위사업별 50,000 (연대필요시 1억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내용: 참신성, 효과성, 파급성, 지속성 등 단체역량: 추진역량, 안정적 사업추진 기반 등 	×	2010-09-29 2010-04-20
보건복지부	2010	「노인전문지원봉사 프로그램」자원사업 공모	노인 및 전문퇴직자의 경력 및 자격을 활용하여 지식, 경험, 기술을 전수하거나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	-	프로그램당 10,000 내외	노인의 기존 전문성 활용도 및 전문성, 목적 및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의 적함성, 주제에 부합하는 산출 성과의 실현 가능성, 사업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능력, 인력 및 예산 편성의 적절성 등	×	3/31/2010 2010-04-20
보건복지부	2010	휴먼네트워크 분야별 핵심협력기관 공모	6대 분야별 멘토링 사업수행, 멘토링 수행기관 연계 및 전국조직화를 통한 멘토링 활성화, 휴먼네트워크와 연계를 통한 멘토링에 대한 국민인식 확산	-	기관당 30,000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수행능력: 사업 수행의지 및 전문성 사업계획: 서비스 제공계획, 예산집행 및 품질관리 기관일반현황: 대외신뢰도 및 조직안정성 	×	2010-04-30 2010-05-12

부처	연도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단위:천원)	지급액 (단위:천원)	심사기준 1차	2차유무	공고일	마감일
보건복지부	2010	중앙가정 위탁지원센터 위탁공모	-	501,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건비: 240,000 관리운영비: 49,000 프로그램 운영 및 평가: 36,000 자산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 36,000 연구·교육·홍보 등: 14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의 적정성(40): 사업계획내용(30), 인력의 전문성(10) 관련분야 전문실적(20): 전문프로그램 개발·수행 및 교육실적(10), 조사, 연구 및 홍보(5), 자원개발 및 국제협력(5) 재정능력의 안정성(20): 자부담규모(10), 세입, 세출예산 편성내역(10) 법인운영의 적정여부(10): 조직관리능력 기타사항(10): 위탁의 타당성 	×	2010-06-17	2010-05-31
보건복지부	2010	중앙아동 보호전문기관 위탁운영 기관 공모	-	565,000	-	-	×	2010-07-05	2010-08-16
보건복지부	2010	2010년도 노인복지 민간단체 국고보조사업 2차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14회 노인의 날 행사 개최(위탁) 효행강려 활성화 사업 치매예방관리 및 노인건강 관련사업 노인여가 활성화 사업 노인복지민간단체 지원 사업 평가 기타 노인보건복지사업 등 	425,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범위(전국적인 사업일 것) ※ 모델 개발을 통한 전국으로의 사업 확대가 가능한 사업 포함 신청자격(행정기관 허가 법인 또는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일 것) 지원 대상 사업여부(우리부 정책과의 부합여부) 	○	7/12/2010	7/16/2010 (면접)
보건복지부	2010	노인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자원봉사 리더 양성 및 자원봉사단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자원봉사 프로그램 평가관리 및 실무자 교육 	1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노인자원봉사 리더 양성 및 자원봉사단 효율적 활용 방안 마련 70,000 자원봉사 프로그램 평가관리 및 실무자 교육 30,000 	-	-	2010-10-14	2010-10-20
보건복지부	2010	사회투자 활성화를 위한 사회공헌기업 공모사업 공모	민간부분인 기업·시민단체와 공공부분의 공동투자(제8차 개발방식) 근로빈곤층으로 구성된 근로자의 자립 지원 및 시장경쟁을 통한 이차출발로 취약계층에 대한 재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	-	사업당 최대 300,000(1~3개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의 타당성·구체성 운영주체 및 감사기관 등 지배구조·의사결정구조의 적절성 이윤배분 등 수익구조의 적절성 자립가능성 및 이윤활용 계획의 구체성 	○	2010-10-20	2010-11-08 (면접)
보건복지부	2011	2011년 어린이날 및 어린이주간 행사 수행단체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날 기념행사 어린이주간 행사 	14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직의 수행능력, 행사계획 수립의 적정성, 행사내용의 적합성, 행사홍보의 적정성 등 	○	2010-11-26	2010-12-22 (설명회) (2010-12-15)
보건복지부	2011	2011 어린이발달지원서비스 진료사업자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언어발달진단서비스, 심리상담서비스 1:1 언어지도,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 부모 교육 및 정보제공 등 	2,40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수행 능력, 서비스 공급 계획 등 	○	2010-12-23	2011-01-03 (필요시 현장방문)

부처	연도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단위천원)	지급액 (단위천원)	심사기준 1차	2차유무	공고일	마감일
보건복지부	2011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지역개발형) 신규사업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10대 유망사회서비스 : 아동발달지원서비스, 취약계층 아동 장애발달지원서비스, 분계아동초기개입서비스, 인터넷·개인중독아동치료서비스, 노인 맞춤형문통차량서비스, 장애인·노인을 위한 돌봄여행 서비스,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시각장애인 안내서비스, 나홀로이동 방과후 돌봄서비스, 정신질환자 토박케어서비스 자용공모 	21,50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아이템(10) 계획내용의 충실성(15) 사업계획의 적정성·실행가능성: 서비스대상(15), 서비스공급(15), 배우처 지원단가 산정의 적절성(10), 장애요인 극복방안(5) 사업의 안정성 및 지속가능성(10) 민간참여(5) 기대효과(15) 	×	2010-12-29	2011-01-21
보건복지부	2011	2011년 아이높기 좋은세상 운동 공모사업 계획 공고 (일과 가정의 행복한 세상만들기 국민참여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릴레이 CEO 포럼 16개 지역(18회) 워킹맘 모니터링 (전국 100대 기업) 담정의 옥아 및 가사 참여 신세대 대상 길거리 캠페인 온라인 정책관리 	54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획능력 : 참신성, 비용효과성, 신뢰성, 지속성 등 조직역량 : 전문성, 진담요원 등 조직성, 전국적 기반, 신인도 등 	×	2010-12-31	2011-01-17
신림청	2010	녹색자금 지원 2차 대상사업 공모	녹색홍보사업/녹색채널 교육사업	2,920,000	녹색홍보: 2,420,000 녹색채널교육: 5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자금(복권기금) 사업목적과 부합하는 사업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 성과가 담보될 수 있는 사업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성과 및 홍보효과 파급성이 큰 사업 동일한 사업으로 국가(지자체), 각종 단체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은 제외 	×	11/30/2009	12/14/2009
신림청	2010	2010년 녹색채널교실 운영 사업공모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복계제할행사 ②복계제할교실 ③복계제할교실 양성교실 ④초· 중등교사 복계제할 	6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격요건(강사, 장소, 장비, 운영실적 등), 프로그램 내용, 홍보효과, 지리적 위치, 수요가능성 등 	×	1/4/2010	1/15/2010
신림청	2010	녹색자금 지원 3차 대상사업 공모	저틴소 녹색장시대 산림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사업 (녹색홍보사업)	785,000	사업당 100,00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녹색자금(복권기금) 사업목적과 부합하는 사업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 성과가 담보될 수 있는 사업 선택과 집중에 의한 사업성과 및 홍보효과 파급성이 큰 사업 	-	2010-01-14	1/27/2010
여성가족부	2010	여성인력 리더십 교육 수행기관 모집 공고	여성관리자 리더십 교육	100,000 -			×	2010-01-28	2010-02-12

부처	연도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단위천원)	지급액 (단위천원)	심사기준 1차	2차유무	공고일	마감일
여성가족부	2010	결혼이민자 일자리 지원사업 위탁사업자 선정 임차공고	-	837,000	근로인력인건비 : 600,000 프로그램운영비: 50,000 위탁기관운영비: 187,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적합성(20): 사업목적의 부합성/사업의 타당성(진급성)/사업의 독창성(차별성) • 사업계획(20): 사업의 즉시시행 및 기간내 완료 가능성/사업의 지속성/사업의 구체성 • 수행능력(20): 관련사업 수행실적/인력의 전문성/예산의 적정성 • 일자리창출(20): 일자리 창출 규모, 서비스 제공인력의 자격 및 확보가능성 • 서비스수혜(20): 수혜자 선정 기준의 타당성/수혜자 부담 수준의 적정성 	×	2010-02-02	2010-02-17
여성가족부	2010	2010년도 여성단체 공동협력사업 시행공고	<p>① 여성사회참여 확대(여성의 경제·사회·정치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p> <p>② 여성인권 증진 및 취약계층지원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여성폭력 방지사업, 여성장애인, 탈북여성 등 취약계층 여성지원사업)</p> <p>③ 양성평등문화 확산 (사회 각분야 남녀차별적 문화개선사업, 양성평등 의식개진사업 등)</p> <p>④ 일가정양립문화 확산(일·생활 조화를 위한 가정, 직장, 지역사회 문화 확산사업)</p> <p>⑤ 온(溫) 가족 행복기움(가족가치 확산사업, 이혼위기,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등)</p> <p>⑥ 녹색생활실천(생활 속 탄소절감, 녹색교육 및 체험 등) 기타 사업유형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도 지원가능(특히 창의적인 사업)</p>	3,0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의 기간별, 형태별로 차등 지원 • 단년도 사업은 사업당 40,000 이내, 2개년도 사업은 70,000 이내 선정 • 권소사업 사업인 경우 기준초과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적합성: 정책 연계성/사업의 타당성(충실성)/사업의 독창성(창의성) • 사업의 기대성과: 파급효과/사업의 경제성/사업의 실현가능성 • 사업단체의 수행능력: 사업수행실적/인력의 전문성/예산의 적정성 	×	2010-02-05	2010-03-10
여성가족부	2010	생애주기별 양성평등의식교육 사업 수행단체 공모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단체별 7,800 내의 • 권선타운트비: 총 2회/1회당 150 	×	2010-04-01	2010-04-16

부처	연도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단위천원)	지급액 (단위천원)	심사기준 1차	2차유무	공고일	마감일
여성가족부	2010	청소년보호포스터그림 공모 시행 공고 (청소년육성기금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약물 피해 예방 • 유해정보 감시 및 개선 • 매체 역기능 예방 • 건전 매체 환경 조성 	197,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해약물 피해 예방: 47,000 • 유해정보 감시 및 개선: 30,000 • 매체 역기능 예방: 70,000 • 건전 매체 환경 조성: 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제를 명확히 설정하고 회성, 행사성 사업보다는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 • 청소년 보호 및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정책적 취지를 잘 구현할 수 있는 사업 • 사업규모 및 성과지표 적절성,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의 적절성, 성과평가제도, 기대효과, 성과 활용계획의 우수성, 예산편성, 사업수행 인력 및 추진일정의 적절성, 최근 청소년관련 활동실적 등 	×	2010-04-12	2010-04-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건설링 및 평가를 위하여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전문가, 교육전문가, 평가전문가 등으로 평가단 구성 ○ 평가단이 청소년활동프로그램에 대한 건설링 및 평가를 실시하고, 사업완료 후에 최종 평가 실시 •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 분야별 (문화예술활동, 과학정보활동, 봉사협력활동, 진로탐색·체험활동 등 6개 분야) 대표 프로그램을 매뉴얼화하여 보급 	15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능력(30): 수행기관 전문성(10), 관련 및 유사사업 수행실적(10), 사업수행기관 인력, 재무구조(10) • 참여인력 우수성(20): 사업총괄책임자 전문지식(10), 인력의 전문성(10) • 사업수행계획(40): 사업총괄책임자 참여도(10), 사업계획의 적절성(10), 계획 구체성(10), 예산편성 적절성(10) • 사업이해도(10) 	×	2010-04-14	2010-04-23
여성가족부	2010	2010년도 여성관련 공적개발원조(ODA) 수행사업자 모집공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PEC 여성 IT 교육 훈련 • 개도국 여성 경영인, 정책결정자를 위한 e-Biz 과정 • 개도국 여성 직업 능력 개발 과정 	1,399,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수행능력(35): 기관의 적합성(25), 인적인프라 구축정도(5), 유사사업 수행실적(5) • 사업계획타당성(35) • 효과성(10): 적극성(5), 기대효과(5) • 예산편성의 타당성(20): 사업예산의 구성(10), 예산의 원성(10) 	×	2010-04-21	2010-05-03
			제2회 전국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공모전 시행 공고	-	5,4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도(30), 충실도(20), 기여도(20), 실행가능성(10), 현장응용도(10), 매력성(10) 	×	2010-04-30
여성가족부	2010	청소년정책 분석평가센터 운영기관 공모	-	30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정책분석평가센터 운영계획의 적합성 및 그간의 업무실적, 인력구성의 적정성, 예산운용의 적절성, 기타 운영여건 등 종합평가 	×	2010-04-30	2010-05-10
			청소년정책 교육기관·관련기관 종사자 대상 맞춤형 관리교재 개발 추진단계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별 맞춤형 관리교재 개발 및 배포(2종) • 교재의 효과 검증과 보완 	5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40): 사업계획의 적절성, 목적 달성 가능성, 활용성 등 • 사업수행능력(20): 인력의 전문성, 팀구성의 적절성,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등 • 예산편성 적정성(20): 목적달성에 적합한 예산편성, 예산편성기준 준수 여부, 자부담 비율 등 • 사업추진계획(10): 유사사업 관련 업무추진계획 등 • 사업기대효과(10): 사업추진결과 기대되는 파급효과 등 	×	2010-05-20

부처	연도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단위천원)	지급액 (단위천원)	심사기준 1차	2차유무	공고일	마감일
여성가족부	2010	폭력피해 이주여성 자활지원센터 운영자 모집 공고	-	-	-	-	×	2010-05-13	2010-05-31
여성가족부	2010	『제외차세대 여성리더양성 지원사업』 민간보조사업자 공모	제외한민족 여성들이 글로벌 시대 한국의 국가경쟁력 확보의 중심축이 되도록 지역단체관을 통하여 차세대여성리더의 발굴 활동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50,000	-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의 효과성 등	×	2010-05-18	2010-05-25
여성가족부	2010	하반기 청소년활동프로그램 공모 지원사업	• 자율활동: 인성함양/과학, 환경/ 기초통합활동 • 봉사활동 • 진로활동	-	프로그램당 25,000 내외	• 사업계획 타당성, 구체성, 참신성(30) • 예산편성의 적정성(30) • 사업기대효과(20) • 홍보, 안전관리(20)	×	2010-06-07 ~2010-06- 25	활동별
여성가족부	2010	가족문화조성 공모 지원사업	•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최소 2곳 이상 운영) • 가족 토크잇 구성 및 운영	80,000	사업당 20,000 내외	• 사업의 적합성, 타당성, 구체성, 참신성(50) • 사업의 기대성과(20) • 사업단계의 시행능력 및 예산편성의 적정성(30)	○ (필요시 현장방문)	2010-06-09	2010-06-25
여성가족부	2010	진척가정의례 지원 사업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시대적 여건과 가치관 변화에 따른 합리적이고 건전한 의태문화 확립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교육 등	40,000	과제당 20,000 내외	• 적합성(25) • 목표달성 가능성(25) • 활용성 및 수혜자만족도(20) • 효과성, 파급효과(15) • 수행기관 전문성(15)	×	2010-06-10	2010-06-23
여성가족부	2010	중구 청소년 초청(2차)사업 주관단체 모집	-	225,000	-	단체신인도, 프로그램내용, 예산계획타당성, 중구교류전문성 등	×	2010-06-18	2010-06-28
여성가족부	2010	위기청소년 사이버제팅상담	• 전문 상담원의 실시간 사이버 채팅상담 • 청소년 주요 접속 사이트 연계 상담 • 주요 포털 사이트 중심 홍보	50,000	-	-	×	2010-07-05	2010-07-12
여성가족부	2010	메체물 분야 (방송물, 영상물, 가행물, 게임물) 모니터링 사업자 공모	• 방송물 모니터링 사업 • 영상물 모니터링 사업 • 간행물 모니터링 사업	450,000	-	사업 계획서의 성실도(20), 사업 추진 능력(30), 사업추진방법의 적정성, 타당성(40), 소요예산의 적정성(10)	-	2010-07-13	2010-07-20

부처	연도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단위천원)	지급액 (단위천원)	심사기준 1차	2차유무	공고일	마감일
여성가족부	2010	사이버윤리지수 평가사업 사업자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사업자의 청소년보호정책 평가 • 사이트의 구성 및 콘텐츠의 신경성·폭력성·사행성 등 청소년유해정도 평가 • 청소년유해정보의 구분 및 청소년접근차단 조치 여부 • 사이트 운영방침 및 고객신고처리 수준 평가 	6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계획서의 성실도(20), 사업추진 능력(30), 사업추진방법의 적정성·타당성(40), 소요예산의 적정성(10) 	×	2010-07-13	2010-07-20
여성가족부	2010	진국다문화가족지원 네트워크 대회]행사 위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회 기획안 마련 및 세부추진계획 작성·실행(홍보 포함) • 대회 프로그램 준비 및 진행 • 대회 디자인 및 장비 설치 • 대회장에 사용할 영상물 제작 • 초창상 및 안내장 인쇄·발송, 참석 확인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기타 사항 준비 • 시도별 홍보 부스 설치 및 관리 	5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의 참신성·다양성(30) • 사업추진 능력(30) • 사업내용의 충실성(20) • 사업실시 결과 파급효과성(20) 	×	2010-07-27	2010-08-05
여성가족부	2010	이동청소년 성보호 프로그램 개발 사업자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학교 저학년 및 고학년, 장애인 대상 발달단계별 성지식 이해 및 생명존중부리의 보호 	10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의 적함성(10) • 사업계획의 창의성 및 타당성(20), • 사업내용의 충실성(10), • 사업기관의 전문성 및 사업실적(20), • 사업방법의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20), • 사업결과 활용계획(10), •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10) 	○	2010-07-27	2010-08-06 (현장심사)
여성가족부	2010	청소년성문화센터 평가 및 컨설팅 사업자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지표 개발 • 평가권 설정 실시 • 평가결과보고 작성 	5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의 적함성(10), • 사업계획의 창의성 및 타당성(20), • 사업내용의 충실성(10), • 사업기관의 전문성 및 사업실적(20), • 사업방법의 효과성 및 실현가능성(20), • 사업결과 활용계획(10), • 사업비 책정의 적정성(10) 	○	2010-08-31	2010-09-13 (현장심사)
여성가족부	2010	아이돌로미 사업 전자배우체 시스템 개발·시범운영 주관기관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이돌로미 전자배우체 도입방안 기획연구(BPR/ISF) • 아이돌로미 전자배우체 시스템개발 및 시범운영 	30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내용의 적함성, 목표의 명확성 및 수행기관의 전문성, 사업장 및 사업비 산정내역의 적정성 등 	×	2010-10-26	2010-11-02

부처	연도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단위천원)	지급액 (단위천원)	심사기준 1차	2차유무	공고일	마감일
여성가족부	2011	청소년의 날 행사 주관기관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년의 날 • 청소년 주간 • 대한민국 청소년바람표 	860,000	성년의 날, 청소년 주간 380,000 청소년바람표 5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사내용평가(55): 우리부 추진방향 구현의 적절성, 수행 방법의 적절성, 청소년 기관, 단체와의 협력성, 홍보의 적절성, 안전 확보 방안 • 수행능력(27.5): 단체(기관)의 조직, 인력의 전문성, 행사 기획 및 추진능력의 적절성, 사업과 관련된 업무 추진 경험 • 예산평가(17.5): 행사비 책정의 합리성, 적절성, 예산 수립 대비 행사 내용의 효과성 	×	2010-10-27	2010-11-10 (PT실시)
여성가족부	2011	국제결혼증개업자 교육수행기관 공개모집	-	500,000	프로그램당 12,000	-	×	2010-11-17	2010-11-30
여성가족부	2011	「꿈과 사랑 속으로」 청소년해외 자원봉사단 주관단체 모집 공고	-	-	프로그램당 12,000	-	○	2010-11-22 (2011-03-30) (필요시)	2010-11-30
여성가족부	2011	아이돌보미사업 전차배우체 도입을 위한 ISF/BPR 수립 연구 지원기관 모집 안내	-	8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요(10), 제안서일반(23), 사업수행기술부문(45), 사업관리부문(17), 지원부문 및 기타(5) 	○(발표)	2010-12-01	2010-12-10
여성가족부	2011	국제진문여성인력 양성 사업 수행기관 모집	-	400,000	-	-	○(발표)	2010-12-08	2010-12-24
여성가족부	2011	엄마(아빠)나눔 인어섬늑 지원을 위한 언어영재교실 중앙관리기관 공모	-	109,000	-	사업내용의 적절성, 목표의 명확성 및 수행기관의 전문성, 사업량 및 사업비 산정내역의 적절성 등	○(발표)	2010-12-31	2011-01-08
외교통상부	2010	2010년 한-아세안 협력사업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협력사업: 기술이전, 개발협력 • 미래지향적협력사업: 인적교류 • 사회·문화(인적교류 포함): 청소년, 여성, 복지/노동 	-	사업계획서 검토 후 확정	시행기관 사업 계획서에 의한 서면평가	○	2010-01-06	2010-01-27 (설명회)
중소기업청	2010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신규지정 및 진입지원계획	-	-	창업보육센터사업자당 최대 3,000,000 이내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업 계획의 적절성(30%), ② 임주수요 및 투자계획(30%), ③ 운영시스템 우수성(20%), ④ 보육실면적 및 대응투자비율(20%) 	○	1/13/2010	2/2/2010 (현장방문)

부처	연도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단위천원)	지급액 (단위천원)	심사기준 1차	2차유무	공고일	마감일
중소기업청	2010	2010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관계부처 지관분야 실태조사 지원사업」 보조사업자 공모	-	150,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행기관능력(50): 전문성(20), 수행경험(15), 수행기관 규모 및 공신력(15) 네트워킹 역량 및 사회적 기여 정도(35): 네트워킹역량(20), 사회적기업정책전문성(10), 사회적기업에 대한 문제 진단능력(5) 참여인력 우수성(15): 인력구성 적정성(5), 인력경험어부(5), 인력전문성(5) 	×	2010-09-08	2010-09-09
지식경제부	2010	「지역산업 기술개발사업」 2차 신규지원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기업이 지역전략산업(특화분야)발전을 위해 개발 자원을 요청한 기술 중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술 	23,7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차유무명: 과제당 200,000 과제지정명: 과제당 5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추진계획(30) 기술성 및 사업성(30) 계획의 적정성(30) 기여도(10) 	-	2010-08-09	2010-09-14
통일부	2010	북한이탈주민 지역 적용센터 (하나센터) 모집	지역으로 전이하는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초기 집중교육(5주)과 사후지원(1년)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지원활동	-	센터당 140,00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수행 경험과 실적 기관(단체)장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에 대한 관심과 경험 경험 있는 직원 및 양질의 자원봉사자(상시 10명 이상) 확보 기관(단체)의 재정 건전성 및 재원 확보 능력 교육공간 확보(교육장, 상담실, 회의실, 휴게실 등) 	×	2010-01-04	2010-01-11
통일부	2010	2010년 북한이탈주민후원회 공모사업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사회적응지원 고령자지원 의료지원체계 구축·운영 심터운영 취업지원 프로그램 학교 및 직장 인식개선 지방단체 육성 정주도우미사업 기타 자유공모사업 	-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여성사회적응지원: 20,000 이내 고령자지원: 10,000 이내 의료지원체계 구축·운영: 30,000이내 심터운영: 30,000 이내 취업지원 프로그램: 20,000 이내 학교 및 직장 인식개선: 20,000 이내 지방단체 육성: 15,000 이내 정주도우미사업: 10,000 이내 기타 자유공모사업: 15,000 이내 	-	2010-02-05	2010-02-25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2010	한·중 청소년 교류사업 주관단체 모집 공고	2010년 말 2011년 각 400명 규모의 양국 청소년 교류사업을 시행	-	-	단체의 신인도, 프로그램 내용, 예산타당성 등	-	2010-02-08	2010-03-31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2010	2011년도 국제빈곤퇴치기여금 지원 민간단체 사업 공모	지역적인 결병퇴치사업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300,000이상 총사업비 70% / 최대 5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구체적인 성과지표 측정가능 사업 	-	2010-01-27	2010-03-26

부처	연도	사업명	세부사업	예산 (단위천원)	지급액 (단위천원)	심사기준 1차	공고일	마감일
							2차유무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2010	2010년도 국내조직원수사업 연수기관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 행정제도 정보통신 산업에너지 환경여성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반평가(30): 기관현황, 관련사업실적, 연수사업이해도 기술평가(70): 연수계획타당성, 연수계획적질성, 연수계획효과성 	2010-04-09	2010-04-20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2010	2010 국제개발협력 이해증진 사업 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한교내 국제개발협력관련 교과과정 신설 개발협력관련 워크샵, 세미나 지원 	-	• 6개월기준 20,000~3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의타당성: 사업내용의 적정성(10), 사업계획 명확성(10), 사업계획창의성(10) 사업내용효율성(40): 사업대상적정성(15), 사업내용(45), 사업의효과성(10) 기대효과: 수혜자기대효과(10), 지속적효과(10) 대상자참여도: 대상자참여도(5), 대상자모집방법(5) 	2010-04-27	2010-05-10
외교통상부 (한국국제협력단)	2010	2010년도 민간단체(NGO) 지원사업	<p>개도국의 빈곤해소 및 경제사회개발을 위한 민간직원의 협력차원에서 작성한 내용의 사업으로서, 가급적 사업수행 NGO가 현지사무소 개설, 자체인력 현지 파견 등을 통해 사업수행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사회통합과 평화증진 ② 사회복지와 취약계층 권익신장 ③ 녹색성장과 자원절약·환경보전 ④ 글로벌 시민의식 형성 및 성숙한 시민사회 구축 ⑤ 자원봉사·기부문화 활성화 ⑥ 안전문화·재해예방 극복 ⑦ 국제교류협력 	-	• 총사업비 70% / 최대 20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내용효율성: 사업내용경제성, 효과적인 사업수행체계 구축,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개발자참여도: 수인국 참여도, 수인국 호응도 기대효과: MDGs 달성 기여도, 파급효과 	2010-09-06	2010-10-12
행정안전부	2010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시행 공고		5,000,000	최고 100,000 최저 15,000	<p>동창성, 경제성, 파급효과, 사회문제 해결 및 주민복구 증속도, 신청예산내역의 타당성 및 자체분담비용, 직년도 사업평가 결과, 단체의 전문성, 책임성, 개발성 및 최근의 공익활동 실적 등</p>	2010-01-29	2010-03-31
환경부	2010	2010년 초등교사 대상 환경교육 지도자과정 운영 위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교육대학 위탁 (2) 환경관련 NGO 및 민간교육기관 위탁 	55,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대학: 30,000 이내 환경관련 NGO: 25,00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수행계획(40): 과업 이해정도(10), 요구사항의 반영여부(10), 사업에 대한 기술적 접근방법의 적정성(10), 세부추진계획의 적정성(10) 참여인력(20): 해당분야 인력보유(10), 강사진구성(10) 사업수행실적(15) 교육시설의 적정성(5) 입찰가격(20) 	2010-03-04	2010-03-23
환경부	2011	자연생태 자료실 구축 및 생태탐방 체험단 운영사업 신청제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환경부 홈페이지 내 자연생태 동영상 홈페이지 구축 및 운영관리 생태탐방 프로그램 운영 	98,00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계획 타당성(사업목적 등의 필요성), 사업수행능력(전문인력보유현황, 유사업무추진실적, 인프라 구축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예산항목의 적정성, 자부담 확보의 적정성 등) 	2010-04-15	2010-04-26

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개정 2008.2.29 법률 제8852호)

제1조(목적) 이 법은 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민간단체로의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증진과 민주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 있어서 “비영리민간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말한다.

1.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2.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3.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
4.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5.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실적이 있을 것
6.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제3조(기본방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의 고유한 활동영역을 존중하여야 하며 창의성과 전문성을 발휘하여 공익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 ①이 법이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는 그의 주된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장관(이하 “주무장관”이라 한다),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신청을 받은 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수리하여야 한다.

②주무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 공보에 이를 게재함과 동시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등록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제5조(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은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지원 및 이 법이 정하는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6조(보조금의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이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라 한다)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하는 사업외의 사업으로서 공익활동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소요경비의 범위는 사업비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의 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을 준용한다.

제7조(지원사업의 선정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매년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회적 수요를 파악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공익사업의 유형을 결정한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유형내에서 공익사업 선정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적인 지원사업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 이 경우 개별적인 지원사업의 선정은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국회의장 또는 당해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한 3인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관계전문가들로 구성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포함한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제출기한 2월 전에 공고하거나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위원자격,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계획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당해 회계연도 3월 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9조(사업보고서 제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의하여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제10조(조세감면)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조세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우편요금의 지원)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으며, 그 내용과 범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보조금의 환수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는 그가 받은 보조금을 환수한다.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에 사용한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수를 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반환할 비영리민간단체가 기한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개정 2008.2.29〉

제13조(벌칙) ①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교부받은 보조금을 사업계획서에 기재한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附則 〈제6118호,2000.1.12〉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식품산업진흥”에 관한 부분은 2008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전단,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7조제1항·제2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8조, 제9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참고문헌

- 국세청(2010). 2010년 귀속 알기 쉬운 연말정산
 국세청(2010). 국세통계연보
 김준기(2006). 정부와 NGO. 서울:박영사
 대한민국정부(2011). 2010년 국가결산보고서.
 박태규(2000). “한국의 비영리 부문의 경제적 규모 추계”. 한국비영리학회 창립총회 발표문
 임승빈(2009). 정부와 NGO. 서울:대영문화사
 조희연(2001). 「NGO가이드: 시민사회운동과 엔지오활동」. 한겨레신문사
 주성수(2001). 시민사회와 NGO논쟁. 서울: 한양대학교출판부
 (사)시민운동정보센터, 한국민간단체총람편찬위원회(2009) 한국민간단체총람
 행정안전부(2011). 2011 민간단체 공익사업 설명회 자료집
 행정안전부(2011).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평가보고서
 행정안전부(2009).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업무편람
 박상필(1999). “시민단체와 정부의 관계유형과 지원체제”. 한국행정학보 33(1), 261-278
 신광영(1999). “비정부조직과 국가정책-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 8(1) 29-67
 권해수(1999). “시민단체의 조직화과정과 정책변화에 대한 영향력 비교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0(1)
 김준기(2000). “한국에서의 ‘제3자적 정부’에 대한 논의”. 행정논총, 39(2) 19-46
 신희권(1999). “지방정치의 변화와 자발적 조직의 역할”. 숭실대학교대학원박사학위청구논문
 오재일(2000). “지역사회에 있어서 지방정부와 NGO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 정부와 NGO. 한국행정학회 2000년도 기획세미나 발표논문집
 Hansmann, Henry B.(1980). “The Role of Nonprofit Enterprise”. Yale law Journal, 89(5): 835-898
 Hardin(1968). The Tragedy of the commons. Science 162(3859)
 Kollock(1998). Social Dilemmas: The Anatomy of Cooperation,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Olson, M. (1965). The logic of collective ac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Ostrom, E. (1990). Governing the commons : the evolution of institutions for collective ac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Salamon(1999). America's Nonprofit Sector(2nd ed). 이형진 역 NPO란 무엇인가. 서울: 아르케
 Smith, S. R, Grønberg, K. A. (2006). Scope and Theory of Government-Nonprofit Relations. In Powell, W. W., Steinberg, R.(2006). The Non-Profit Sector-A Research Handbook(2nd ed.). Yale University Press
 UN(2003). Handbook on Non-profit Institutions in the System of National Accounts.
 World Bank(2007). Consultations with Civil Society-A Sourcebook. (http://siteresources.worldbank.org/CSO/Resources/ConsultationsSourcebook_Feb2007.pdf)

정보공개자료

고용노동부 포함 26개 중앙정부 부처 정보공개자료

인터넷 자료

- 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한 모든 중앙정부 부처 홈페이지
 -2010년 비영리민간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사업공고, 고시 참조
 2010년 정부 지원을 받은 비영리민간단체 홈페이지

2010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백서

1판 1쇄 펴냄 2011년 11월 3일

지은이 조흥식 외

펴낸이 이일하

펴낸곳 한국NPO공동회의

출판등록 2010. 6. 7. 제 300-2010-76호

주소 서울시 종로구 교복동 11-1 부귀빌딩 4층

대표전화 02-735-0067~9 | 팩스 02-735-0065

E-mail npokorea@npokorea.kr | Homepage www.npokorea.kr

값 15,000원

©한국NPO공동회의 2011

ISBN 978-89-964604-2-8 93060

2010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 종합 분석

요즘은 이전과 달리 시대가 많이 변화하고 시민의식이 성숙하여 비영리민간단체(NPO)의 역할과 공익성은 우리 사회에서 점점 더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공공부문에 의해 제공되었던 공공서비스를 민간비영리부문이 담당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사회의 다원화 현상에 따른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비영리민간단체를 통한 행정수행방식의 혁신 등이 부각되면서 사회 각 분야에서 비영리민간단체의 역할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는 아직까지 중앙정부 부처별 비영리민간단체를 지원하는 예산의 규모와 변화추이, 부처별 배분액, 배분기준, 대상기관의 특성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작년에도 이어 금년에도 정부의 예산 배분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되어 지원을 받는 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조망과 함께 연도별 지원액 추이를 분석해보고자 이 연구조사를 기획하게 되었다.

본 백서는 ‘한국NPO공동회의’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가 공동주관하고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조홍식 교수(책임연구원)에게 의뢰하여 연구조사한 결과보고서이다. 2011년 2월부터 9월까지 중앙정부에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26개 중앙부처로부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자료를 확보하였고, 이를 기초로 정부가 2010년도에 지원한 830건, 총 3,227억원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단체 및 프로그램, 지원액, 연도별 추이, 지원기준 등을 검토하였다.

『2010년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백서』는 정부의 비영리민간단체 양자간의 대화 기회를 촉진하기 위한 공동의 기반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조망을 통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균형잡힌 지원활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 NPO입장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얻기 위해 필요한 고려사항들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조직의 재정적 자원 확보 및 정부 정책을 이해하는 등 실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백서 부록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정부지원 공모사업」의 리스트를 제시하여 정부 공모에 관심이 있는 단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가격 15,000원



9 788996 460428
ISBN 978-89-964604-2-8